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박지수 · 이지연 · 한윤선 · 김 혁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 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 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저 자 박지수, 이지연, 한윤선, 김혁

연구진 연구책임자_박지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한윤선(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_김 혁(부경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문세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보호소년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보호를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법원의 보호소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함
- 법원 소년부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판사가 사건 특성, 소년 특성, 처분결과 등의 내용을 메모한 자료의 분석을 실시함
-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집행기관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년보호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 영국, 독일, 일본의 소년범죄 관련 법령, 소년사건처리 과정, 보호처분 특성 등을 파악하여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탐색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소년사건처리 및 소년보호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문헌 분석
- (2차 자료 분석) 국가통계 등 보호소년 범죄 현황 및 보호처분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 소년보호재판 및 세부사건 빈도분석,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개인·가정·학교 위기요인 관계 분석
- (질적분석) 소년보호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조사 자료 분석
- (기타) 전문가 자문 및 보호처분 집행기관 현장 방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청소년 정책포럼 개최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보호소년 범죄와 보호처분 제도 관련 2차 자료 분석 결과

- 범죄 실태 및 처분제도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소년범죄 관련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소년의 요보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우범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과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을 위한 처분제도 개선이 필요함. 보호관찰 및 소년원 임시퇴원 후 재범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 및 지역 균형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함.

●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 결과

- 비정형 자료인 재판 준비 메모를 정형화하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 사건 발생 후 최종 판결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되며, 전체 사건 중 재산범죄가 55.6%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함. 보호처분 이력이 많은 소년일수록 개인·가족·학교 영역에서의 위기 요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집행 기관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 소년보호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 FGI 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가 도출됨.
- 과거에 비해 소년들은 점점 더 미성숙해지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함. 비행성이 심화하기보다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상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문제가 있음. 소년을 둘러싼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소년 보호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에서 지역 편차가 발견됨.

● 해외사례 분석 결과

- 영국, 독일, 일본의 법제와 청소년 범죄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 체계를 구축해야 함. 연령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도 여전히 소년의 특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개입을 통한 개별처우 및 다이버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핵심 정책제언

정책과제

세부과제

01

근거기반 통합적 소년보호정책 추진

1. 소년범죄 실태 및 요보호성에 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통계자료 구축
2. 소년보호기관 간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3. 소년보호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보호처분 집행기관 네트워크 강화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2

소년의 요보호성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

1. 보호자특별교육명령 의무 부과 및 효과지속 방안 모색
2. 학교의 보호력 제고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3. 보호처분 종료 후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시설 내 처우 사회복귀교육 내실화
5. 우범소년 기준 강화 및 별도의 처리 절차·보호처분 마련

03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1. 소년에 특화된 처분 전 조사 인력 증원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적극 활용
3. 8호 처분 소년원 운영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의 소크 구금 기능 수행 제한
4. 소년범죄 조기개입을 위한 처분 전 조치 활성화

04

보호처분의 질 향상평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법원이 지정한 위탁 집행기관에 제공할 소년보호 프로그램 및 지침 마련
2. 법무부 주도 소년수강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자격검증을 통한 관리
3. 소년에 적합한 수강과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4. 소년원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 협력

05

의료재활처우 수준 분화 및 자원 확보

1. 의료재활소년원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2. 국립법무병원 및 국립정신의료기관 보호소년 병상 확보
3. 의료재활처우 수준 분화 및 수준별 의료 처우 마련
4. 아동보호치료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기준 규정 개정

06

보호관찰소의 소년 대상 보호처분 집행 전문성 제고

1.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도입 및 전문성 제고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소년 수강 집행 기능 확대
3.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감독하고 운영하도록 제도 개편

07

보호처분 집행 기관 및 시설 수 확대

1. 비수도권 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 설치 및 대행소년원 축소
2.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조정, 임시퇴원 비율 상한 설정
3. 소년원 증설을 통한 처분별 소년원 운영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및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증원을 위한 지원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23-기본09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 추진 체계	3
3. 주요 연구 내용	5
4. 연구방법	7

II. 논의의 배경

1. 보호소년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13
2. 보호소년 범죄 현황 및 쟁점	39
3. 소년보호처분 제도 현황 및 쟁점	69
4. 소결 및 시사점	115

III.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 및 분석

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개요	121
2.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	123
3.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결과	134
4. 소결 및 시사점	175

IV.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분석	
1.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및 분석 개요 ..	185
2.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 집단별 분석 결과	189
3.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 공통 주제 분석 결과	231
4. 요약 및 시사점	244
V. 해외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	
1. 들어가며	251
2. 영국	252
3. 독일	282
4. 일본	306
5. 시사점	335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정책 제언 배경	339
2. 정책제언	347
참고문헌	383
국문초록	399
Abstract	400

표 목차

표 I -1. 소년보호재판 메모 자료 분석 개요	8
표 I -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개요	8
표 I -3.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개요	9
표 I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개요	9
표 I -5. 청소년정책포럼 개요	10
표 II -1. 조사기관별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조사 특징	16
표 II -2. 보호처분 요약	19
표 II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요약	21
표 II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2023년 9월 기준)	22
표 II -5.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요약	28
표 II -6.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처분 위탁 시설) 현황(2022.12.31. 기준)	29
표 II -7. 대전소년원 의료진 현황(2021년 기준)	31
표 II -8. 의료재활 교육 내용 및 시간	31
표 II -9. 7호 처분 수탁기관 현황(2021.2.1. 기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 제외)	32
표 II -10. 소년원 현황 요약	34
표 II -11. 소년범죄 인원 및 소년비 추이(2014~2021)	40
표 II -12.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1)	42
표 II -13.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기준 범죄 유형 추이(2013~2021)	44
표 II -14.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1)	46
표 II -15.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촉법소년 비율(2013~2021) ..	48
표 II -16.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처리 동향(2013~2021)	49
표 II -17. 접수 기준 촉법소년 범죄 유형 추이(2013~2021)	51
표 II -18. 촉법소년 재산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3
표 II -19. 촉법소년 폭력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4
표 II -20. 촉법소년 강력(흉악)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6
표 II -21. 촉법소년 교통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7

표 II-22. 촉법소년 기타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9
표 II-23.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우범소년 비율(2013~2021) ..	60
표 II-24. 소년보호사건 우범소년 처리 동향(2013~2021)	61
표 II-25. 우범소년 보호처분 결정 특성(2013~2021)	63
표 II-26. 보호처분 결정 시 연령 분포(2013~2021)	64
표 II-27. 보호소년 행위원인 현황(2013~2021)	65
표 II-28. 보호소년 직업 현황(2013~2021)	66
표 II-29. 보호소년 교육 정도 현황(2013~2021)	67
표 II-30. 보호소년 가족관계 현황(2013~2021)	68
표 II-31. 보호소년 주거형태 현황(2013~2021)	69
표 II-32. 보호처분 처우별 변화 추이(2014~2021)	70
표 II-33. 1호 처분 현황(2014~2021)	71
표 II-3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2022년 기준)	73
표 II-35. 2호 처분 현황(2014~2021)	74
표 II-36.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접수사건 연령별 현황(2017~2021)	76
표 II-37. 3호 처분 현황(2014~2021)	77
표 II-38.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소년 현황(2014~2021)	79
표 II-39. 보호관찰 처분 현황(2014~2021)	80
표 II-40. 보호관찰소 접수사건 소년 현황(2014~2021)	82
표 II-41. 보호관찰소 접수사건 보호소년 현황(2014~2021)	83
표 II-42. 보호관찰 접수사건 세부연령 현황(2017~2021)	85
표 II-43. 보호관찰 접수사건 소년 성별 현황(2014~2021)	85
표 II-44. 보호관찰 접수사건 소년 사범별 현황(2017~2021)	86
표 II-45. 보호관찰 성인 및 소년사건 재범률 비교(2015~2021)	87
표 II-46.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4~2021)	88
표 II-47. 6호 처분 현황(2014~2021)	89
표 II-48. 6호 시설 정원 및 현원(2014~2021, 매년 12월 31일 기준) ..	91
표 II-49.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수용 현황(2014~2021)	92
표 II-50.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세부 연령별 현황(2017~2021) ..	93
표 II-51.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21)	94
표 II-52.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4~2021)	94
표 II-53.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연령 및 사범별 현황(2017~2021)	96

표 II-54. 7호 처분 현황(2014~2021)	98
표 II-55. 7호 처분 연령별 수용 현황(2017~2021)	98
표 II-56. 7호 출원 현황(2014~2021)	99
표 II-57. 8호 처분 현황(2014~2021)	100
표 II-58. 8호 처분 연령별 수용 현황(2017~2021)	101
표 II-59. 8호 출원 현황(2014~2021)	101
표 II-60. 9, 10호 처분 현황(2014~2021)	103
표 II-61. 9, 10호 처분 연령별 수용 현황(2017~2021)	104
표 II-62. 9, 10호 출원 현황(2014~2021)	105
표 II-63. 소년보호 임시조치(임시위탁결정) 및 처리인원(2014~2021)	108
표 II-64.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4~2021)	110
표 II-65. 임시위탁 소년 연령 및 사범별 현황(2017~2021)	111
표 II-6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4~2021)	113
표 II-67.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1)	114
표 II-6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4~2021)	114
표 III-1.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결과	124
표 III-2. 사건 수 별 재판 빈도	125
표 III-3. 촉법소년(최초 재판 기준) 연도 별 재판 빈도	126
표 III-4. 조사표의 구성	127
표 III-5. 영역별 위기요인 세부 변인 및 키워드(예시)	130
표 III-6. 범죄유형 키워드	133
표 III-7. 소년보호사건 재판 최종 판결 처우 분류	135
표 III-8.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	136
표 III-9. 처우별 최종 판결 소요 기간	137
표 III-10.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반영	138
표 III-11.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에 따른 분석	140
표 III-12. 재판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141
표 III-13. 처우별 범죄유형 빈도	142
표 III-14.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	144
표 III-15. 연도별 사건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145
표 III-16.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146
표 III-17.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분포	147

표 Ⅲ-18.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148
표 Ⅲ-19. 범죄유형별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149
표 Ⅲ-20.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 연령 및 성별	151
표 Ⅲ-21.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152
표 Ⅲ-22.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154
표 Ⅲ-23. 소년 1인당 최종 판결 수	155
표 Ⅲ-24. 보호소년 처우 이력(최종처우 기준)	156
표 Ⅲ-25.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최종처분 기준)	158
표 Ⅲ-26. 보호소년 개인 위기요인 빈도	159
표 Ⅲ-27.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개인 위기요인	160
표 Ⅲ-28.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개인 위기요인 세부변인	161
표 Ⅲ-29. 보호소년 가정 위기요인 빈도	162
표 Ⅲ-30.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가정 위기요인	163
표 Ⅲ-31.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가정 위기요인 세부변인	164
표 Ⅲ-32. 보호소년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빈도	165
표 Ⅲ-33.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166
표 Ⅲ-34.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세부변인	167
표 Ⅲ-35. 무초/무집/무 재판 건수	168
표 Ⅲ-36. 무초/무집/무 사건 재판 결과	168
표 Ⅲ-37. 무 사건과 무초/무집 사건 재판 결과 비교	169
표 Ⅲ-38. 무초/무집 보호처분 현황	171
표 Ⅲ-39. 무초/무집 사건 재판 사유	171
표 Ⅲ-40. 사건구분별 개인 위기요인	172
표 Ⅲ-41. 사건구분별 가정 위기요인	173
표 Ⅲ-42. 사건구분별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174
표 Ⅲ-43. 분석 단위별 사례 수	176
표 Ⅲ-44. 주요 연구결과 요약	176
표 Ⅳ-1.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집단 및 참여자 정보	185
표 Ⅳ-2.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주요 질문	187
표 Ⅴ-1. 연령별 대응과 처분 개요	267
표 Ⅴ-2. 연령별 형사책임	282
표 Ⅴ-3. 소년, 청년, 성인별 유죄선고 수(2016~2021)	294
표 Ⅴ-4. 소년, 청년, 성인별 인구 10만 명당 유죄 선고받은 사람 수(2016~2021)	294
표 Ⅴ-5. 연령별 전체범죄 피의자 수(2022년)	296

표 V-6. 주요 범죄유형별 소년 재판 및 유죄선고 수(2021년)	296
표 V-7. 교육처분 부과현황(2021년)	298
표 V-8. 징계처분 부과현황(2021년)	298
표 V-9. 주(州)별 소년교도소 수(2022년 기준)	300
표 V-10. 주(州)별 소년교도소 내 수형자 인원수(2022년 기준)	301
표 V-11. 노이부르크-헤렌뷔르트(Neuburg-Herrenwörth) 소년교도소 직원현황(2020년 기준)	303
표 V-12. 주(州)별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수(2020년 기준)	304
표 V-13. 주(州)별 아동·청소년지원시설 내 인원수(2020년 기준)	304
표 V-14. 소년보호사건의 신규 접수인원(2017~2021)	325
표 V-15. 소년보호사건 재비행률(2012~2021)	327
표 V-16. 소년보호사건 시험관찰 현황(2012~2021)	327
표 V-17. 일반보호사건의 신병부 보도위탁 인원(2012~2021)	328
표 V-18. 비행별 시험관찰 인원	329
표 V-19. 일반보호사건의 종국처리 인원(2021년)	330
표 V-20. 원칙역송사건 가정재판소 종국처리인원(2021년)	330
표 V-21. 일반보호사건 중 불처분 및 심판불개시 인원(2021년)	331
표 V-22.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유형별 인정현황(2021년말 기준)	331
표 V-23. 소년 보호관찰 종료 인원의 종료 사유 비율(2021년)	332
표 V-24.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현황(2021년)	333
표 V-25. 소년원별 1일 평균 수용인원(2021년)	334
표 VI-1.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	340
표 VI-2.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47
표 VI-3. 소년법 제32조제5항 및 소년심판 규칙 제32조 개정안(예시)	349
표 VI-4.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개정안	350
표 VI-5. 소년법 제 67조 개정안(송기헌 의원 등 12인)	351
표 VI-6. 소년법 제 32조 개정안	353
표 VI-7. 소년법 정부 개정안(예시)	357
표 VI-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운영내용 예시	360
표 VI-9. 소년법 개정법률안(예시)	370
표 VI-10. 소년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을 위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4
표 VI-11.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신설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377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 체계	3
그림 I-2. 단계별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4
그림 II-1.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18
그림 II-2. 인구 10만 명당 소년범과 성인범 수 비교(2014~2021)	41
그림 II-3.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1)	43
그림 II-4.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기준 범죄 유형 비율(2013~2022)	45
그림 II-5.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1)	47
그림 II-6. 소년보호사건 축법소년 처리 동향(2013~2022)	50
그림 II-7. 접수 기준 축법소년 범죄유형 비율(2013~2022)	52
그림 II-8. 축법소년 재산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3
그림 II-9. 축법소년 폭력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5
그림 II-10. 축법소년 강력(흉악)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6
그림 II-11. 축법소년 교통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8
그림 II-12. 축법소년 기타범죄 처리 현황(2013~2021)	59
그림 II-13. 소년보호사건 우범소년 처리 동향(2013~2021)	62
그림 II-14. 보호처분 처우별 변화 추이(2014~2021)	70
그림 II-15. 1호 처분 비율 그래프	72
그림 II-16. 2호 처분 비율 그래프	75
그림 II-17. 3호 처분 비율 그래프	78
그림 II-18. 보호관찰 처분 비율 그래프	81
그림 II-19.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현황(2014~2021)	84
그림 II-20. 6호 처분 비율 그래프	90
그림 II-21.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수용 현황(2014~2021)	92
그림 II-22. 시설 내 처우 정신질환자 비율 현황(2014~2021)	95
그림 II-23. 7호 출원 현황(2014~2021)	99
그림 II-24. 8호 출원 현황(2014~2021)	102
그림 II-25. 9호 출원 현황(2014~2021)	106

그림 II-26. 10호 출원 현황(2014~2021)	106
그림 II-27. 임시위탁 결정 이후 보호처분 처리 현황(2014~2021)	109
그림 III-1.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현황	124
그림 III-2. 사건 수 별 재판 빈도	125
그림 III-3.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	137
그림 III-4. 처우별 최종 판결 소요 기간	138
그림 III-5.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반영	139
그림 III-6.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에 따른 분석	140
그림 III-7. 재판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141
그림 III-8. 처우에 따른 범죄유형별 비율	143
그림 III-9.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146
그림 III-10.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분포	147
그림 III-11.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148
그림 III-12. 범죄유형별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150
그림 III-13. 보호소년 연령 및 성별	151
그림 III-14.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153
그림 III-15.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154
그림 III-16. 소년 1인당 최종 판결 수	155
그림 III-17. 보호소년 처우 이력(최종처우 기준)	157
그림 III-18.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최종처분 기준)	158
그림 III-19.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개인 위기로인	160
그림 III-20.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개인 위기로인 세부변인	161
그림 III-21.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가정 위기로인	163
그림 III-22.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가정 위기로인 세부변인	164
그림 III-23.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166
그림 III-24.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세부변인	167
그림 III-25. 푸 재판 불처분 결정시 무초/무집 재판 결과	170
그림 III-26. 사건구분별 위기로인(개인)	173
그림 III-27. 사건구분별 가정 위기로인	174
그림 III-28. 사건구분 별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175
그림 IV-1.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과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분포도	242
그림 V-1. 소년사건 관할배분	259
그림 V-2. YJB와 YOT의 기관 협력체계	265

그림 V-3. 혐의가 입증된 소년범죄 사건 추이	270
그림 V-4. 혐의가 입증된 소년범죄 사건의 증감률	271
그림 V-5. 혐의가 입증된 소년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분포	272
그림 V-6. 소년주의처분(youth caution) 추이	272
그림 V-7. 법원의 처분 종류	273
그림 V-8. 법원의 보호처분의 종류	274
그림 V-9.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선고 내용	275
그림 V-10. 재범 건수와 재범 소년의 수	276
그림 V-11. 연령별 재범률	277
그림 V-12. 연령별 소년주의처분 또는 선고 소년 분포	278
그림 V-13. 소년주의처분 대상자 분석	278
그림 V-14. 소년주의처분 또는 선고를 받은 소년	279
그림 V-15. 초범 소년 분포	279
그림 V-16. 연령별 중대범죄 분포	280
그림 V-17. 아동, 소년, 청년, 성인별 인구 10만 명당 피의자 수(2000~2020)	295
그림 V-18. 소년 형법범 등 검거원인	322
그림 V-19. 형법범의 인구비(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 비율) 추이	323
그림 V-20. 소년 형법범 검거인원·인구비 추이(연령층별)	324
그림 V-21. 소년 형법범 비행소년율의 추이	325
그림 VI-1.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목적 및 목표 예시	354
그림 VI-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합인력풀 시스템 구축 사례	364
그림 VI-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구축 사례	36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 추진 체계
- 3. 주요 연구 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폐지 및 처벌 강화 등 엄벌 조치를 원하는 사회적 여론이 단시간 내 형성되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음에도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소년법 및 촉법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소년비행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주요 근거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엄벌화 정책이 소년 범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었다는 실질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강경래, 2018), 소년법 처벌의 연령 하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2)도 저연령화와 흉포화를 입증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추산의 한계 등을 이유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즉,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과 같은 법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소년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는 것이다.

소년법 개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극적인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소년범죄를 접한 우리 사회는 소년범죄라는 사회적 현상을 피상적으로 다뤄왔고, 소년법들은 보호보다는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어 이들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책은 정책 대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소년 사건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수집된 자료들은 단편적이어서 소년법들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어렵게 하였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과 비율이 어떠한지, 소년과 소년범죄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작업은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이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반 대중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년 사건을 다루는 각 국가기관들의 정보를 한데 모아 소년범죄 및 처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사건이 아닌 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자기 보고식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재판 준비를 위해 작성한 메모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 소년 및 보호소년의 범죄 특성과 처분 현황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분석에 활용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는 특정 지역의 법원 소년부에서 판사가 재판 준비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건 특성, 소년 특성, 환경 특성, 처분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축적된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소년범죄에서 쟁점이 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자료를 설계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년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소년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소년과 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외에도 검찰과 법원의 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법정에서 서기까지 소년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재판 이후 처분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생활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소년보호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시처분 및 보호처분 기관별로 전문가 자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보호소년 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집한 자료의 분석과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선이 필요한 소년보호제도의 세부사항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연구보고서의 구성에 따라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소년과 관련된 현행 국내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보호소년 범죄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소년의 개인 및 환경 특성, 보호처분 이력 및 재범 특성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 범죄의 특징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보호소년이 보호처분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 대상의 초점집단면접 조사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해외의 소년범죄 실태와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결과와 보호소년 범죄 및 보호처분 제도와 연관된 다양한 관계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내용을 토대로 보호소년 범죄 예방 및 소년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2.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는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보호소년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보호를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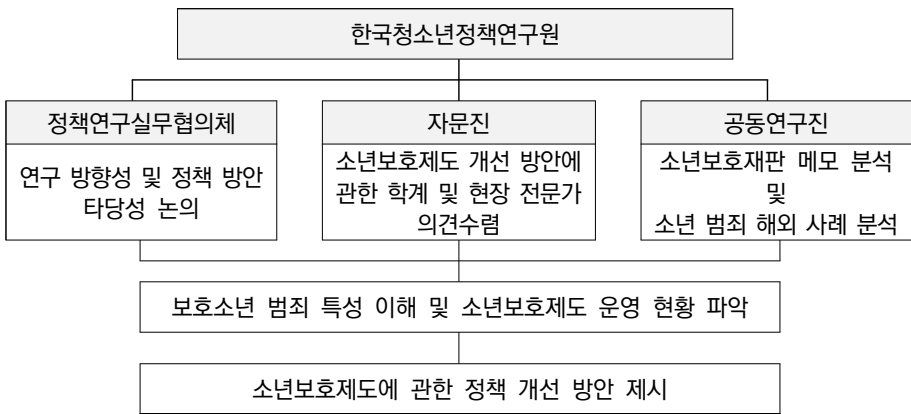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였다.

	내용	방법
문제 도출	- 연구자료 수집 및 문헌 조사 - 연구 주제 관련 쟁점 도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법원) - 전문가 자문회의 - 선행연구 고찰
실행계획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	-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 - IRB 심의 신청 및 승인 - 원자료 코딩	-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소년범죄 자료 조사	- 소년 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 국내 법령 및 제도 조사 - 일본, 독일, 영국 사례 조사	- 문헌조사 - 보호처분 집행기관 현장 방문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법원)
중간보고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	-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 - 비정형자료 → 정형화 작업 - 기초분석 결과 발표	- 전문가 자문회의 - 통계적 자료 분석 - 청소년정책포럼 개최
FGI 조사	- FGI 조사 실시 - IRB 심의 신청 및 승인 - 보호처분 집행기관 담당자 대상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법무부) - FGI 면접 - 면접 자료 분석
정책제언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세부과제 발굴	문헌조사, 재판 메모 분석, FGI 조사, 해외 사례 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귀납적 분석
최종보고		

그림 1-2. 단계별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주요 연구 내용

1) 국내 및 국외의 보호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사건 중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보호사건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년법에 의거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해당하면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과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대상인 우범소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범죄소년을 통칭하여 보호소년이라 하고 보호소년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과 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호소년이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법령 및 규칙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 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처분 전 조사, 임시조치, 교육, 화해권고절차, 불처분 결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심리 개시 후 판결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의 처분별 세부내용과 운영 현황 또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가별 소년범죄 관련 법령, 범죄소년의 정의, 소년보호재판 과정, 보호처분 유형 등 소년보호와 관련된 국외 제도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2)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현황

소년범죄 발생 추이와 특성,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보호소년의 범죄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로, 검찰과 법원에 접수된 청소년 범죄 사건 자료를 조사하여 발생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법원의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촉법소년의 사건 접수 현황과 범죄 유형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보호처분 결정 현황,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 임시조치 및 처분 전 조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재판특성 및 사건특성, 처분결과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보호소년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범죄유형에 따른 처분결과, 사건 발생 시각, 공범 수 등을 파악하여 보호소년의 범죄 특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세 번째,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면접을 시행하여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는 보호소년 범죄의 실태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법원 소년부 및 유관 국가기관에서 바라보는 현행 보호소년 범죄의 특성 및 실태와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3) 소년보호제도의 한계 및 개선점

현행 소년보호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2차 자료 조사를 통해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현황과 보호처분 집행기관에서의 운영 현황, 임시조치 및 처분 전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소년보호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의 법원 소년 부에서 작성된 소년재판 준비 메모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행 소년범죄 관련 논쟁의 중점인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자료를 설계하고 기간 내에 2회 이상 등장하는 보호소년의 재판이력을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를 재판 기준, 사건 기준, 소년 기준으로 각각 재구성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자료로는 분석이 어려운 소년보호재판의 특성, 사건 특성, 보호소년 개인 및 소년을 둘러싼 환경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소년범죄 실태 파악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 보호처분 제도의 영역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현장 전문가 및 보호처분 관련 실무자 대상의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소년사건 처리과정, 보호처분 제도 등에 관한 법적·정책적·사회적 쟁점 등을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개입에 있어 다기관 연계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 소년범죄의 대응에 있어 교육사상을 강조하는 독일의 사례, 가정재판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 일단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4)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보호처분 제도 현황 분석, 소년재판 준비 메모 분석, 소년보호 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조사 분석, 해외사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소년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증 연구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때, 소년 및 소년보호 관계

자가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소년법의 이념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보호처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소년범죄, 소년법, 소년보호제도를 주제로 한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소년범죄 관련 법령 및 규칙, 소년보호제도 현황 및 한계점, 개선방향 모색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국내 소년법과 보호소년 관련 법 및 형법 등 각종 법령과 규칙, 소년범죄 관련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이론서 및 정책 사업 지침 등의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국외 자료의 경우 선정 국가별 소년법 관련 국가 공식 통계 및 법령 자료, 소년법 처우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2) 2차 자료 분석

보호소년의 범죄 실태 및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의 범죄통계 등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에 협조를 구하여 자료를 공유받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료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 자료, 법원행정처 촉법소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이다. 다각적으로 수집한 2차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호소년의 범죄 유형, 처분결과, 보호소년 특성, 보호처분 집행기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다.

3)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된 비정형 자료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정형 자료로 재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5년간 연속적으로 작성된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형화시킨 자료를 재판 단위, 사건 단위, 소년 단위로 재구성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소년의 비행 이력이나 개인 및 환경 정보를 자기보고식으로 수집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부분적으

로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보호소년 범죄의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소년을 둘러싼 환경적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 -1. 소년보호재판 메모 자료 분석 개요

구분	내용
분석 자료	- 지방의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재판 준비를 위해 메모한 자료 - 자료 특성: 재판 개요, 복수재판 정보 - 판결 특성: 보호처분결과, 보호처분 외 결과 - 사건 특성: 사건 발생 시간, 범죄명, 사건 내용, 공범 등 - 보호소년 특성: 연령, 처우 이력, 소년 행동 및 심리 특성, 학업상태 등
재판 기간	2013년 3월 ~ 2018년 2월
분석 대상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였던 소년에 관한 재판
분석 방법	- 소년보호재판 자료 조사표 설계 및 원자료 코딩 - 범죄유형, 개인/가정/학교 및 또래영역 위기요인 정형화 작업 - 재판, 사건, 소년 단위 자료 재설계 및 분석

4)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는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집행 실무자 등 10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처분 전 조사 단계 및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보호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1 -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별 집행 실무자
규모	10개 집단 / 집단별 3~5명
방식	- 반구조화 질문지에 근거한 초점집단면접 - 연구진이 직접 대면 면접 진행 - 사전 설명제공 및 동의를 득한 후 면접 내용 녹음
주요 내용	- 보호소년 특성의 변화 - 보호처분 담당 실무자들의 어려움 - 소년사건 처리 과정 및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안
참여자 모집 방법	- 유관 부처 업무협조 - 보호처분 관련 실무자 협의회를 통한 모집 - 직접 모집 등

5)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방문 실시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소년법·형법·범죄학·사회학 분야 학계 연구자 및 보호직 공무원 등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에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호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1호 처분 위탁 집행기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2호 처분 위탁 집행 기관(광역 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호 처분 위탁 집행 기관(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을 방문하여 보호처분 위탁 집행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1-3.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개요

연번	내용	대상	횟수
1	•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구축 및 설계 자문	• 학계 전문가 • 전 소년부 판사	8회
2	• 촉법소년 연령 등 보호소년 범죄 관련 정책 현안	• 학계 전문가 • 정부 기관 관계자 • 보호직 공무원	4회
3	• 보호처분 위탁 집행기관 현장 방문 및 실태 파악	• 1호, 2호, 6호 위탁 집행 기관 현장 전문가	6회
4	•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보호처분 관련 정책 개선안	• 학계 연구자 • 정부 부처 관계자	3회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원, 법무부, 국회(의원실)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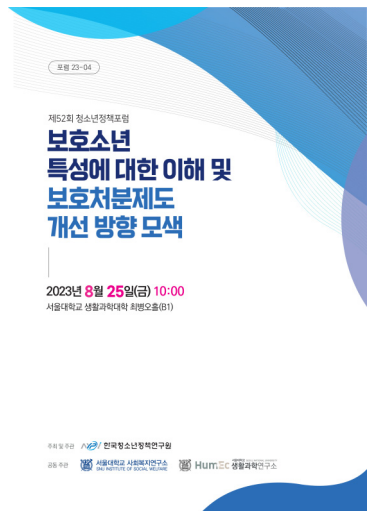
표 1-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개요

연번	내용	대상	시기
1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향 논의	법원	2월
2	지방법원 소년부 운영 현황 및 개선점 논의	법원	7월
3	소년범죄 관련 이슈 논의	법무부	7월
4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법무부	9월
5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관련 논의	국회(의원실)	12월
6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법원	12월

7) 청소년정책포럼 개최

기타 연구방법으로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 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학계 및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포럼 구성은 보호소년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위한 제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 기초강연과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의 기초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주제발표, 소년보호처분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포럼에는 현장 관계자, 학계 연구자, 보호직 공무원,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소년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표 | -5. 청소년정책포럼 개요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표지)	프로그램 구성
	

○ — 제2장 논의의 배경

- 1. 보호소년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 2. 보호소년 범죄 현황 및 쟁점
- 3. 소년보호처분 제도 현황 및 쟁점
- 4. 소결 및 시사점

1. 보호소년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1) 소년보호사건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제9조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 별도의 소년법을 두어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법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적용된다. 소년사건의 구분이 우선적으로 연령에 따라 나뉘는 것은 형법이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근거한다(배상균, 김민규, 김성규, 이유경, 2022).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은 통상적으로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며, 촉법소년이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3세 소년을 말한다. 만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분류한다. 범죄소년은 연령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사건¹⁾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²⁾

1)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거나 형사법원에 기소가 이루어진다.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법원에서의 절차는 성인과 같으나 완형조치 등 일련의 특칙이 적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소년법」 제3장 형사사건을 참고할 것.

2) 경찰이 소년범죄의 수사종결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되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며, 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소년보호재판

(1) 소년부 송치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 또는 통고로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루지며, 소년부 단독판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와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주체는 경찰서장, 검사, 형사법원으로 나뉜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을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반면에 범죄소년에 대해서 경찰서장은 우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 검사는 범죄소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검사는 법원 소년부 송치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통고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 등이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 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지)소의 장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사건을 접수 시키는 통고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되고 소년보호재판이 개시되어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2) 처분 전 단계

① 조사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뉜다. 조사는 소년의 심신상태,品行,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보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일종의 생활환경조사로 통상 처분 전 조사라고 불린다. 소년의 연령이 19세에 가깝거나 형사처분이 적당하여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사건, 비교적 사건이 간단하며 송부된 기록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기도 한다. 반면에 통고 사건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접수되어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사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처분 전 조사는 소년부 판사의 지시를 받아 법원 조사관이 수행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 또는 참고인 심문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의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의 조사를 법원 조사관에게 명령할 것인지, 법원 밖의 조사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위탁조사의 경우, 법원의 기록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법원이 위탁결정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위탁하며, 조사기관은 조사 결과와 조사관 의견을 법원에 회보한다. 법원에 회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비행조사(동기 및 사실, 피해회복, 비행전력 등), 생활환경조사(가정환경,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행동관찰 결과, 심리검사 결과,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이 포함된다.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가 있다. 조사관 의견은 비행원인 진단과 재비행 예측을 근거로 처분 결정 및 지도 시 필요사항을 기재하며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처분 의견을 작성한다. 처분 전 조사는 수행 기관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로 불린다. 이전에 보호관찰 처분이력이 있거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법원에 송치되었을 경우에 보호관찰소에 결정 전 조사를 의뢰하면서 소년의 보호관찰집행과 관련된 기록을 첨부하도록 요청하면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법원행정처, 2014).

②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조사 및 심리를 위해 필요할 때는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위탁하여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고, 가정에 머물면서 필요시에 출석하여 법원이나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다(표 II-1 참조). 임시조치를 통한 소년의 감호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 또는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 그 밖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각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1개 소년분류심사원, 6개 대행소년원). 실무상으로는 재판에 참석한 소년에 대한 처분 전 조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고 임시조치 결정을 하여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에 소년의 신병을 위탁하는 경우를 임시위탁(가위탁)이라고 부른다.

표 II-1. 조사기관별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 조사 특징

구분	조사명	조사위탁	신병위탁
법원 조사관	조사관 조사	X (법원 조사)	X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O	O (임시위탁)
보호관찰소	결정 전 조사	O	X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O	X

소년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심리를 개시할 수 없을 경우에도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을 경우에 소년부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동행영장은 법원조사관이 집행하는데 소년부 판사는 상황에 따라서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에게 집행하게 할 수도 있다. 동행영장을 집행한 후에는 바로 소년의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집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

교육도 보호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분 전 조치의 일종으로 통상 처분 전 교육으로 불린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전 조사는 범죄 여부를 밝히는 수사와 달리 보호자의 보호력을 포함하여 소년의 재비행 가능성과 개선 가능성을 살펴본다. 처분 전 교육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호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교육은 주로 조사 전후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는 상대적으로 밀도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총 3일에 걸쳐 상담 조사와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소년에 대해서 비행예방교육과 비행진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 개념상으로는 처분 전까지 보호자에게 임시위탁을 하는 결정을 하고 지정기관에서 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교육 참석은 보호능력과 의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소년분류심사원도 분류심사과뿐 아니라 교무과가 별도로 있어서 1개월의 위탁 기간 동안 소년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교육

및 상담이 함께 이루어진다. 위탁 후 처음 1주간은 신입교육이 실시되고, 나머지 3주간은 비행예방교육 및 인성교육을 받게 된다. 법원에 따라서는 소년의 성행 개선과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해 가족캠프를 처분 전 교육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④ 화해권고절차

처분 전에 보호소년은 화해권고절차에 회부될 수도 있다. 해당 절차는 소년부 판사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화해권고위원이 진행할 수도 있다. 화해권고위원은 갈등 해결 분야나 소년보호사건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손해배상 측면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며, 가해자인 소년 또한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소년과 피해자가 주거지, 학교 등이 같아 지속적 관계가 있는 경우,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 양측 보호자 간의 갈등으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다(신동주, 2019). 화해권고는 모든 보호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상당수의 전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신동주, 2019).

⑤ 심리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를 포함한 조사 단계의 결과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도 소년을 불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말할 수 있다. 심리 개시 결정을 할 때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사건 본인인 소년과 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이를 알린다.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은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가능한 병합하여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리는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여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며, 조사관과 보호자 및 보조인 또한 출석이 가능하다. 보조인은 국선과 사선으로 나뉘는데 국선보조인의 자격은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이나 혹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판단하여 검사에게 송치(송검),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중 하나를 하게 된다. 심리를 개시하기로 한 이후라도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소년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에게 송치하게 된다. 조사 또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는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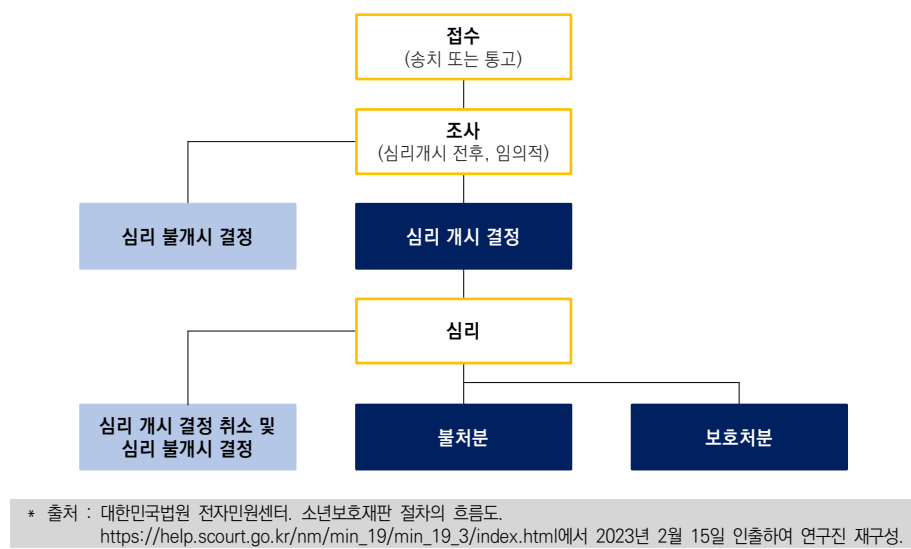


그림 II-1.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3)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소년이 처한 환경과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데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년의 보호처분은 해당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부 판사가

조사 및 심리 결과에 근거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내리게 되면 10가지 보호처분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보호처분을 병합할 수도 있다(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 다만 7, 9, 10호 처분에는 다른 보호처분이 병합될 수 없다. 보호처분의 10가지 종류를 요약하면 표 II-2와 같다. 1호부터 5호 처분까지를 사회 내 처우, 6호를 중간처우, 7호부터 10호까지를 시설 내 처우로 부르기도 한다.

표 II-2. 보호처분 요약

구분	보호처분 종류	기간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시설 ¹⁾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²⁾ 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주: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1) 1호 처분: 보호자 위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10세 이상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며 6개월까지 위탁이 가능하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원래의 환경으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호자에게 감호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보호자에게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부가처분으로 내릴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자의 감호가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소년의 비행성이 교정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연령 소년이어서 시설 수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주로 내리는 처분이다(이승현, 2017).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보호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위탁보호위원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말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을 말한다. 「소년심판규칙」 제33조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법원장이 위탁보호위원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보호위원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뉜다.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할 경우에 법원은 소년을 가정과의 단절 없이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은 월 2회 이상 보호소년을 면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감호일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법원행정처, 2014).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라 법원은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급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2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증액을 할 수 있고,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는 소년 1인당 월 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감호에 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신병인수 위탁보호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초기모형은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2010년에 부산·경남 지역에서 대안가정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시작된 ‘사법형 그룹홈’이다. 민간 독지가들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청소년복지시설로 지정되었다(안윤숙, 천종호, 2016). 여성가족부에서 정의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① 법원 소년부 판사가 ②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③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④ 감호위탁 기간 동안(6개월, 연장가능) ⑤ 보호(5~10명)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⑥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표 II-3에 요약하였으며, 2023년 9월 기준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전국 17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표 II-4에 제시하였다.

표 II-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요약

구분	내용
설비기준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 이상이고 최소 5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 등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자에 해당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 • 그 외 시설 일반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마목 참조
종사자 및 운영비용	• 배치 기준 - 시설장: 시설당 1명(지급 상한 연령 65세) - 보호·상담원: 시설당 2명(지급 상한 연령 60세) * 종사자 직종별 지원 기준에 없는 직책 또는 인원을 임명할 시에는 지자체장이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 자부담으로 운영 • 근무형태 및 시간 -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구조체계 구축 - 보호소년과 24시간 생활해야 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전문성 강화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최 집합교육 최소 1년 1회 이상 참석 필요(원격연수는 최소 매년 5개 과정 이상 이수 권고) -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공유 지도 - 기타 청소년 인권 보호 등 필요 교육 수시 실시 • 인건비: 최저시급 기준을 준수하여 각 지자체별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법원지원금 소년 1인당 60만원 이내(법원마다 상이) • 인건비 및 운영비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출처 : 여성가족부(2023)의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II)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표 II-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2023년 9월 기준)

시도	시군구	대상	시설명
부산	금정구	여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북구	여	예람청소년회복지원시설
	금정구	남	푸른열매청소년회복지원시설
광주	북구	남	광주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대전	서구	남	민족사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구	여	사계절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울산	중구	남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경기	의정부시	여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수원시	여	세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수원시	남	세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경남	창원시	남	살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창원시	남	소망청소년회복지원시설
	김해시	남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
	거창군	여	연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전북	익산시	여	바지울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제주	제주시	남	이시돌숨비소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서귀포시	여	빌라수선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 및 실적(2022~2023년).

(2) 2호 처분: 수강명령

2호 처분인 수강명령은 소년을 구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처분으로 12세 이상에게 내릴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1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고 수강분야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다.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에 병합되는 부가처분이었던 수강명령은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보호처분으로 단독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처분 대상 또한 종전 16세 이상의 소년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되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는 수강명령에 적합한 대상자의 유형으로 ①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한 경우,

- 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 ③ 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법원의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법무부 소관 기관인 보호관찰소인데 보호관찰관이 필요시에는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통보한 위탁시설 및 장소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법원 역시 보호관찰소를 포함하여 수강명령 집행을 위탁 지정한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할 때에는 소년이 수강할 시설 및 장소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수강명령 집행기관 지정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수강명령 집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기관은 위탁소년에 대한 위탁 결정문을 받아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10일 이내에 집행상황 보고서를 법원에 회보해야 한다. 필요시에 위탁 기관을 방문하여 집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수강명령 집행을 위해 소년을 위탁받는 기관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대안교육 기관 및 사회봉사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 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보호소년 1인당 1시간에 1만 원 한도 내에서 법원에 따라 지급 비용이 상이하다. 수강명령 집행기관은 위탁소년 및 보호자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수강명령 집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등 수강명령 집행기관에서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년심리 치료, 준법운전 강의, 성폭력 치료, 약물 치료로 수강분야를 정하고 있다. 수강명령 등 집행에 관한 지침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³⁾에 따르면 소년수강명령은 범죄의 종류, 성별, 나이 등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집행하고, 10~15명으로 집단을 구성하되 필요시 개별 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1회 당 4~8시간씩 주 1~2회 진행하여 4주 내지 10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호관찰소의 인력 운용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성인과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인력이 각각 별도로 있기도 하고 보호관찰관 1인이 성인과 소년 수업을 모두 담당하기도 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자체 집행할 수도 있고 외부 협력기관에 의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수강명령. <https://www.moj.go.kr/cppb/724/subview.do>에서 2023년 10월 13일 인출.

보호관찰소마다 집행하는 수강명령의 내용과 구성 방법, 운영 기간, 교수자 수급 및 지원 상황 등이 다르며(조윤오, 2012), 법원에서 직접 지정하여 수강명령을 위탁한 기관의 상황 또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보호관찰소 외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수강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하고 있다.⁴⁾

(3)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3호 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소년을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도 보람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는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고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며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대상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다.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의 학업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집행 또는 주말집행 등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도 한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는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소년 대상자의 유형을 ①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②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③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 ④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⑤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⑥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본다.

사회봉사명령 역시 수강명령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소가 대표적인 집행기관이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통보한 위탁시설 및 장소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이 직접 사회봉사 할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집행분야는 복지시설 지원, 농어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지원,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이 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는 사회봉사명령 작업 내용의 일반적 유형을 ① 자연보호활동(공원·하천 등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②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양로원·고아원·장애인 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의 복지관련 사업보조 등), ③ 공공시설봉사활동(고속도로·국도변 쓰레기·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 보수, 산불·풍수해 등 재해복구 활동

4)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보호처분.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에서 2023년 10월 13일 인출.

등), ④ 대민지원봉사활동(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 문화재보수·제설·배수로 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저소득·서민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지원활동 등), ⑤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2013년 5월부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 직접 법무부(또는 보호관찰소)에 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보호관찰소는 봉사여건, 지역사회 기여도, 수혜자 유형, 사회봉사 만족도, 집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적절성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집행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기본적으로 무보수 근로를 통한 성행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어서 법적 근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기에 적절한 영역과 내용 및 협력 기관을 발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4) 4, 5호 처분: 보호관찰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로 10세 이상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이며 1년 단기 보호관찰(4호)과 2년 장기 보호관찰(5호)로 나뉜다. 보호관찰은 소년을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는 사회 내 처분으로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처분이다.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때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되며, 보호관찰대상 소년은 보호관찰에 필요한 사항을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소년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 소년 및 보호자와 초기 면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분류처우계획 수립과 보호관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처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와 검사를 할 권한을 갖는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와 분류기준에 따라 소년의 초기 분류 등급을 정한다(윤웅장, 2017). 분류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규정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2022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에 따르면 현재 소년보호관찰의 분류등급은 일반, 주요, 집중의 3등급으로 나뉘며(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2: 106), 분류등급에 따라 면담 및 현장방문의 최소 횟수가 정해져 있다(윤웅장, 2017).

보호관찰의 내용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으로 지도·감독, 원호, 응급구호로

나뉘지만 실제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은 지도활동이 대부분이고, 지도활동의 대부분은 면담이 차지하고 있다(법원행정처, 2014). 보호관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도·감독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보호관찰 대상 소년이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원호는 보호소년의 개선과 자립을 위해 숙소 및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의 개선,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며, 응급구호란 보호소년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구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모두에게 부과되는 일반 준수사항으로는 주거지에 상주할 의무,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할 의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주거지 이전 또는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 시에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특별 준수사항은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의무로 실무에서 소년에게 많이 부과되는 특별 준수사항으로는 야간 외출제한, 무면허 운전 금지, 음주 및 흡연 금지, 검정고시 준비 및 직업훈련 이수, 학교수업에 성실할 것,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상담 및 교육 등이 있다. 「소년법」 제32조의2에서도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대안 교육, 보호관찰소 자체 또는 협력기관을 통한 상담·교육, 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단,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에게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판사가 보호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명령이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내릴 때에 어느 기관에서 몇 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곳에서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원행정처, 2014).

소년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보호관찰관은 경고장을 통해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소년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한 경우나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판사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을 구인할 수도 있다. 구인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구인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인장 없이 긴급구인을 할 수도 있는데 긴급구인 후 12시간 이내에 긴급구인승인신청을

받지 못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소년을 구인하고 조사하여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 후 48시간 이내에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유치 후 24시간 이내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치 기한은 20일이며,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5)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10세 이상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며 6개월까지 위탁이 가능하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6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인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 구분되며, 비법무부 시설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시설 내 처우인 7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도 구별된다.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6호 처분은 중간처우⁵⁾라고도 불린다(이승현, 박선영, 2017). 소년법이나 소년심판규칙에서는 6호 처분의 목적과 처우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원행정처(2014) 법원실무제요 소년편은 ① 비행 정도가 낮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력이 없어서 비행 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②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4, 5호 처분 전력이 있으며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③ 9, 10호 처분 전력은 없으나 비행 정도가 높아 국가기관의 엄격한 제도적 선도보다는 온정적인 보호적 선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6호 처분이 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하는 시설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보호자 특별교육에 적당한 아동복지시설 및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을 법원이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처분 집행을 위탁받는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 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며,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는 기관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판사가 소년에 대한 6호 처분을 결정하였다면 소년을 위탁할 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위탁이 가능한 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고, 위탁이 가능할 때에는 시설 관계자가 위탁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해 심리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심리가 끝나면 바로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탁받는 기관은 집행상황보고서

5) 1호 처분 중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위탁, 7호 처분 중 병원·요양소 위탁도 6호 처분과 함께 중간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승현, 박선영, 2017).

를 수시로 작성하여 매월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라 보호소년 1인당 월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탁받는 기관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6호 처분 위탁 시설 중 하나이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6호 처분 위탁 시설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3항의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가목에서 정의하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6호 처분을 받아 입소한 소년에게 법원이 지급하는 비용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로서 소년은 각종 비용의 수급권자가 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표 II-5에 요약하였다.

표 II-5.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요약

구분	내용
설비기준	• 66㎡ 이상의 강당 또는 오락실 설치 • 도서실 설치 • 16.5㎡ 이상의 심리검사·치료실 설치
종사자 배치 기준	• 시설장: 시설당 1명 • 사무국장: 30명 이상 시설당 1명 • 임상심리상담원: 시설당 1명 • 생활복지사: 30명 이상 1명 • 간호사(간호조무사): 30명 이상 1명 • 직업훈련교사: 필요 인원 • 조리원: 10명 이상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 안전관리원: 30명 이상 2명(40명 이상 4명) • 영양사: 30명 이상 1명 • 사무원: 10명 이상 1명 • 자립지원전담요원: 10명 이상 1명 * 종사자 직종별 지원 기준에 없는 직책을 임명할 시에는 지자체장이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 자부담으로 운영
운영비 지원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 30인 미만: 1인당 월 303,266원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1인당 월 272,937원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1인당 월 261,324원

구분	내용
	- 300인 이상: 1인당 월 261,302원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 기본운영비: 시설당 653,000원(지자체마다 상이) - 아동 개인별 지원액: 월 225,500원 • 보호치료시설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추가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별도 추가 지원 가능) • 시설별 보호아동 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 - 직접경비: 영아분류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 교통비, 교복비 등 - 공통경비: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관입비, 환경부담금,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비 등 - 간접경비: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 그 외 수입 - 법원지원금 소년 1인당 30만 원 이내(법원마다 상이) - 각종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등

* 출처 : 보건복지부(2023a)의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과 법원행정처(2014)의 법원실무제요: 소년을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2개이며(보건복지부, 2023c), 그 중 6호 처분 위탁 시설로 가목에 해당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8개이다. 6호 처분 위탁 시설로 운영되는 전국 8개 아동보호치료시설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처분 위탁 시설) 현황(2022.12.31. 기준)

시도	시군구	대상	시설명
서울	영등포구	남	돈보스코오라토리오
	영등포구	여	마자펠로센터
	영등포구	남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대구	수성구	여	늘사랑청소년센터
대전	동구	남	효광원
경기	양주시	여	나사로청소년의집
충북	제천시	남	로댐청소년학교
전북	고창군	남, 여	희망샘학교

* 출처: 보건복지부(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6)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7호 처분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 등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10세 이상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며 6개월까지 위탁이 가능하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비행의 내용보다는 보호력과 소년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내려지는 7호 처분은 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처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법원행정처, 2014).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위탁하는 시설의 장은 소년을 수용한 경우에 소년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상조사서를 보내 소년에 대한 환경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 대전소년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은 의료재활소년원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소년원은 대전소년원(대산학교) 1개소가 유일하다.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감호기간 동안 출석일수가 인정되는 소년을 위탁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소년분류심사 대행소년원으로서 처분 전 입시위탁된 소년에 대한 교육, 생활지도 및 분류심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대전소년원에서의 의료재활은 7호 처분을 받은 “의료·재활 보호소년”뿐 아니라, 9호나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집중의료 처우가 필요하여 일반소년원에서 이송된 “의료·재활 처우 소년”에게도 3개월 이내로 제공된다.⁶⁾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원 입소 시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진단 뿐 아니라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제22조에 따라 임상병리 검사와 특수인성 검사를 포함한 심리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 현황(표 II-7)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간호사가 6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일반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상근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부재하다(배상균, 임정재, 김성규, 김혜경, 박찬걸, 2022).

6) 의료·재활처우 소년은 7호 처분자에 대한 의료재활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며, 치료 정도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처우심사를 거쳐 의료·재활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본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표 II-7. 대전소년원 의료진 현황(2021년 기준)

역할	인원	업무
정신과 전문의(상근)	0	-
정신과 전문의(시간제 일반임기제)	3	진료, 상담 및 약물치료
정신건강 간호사	6	증상관리 및 상담
일반의	1	건강관리
간호사	3	건강관리
임상심리사	2	심리검사 및 상담
작업치료사	1	작업치료

* 출처 : 대전소년원 내부자료. 배상균 외(2022b).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p. 42에서 인용하여 연구진 재구성

의료재활소년원 역시 소년원으로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성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에 공개된 가장 최신의 교육계획인 「2021학년도 소년보호 기관 교육계획」에 따르면, 의료재활 교육은 의료 및 보건, 심리치료, 특성화 교육, 체육 및 재량활동으로 나뉘며, 원적 학교가 있는 소년은 처분 기간 동안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법무부, 2020). 교육 내용 및 시간 배당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의료재활 교육 내용 및 시간

영역	교과	비고
의료 및 보건	• 회진·투약 등 치료 • 보건·위생 교육 • 감염병 예방 교육	정신과 의사 개인면담 월 1~2회 ※향정신성의약품 등 정신과약 처방
심리치료 등	• 음악치료, 미술치료 • 작업치료, 활동치료 등	
특성화 교육	• 수리능력향상 • 언어능력향상 • 컴퓨터 • 배려, 법교육 등	검정고시 특별반 별도 운영
체육, 재량활동	• 체육활동 • 학급활동, 체조	

* 출처 : 법무부(2020). 2021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입원 기간 동안 교육과정은 ① 준비교육과정, ② 집중치료과정, ③ 치료 후 교육과정, ④ 사회복귀과정으로 나뉘는데 일반소년원과 달리 의료재활소년원에서의 사회복귀과정은 별도의 사회복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진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소년원 출원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년원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지정법무병원에서의 외래진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소년원은 장애인단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등록지원을 받지 못한 위탁 보호소년들의 장애등록을 지원하여 안정된 사회정착 및 재비행 예방을 돕고 있기도 하다.

○ 병원, 요양소

7호 처분 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 뿐 아니라 병원 및 요양소에도 위탁이 가능하다. 소년부 판사는 처분 전에 해당 기관이 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지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처분 시에는 법원 직원이 직접 소년을 위탁 기관에 호송해야 한다. 의료재활소년원이 아닌 곳에 위탁을 할 때에는 소년의 보호자가 소년의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내릴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위탁 처분기관으로 지정할 병원 또는 요양소에 보호자가 상당 기간의 감호에 관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증거서류 또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에 보호처분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라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①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인 사람,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④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⑤ 그 밖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원이 비용부담 결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

표 II-9. 7호 처분 수탁기관 현황(2021.2.1. 기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 제외)

법원	시설명
서울가정법원	백상창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동산의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병원

법원	시설명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 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병원)
	사회복지법인 청소년복지재단 마리스타의 집
	성모샘 병원
	성모마음정신과 의원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
수원가정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원대학교 병원 어린이 병원
	국립춘천병원
대전가정법원	국립공주병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의료원
대구가정법원	대동병원
	대구의료원
부산가정법원	부산대학교 병원
울산가정법원	-
창원지방법원	한사랑병원
광주가정법원	국립나주 병원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와 배상균 외(2022b: 39-40)에서 인용하여 연구진 재구성

(7) 8, 9,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8호, 9호, 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8호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 9호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 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말한다. 소년원은 전국에 총 10개가 있으나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을 제공하는 곳으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바로 송치되는 곳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전국 9개 소년원 중에서 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수용하는 소년원은 3개(청주, 전주, 제주), 9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수용하는 소년원은 8개(부산 제외), 10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

년을 수용하는 소년원은 9개 모두이다. 대전소년원을 제외하고는 소년원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교과교육과정을 모두 갖추고 있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갖추고 있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소년원학교를 소년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훈령 제1043호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전국 소년원 현황을 요약하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소년원 현황 요약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과정
수도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보호소년(男) (9·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한식조리·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보호소년(女) (9·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피부미용·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중부권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보호소년(男) (7·9·10호) 위탁소년	- 의료·재활교육(7·9·10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대행소년원)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女) (8·9·10호)	8호 처분자 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헤어디자인, 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호남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보호소년(男) (8·9·10호)	8호 처분자 교육(男)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보호소년(男) (9·10호)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에너지설비·소형건설 기계조종사면허)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대행소년원)
영남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男) (9·10호) 위탁소년	- 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커피바리스타·케이크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대행소년원)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보호소년(男) (10호)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응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대행소년원)
강원권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男) (9·10호)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그래픽디자인·디저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대행소년원)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과정
제주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男) (8·9·10호)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골프매니지먼트) • 8호 처분자(제주지역 男)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비행예방교육(대안교육), 청소년심리상담, 상담조사 • 분류심사(대행소년원)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생 교육 - 기관현황. <https://www.cppb.go.kr/cppb/577/subview.do>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 신입자 교육

보호소년이 입원하면 소년원은 소년을 신입반에 배치하여 적응을 돕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조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대한 심층진단이 이루어진다. 소년은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신입자 교육을 받게 된다. 신입자 교육과정은 총 30시간 이상으로 생활안내(5시간 이상),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10시간 이상), 체육활동(5시간 이상),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5시간 이상), 분류조사(5시간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법무부, 2020). 소년이 신입반에서 신입자 교육을 받는 10일 이내에 처우심사위원회에서는 분류처우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생활반 및 학과반 지정 등을 하게 된다. 본반 배치 이후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징계를 받아 이송된 소년, 소년원에 3회 이상 입원한 소년, 정신질환자 및 기타 특별 관리 및 처우가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처우계획 수립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 기본교육

본반에 배치된 소년에 대한 소년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① 초·중등교육,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인성교육의 3가지로 나뉜다. 원적 학교가 있어 재학 중이었던 소년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과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에 우선 위탁한다. 학업을 중단한 소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 우선 위탁하여 출원 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초·중등교육 과정은 9,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에서 운영하며, 보통교과, 특성화교과(인성교과, 컴퓨터교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중등교육 처우를 받는 학생은 학업을 중단한 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 편입이 불가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기능대회 참석 및 직업윤리 교육을 통해 출원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학업을 중단한 15세 이상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단, 9호 처분 소년은 재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성취감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법무부, 2020).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운영하는 소년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안양, 춘천, 제주소년원이다. 인성교육은 비행성 교정에 목적을 두는 교육과정으로 모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집단 상담, 집단지도, 기타활동으로 나뉜다. 집단상담은 비행유형별 과목(강·절도 예방, (학교) 폭력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성비행예방교육 등)과 일반과목(자기성장, 가족관계회복, 대인 관계능력 향상, 진로교육 등)이 있으며, 집단지도는 그 외에 법교육, 생활예절, 교통안전, 독서지도, 음악감상, 인문학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활동은 예·체능교육, 봉사활동, 체험학습, 종교활동, 특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중등교육 과정에 있는 소년은 특성화 교과목의 일부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이론 과목 또는 자율편성 과목의 일부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직업훈련을 하는 9호 처분 소년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직업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시간은 검정고시, 컴퓨터 등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 의료·재활교육

7호 처분자인 의료·재활보호소년과 일반소년원에서 이송된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의료·재활교육을 담당하는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전국 소년원은 법무부훈령 제1274호 「보호 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에 따라 심신건강증진소년의 의료·재활교육을 위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담임으로 하는 심신건강회복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유해화학 등 약물 남용의 경험이 있는 소년, ② 정신병력 전력이 있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소년, ③ 이상성격 또는 그 밖에 특이한 행동을 보여 교우관계 형성 및 기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년을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신건강증진소년으로 지정하게 된다. 심신건강증진소년으로 지정되면 다른 보호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프로그램 시행 시에만 별도로 소집되어 심신건강회복 프로그램,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인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성행이 개선되어 특별지도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신건강증진소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사회복귀교육

출원을 앞둔 보호소년은 출원예정일 전에 14일 이내로 취업, 진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주는 사회복귀 교육을 받게 된다. 총 교육과정은 15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중에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은 7시간 이상, 현장학습 및 봉사활동 7시간 이상, 출원준비는 1시간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 교육과정 이외에 그 밖의 시간은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귀교육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8호 처분 및 8호 처분과의 병합처분을 받은 소년을 법적으로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라고 부른다. 4주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하고는 수용 경험이 없는 소년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분으로 쇼크구금이라고도 불린다. 8호 처분을 받은 남자 소년은 전주소년원, 여자 소년은 청주소년원으로 보내지는데, 제주지방 소년부로부터 8호 처분을 받은 남자 소년은 예외적으로 제주소년원으로 보내진다. 8호 처분은 수용시설 처분으로서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바로 입원조치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소년원 입원일을 지정하면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소년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입원일은 법무부훈령 제1401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하고 있다.

8호 처분자는 9, 10호 처분자와 생활은 같이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특수단기 인성강화교육을 받게 된다. 9,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년원 내에서 신입자 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을 받게 되지만 수용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각 교육 역시 기간이 축소된 형태로 운영된다. 신입자 교육은 최소 7시간, 기본교육 최소 120시간, 사회복귀교육은 최소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법무부, 2020). 보통 8호 처분은 5호 처분과 병합되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귀교육 중 2시간 이상의 보호관찰 교육을 받게 되고 소년원장은 퇴원 3일 전까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소년의 퇴원예정을 통보해야 한다. 8호 처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수용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정은 9, 10호 처분 소년 대상 교육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 등 8호 처분자를 수용하여 교육 및 지도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년분류심

사원에서의 임시위탁기간 역시 8호 처분과 같은 4주간의 수용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8호 처분보다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일종의 쇼크구금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이승현, 2015).

○ 임시퇴원

9, 10호 처분을 받아 수용 중인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임시퇴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 소속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임시퇴원이 가능하다. 교정성적, 교육성과, 생활성적, 재원 중 징계 전력,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출원 후 진로계획, 재비행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임시퇴원 신청과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9호 처분을 받아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5개월 전후, 10호 처분을 받아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12개월 혹은 15개월 전후로 임시퇴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9호 처분의 경우 6호 처분과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가 많으며 처분 기간 또한 6개월로 동일한데(법원행정처, 2014), 6호 처분과 달리 9호 처분은 임시퇴원이 가능하므로 실제 위탁기간은 6호 처분보다 짧은 것이 대부분이다.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소년은 보통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 중에서도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된다(윤웅장, 2017). 4, 5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동행영장 발부와 구인 및 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임시퇴원 이후에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소년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우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직권으로 임시퇴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임시퇴원 전의 수용기간과 합산하여 9호 처분은 6개월,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규 입원자와 마찬가지로 신입자 교육부터 처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잔여 수용기간이 40일 미만인 경우에는 처우·징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과정에 편성될 수 있다.

(8)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감독

보호처분은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변경의 여지가 없는 일반 형사처벌과는 달리 보호처분 이후에도 처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법원과 소년부 판사의 역할이

계속된다(심재광, 2019: 215). 법원의 보호처분 명령을 집행하는 각 기관에서는 보호소년이 처분을 성실하게 받지 않고 해당 보호소년에게 내려진 처분으로는 비행성을 교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법원에 접수될 때에는 사건번호가 ‘푸’로 구분되는데, 보호처분 변경 건은 소년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 ‘푸초’로 구분된다. 1호, 6호, 7호 처분은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도 있다. 법무부 소속기관에 위탁하는 처분이 아니라 위탁보호위원(1호)이나 아동복지시설 등(6호) 또는 치료시설(병원 또는 요양소)에 소년을 위탁하는 경우는 소년의 비행에 관한 소년보호사건 외에도 집행감독만을 위한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을 따로 만들고 사건번호 ‘푸집’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호소년이 보호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위탁기관의 집행보고서 등으로 파악되면 판사는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보호처분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 보호처분변경이나 새로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에게 새로운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보호소년 범죄 현황 및 쟁점

1) 소년범죄 발생 추이 및 특성

소년범죄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과 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의 자료를 가공하여 제시하였다. 소년범의 연령대별 인원과 성인 범죄 대비 소년범죄 비중을 나타내는 소년비는 표 II-11에 제시하였다.

전체 소년범죄 인원수는 2014년 84,793명에서 2021년 66,51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소년범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대체로 16~17세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14~15세, 18세, 그리고 14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14세 미만의 인원수는 2016년 7,030명에서 2021년 12,50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연령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소년비는 2014년에 4.6%였다가 2015년에 4.1%로 감소하고, 2017년까지 다시 4.4%로 증가하며 이후 2019년까지 4.4%를 유지하였다. 소년비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7%, 4.9%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4%대를 유지하였다.

표 II-11. 소년범죄 인원 및 소년비 추이(2014~2021)

(단위 : 명(%))

구분	소년범죄					성인범죄	소년비
	소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검거인원	
2014	84,793 (100)	7,236 (8.5)	23,753 (28.0)	34,457 (40.6)	19,347 (22.8)	1,773,556	4.6
2015	78,016 (100)	7,045 (9.0)	14,394 (18.5)	35,855 (46.0)	20,722 (26.6)	1,817,924	4.1
2016	82,946 (100)	7,030 (8.5)	21,319 (25.7)	35,196 (42.4)	19,401 (23.4)	1,897,655	4.2
2017	80,563 (100)	7,897 (9.8)	20,079 (24.9)	33,749 (41.9)	18,838 (23.4)	1,745,478	4.4
2018	75,193 (100)	9,051 (12.1)	19,916 (26.5)	28,819 (38.3)	17,407 (23.1)	1,637,944	4.4
2019	76,269 (100)	10,022 (13.1)	20,783 (27.2)	27,886 (36.6)	17,578 (23.0)	1,657,252	4.4
2020	75,064 (100)	10,584 (14.1)	21,080 (28.1)	27,303 (36.4)	16,097 (21.4)	1,532,005	4.7
2021	66,519 (100)	12,502 (18.8)	18,392 (27.6)	22,805 (34.3)	12,820 (19.3)	1,280,427	4.9

* 출처: 1) 대검찰청(2015~2022). 범죄분석.

2) 대한민국 법원. 사법통계 법원통계월보 소년보호(2014~2021).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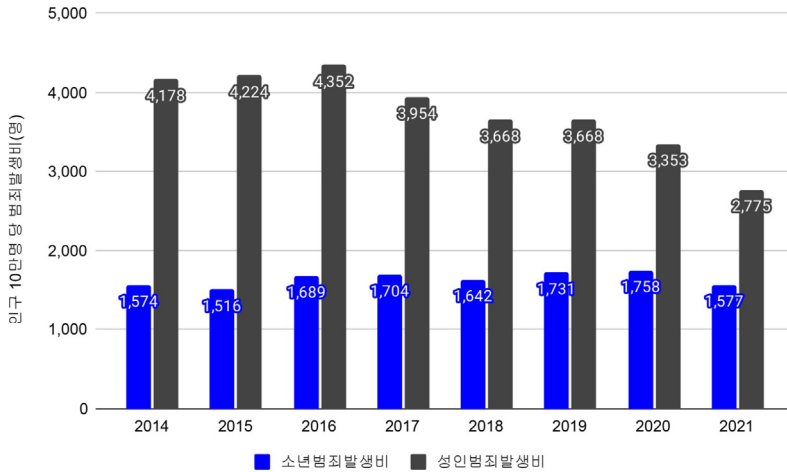
* 주: 1) 범죄분석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집계되었지만 일부 경찰통계에서 누락되어 수집된 통계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해당 인원은 보고하지 않음(2014년 37명, 2015년 64명, 2016년 84명, 2017년 93명에 해당함).

2)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월보 소년보호 접수사건 중 촉법소년의 접수 건수를 14세 미만 소년범죄 인원으로 활용함.

3) 소년비는 소년범/(소년범 + 성인범) × 100.

4) 전체 범죄자 중 연령미상인 인원수는 식에서 제외함.

그림 II-2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소년범죄와 성인범죄 발생비를 보여준다. 소년범죄발생비는 인구 10만 명당 소년범의 비율을 의미하며, 2014년 1,574명부터 2021년 1,577명까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폭이 관찰되진 않았다. 다만, 성인범죄발생비는 2014년 4,178명에서 2016년 4,352명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2021년 2,77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출처: 1) 대검찰청(2015~2022). 범죄분석.
 2) 대한민국 법원. 사법통계 법원통계월보 소년보호(2014~2021).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5~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l2에서 2023년 9월 19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 주: 1)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참고하여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인구와 만 19세 이상 인구수를 추출함.
 2) 소년범죄발생비는 소년범죄발생건수/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인구×100,000으로 계산함.
 3) 성인범죄발생비는 성인범죄발생건수/만 19세 이상 인구×100,000으로 계산함.

그림 II-2. 인구 10만 명당 소년범과 성인범 수 비교(2014~2021)

2) 소년보호사건 발생 추이 및 특성

(1)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

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 검사로부터 송치, 형사법원으로부터 송치, 타소년부에서의 이송,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 등의 경로를 통해 접수된다. 소년보호

사건의 접수 동향은 표 II-12에 제시하였다. 소년보호사건은 2013년에 총 43,035명의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2016년 33,738명까지 감소, 이후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2021년에는 35,438건이 접수되었다. 접수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검사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 소년부에서 이송 및 법원 송치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송치는 2013년 전체 접수 사건의 68%(29,284명)를 차지하였고, 2016년 72.1%(24,31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57.2%(20,260명)로 나타났다. 경찰서장 송치는 2013년 22.1%(9,500명)에 불과하였지만 2021년에는 35.8%(12,680명)로 증가하였다.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는 2013년 0.4%(188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1.3%(458명)가 통고로 접수되었다.

표 II-12.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1)

(단위 : 명(%))

구분	계	경찰서장 송치	검사송치	법원 송치	타 소년부 이송	보호자 등 통고
2013	43,035 (100)	9,500 (22.1)	29,284 (68.0)	2,695 (6.3)	1,368 (3.2)	188 (0.4)
2014	34,165 (100)	7,104 (20.8)	24,110 (70.6)	1,610 (4.7)	1,146 (3.4)	195 (0.6)
2015	34,075 (100)	6,756 (19.8)	24,527 (72.0)	1,494 (4.4)	989 (2.9)	309 (0.9)
2016	33,738 (100)	6,788 (20.1)	24,319 (72.1)	1,357 (4.0)	915 (2.7)	359 (1.1)
2017	34,110 (100)	7,743 (22.7)	24,014 (70.4)	1,124 (3.3)	876 (2.6)	353 (1.0)
2018	33,301 (100)	8,335 (25.0)	22,578 (67.8)	954 (2.9)	1,027 (3.1)	407 (1.2)
2019	36,576 (100)	10,460 (28.6)	23,511 (64.3)	876 (2.4)	1,285 (3.5)	444 (1.2)
2020	38,590 (100)	11,063 (28.7)	24,872 (64.5)	1,023 (2.7)	1,362 (3.5)	270 (0.7)
2021	35,438 (100)	12,680 (35.8)	20,260 (57.2)	733 (2.1)	1,307 (3.7)	458 (1.3)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그림 II-3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소년보호사건 접수 경로 비율을 제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경찰서장 송치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검사송치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되는 경우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이들의 접수 건수도 함께 증가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외 법원송치, 타소년부에서 이송, 통고의 비중은 전체 접수 사건 중에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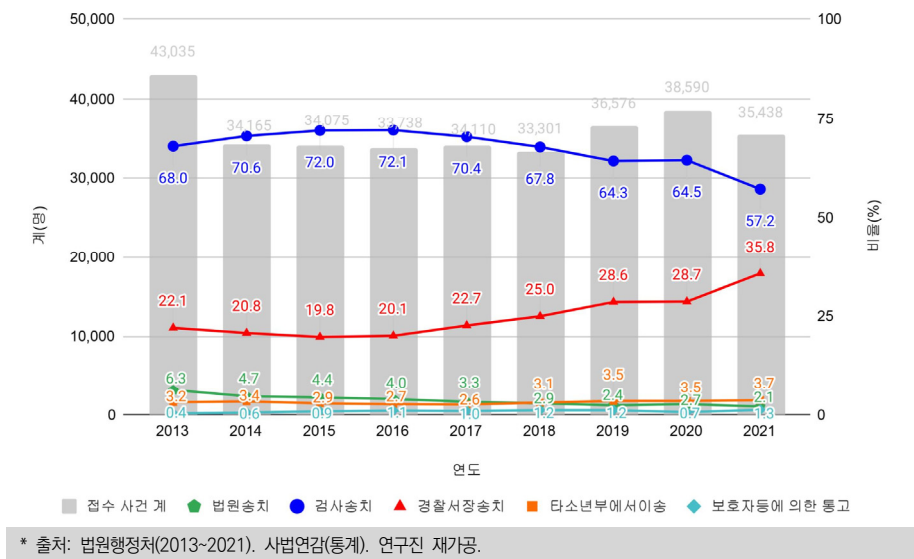


그림 II-3.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1)

(2)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기준 범죄 유형 추이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접수 시 범죄 유형의 추이는 표 II-13에 제시하였다. 먼저, 범죄 유형은 사법연감의 형법범죄 14개 죄명과 특별법범죄 12개 죄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범죄유형은 총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기타범죄로 구성하였다. 강력범죄는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폭력범죄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의취득알선등으로 구성하였다.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내용을 포함하고, 기타범죄는 이외 구분되지 않은 실화, 공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기타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접수 시 범죄 유형은 2013년에 재산범죄 23,384건(54.5%), 폭력범죄 9,116건(21.2%), 기타범죄 4,979건(11.6%), 교통범죄 3,122건(7.3%), 강력(흉악)범죄 2,327건(5.4%)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비중은 2021년 16,282명(47.6%), 6,277명(18.3%)으로 감소하고, 기타범죄 5,563명(16.2%), 강력(흉악)범죄 3,286명(9.6%), 교통범죄 2,828명(8.3%)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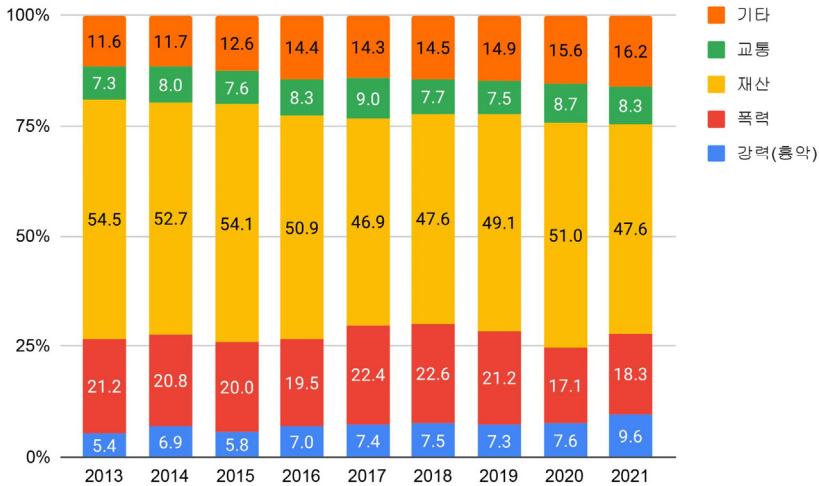
표 II-13.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기준 범죄 유형 추이(2013~2021)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2,928 (100)	34,034 (100)	33,809 (100)	33,371 (100)	33,584 (100)	32,637 (100)	35,462 (100)	37,144 (100)	34,236 (100)
강력 (흉악)	2,327 (5.4)	2,343 (6.9)	1,954 (5.8)	2,323 (7.0)	2,474 (7.4)	2,452 (7.5)	2,572 (7.3)	2,813 (7.6)	3,286 (9.6)
폭력	9,116 (21.2)	7,075 (20.8)	6,752 (20.0)	6,512 (19.5)	7,520 (22.4)	7,383 (22.6)	7,528 (21.2)	6,343 (17.1)	6,277 (18.3)
재산	23,384 (54.5)	17,923 (52.7)	18,278 (54.1)	16,973 (50.9)	15,751 (46.9)	15,548 (47.6)	17,414 (49.1)	18,960 (51.0)	16,282 (47.6)
교통	3,122 (7.3)	2,717 (8.0)	2,568 (7.6)	2,766 (8.3)	3,021 (9.0)	2,513 (7.7)	2,676 (7.5)	3,246 (8.7)	2,828 (8.3)
기타	4,979 (11.6)	3,976 (11.7)	4,257 (12.6)	4,797 (14.4)	4,818 (14.3)	4,741 (14.5)	5,272 (14.9)	5,782 (15.6)	5,563 (16.2)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통계). 연구진 재가공.

* 주: 범죄유형은 연구진이 재가공하여 작성함.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통계). 연구진 재가공.

* 주: 1) 범죄유형은 연구진이 재가공하여 작성함.

- 2) 강력범죄는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성함.
- 3) 폭력범죄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성함.
- 4)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의취득알선등에 해당함.
- 5)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성함.
- 6) 기타범죄는 이외 구분되지 않은 실화, 공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기타 모든 범죄에 해당함.

그림 II-4.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기준 범죄 유형 비율(2013~2022)

(3) 전체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

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는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타법원이송, 검사송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처리 동향을 표 II-14에 제시하였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유형 총합계는 2013년 45,393명에서 2021년 35,064명으로 감소하였다. 보호처분 결정은 2013년 31,952명(70.4%)에서 2021년 22,144명(63.2%)으로 감소하였고, 타법원 이송도 2013년 2,179명(4.8%)에서 2021년 1,401명(4.0%)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불처분 결정은 2013년 2,663명(5.9%)에서 2021년 2,728명(7.8%)으로 증가하였고, 심리불개시 결정도 2013년 8,065명(17.8%)에서 8,586명(24.5%)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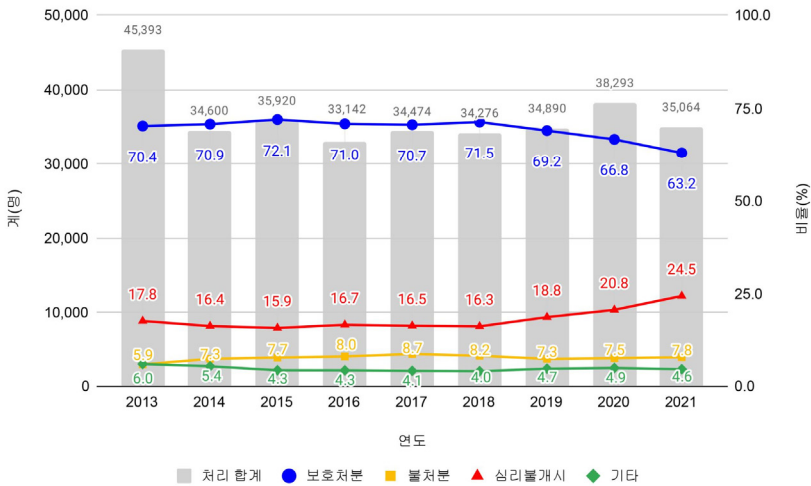
표 II-14.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1)

(단위 : 명(%))

구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타법원이송	검사송치	기타
2013	45,393 (100)	31,952 (70.4)	2,663 (5.9)	8,065 (17.8)	2,179 (4.8)	534 (1.2)	-
2014	34,600 (100)	24,529 (70.9)	2,543 (7.3)	5,669 (16.4)	1,403 (4.1)	456 (1.3)	-
2015	35,920 (100)	25,911 (72.1)	2,763 (7.7)	5,703 (15.9)	1,093 (3.0)	450 (1.3)	-
2016	33,142 (100)	23,526 (71.0)	2,650 (8.0)	5,547 (16.7)	1,106 (3.3)	313 (0.9)	-
2017	34,474 (100)	24,383 (70.7)	2,986 (8.7)	5,676 (16.5)	1,059 (3.1)	370 (1.1)	-
2018	34,276 (100)	24,494 (71.5)	2,805 (8.2)	5,590 (16.3)	1,079 (3.1)	305 (0.9)	3 (0.01)
2019	34,890 (100)	24,131 (69.2)	2,557 (7.3)	6,556 (18.8)	1,292 (3.7)	351 (1.0)	3 (0.01)
2020	38,293 (100)	25,579 (66.8)	2,886 (7.5)	7,948 (20.8)	1,510 (3.9)	364 (1.0)	6 (0.02)
2021	35,064 (100)	22,144 (63.2)	2,728 (7.8)	8,586 (24.5)	1,401 (4.0)	191 (0.5)	14 (0.04)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통계).

그림 II-5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처리 현황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처분 결정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0% 이상을 차지하다가 2019년부터 60%대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63.2%를 차지하였다. 이는 보호소년 100명 중 약 63명은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심리불개시 결정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5~17%대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18.8%, 2020년 20.8%, 2021년 24.5%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소년 100명 중 약 24명은 심리불개시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중 보호처분의 비중은 줄어들고 심리불개시 건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불처분은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7.3%에서 8.7% 사이에서 증감 추세를 반복하였다.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통계). 연구진 재가공.

* 주: 기타는 타법원이송, 검찰송치, 기타를 합하여 보고함.

그림 II-5.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1)

3) 촉법소년 사건 발생 추이 및 특성

이제까지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촉법소년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촉법소년 자료는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모든 자료는 2023년 5월 2일 기준 추출된 전산자료이다. 이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사법연감 통계의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전산자료와 사법연감 통계상의 차이는 사건 접수 및 처리 중 소년 신변이나 사건 절차에서의 변동 때문으로 파악된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각 법원에서 사건별로 “촉법소년”이라고 분류한 정보 그대로를 추출한 것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1) 촉법소년 사건 접수 및 처리 동향

법원에서의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II-15에 제시하였다. 촉법소년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10,000건(23.2%)에서 2016년

7,029건(20.8%)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12,501건(35.3%)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사건 처리 건수도 이와 비슷한 동향을 보이며 2013년 10,775건(23.7%)에서 2016년 6,824건(20.6%)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1년 12,026건(34.3%)으로 나타났다.

표 II-15.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촉법소년 비율(2013~2021)

(단위 : 건(%))

구분	소년보호사건 접수		소년보호사건 처리	
	총계	촉법소년	총계	촉법소년
2013	43,035(100)	10,000(23.2)	45,393(100)	10,775(23.7)
2014	34,165(100)	7,236(21.2)	34,600(100)	7,584(21.9)
2015	34,075(100)	7,045(20.7)	35,920(100)	7,404(20.6)
2016	33,738(100)	7,029(20.8)	33,142(100)	6,824(20.6)
2017	34,110(100)	7,896(23.1)	34,474(100)	7,662(22.2)
2018	33,301(100)	9,049(27.2)	34,276(100)	9,327(27.2)
2019	36,576(100)	10,022(27.4)	34,890(100)	9,377(26.9)
2020	38,590(100)	10,584(27.4)	38,293(100)	10,112(26.4)
2021	35,438(100)	12,501(35.3)	35,064(100)	12,026(34.3)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촉법소년은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촉법소년의 사건 처리 유형 동향은 표 II-16에 제시하였다. 촉법소년의 사건 처리 유형 중에서는 보호처분, 심리불개시, 불처분, 타법원이송, 검사송치 및 기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사건 처리 유형 중에서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보호처분 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3.2%(5,891건)에서 2021년 50.6%(6,082건)로 감소하였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처리 유형 중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3년 2,113건(19.6%)에서 2016년 1,154건(16.9%)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2021년에는 3,829건(31.8%)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불처분 결정은 2013년 869건(8.1%)에서 소폭의 증감을 지속하였으며 2021년에는 1,300건(10.8%)으로 나타났다.

표 II-16.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처리 동향(2013~2021)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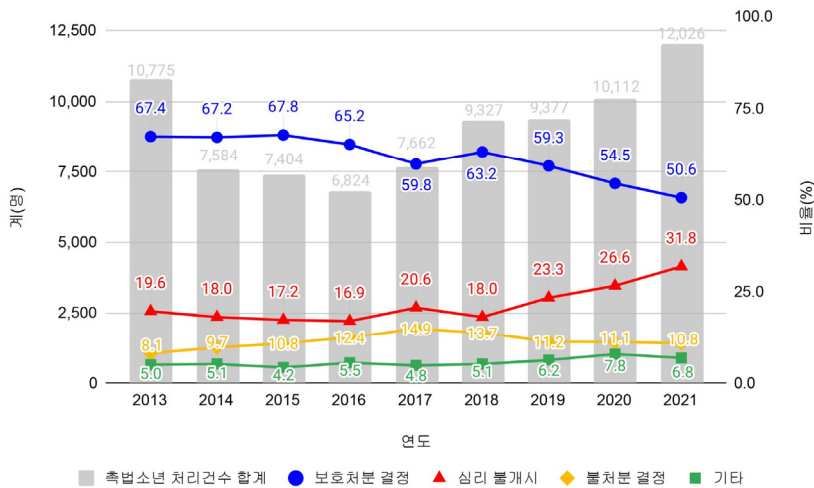
구분	계	보호처분	심리 불개시	불처분	타법원 이송	검사송치	기타
2013	10,775 (100)	7,258 (67.4)	2,113 (19.6)	869 (8.1)	528 (4.9)	7 (0.1)	-
2014	7,584 (100)	5,095 (67.2)	1,367 (18.0)	732 (9.7)	385 (5.1)	5 (0.1)	-
2015	7,404 (100)	5,019 (67.8)	1,277 (17.2)	796 (10.8)	301 (4.1)	11 (0.1)	-
2016	6,824 (100)	4,450 (65.2)	1,154 (16.9)	845 (12.4)	370 (5.4)	5 (0.1)	-
2017	7,662 (100)	4,581 (59.8)	1,577 (20.6)	1,138 (14.9)	362 (4.7)	4 (0.1)	-
2018	9,327 (100)	5,891 (63.2)	1,681 (18.0)	1,275 (13.7)	470 (5.0)	10 (0.1)	-
2019	9,377 (100)	5,559 (59.3)	2,186 (23.3)	1,051 (11.2)	564 (6.0)	10 (0.1)	7 (0.1)
2020	10,112 (100)	5,508 (54.5)	2,688 (26.6)	1,125 (11.1)	785 (7.8)	5 (0.05)	1 (0.01)
2021	12,026 (100)	6,082 (50.6)	3,829 (31.8)	1,300 (10.8)	798 (6.6)	16 (0.1)	1 (0.01)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 주: 1) 2023년 5월 23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2) 본 자료는 각 법원에서 입력한 그대로 추출한 전산자료이므로 촉법소년 사건 처리 유형에 검사송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그림 II-6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촉법소년의 처리 동향 비율을 제시하였다. 전체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보호처분 결정의 비율은 우하향하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의 비율은 보호처분 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는 우상향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전체 보호사건의 처리 중 31.8%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호소년 10명 중 약 3명은 심리불개시 사건으로 종결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처분 결정은 2017년 14.9%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전체 중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1)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2) 기타는 타법원이송, 검찰송치, 기타를 합하여 보고함.

그림 II-6.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처리 동향(2013~2022)

(2)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특성

본 절에서는 촉법소년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사건 접수 및 처리 특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추이는 표 II-17과 그림 II-7에 제시하였다. 법원 접수 기준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 유형은 재산범죄로 매년 5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폭력범죄였으며, 그 다음은 기타범죄, 강력(흉악)범죄, 교통범죄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2013년에는 재산범죄 5,634건(56.3%), 폭력범죄 2,334건(23.3%), 기타범죄 1,246건(12.5%), 강력(흉악)범죄 558건(5.6%), 교통범죄 228건(2.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폭력범죄가 2,033건(16.3%)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재산범죄 6,932건(55.5%), 기타범죄 1,902건(15.2%), 강력(흉악)범죄 1,247건(10.0%), 교통범죄 387건(3.1%)으로 증가하였다.

표 II-17. 접수 기준 촉법소년 범죄 유형 추이(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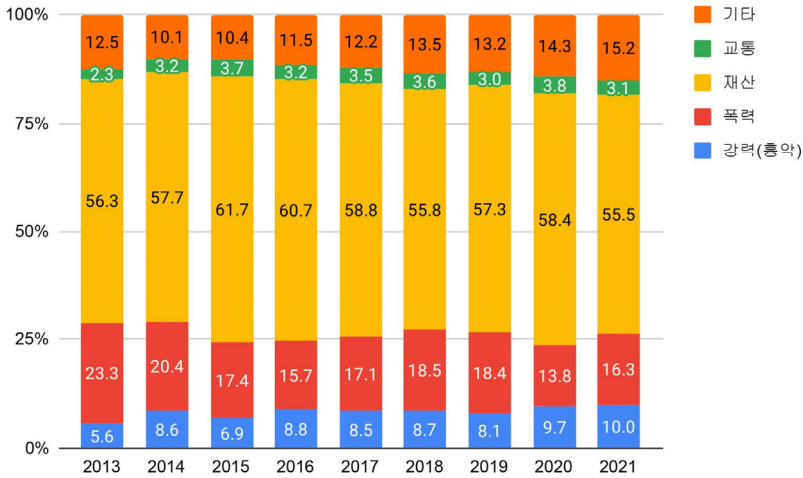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000 (100)	7,236 (100)	7,045 (100)	7,029 (100)	7,896 (100)	9,049 (100)	10,022 (100)	10,584 (100)	12,501 (100)
재산	5,634 (56.3)	4,174 (57.7)	4,347 (61.7)	4,269 (60.7)	4,639 (58.8)	5,046 (55.8)	5,746 (57.3)	6,177 (58.4)	6,932 (55.5)
폭력	2,334 (23.3)	1,478 (20.4)	1,225 (17.4)	1,102 (15.7)	1,353 (17.1)	1,670 (18.5)	1,844 (18.4)	1,465 (13.8)	2,033 (16.3)
강력 (흉악)	558 (5.6)	623 (8.6)	483 (6.9)	622 (8.8)	668 (8.5)	784 (8.7)	810 (8.1)	1,026 (9.7)	1,247 (10.0)
교통	228 (2.3)	230 (3.2)	259 (3.7)	228 (3.2)	275 (3.5)	325 (3.6)	296 (3.0)	405 (3.8)	387 (3.1)
기타	1,246 (12.5)	731 (10.1)	731 (10.4)	808 (11.5)	961 (12.2)	1,224 (13.5)	1,326 (13.2)	1,511 (14.3)	1,902 (15.2)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1)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2) 범죄유형은 연구진이 재가공하여 작성함. 강력범죄는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성함. 폭력범죄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성함.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의취득알선등에 해당함.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성함. 기타범죄는 이외 구분되지 않은 실화, 공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기타 모든 범죄에 해당함.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1)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2) 범죄유형은 연구진이 재가공하여 작성함. 강력범죄는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성함. 폭력범죄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성함.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의취득알선등에 해당함.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성함. 기타범죄는 이외 구분되지 않은 실화, 공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 기타 모든 범죄에 해당함.

그림 II-7. 접수 기준 촉법소년 범죄유형 비율(2013~2022)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보호처분/불처분 결정 혹은 타법원 이송 등으로 처리된다. 촉법소년의 재산범죄 처리 현황은 표 II-18과 그림 II-8에 제시하였다. 촉법소년의 재산범죄 처리 건수는 2013년 5,901건이었다가 2016년 4,183건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2021년에는 6,730건으로 증가하였다. 재산범죄의 처리 유형은 보호처분 결정이 2013년 4,116건(69.8%)이었으나 점점 감소하여 2021년에는 3,161건(47.0%)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심리불개시 건수는 2013년 1,024건(17.4%)에서 점점 증가하여 2021년에는 2,438건(36.2%)으로 나타났다. 불처분 결정 또한 소폭 증가하였는데 2013년 388건(6.6%)에서 2021년 715건(10.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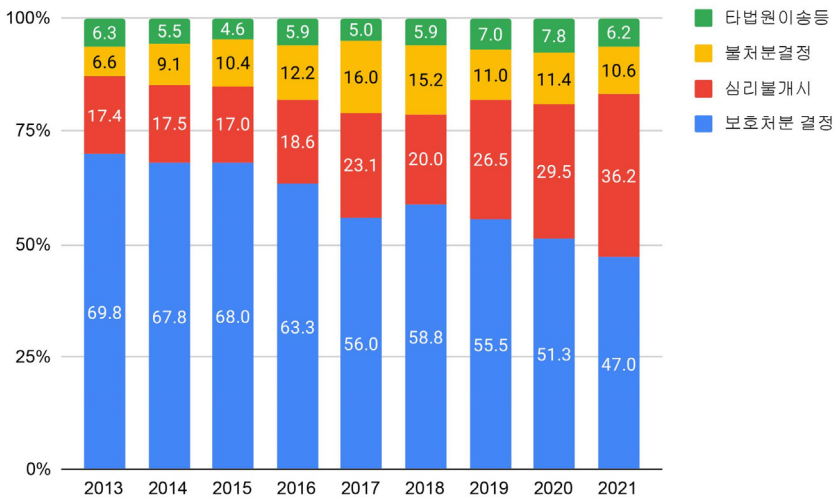
표 II-18. 촉법소년 재산범죄 처리 현황(2013~2021)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901 (100)	4,403 (100)	4,474 (100)	4,183 (100)	4,602 (100)	5,266 (100)	5,406 (100)	5,878 (100)	6,730 (100)
보호처분 결정	4,116 (69.8)	2,986 (67.8)	3,041 (68.0)	2,647 (63.3)	2,575 (56.0)	3,098 (58.8)	2,998 (55.5)	3,016 (51.3)	3,161 (47.0)
심리 불개시	1,024 (17.4)	772 (17.5)	762 (17.0)	780 (18.6)	1,062 (23.1)	1,053 (20.0)	1,432 (26.5)	1,736 (29.5)	2,438 (36.2)
불처분 결정	388 (6.6)	401 (9.1)	464 (10.4)	509 (12.2)	736 (16.0)	803 (15.2)	595 (11.0)	669 (11.4)	715 (10.6)
타법원 이송 등	373 (6.3)	244 (5.5)	207 (4.6)	247 (5.9)	229 (5.0)	312 (5.9)	381 (7.0)	457 (7.8)	416 (6.2)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그림 II-8. 촉법소년 재산범죄 처리 현황(2013~2021)

촉법소년의 폭력범죄 처리 현황은 표 II-19과 그림 II-9에 제시하였다. 폭력범죄 사건의 처리 건수는 2013년 2,645건에서 2016년 1,100건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2021년에는 1,868건으로 증가하였다. 폭력범죄 사건은 2013년에 전체의 약 69%인 1,824건이 보호처분 결정으로 처리되었고, 심리불개시가 484건(18.3%), 불처분 결정이 272건(10.3%), 타법원 이송 등이 65건(2.5%)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리 유형의 비율이 증감을 반복하였는데, 2021년에는 보호처분 결정이 979건(52.4%)으로 감소하고, 심리불개시가 545건(29.2%)으로 증가하였다. 불처분 결정은 263건으로 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처리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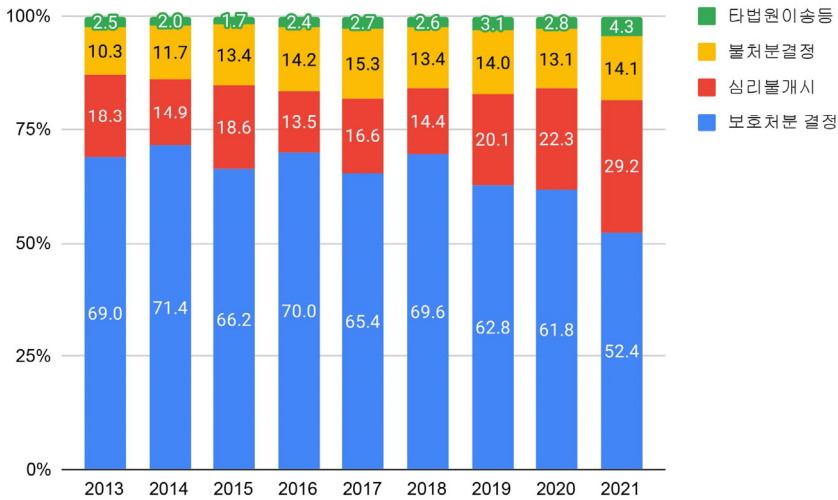
표 II-19. 촉법소년 폭력범죄 처리 현황(2013~2021)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645 (100)	1,565 (100)	1,385 (100)	1,100 (100)	1,223 (100)	1,706 (100)	1,699 (100)	1,532 (100)	1,868 (100)
보호처분 결정	1,824 (69.0)	1,118 (71.4)	917 (66.2)	770 (70.0)	800 (65.4)	1,188 (69.6)	1,067 (62.8)	947 (61.8)	979 (52.4)
심리 불개시	484 (18.3)	233 (14.9)	258 (18.6)	148 (13.5)	203 (16.6)	246 (14.4)	341 (20.1)	341 (22.3)	545 (29.2)
불처분 결정	272 (10.3)	183 (11.7)	186 (13.4)	156 (14.2)	187 (15.3)	228 (13.4)	238 (14.0)	201 (13.1)	263 (14.1)
타법원 이송 등	65 (2.5)	31 (2.0)	24 (1.7)	26 (2.4)	33 (2.7)	44 (2.6)	53 (3.1)	43 (2.8)	81 (4.3)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주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그림 II-9. 촉법소년 폭력범죄 처리 현황(2013~2021)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처리 현황은 표 II-20과 그림 II-10에 제시하였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처리 건수는 2013년 580건에서 2015년 526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6년 571건에서 2021년 1,2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대부분 사건이 보호처분 결정으로 처리되어, 전체 처리 유형 중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19년 80.9% → '20년 72.0% → '21년 71.8%). 심리불개시 결정은, 2016년 20건(3.5%)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15건(9.4%)으로 나타났다. 불처분 결정은 2018년 58건(7.0%)에서 2021년 64건(5.3%)으로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처리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타법원 이송 등 기타로 처리되는 사건은 2019년까지 50건 내외(5~7%)였지만 2020년 152건(16%), 2021년 164건(13.5%)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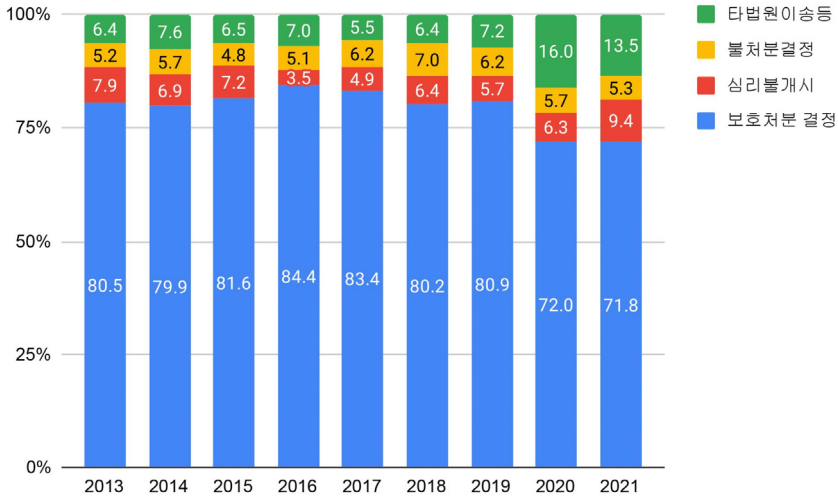
표 II-20. 촉법소년 강력(흉악)범죄 처리 현황(2013~2021)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처리 계	580 (100)	566 (100)	526 (100)	571 (100)	632 (100)	828 (100)	706 (100)	949 (100)	1,217 (100)
보호처분 결정	467 (80.5)	452 (79.9)	429 (81.6)	482 (84.4)	527 (83.4)	664 (80.2)	571 (80.9)	683 (72.0)	874 (71.8)
심리 불개시	46 (7.9)	39 (6.9)	38 (7.2)	20 (3.5)	31 (4.9)	53 (6.4)	40 (5.7)	60 (6.3)	115 (9.4)
불처분 결정	30 (5.2)	32 (5.7)	25 (4.8)	29 (5.1)	39 (6.2)	58 (7.0)	44 (6.2)	54 (5.7)	64 (5.3)
타법원 이송 등	37 (6.4)	43 (7.6)	34 (6.5)	40 (7.0)	35 (5.5)	53 (6.4)	51 (7.2)	152 (16.0)	164 (13.5)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그림 II-10. 촉법소년 강력(흉악)범죄 처리 현황(2013~2021)

촉법소년의 교통범죄 처리 현황은 표 II-21와 그림 II-11에 제시하였다. 촉법소년의 교통범죄 처리 건수는 2013년 272건으로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는 368건으로 나타났다. 교통범죄는 보호처분 결정으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중이 40%대와 5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2013년 85건(31.3%)으로 앞서 살펴본 다른 범죄 유형의 심리불개시 결정의 비중보다 높은 편이었고, 2021년에는 129건(35.1%)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불처분 결정은 2016년 51건으로 22.4%까지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42건으로 11.4%까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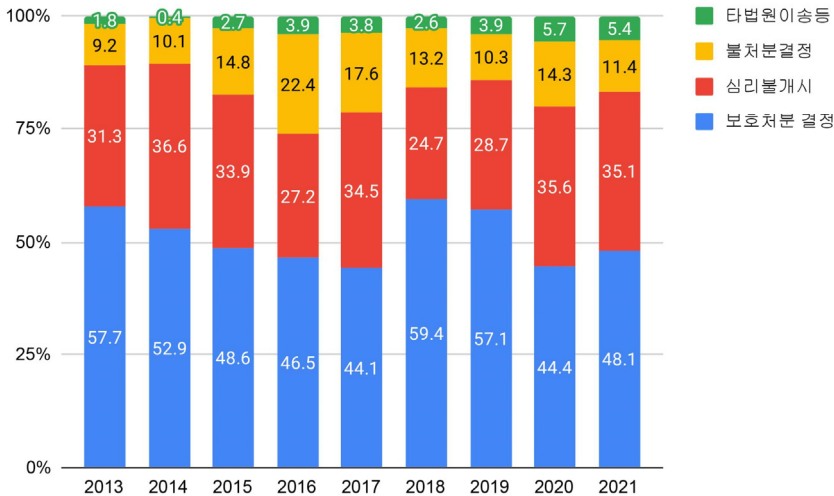
표 II-21. 촉법소년 교통범죄 처리 현황(2013~2021)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72 (100)	227 (100)	257 (100)	228 (100)	261 (100)	340 (100)	282 (100)	385 (100)	368 (100)
보호처분 결정	157 (57.7)	120 (52.9)	125 (48.6)	106 (46.5)	115 (44.1)	202 (59.4)	161 (57.1)	171 (44.4)	177 (48.1)
심리 불개시	85 (31.3)	83 (36.6)	87 (33.9)	62 (27.2)	90 (34.5)	84 (24.7)	81 (28.7)	137 (35.6)	129 (35.1)
불처분 결정	25 (9.2)	23 (10.1)	38 (14.8)	51 (22.4)	46 (17.6)	45 (13.2)	29 (10.3)	55 (14.3)	42 (11.4)
타법원 이송 등	5 (1.8)	1 (0.4)	7 (2.7)	9 (3.9)	10 (3.8)	9 (2.6)	11 (3.9)	22 (5.7)	20 (5.4)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주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그림 II-11. 촉법소년 교통범죄 처리 현황(2013~2021)

촉법소년의 기타범죄 처리 현황은 표 II-22와 그림 II-12에 제시하였다. 촉법소년의 기타범죄 처리 건수는 2013년 1,377건에서 2016년 742건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84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범죄는 보호처분 결정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2013년부터 50.4%(694건)에서 최대 2015년 66.5%(507건)로 나타났지만, 2021년에는 48.3%(891건)로 감소하였다. 다만, 심리불개시 결정은 교통범죄의 심리불개시 결정(31.3%)과 비슷하게 2013년 34.4%(474건)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후 2015년 17.3%(132건)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7%(602건)로 나타났다. 불처분 결정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큰 변화 없이 10% 초중반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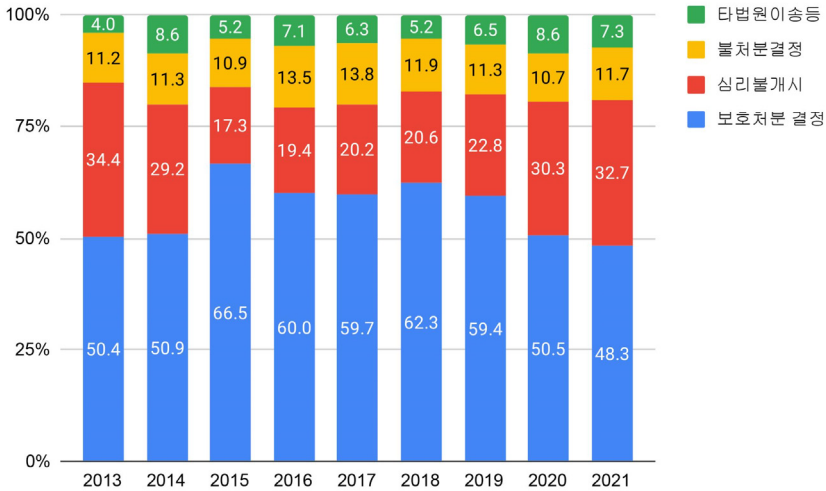
표 II-22. 촉법소년 기타범죄 처리 현황(2013~2021)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77 (100)	823 (100)	762 (100)	742 (100)	944 (100)	1,187 (100)	1,283 (100)	1,368 (100)	1,843 (100)
보호처분 결정	694 (50.4)	419 (50.9)	507 (66.5)	445 (60.0)	564 (59.7)	739 (62.3)	762 (59.4)	691 (50.5)	891 (48.3)
심리 불개시	474 (34.4)	240 (29.2)	132 (17.3)	144 (19.4)	191 (20.2)	245 (20.6)	292 (22.8)	414 (30.3)	602 (32.7)
불처분 결정	154 (11.2)	93 (11.3)	83 (10.9)	100 (13.5)	130 (13.8)	141 (11.9)	145 (11.3)	146 (10.7)	216 (11.7)
타법원 이송 등	55 (4.0)	71 (8.6)	40 (5.2)	53 (7.1)	59 (6.3)	62 (5.2)	84 (6.5)	117 (8.6)	134 (7.3)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2023년 5월 2일 기준 인원수표 전산자료임.

그림 II-12. 촉법소년 기타범죄 처리 현황(2013~2021)

4) 우범소년 사건 발생 추이 및 특성

(1) 소년보호사건 우범소년 접수 및 처리 동향

법원에서의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중 우범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 II-23에 제시하였다. 우범소년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107명(0.5%)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1,446명(7.5%)의 사건이 접수되어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한 1,202명(6.7%)이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우범소년이 차지하는 사건의 비중과 접수 건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우범소년의 사건 처리도 이와 비슷한 동향을 보이며 2013년 115명(0.3%)이었다가 2020년 1,424명(3.7%)까지 증가,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1년에는 1,187명(3.4%)으로 나타났다.

표 II-23.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우범소년 비율(2013~2021)

(단위 : 명(%))

구분	소년보호사건 접수		소년보호사건 처리	
	총계	우범소년	총계	우범소년
2013	43,035(100)	107(0.5)	45,393(100)	115(0.3)
2014	34,165(100)	131(0.8)	34,600(100)	127(0.4)
2015	34,075(100)	266(1.6)	35,920(100)	222(0.6)
2016	33,738(100)	367(2.2)	33,142(100)	326(1.0)
2017	34,110(100)	526(3.1)	34,474(100)	527(1.5)
2018	33,301(100)	664(4.0)	34,276(100)	592(1.7)
2019	36,576(100)	1,114(6.1)	34,890(100)	1,084(3.1)
2020	38,590(100)	1,446(7.5)	38,293(100)	1,424(3.7)
2021	35,438(100)	1,202(6.7)	35,064(100)	1,187(3.4)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우범소년 사건의 처리 동향은 표 II-24와 그림 II-13에 제시하였다. 우범소년의 사건은 보호처분 결정, 심리불개시, 불처분 결정, 타법원 이송, 기타로 처리되며 이중 보호처분 결정이 최소 79.4%(2020년)에서 최대 90.6%(2014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범소년의 사건 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2013년에 100명(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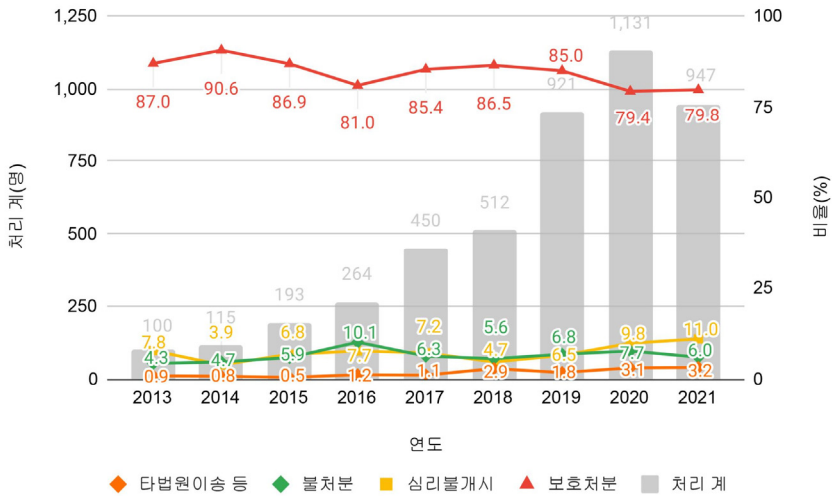
이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2020년에는 1,131명(79.4%)으로 우범소년의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증가하고 비중은 감소하였다. 심리불개시는 2014년에 5명(3.9%)에 불과했지만, 이후 2021년에는 131명(11.0%)까지 증가하였다. 불처분 결정의 경우, 전체 처리 유형 중 2013년에 5명(4.3%)이었다가 2016년에는 33명(10.1%)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에는 71명(6.0%)으로 처리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II-24. 소년보호사건 우범소년 처리 동향(2013~2021)

(단위: 명(%))

구분	계	보호처분	심리불개시	불처분	타법원이송	기타
2013	115(100)	100(87.0)	9(7.8)	5(4.3)	1(0.9)	-
2014	127(100)	115(90.6)	5(3.9)	6(4.7)	1(0.8)	-
2015	222(100)	193(86.9)	15(6.8)	13(5.9)	1(0.5)	-
2016	326(100)	264(81.0)	25(7.7)	33(10.1)	4(1.2)	-
2017	527(100)	450(85.4)	38(7.2)	33(6.3)	6(1.1)	-
2018	592(100)	512(86.5)	28(4.7)	33(5.6)	17(2.9)	-
2019	1,084(100)	921(85.0)	70(6.5)	74(6.8)	19(1.8)	-
2020	1,424(100)	1,131(79.4)	139(9.8)	110(7.7)	39(2.7)	5(0.4)
2021	1,187(100)	947(79.8)	131(11.0)	71(6.0)	26(2.2)	12(1.0)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타법원이송 등은 타법원이송, 기타를 합하여 보고함.

그림 II-13. 소년보호사건 우범소년 처리 동향(2013~2021)

(2) 우범소년 보호처분 특성

우범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사회 내 처우, 중간 처우, 시설 내 처우 처분의 분포는 표 II-25에 제시하였다. 1호부터 5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사회 내 처우, 6호 처분 결정을 중간 처우, 7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은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였다. 우범소년의 처분 결정 유형의 비중은 대체로 사회 내 처우(60%~70대), 중간 처우(10%~20대), 시설 내 처우(10% 내외)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우범소년의 595명(62.8%)이 사회 내 처우 처분을 받았고, 223명(23.5%)이 중간 처우, 92명(9.7%)이 시설 내 처우 처분을 받았다.

표 II-25. 우범소년 보호처분 결정 특성(2013~2021)

(단위 : 명(%))

구분	보호처분 계	사회 내 처우	중간 처우	시설 내 처우	기타처분
2013	100(100)	71(71.0)	17(17.0)	12(12.0)	-
2014	115(100)	74(64.3)	30(26.1)	11(9.6)	-
2015	193(100)	137(71.0)	41(21.2)	15(7.8)	-
2016	264(100)	193(73.1)	46(17.4)	23(8.7)	2(0.8)
2017	450(100)	312(69.3)	71(15.8)	50(11.1)	17(3.8)
2018	512(100)	322(62.9)	121(23.6)	56(10.9)	13(2.5)
2019	921(100)	624(67.8)	160(17.4)	111(12.1)	26(2.8)
2020	1,131(100)	735(65.0)	226(20.0)	145(12.8)	25(2.2)
2021	947(100)	595(62.8)	223(23.5)	92(9.7)	37(3.9)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사회 내 처우는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을 합산한 결과이며, 중간 처우는 6호 처분, 시설 내 처우는 7호부터 10호까지 처분결과를 합산하였음.

5) 보호소년 특성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보호소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 자료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의 보호소년 신상 및 환경표에서 추출하였다. 이 자료는 보호소년 연령, 범죄 행위원인, 직업, 교육 정도, 가족관계, 주거형태 등 보호소년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의 정보만을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결과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보호처분 결정 시 연령 분포

보호처분 결정이 난 사건에서의 보호소년 연령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표 II-26). 해당 자료를 통해 보호소년의 연령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기준으로 처분 시의 연령이 집계되었고,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보호처분 결과도 포함하고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 중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연령 구간은 16세~17세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는 2013년 42%(13,434명)에서 2016년 44.4%(10,434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2021년 35.4%(7,849명)까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14세~15세였다. 해당 연령대는 2013년 28.9%(9,241명)에서 2017년 25.0%(6,086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2021년 30.7%(6,804명)까지 증가하였다. 18세 이상의 연령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15.1%부터 최대 18.5%로 해당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14세 미만에서 10세와 11세는 1% 내외의 비율을 보여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2세는 3% 내외로 나타나 그다음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3세의 경우엔 2013년 10.6%(3,391명)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에는 13.5%(2,995명)로 나타났다.

표 II-26. 보호처분 결정 시 연령 분포(2013~2021)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 이상
		소계	10세	11세	12세	13세			
2013	31,952 (100)	4,334 (13.6)	42 (0.1)	136 (0.4)	765 (2.4)	3,391 (10.6)	9,241 (28.9)	13,434 (42.0)	4,943 (15.5)
2014	24,529 (100)	2,894 (11.8)	48 (0.2)	125 (0.5)	528 (2.2)	2,193 (8.9)	7,085 (28.9)	10,013 (40.8)	4,537 (18.5)
2015	25,911 (100)	3,016 (11.6)	57 (0.2)	213 (0.8)	550 (2.1)	2,196 (8.5)	7,166 (27.7)	10,925 (42.2)	4,804 (18.5)
2016	23,526 (100)	2,858 (12.1)	74 (0.3)	247 (1)	640 (2.7)	1,897 (8.1)	6,054 (25.7)	10,434 (44.4)	4,180 (17.8)
2017	24,383 (100)	3,365 (13.8)	154 (0.6)	271 (1.1)	748 (3.1)	2,192 (9.0)	6,086 (25.0)	10,467 (42.9)	4,465 (18.3)
2018	24,494 (100)	3,483 (14.2)	95 (0.4)	230 (0.9)	694 (2.8)	2,464 (10.1)	7,043 (28.8)	9,701 (39.6)	4,267 (17.4)
2019	24,131 (100)	3,827 (15.9)	71 (0.3)	205 (0.8)	667 (2.8)	2,884 (12.0)	7,393 (30.6)	8,917 (37.0)	3,994 (16.6)
2020	25,579 (100)	3,465 (13.5)	66 (0.3)	239 (0.9)	711 (2.8)	2,449 (9.6)	8,088 (31.6)	9,852 (38.5)	4,174 (16.3)
2021	22,144 (100)	4,142 (18.7)	108 (0.5)	290 (1.3)	749 (3.4)	2,995 (13.5)	6,804 (30.7)	7,849 (35.4)	3,349 (15.1)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 주: 1) 보호처분 결정에 의해 종결된 사건만 보고됨.

2) 18세 이상 결과는 18세부터 19세까지의 보호처분 수를 포함(처분 시 연령이므로 만 19세도 포함됨).

3)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보호처분 결과도 포함하고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소년 범죄 행위원인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보호소년의 범죄 행위 원인에 대한 현황은 표 II-27에 제시하였다. 보호소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행위원인 중 69%에서 79% 사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는 생활비 마련과 유흥이 2013년에 각각 11.4%, 11.8%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생활비 마련이 6.4%, 유흥이 3.4%로 감소하였다. 그 외에 사행심, 현실불만, 기타는 1~3% 내외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27. 보호소년 행위원인 현황(2013~2021)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6,076 (100)	4,257 (100)	4,104 (100)	3,015 (100)	3,051 (100)	3,162 (100)	3,667 (100)	4,442 (100)	3,978 (100)
우발	2,801 (46.1)	1,917 (45.0)	1,828 (44.5)	1,383 (45.9)	1,387 (45.5)	1,508 (47.7)	1,676 (45.7)	1,863 (41.9)	1,559 (39.2)
호기심	1,401 (23.1)	1,166 (27.4)	1,123 (27.4)	798 (26.5)	860 (28.2)	970 (30.7)	1,196 (32.6)	1,615 (36.4)	1,601 (40.2)
생활비마련	693 (11.4)	444 (10.4)	456 (11.1)	333 (11.0)	270 (8.8)	245 (7.7)	282 (7.7)	346 (7.8)	256 (6.4)
유흥	716 (11.8)	409 (9.6)	438 (10.7)	292 (9.7)	264 (8.7)	162 (5.1)	173 (4.7)	190 (4.3)	135 (3.4)
유혹	251 (4.1)	192 (4.5)	110 (2.7)	89 (3.0)	91 (3.0)	110 (3.5)	113 (3.1)	135 (3.0)	136 (3.4)
사행심	89 (1.5)	49 (1.2)	56 (1.4)	39 (1.3)	42 (1.4)	63 (2.0)	93 (2.5)	136 (3.1)	112 (2.8)
현실불만	67 (1.1)	33 (0.8)	44 (1.1)	37 (1.2)	41 (1.3)	39 (1.2)	54 (1.5)	77 (1.7)	104 (2.6)
기타	58 (1.0)	47 (1.1)	49 (1.2)	44 (1.5)	96 (3.1)	65 (2.1)	80 (2.2)	80 (1.8)	75 (1.9)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기타는 원자료에서 비율이 1% 내외로 나타난 허영, 가정불화, 모방, 정신결함, 취중, 보복의 빈도를 함함.

(3) 보호소년 직업

보호소년의 직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13년 48.0%에서 2021년 67.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무직은 2013년 25.0%에서 점점 감소하여 2021년에는 7.5%로 나타났다.

표 II-28. 보호소년 직업 현황(2013~2021)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0,374 (100)	23,488 (100)	24,894 (100)	22,394 (100)	23,243 (100)	23,726 (100)	23,356 (100)	25,579 (100)	22,144 (100)
학생	14,574 (48.0)	12,007 (51.1)	12,161 (48.9)	11,694 (52.2)	11,790 (50.7)	13,356 (56.3)	13,847 (59.3)	15,366 (60.1)	14,930 (67.4)
무직	7,579 (25.0)	5,195 (22.1)	4,940 (19.8)	3,954 (17.7)	3,628 (15.6)	3,411 (14.4)	3,278 (14.0)	2,845 (11.1)	1,657 (7.5)
기타	8,221 (27.1)	6,286 (26.8)	7,793 (31.3)	6,746 (30.1)	7,825 (33.7)	6,959 (29.3)	6,231 (26.7)	7,368 (28.8)	5,557 (25.1)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기타는 학생, 무직 외의 모든 항목 빈도를 합함.

(4) 보호소년 교육 정도

보호소년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학 및 기타로 구분하였고, 표 II-29에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학급별 재학여부나, 졸업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중학교라는 것이 소년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한 소년의 정보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중에서도 2013년(47.6%)부터 2018년(49.2%), 2020년(48.5%)에는 고등학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2019년과 2021년에는 중학교의 비중이 49.6%와 47.7%로 고등학교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013년 2.9%에서 2017년 5.0%까지 소폭 증가하였고 이후 2020년 4.3%까지 감소하다 2021년 6%로 증가하였다. 대학교는 1% 미만 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표 II-29. 보호소년 교육 정도 현황(2013~2021)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5,779 (100)	11,433 (100)	10,569 (100)	8,361 (100)	7,956 (100)	9,336 (100)	9,882 (100)	10,984 (100)	10,262 (100)
초등학교	454 (2.9)	328 (2.9)	416 (3.9)	386 (4.6)	400 (5.0)	425 (4.6)	429 (4.3)	476 (4.3)	618 (6.0)
중학교	7,473 (47.4)	5,373 (47.0)	4,460 (42.2)	3,396 (40.6)	3,076 (38.7)	4,164 (44.6)	4,904 (49.6)	5,019 (45.7)	4,896 (47.7)
고등학교	7,512 (47.6)	5,531 (48.4)	5,401 (51.1)	4,286 (51.3)	4,239 (53.3)	4,592 (49.2)	4,431 (44.8)	5,323 (48.5)	4,552 (44.4)
대학교	72 (0.5)	54 (0.5)	49 (0.5)	50 (0.6)	60 (0.8)	32 (0.3)	69 (0.7)	72 (0.7)	50 (0.5)
기타(무학 포함)	268 (1.7)	147 (1.3)	243 (2.3)	243 (2.9)	181 (2.3)	123 (1.3)	49 (0.5)	94 (0.9)	146 (1.4)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1) 보호소년 교육 정도는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중 전산입력으로 추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출되었음.
2) 각 교육 정도는 전산에 등록된 기준으로 보고된 것으로 졸업, 재학 현황을 구분하기는 어려움.

(5) 보호소년 가족관계

보호소년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는 표 II-30에 제시하였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 중 실부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실부모 비중은 2013년에 전체의 65.9%를 차지하다가 점점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의 82.6%에 달하였다. 편부모 가정인 경우는 2013년에 전체의 26.8%를 차지하였다가 점점 감소하여 2021년에는 14.6%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총 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8% 이하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⁷⁾ 보호소년의 가족관계에서 한부모 가정의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부 또는 계모 가정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무부모는 2013년 1.9%에서 2016년 2.5%까지 증가하다 이후 소폭 감소하면서 2021

7)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일반 가구 중 한부모(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은 2015년 8.2%, 2016년 7.8%, 2017년 7.6%, 2018년 7.5%, 2019년 7.3%, 2020년 7.1%, 2021년 6.9%이다(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sessionId=CE0naRNcDfE6ObA9_jZH3WghOSgEe8H8z0R38mAG.node11?idx_cd=1578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년에는 0.3%를 차지하였다. 기타 형태의 가족관계는 2013년 4.2%, 2016년 0.8%로 감소하였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21년에는 1.8%로 나타났다.

표 II-30. 보호소년 가족관계 현황(2013~2021)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1,910 (100)	7,144 (100)	6,767 (100)	4,513 (100)	6,318 (100)	5,783 (100)	6,110 (100)	7,285 (100)	6,660 (100)
실부모	7,850 (65.9)	4,797 (67.1)	4,823 (71.3)	3,360 (74.5)	4,722 (74.7)	4,665 (80.7)	5,038 (82.5)	6,037 (82.9)	5,502 (82.6)
편부 또는 편모	3,188 (26.8)	2,040 (28.6)	1,664 (24.6)	948 (21.0)	1,331 (21.1)	959 (16.6)	979 (16.0)	1,072 (14.7)	973 (14.6)
계부 또는 계모	150 (1.3)	36 (0.5)	59 (0.9)	54 (1.2)	83 (1.3)	56 (1.0)	30 (0.5)	40 (0.5)	43 (0.6)
무부모	223 (1.9)	128 (1.8)	113 (1.7)	115 (2.5)	119 (1.9)	34 (0.6)	22 (0.4)	43 (0.6)	22 (0.3)
기타	499 (4.2)	143 (2.0)	108 (1.6)	36 (0.8)	63 (1.0)	69 (1.2)	41 (0.7)	93 (1.3)	120 (1.8)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1) 보호소년 가족관계는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중 전산입력으로 추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출되었음.
2) 원자료에서 '편부'와 '편모'를 각각 보고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합산하여 '편부 또는 편모'로 제시하였음.

(6) 보호소년 주거형태

보호소년의 주거형태는 부모집, 친척,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2013년부터 2021년의 현황은 표 II-31에 제시하였다. 2013년에 부모집에 거주하는 보호소년은 7,757명(70.1%)이었고, 2016년에 3,026명(71.8%)으로 인원수는 감소하였지만, 전체 주거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부터는 부모집에 거주하는 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6,179명으로 나타났고, 기타 유형의 인원이 2016년 이후로 급감 소하면서 부모집에 거주하는 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95%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31. 보호소년 주거형태 현황(2013~2021)

(단위 : 명(%))

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1,062 (100)	7,281 (100)	6,992 (100)	4,217 (100)	3,784 (100)	4,842 (100)	5,983 (100)	7,207 (100)	6,469 (100)
부모집	7,757 (70.1)	4,579 (62.9)	4,295 (61.4)	3,026 (71.8)	3,633 (96.0)	4,694 (96.9)	5,807 (97.1)	6,898 (95.7)	6,179 (95.5)
친척	355 (3.2)	167 (2.3)	155 (2.2)	98 (2.3)	53 (1.4)	56 (1.2)	88 (1.5)	129 (1.8)	107 (1.7)
기타	2,950 (26.7)	2,535 (34.8)	2,542 (36.4)	1,093 (25.9)	98 (2.6)	92 (1.9)	88 (1.5)	180 (2.5)	183 (2.8)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1) 보호소년 주거형태는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중 전산입력으로 추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출되었음.
 2) 원자료에 있던 타인, 하숙, 기숙사, 자활, 주거부정은 매년 1% 미만으로 집계되어 본 자료에서는 기타에 포함하였음.

3. 소년보호처분 제도 현황 및 쟁점

1) 소년보호처분 개요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 개시 후 결정되며, 본 절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1호부터 5호 처분까지는 사회 내 처우, 6호 처분은 중간 처우, 7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였다. 전체 보호처분 결정을 사회 내 처우, 중간 처우, 시설 내 처우로 구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32에 제시하였다. 2014년에는 사회 내 처우가 20,429명(8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설 내 처우가 3,065명(12.5%)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간 처우는 882명(3.6%)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사회 내 처우가 소폭 감소하여 17,569명(79.3%), 중간 처우는 인원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여 1,436명(6.5%)으로 나타나고, 시설 내 처우는 소폭 감소하여 1,822명(8.2%)을 차지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우별 증감의 변화가 있었으나, 처우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 내 처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시설 내 처우, 중간 처우 순으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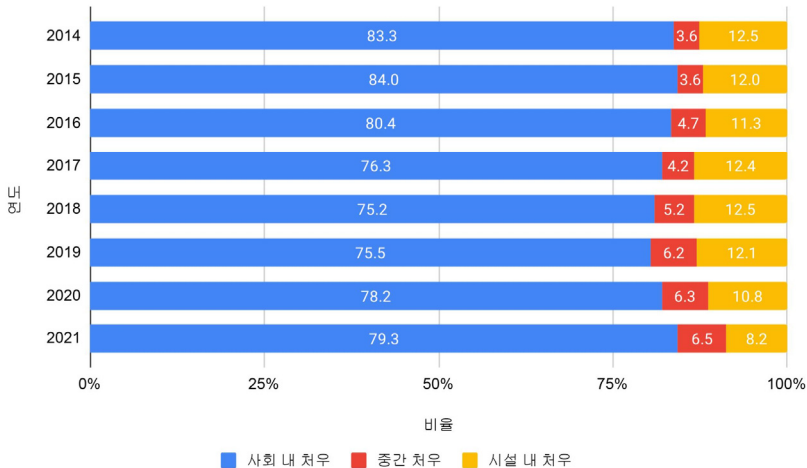
표 II-32. 보호처분 처우별 변화 추이(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사회 내 처우 ¹⁾	20,429 (83.3)	21,775 (84.0)	18,910 (80.4)	18,600 (76.3)	18,416 (75.2)	18,211 (75.5)	20,012 (78.2)	17,569 (79.3)
중간 처우 ²⁾	882 (3.6)	931 (3.6)	1,101 (4.7)	1,034 (4.2)	1,266 (5.2)	1,497 (6.2)	1,614 (6.3)	1,436 (6.5)
시설 내 처우 ³⁾	3,065 (12.5)	3,122 (12.0)	2,660 (11.3)	3,025 (12.4)	3,054 (12.5)	2,931 (12.1)	2,773 (10.8)	1,822 (8.2)
기타	153 (0.6)	83 (0.3)	855 (3.6)	1,724 (7.1)	1,758 (7.2)	1,492 (6.2)	1,180 (4.6)	1,317 (5.9)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가공함.

- * 주: 1) 사회 내 처우는 보호처분 1호부터 5호 처분을 합산한 결과임
 2) 중간 처우는 6호 처분이며, 사회 내 처우와 병합된 경우, 중간 처우로 분류하여 합산하였음(예: 4+6호 처분인 경우 중간 처우로 분류함)
 3) 시설 내 처우는 7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며, 사회 내 처우와 병합되었을 경우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여 합산함(예: 5+8호 처분인 경우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함)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 주: 1) 사회 내 처우는 보호처분 1호부터 5호 처분을 합산한 결과임
 2) 중간 처우는 6호 처분이며, 사회 내 처우와 병합된 경우, 중간 처우로 분류하여 합산하였음(예: 4+6호 처분인 경우 중간 처우로 분류함)
 3) 시설 내 처우는 7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며, 사회 내 처우와 병합되었을 경우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여 합산함(예: 5+8호 처분인 경우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함)

그림 II-14. 보호처분 처우별 변화 추이(2014~2021)

2) 사회 내 처우

(1) 1호 처분 현황

1호 단독 처분을 포함하여 1호와 병과된 세부 처분의 현황은 표 II-33에 제시하였다. 전체 보호처분 중 1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2.2%, 2015년 83.6%, 2016년 79%, 2017년 73.9%, 2018년 71.9%, 2019년 72.5%, 2020년 74.9%, 2021년 76%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호 처분 유형 중 2014년에 비해 2021년에 증가한 유형은 1호 단독처분이 2,960명(12.1%)에서 3,079명(13.9%), 1+2호 2,420명(9.9%)에서 3,606명(16.3%), 1+2+3호 445명(1.8%)에서 676명(3.1%), 1+2+5호 1,026명(4.2%)에서 1,403명(6.3%)에 해당한다. 이외 1호 처분 유형은 모두 감소하였다.

표 II-33. 1호 처분 현황(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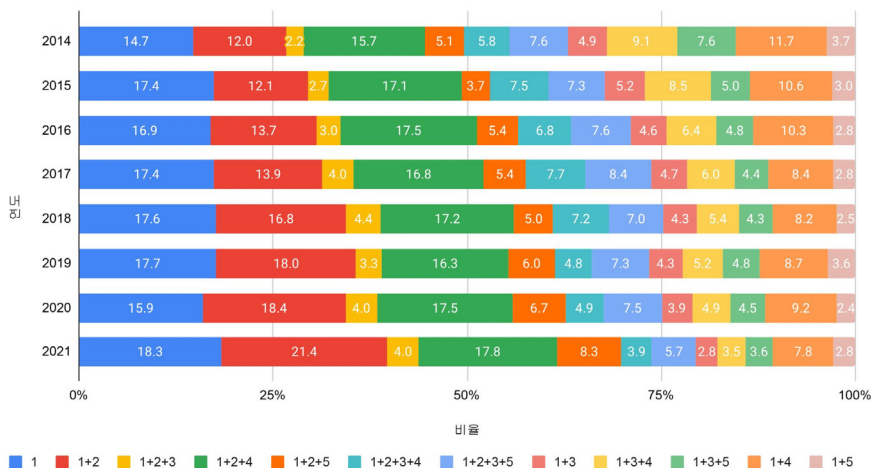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1호 처분 합계	20,172 (82.2)	21,651 (83.6)	18,583 (79.0)	18,024 (73.9)	17,607 (71.9)	17,484 (72.5)	19,165 (74.9)	16,827 (76.0)
1	2,960 (12.1)	3,771 (14.6)	3,142 (13.4)	3,135 (12.9)	3,104 (12.7)	3,103 (12.9)	3,054 (11.9)	3,079 (13.9)
1+2	2,420 (9.9)	2,609 (10.1)	2,554 (10.9)	2,504 (10.3)	2,963 (12.1)	3,143 (13.0)	3,531 (13.8)	3,606 (16.3)
1+2+3	445 (1.8)	581 (2.2)	557 (2.4)	727 (3.0)	776 (3.2)	574 (2.4)	776 (3.0)	676 (3.1)
1+2+4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11.8)	3,361 (13.1)	2,990 (13.5)
1+2+5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886 (3.6)	1,048 (4.3)	1,293 (5.1)	1,403 (6.3)
1+2+3+4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940 (3.7)	662 (3.0)
1+2+3+5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432 (5.6)	960 (4.3)
1+3	982 (4.0)	1,133 (4.4)	851 (3.6)	851 (3.5)	754 (3.1)	759 (3.1)	743 (2.9)	468 (2.1)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3+4	1,844 (7.5)	1,832 (7.1)	1,194 (5.1)	1,086 (4.5)	958 (3.9)	915 (3.8)	940 (3.7)	591 (2.7)
1+3+5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754 (3.1)	847 (3.5)	859 (3.4)	611 (2.8)
1+4	2,354 (9.6)	2,299 (8.9)	1,923 (8.2)	1,508 (6.2)	1,447 (5.9)	1,517 (6.3)	1,769 (6.9)	1,318 (6.0)
1+5	742 (3.0)	647 (2.5)	522 (2.2)	505 (2.1)	443 (1.8)	627 (2.6)	467 (1.8)	463 (2.1)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1호 처분 합계를 기준으로 처분 유형별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그림 II-15에 제시하였다. 지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한 처분 유형은 1호 단독처분, 1+2호, 1+2+4호 병합처분이었다. 1호 단독처분의 경우, 2014년 14.7%에서 2021년 18.3%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1+2+4호 병합처분도 2014년 15.7%에서 소폭 증가하여 2021년에는 17.8%를 차지하였다. 1+2호 병합처분은 2014년 12%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1호 처분 합계 기준으로 각 처분 유형 비율을 나타냄.

그림 II-15. 1호 처분 비율 그래프

1호 처분 집행기관으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보호를 수행하는 기관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 및 현황을 표 II-34에 제시하였다. 2022년 현황을 보면 총 18개의 시설이 운영되었고, 이 중 9개 시설이 경남 지역(부산, 울산, 경남)에 분포하고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은 시설당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위탁 가능하며 동시에 수용 가능한 총인원은 160명으로 나타났다. 시설은 남자 청소년 수용 시설이 10개(총 90명), 여자 청소년 수용 시설이 8개(총 70명)로 구분되었다. 2022년 기준 당해 연도에 위탁된 소년의 누적 인원은 총 358명(남자 228명, 여자 13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3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2022년 기준)

(단위 : 명)

시도	시설 명	성별	정원	'22 누적인원
경기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7	12
	세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8	17
	세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7	12
대전	민족사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10	12
	사계절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10	15
부산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10	29
	예람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10	30
	더불어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10	30
	푸른열매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10	32
광주	광주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8	12
	광주여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8	3
울산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9	27
경남	살롬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10	31
	소망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10	29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10	32
	연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10	21
제주	이시돌숨비소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남	6	11
	빌라수산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	7	3
계	18개 시설(남 10개, 여 8개)		160	358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 및 실적(2022) 내부자료.

* 주: 2022년 10월 폐업.

(2) 수감명령(2호) 처분 현황

2호 단독처분을 포함한 병합 처분 현황은 표 II-35에 제시하였다. 2호 단독처분과 병합처분을 모두 합한 결과, 2014년에는 9,825명(40.1%)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1년 10,609명(47.9%)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호 단독처분의 경우에는 2014년 단 70명(0.3%)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312명(1.4%)으로 인원수가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서 1호 처분에서 언급했던 1+2호와 1+2+3호, 1+2+5호 처분 이외에 다른 유형의 2호 처분은 감소하였다.

표 II-35. 2호 처분 현황(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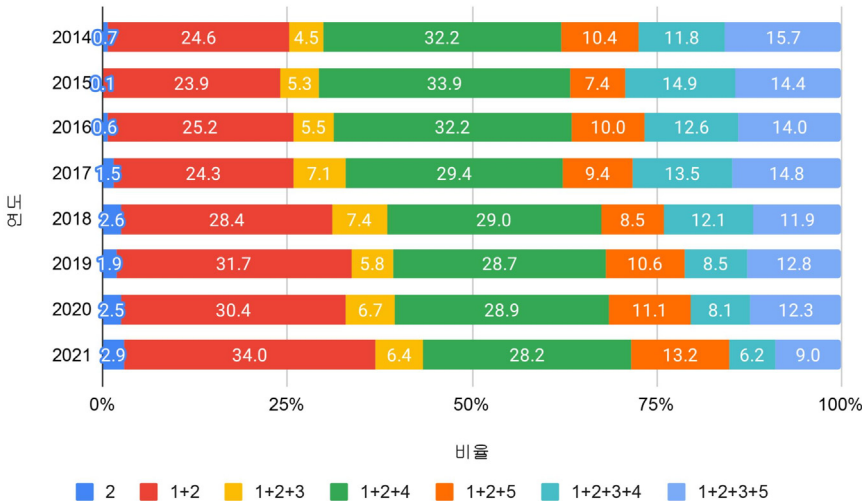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2호 처분 합계	9,825 (40.1)	10,903 (42.1)	10,119 (43.0)	10,296 (42.2)	10,421 (42.5)	9,903 (41.0)	11,627 (45.5)	10,609 (47.9)
2	70 (0.3)	16 (0.1)	59 (0.3)	159 (0.7)	274 (1.1)	187 (0.8)	294 (1.1)	312 (1.4)
1+2	2,420 (9.9)	2,609 (10.1)	2,554 (10.9)	2,504 (10.3)	2,963 (12.1)	3,143 (13.0)	3,531 (13.8)	3,606 (16.3)
1+2+3	445 (1.8)	581 (2.2)	557 (2.4)	727 (3.0)	776 (3.2)	574 (2.4)	776 (3.0)	676 (3.1)
1+2+4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11.8)	3,361 (13.1)	2,990 (13.5)
1+2+5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886 (3.6)	1,048 (4.3)	1,293 (5.1)	1,403 (6.3)
1+2+3+4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940 (3.7)	662 (3.0)
1+2+3+5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432 (5.6)	960 (4.3)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2호 처분 내에서 처분 유형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1+2호와 1+2+4호 병합처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연도에 따라서 1+2호 병합처분은 2014년 24.6%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1+2+4호 병합처분의 경우, 2014년에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28.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2호 처분 합계 기준으로 각 처분 유형 비율을 나타냄.

그림 II-16. 2호 처분 비율 그래프

2호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 중의 하나인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수강명령 사건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되는 수강명령은 성인 사건과 소년 사건으로 나뉘지고, 소년 사건도 근거 법률⁸⁾에 따라 구분된다. 이중 소년법에 의거하여 접수된 현황을 표 II-36에 제시하였고, 성인 사건을 포함한 전체 수강명령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7년에 접수된 전체 수강명령 사건 중 소년 사건의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21

8)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은 소년법 외 형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존재함(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2).

년 11.3%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 소년사건 중에서 소년법에 따라 접수된 수강명령 사건은 2017년 4,888건 중 4,775건이었고, 2021년에는 4,569건 중 4,412건을 차지하였다. 이는 보호관찰소에서 집행되는 소년 대상 수강명령은 대다수 소년법에 근거한 수강명령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보호처분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법원에서 수강명령 집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II-36.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접수사건 연령별 현황(2017~2021)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계	36,657(100)	33,306(100)	34,518(100)	41,672(100)	40,453(100)
성인 ¹⁾ 계	31,769(86.7)	28,683(86.1)	30,393(88.0)	36,246(87.0)	35,884(88.7)
소년 ²⁾ 계	4,888(13.3)	4,623(13.9)	4,125(12.0)	5,426(13.0)	4,569(11.3)
소년법	4,775(13.0)	4,510(13.5)	3,975(11.5)	5,305(12.7)	4,412(10.9)
기타 ³⁾	113(0.3)	113(0.3)	150(0.4)	121(0.3)	157(0.4)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연구진 재구성.

* 주: 1) 성인은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에 해당함.
 2) 소년은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이거나 소년법 대상자인 경우 소년으로 분류됨.
 3) 기타는 소년법 외 형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등에 해당함(법무부 범죄예방통계, 2022)

(3)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현황

3호 단독처분과 3호 병합처분의 현황은 표 II-37에 제시하였다. 전체 보호처분에서 3호 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4년 7,599명(31%)에서 2021년에는 4,105명(18.5%)으로 나타났다. 이 중 3호 단독처분과 1호(보호자위탁)와 2호(수강명령)가 병합된 1+2+3호 처분의 경우는 소폭 증가하였다. 3호 단독처분은 2014년 92명(0.4%)에서 2021년 137명(0.6%)으로 증가하였고, 1+2+3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2014년 445명(1.8%)에서 2021년 676명(3.1%)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외 3호와 병합된 다른 처분 유형에서는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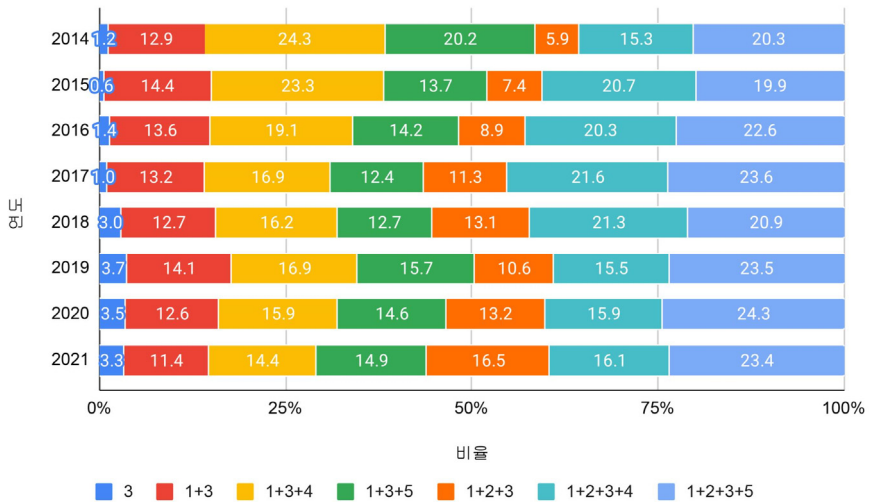
표 II-37. 3호 처분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51,058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3호 처분 합계	7,599 (31.0)	7,875 (30.4)	6,265 (26.6)	6,445 (26.4)	5,917 (24.2)	5,402 (22.4)	5,898 (23.1)	4,105 (18.5)
3	92 (0.4)	49 (0.2)	87 (0.4)	67 (0.3)	175 (0.7)	200 (0.8)	208 (0.8)	137 (0.6)
1+3	982 (4.0)	1,133 (4.4)	851 (3.6)	851 (3.5)	754 (3.1)	759 (3.1)	743 (2.9)	468 (2.1)
1+3+4	1,844 (7.5)	1,832 (7.1)	1,194 (5.1)	1,086 (4.5)	958 (3.9)	915 (3.8)	940 (3.7)	591 (2.7)
1+3+5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754 (3.1)	847 (3.5)	859 (3.4)	611 (2.8)
1+2+3	445 (1.8)	581 (2.2)	557 (2.4)	727 (3.0)	776 (3.2)	574 (2.4)	776 (3.0)	676 (3.1)
1+2+3+4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940 (3.7)	662 (3.0)
1+2+3+5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432 (5.6)	960 (4.3)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3호 처분 내에서 단독처분과 병합처분의 비율을 그림 II-17에 제시하였다. 전체 3호 처분의 비중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처분은 1+2+3+5호 병합처분으로 2014년 20.3%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이다가 2021년 2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1+2+3호 병합처분은 2014년 당시엔 5.9%의 비중에 불과하다 2021년에는 16.5%로 두 번째로 큰 비율을 보였다.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3호 처분 합계 기준으로 각 처분 유형 비율을 나타냄.

그림 II-17. 3호 처분 비율 그래프

보호소년의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표 II-38을 작성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중 소년은 2014년 8,257건(18.8%)에서 2021년 4,076건(9.4%)으로 감소하였다. 소년법에 근거하여 접수된 사회봉사명령은 2014년 6,107건에서 2021년 3,774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전체 소년의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수와의 차이는 감소하였다('14년 2,150건→`21년 302건). 즉, 보호관찰소에서 접수되는 보호소년의 사회봉사명령 사건이 기타 법률에 근거한 범죄소년 등의 사회봉사명령 접수 건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38.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소년 현황(2014~2021)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43,843 (100)	46,707 (100)	49,965 (100)	52,668 (100)	49,873 (100)	47,692 (100)	51,043 (100)	43,161 (100)
성인 ¹⁾	35,586 (81.2)	39,247 (84.0)	43,369 (86.8)	45,509 (86.4)	43,276 (86.8)	42,127 (88.3)	45,809 (89.7)	39,085 (90.6)
소년 ²⁾	8,257 (18.8)	7,460 (16.0)	6,596 (13.2)	7,159 (13.6)	6,597 (13.2)	5,565 (11.7)	5,234 (10.3)	4,076 (9.4)
소년법	6,107 (13.9)	6,128 (13.1)	5,459 (10.9)	5,923 (11.2)	5,650 (11.3)	4,805 (10.1)	4,746 (9.3)	3,774 (8.7)
기타 ³⁾	2,150 (4.9)	1,332 (2.9)	1,137 (2.3)	1,236 (2.3)	947 (1.9)	760 (1.6)	488 (1.0)	302 (0.7)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연구진 재구성.

* 주: 1) 성인은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에 해당함.

2) 소년은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이거나 소년법 대상자인 경우 소년으로 분류됨.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형법, 기타 법률 등 소년법 이외 근거 법률에 해당

(4) 보호관찰(4, 5호) 처분 현황

법원에서의 보호소년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처분 현황은 표 II-39에 제시하였다. 전체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 단독 및 병합 처분은 2014년에 15,590명(63.6%)의 소년이 받았지만, 이후 2021년 11,290명(51%)으로 감소하였다. 보호관찰 처분 유형 중에 증가한 유형을 살펴보면, 4호 단독처분과 5호 단독처분이 2014년에 각각 63명(0.3%), 32명(0.1%)이었다가, 2021년 213명(1.0%), 80명(0.4%)으로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1호 처분(보호자위탁)과 2호 처분(수강명령)이 병과된 1+2+5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2014년 1,026명(4.2%)에서 2021년 1,403명(6.3%)으로 증가하였고,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과 병합된 5+6호 처분을 받은 소년도 2014년 834명(3.4%)에 불과하다가 2021년 1,412명(6.4%)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인원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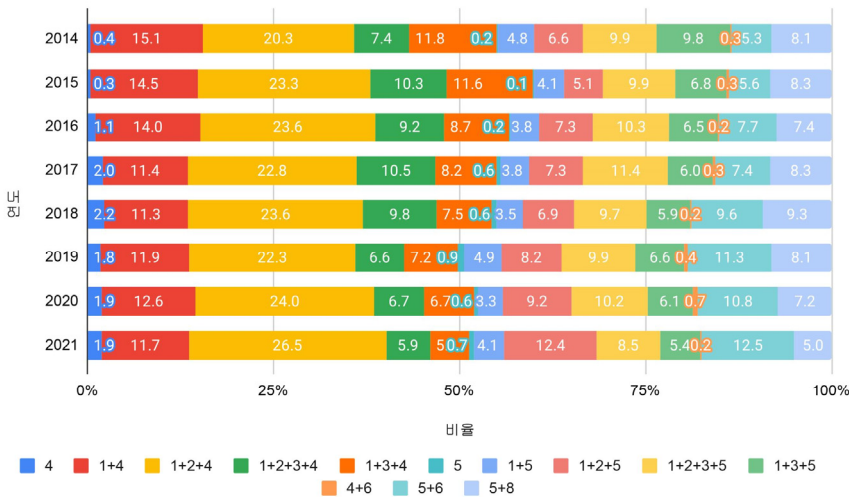
표 II-39. 보호관찰 처분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보호관찰소 처분 합계	15,590 (63.6)	15,861 (61.2)	13,768 (58.5)	13,283 (54.5)	12,825 (52.4)	12,773 (52.9)	14,021 (54.8)	11,290 (51.0)
4	63 (0.3)	40 (0.2)	154 (0.7)	270 (1.1)	279 (1.1)	231 (1.0)	264 (1.0)	213 (1.0)
1+4	2,354 (9.6)	2,299 (8.9)	1,923 (8.2)	1,508 (6.2)	1,447 (5.9)	1,517 (6.3)	1,769 (6.9)	1,318 (6.0)
1+2+4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11.8)	3,361 (13.1)	2,990 (13.5)
1+2+3+4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940 (3.7)	662 (3.0)
1+3+4	1,844 (7.5)	1,832 (7.1)	1,194 (5.1)	1,086 (4.5)	958 (3.9)	915 (3.8)	940 (3.7)	591 (2.7)
4+6	39 (0.2)	46 (0.2)	33 (0.1)	41 (0.2)	32 (0.1)	52 (0.2)	102 (0.4)	21 (0.1)
5	32 (0.1)	19 (0.1)	27 (0.1)	80 (0.3)	81 (0.3)	109 (0.5)	81 (0.3)	80 (0.4)
1+5	742 (3.0)	647 (2.5)	522 (2.2)	505 (2.1)	443 (1.8)	627 (2.6)	467 (1.8)	463 (2.1)
1+2+5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886 (3.6)	1,048 (4.3)	1,293 (5.1)	1,403 (6.3)
1+2+3+5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432 (5.6)	960 (4.3)
1+3+5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754 (3.1)	847 (3.5)	859 (3.4)	611 (2.8)
5+6	834 (3.4)	883 (3.4)	1,063 (4.5)	986 (4.0)	1,229 (5.0)	1,440 (6.0)	1,508 (5.9)	1,412 (6.4)
5+8	1,257 (5.1)	1,316 (5.1)	1,012 (4.3)	1,099 (4.5)	1,194 (4.9)	1,036 (4.3)	1,005 (3.9)	566 (2.6)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보호관찰 처분 내에서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는 1+2+4호 병합처분이 2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2+5호 병합처분의 경우에는 2014년 6.6%에 불과하다가 2021년에 12.4%로 증가하였고, 이와 반대로 1+3+4호 병합처분은 2014년 11.8%였다가 2021년 5.2%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외 5호 단독처분과 4+6호 병합처분은 기간 내 1% 미만의 비율을 유지하며 낮게 나타났다. 4호 단독처분의 비중도 0.4%~2.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은 단독처분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사회 내 다른 처분 유형과 병과되어 처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보호관찰 처분 합계 기준으로 각 처분 유형 비율을 나타냄.

그림 II-18. 보호관찰 처분 비율 그래프

보호관찰 처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소에 접수되는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표 II-40에 제시하였다. 소년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사건은 2014년 20,378명(44.2%)에서 2021년에는 11,853명(26.9%)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보호관찰은 보호소년⁹⁾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¹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40. 보호관찰소 접수사건 소년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46,110 (100)	47,991 (100)	51,844 (100)	53,419 (100)	49,071 (100)	48,508 (100)	45,592 (100)	43,992 (100)
성인 ¹⁾	25,732 (55.8)	28,720 (59.8)	33,626 (64.9)	35,620 (66.7)	32,414 (66.1)	34,069 (70.2)	32,103 (70.4)	32,139 (73.1)
소년 ²⁾	20,378 (44.2)	19,271 (40.2)	18,218 (35.1)	17,799 (33.3)	16,659 (33.9)	14,439 (29.8)	13,489 (29.6)	11,853 (26.9)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 주: 1) 성인은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에 해당함.
2) 소년은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이거나 소년법 대상자인 경우 소년으로 분류됨.

전체 소년 중에서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사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보호관찰소 접수사건 중 소년법과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접수된 사건을 살펴보았다.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은 단기보호관찰(4호)과 장기보호관찰(5호) 처분에 해당하며, 보호관찰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은 소년원 임시퇴원 후 받는 보호관찰에 해당한다. 이처럼 보호관찰소 접수된 사건 중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소년의 수를 추정하여 표 II-41에 제시하였는데 전체 인원수는 감소하였지만 보호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9.3%에서 2021년 94.9%로 증가하였다. 전체 소년사건 중에서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의 비율도 2014년 72.7%에서 2021년 86.9%까지 증가하였다. 단기보호관찰과 장기보호관찰 간 비율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임시퇴원 후에 받는 보호관찰의 비중도 2014년 6.7%에서 2021년 8%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보호소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이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9) 4, 5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9, 10호 보호처분 이후 임시퇴원한 소년
10) 법무부 통계분석 자료는 연령 구분을 접수 시 연령 기준으로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년법으로 접수된 경우에 모두 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형사재판을 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도 포함된 자료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II-41. 보호관찰소 접수사건 보호소년 현황(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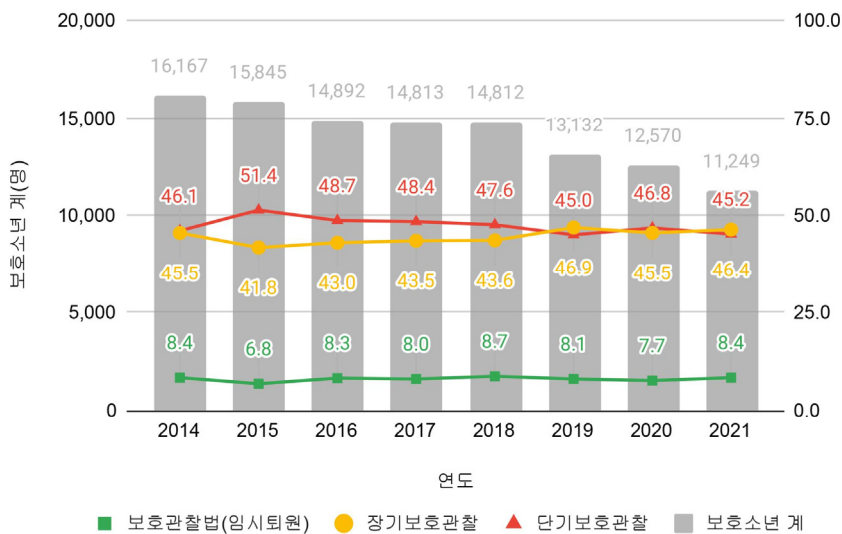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년 계		20,378 (100)	19,271 (100)	18,218 (100)	17,799 (100)	16,659 (100)	14,439 (100)	13,489 (100)	11,853 (100)
보 호 소 년	소계 ¹⁾	16,167 (79.3)	15,845 (82.2)	14,892 (81.7)	14,813 (83.2)	14,812 (88.9)	13,132 (90.9)	12,570 (93.2)	11,249 (94.9)
	보호관찰법 ²⁾	1,357 (6.7)	1,084 (5.6)	1,233 (6.8)	1,192 (6.7)	1,296 (7.8)	1,058 (7.3)	962 (7.1)	944 (8.0)
	소년법 ³⁾	14,810 (72.7)	14,761 (76.6)	13,659 (75.0)	13,621 (76.5)	13,516 (81.1)	12,074 (83.6)	11,608 (86.1)	10,305 (86.9)
	단기보호 관찰	7,451 (36.6)	8,142 (42.3)	7,254 (39.8)	7,175 (40.3)	7,055 (42.3)	5,913 (41.0)	5,884 (43.6)	5,088 (42.9)
	장기보호 관찰	7,359 (36.1)	6,619 (34.3)	6,405 (35.2)	6,446 (36.2)	6,461 (38.8)	6,161 (42.7)	5,724 (42.4)	5,217 (44.0)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연구진 재구성.

- * 주: 1) 보호소년 합계는 소년법과 보호관찰법에 근거하여 보호관찰로 접수된 소년의 계를 구하였음.
 2) 소년원 입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
 3) 소년법은 단기보호관찰(4호 처분)과 장기보호관찰(5호 처분)로 구성됨.

보호소년의 보호관찰 세부 유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II-19에 연도별 장기보호관찰, 단기보호관찰, 입시퇴원 후 보호관찰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보호소년의 총 인원수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각 유형별 비율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기보호관찰이 장기보호관찰의 비율보다 높다가 2019년과 2021년에는 장기보호관찰이 단기보호관찰보다 근소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입시퇴원으로 인한 보호관찰의 경우, 2015년 6.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외에는 7~8%대를 유지하였다.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연구진 재가공.

* 주: 보호관찰소 접수사건 기준 보호소년의 유형별 비율을 연구진이 재가공하였음.

그림 II-19.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현황(2014~2021)

보호관찰 접수 시 소년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42에 제시하였는데, 이때 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을 포함한 전체 소년의 연령 현황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년 보호관찰 접수 건수 중에서 소년의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는 2017년 573건으로 전체의 3.2%였으나 2021년에는 811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여 증가추세를 보였다. 14세 미만 연령 중에서 10세부터 12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연령 중 1% 미만을 차지하였고, 13세의 경우 2017년 471건(2.6%)에서 2021년 661건(5.6%)으로 증가하였다.

표 II-42. 보호관찰 접수사건 세부연령 현황(2017~2021)

(단위 : 건(%))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소계	10세	11세	12세	13세	
2017	17,799 (100)	573 (3.2)	6 (0.03)	17 (0.1)	79 (0.4)	471 (2.6)	17,226 (96.8)
2018	16,659 (100)	714 (4.3)	6 (0.04)	32 (0.2)	81 (0.5)	595 (3.6)	15,945 (95.7)
2019	14,439 (100)	768 (5.3)	1 (0.01)	15 (0.1)	91 (0.6)	661 (4.6)	13,671 (94.7)
2020	13,489 (100)	704 (5.2)	2 (0.01)	14 (0.1)	98 (0.7)	590 (4.4)	12,785 (94.8)
2021	11,853 (100)	811 (6.8)	6 (0.1)	28 (0.2)	116 (1.0)	661 (5.6)	11,042 (93.2)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보호관찰 접수 시 소년의 성별 현황은 표 II-43과 같으며, 이 현황은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을 포함한 전체 소년의 성별 현황인 것을 참고해야 한다. 연도에 관계 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2014년부터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다가 2021년 77.5%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2014년 17.1%에서 2021년 22.5%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43. 보호관찰 접수사건 소년 성별 현황(2014~2021)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년 계	20,378 (100)	19,271 (100)	18,218 (100)	17,799 (100)	16,659 (100)	14,439 (100)	13,489 (100)	11,853 (100)
남성	16,885 (82.9)	16,300 (84.6)	14,980 (82.2)	14,341 (80.6)	13,111 (78.7)	11,118 (77.0)	10,488 (77.8)	9,181 (77.5)
여성	3,493 (17.1)	2,971 (15.4)	3,238 (17.8)	3,458 (19.4)	3,548 (21.3)	3,321 (23.0)	3,001 (22.2)	2,672 (22.5)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보호관찰 접수 시 소년의 사범별 현황은 표 II-44에 제시하였으며, 본 결과도 형사재판을 받은 범죄소년을 포함한 소년의 사범 현황인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양상을 보이긴 하였지만 사범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절도, 폭력, 기타 범죄에 해당하였다. 절도 범죄의 경우, 2017년 전체 사범 중 2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2021년 20.8%로 점차 감소하였다. 폭력 범죄는 2017년 절도 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절도범죄와 마찬가지로 소폭 감소하며 2021년에는 21.2%를 차지하였다. 그 외 사범유형의 비중은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범죄 순으로 나타났고 강력, 풍속, 마약, 경제범죄의 비중은 1% 내외를 차지하였다.

표 II-44. 보호관찰 접수사건 소년 사범별 현황(2017~2021)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7,799(100)	16,659(100)	14,439(100)	13,489(100)	11,853(100)
폭력	4,406(24.8)	4,431(26.6)	3,742(25.9)	2,970(22.0)	2,517(21.2)
교통	1,886(10.6)	1,701(10.2)	1,387(9.6)	1,472(10.9)	1,343(11.3)
절도	4,632(26.0)	3,902(23.4)	3,229(22.4)	3,160(23.4)	2,462(20.8)
사기횡령	1,208(6.8)	1,176(7.1)	1,113(7.7)	1,089(8.1)	938(7.9)
강력	202(1.1)	170(1.0)	143(1.0)	198(1.5)	146(1.2)
마약	94(0.5)	71(0.4)	52(0.4)	31(0.2)	29(0.2)
풍속	187(1.1)	178(1.1)	187(1.3)	149(1.1)	201(1.7)
성폭력	1,095(6.2)	1,078(6.5)	1,032(7.1)	915(6.8)	879(7.4)
경제	56(0.3)	70(0.4)	87(0.6)	61(0.5)	35(0.3)
기타	4,033(22.7)	3,882(23.3)	3,467(24.0)	3,444(25.5)	3,303(27.9)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p. 68.

* 주: 기타는 9개 사범유형 외 모든 유형을 포함하며 이 중 소년법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우범 등도 포함되어 있음

보호관찰 사건 중 소년의 재범률과 성인의 재범률을 표 II-45에 제시하였다. 본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재판을 받은 소년과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과 성인의 재범률 차이는 2015년부터 2021

년까지 지속해서 2배 이상 발생하였는데, 성인의 재범률은 4~5%를 상회하고 있지만, 소년의 재범률은 11%~13%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이 소년범죄의 특성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I-45. 보호관찰 성인 및 소년사건 재범률 비교(2015~2021)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인 사건 재범률	5.2	5.6	5.6	5.1	5.0	5.0	4.5
소년 사건 재범률	11.7	12.3	12.8	12.3	12.8	13.5	12.0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주: 재범률 = (해당 연도 재범자 / 해당 연도 보호관찰 실시 인원) * 100

소년의 보호관찰 사건 중에서 특히 보호소년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거 법률에 따른 소년의 재범률을 살펴보았다(표 II-46).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 보호관찰 사건 중 단기보호관찰 처분의 재범률은 최소 9.2%에서 최대 12.2%로 나타났고, 장기보호관찰처분의 재범률은 최소 13.2%에서 최대 15.4%로 나타나 단기보호관찰 처분의 재범률보다 장기보호관찰 처분의 재범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다 심각한 것은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 사건의 재범률이 최소 13.5%에서 최대 17.1%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재범률보다도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소년원 처분의 효과가 출원 후 지속되기가 어렵거나, 임시퇴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보호관찰로만 이뤄져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지점이다.

표 II-46.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4~2021)

(단위 : %)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6	11.7	12.3	12.8	12.3	12.8	13.5	12.0
형법		11.2	14.2	13.4	14.0	13.2	16.0	13.7	9.5
소년법	소계	11.5	12.7	13.4	13.9	13.1	13.3	13.9	12.2
	단기보호관찰	9.2	10.1	11.4	12.2	11.2	11.0	11.9	9.9
	장기보호관찰	13.2	14.9	15.3	15.4	14.7	14.9	15.2	14.2
보호관찰법(임시퇴원)		13.5	14.6	15.1	15.0	14.7	16.1	17.1	16.0
성폭력처벌법		7.2	1.4	1.8	3.4	6.0	3.5	0.0	0.0
가정폭력처벌법		13.3	9.5	5.6	3.3	8.0	4.9	0.0	3.6
성매매처벌법		0.0	25.0	-	-	-	14.3	50.0	0.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소계	5.1	5.2	5.3	6.2	5.4	6.1	5.8	3.4
	선도위탁 1급	11.5	10.1	12.5	13.0	3.1	5.8	9.1	3.5
	선도위탁 2급	5.0	5.1	5.1	6.1	5.5	6.1	5.6	3.4
청소년성보호법		6.1	4.8	1.7	6.2	7.5	3.6	13.5	2.5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3) 중간 처우

(1) 6호 처분 현황

중간 처우에 해당하는 6호 처분의 현황은 표 II-47에 제시하였다. 법원에서의 전체 보호처분 결정 중 6호 처분(단독+병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6%(882명)에서 2021년 6.5%(1,436명)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대부분 장기보호 관찰 처분인 5호가 병합된 5+6호 처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5+6호 처분은 2014년 3.4%(834명)에서 2021년 6.4%(1,412명)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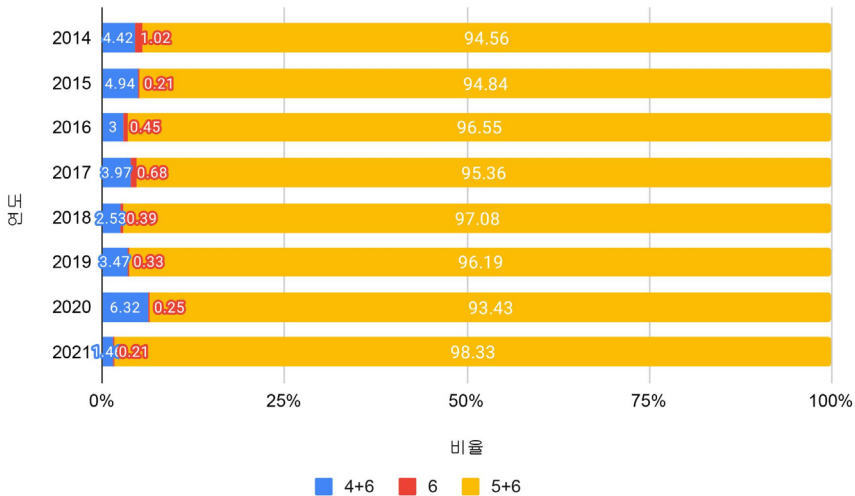
표 II-47. 6호 처분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6호 처분 합계	882 (3.6)	931 (3.6)	1,101 (4.7)	1,034 (4.2)	1,266 (5.2)	1,497 (6.2)	1,614 (6.3)	1,436 (6.5)
6	9 (0.04)	2 (0.01)	5 (0.02)	7 (0.03)	5 (0.02)	5 (0.02)	4 (0.02)	3 (0.01)
4+6	39 (0.2)	46 (0.2)	33 (0.1)	41 (0.2)	32 (0.1)	52 (0.2)	102 (0.4)	21 (0.1)
5+6	834 (3.4)	883 (3.4)	1,063 (4.5)	986 (4.0)	1,229 (5.0)	1,440 (6.0)	1,508 (5.9)	1,412 (6.4)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6호 처분 내에서 처분 유형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20에 제시하였다. 6호 단독처분의 비중은 극히 낮은 편이며 4+6호 병합처분도 2020년 6.3%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1.4%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간 처우와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병합하여 6호 시설 퇴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을 통한 소년의 재범방지 및 교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6호 처분 합계 기준으로 각 처분 유형 비율을 나타냄.

그림 II-20. 6호 처분 비율 그래프

표 II-48에서는 6호 시설 중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에 해당하는 6호 처분 위탁 기관인 8개 시설의 정원 및 현원을 제시하였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서울 3곳,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전북에는 각각 1곳씩 있다. 8개 시설의 정원은 최소 32명(늘사랑청소년 센터)부터 최대 115명(효광원)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1호 처분 위탁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 시설(평균 정원 8.8명)보다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8개 시설의 전체 정원은 2017년까지 503명이었으나 효광원의 정원이 150명에서 115명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부터 전체 정원도 468명으로 감소하였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원을 살펴보았을 때, 8개 시설에 300명 이상의 소년이 입소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치료시설 외에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6호 처분 소년을 위탁하는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표 II-48. 6호 시설 정원 및 현원(2014~2021, 매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명)

지역	구분	정원	현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살레시오청소년센터	80	79	63	75	69	49	53	33	33
	마자렐로센터	50	47	50	52	51	50	48	41	36
	돈보스코오라토리요	45	32	30	31	35	23	39	42	33
대구	늘사랑청소년센터	32	-	9	20	30	30	27	17	29
대전	효광원	150	137	105	116	113	102	99	108	94
경기	나사로청소년의집	40	33	39	36	40	40	40	39	40
충북	로템청소년학교	36	32	34	34	32	32	29	31	27
전북	희망샘학교	70	57	63	65	66	61	45	45	40
계		503	417	393	429	436	387	380	356	332

* 출처: 보건복지부(2015~2022). 아동복지시설현황.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 * 주: 1) 효광원 정원은 2018년부터 115명으로 감소함(정원 합계도 2018년부터 468명으로 감소함).
 2) 늘사랑청소년센터는 2015년에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지정됨.
 3) 현원 기준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임.

4) 시설 내 처우

시설 내 처우는 보호소년이 법무부 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 7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의미한다¹¹⁾. 법원에서 시설 내 처우 처분을 받고 법무부 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현황은 표 II-49에 제시하였다. 시설 처분을 받고 수용된 소년의 수는 2014년 2,363명에서 2016년 2,096명까지 감소하다 2017년 2,45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 1,361명으로 감소하였다. 시설에 수용된 소년의 처분 유형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8호 시설에 수용된 소년이 전체의 39.1%(92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9호 시설 32.5%(768명), 10호 시설 23.8%(56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9호 시설에 수용된 수년이 42.9%(584명)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8호와 10호 시설에 수용된 소년은 각각 24% 정도로 나타났다. 7호 처분을

11) 7호 처분은 의료재활소년원 외에도 병원 및 요양소 등에 위탁처분을 할 수 있으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의 7호 정보는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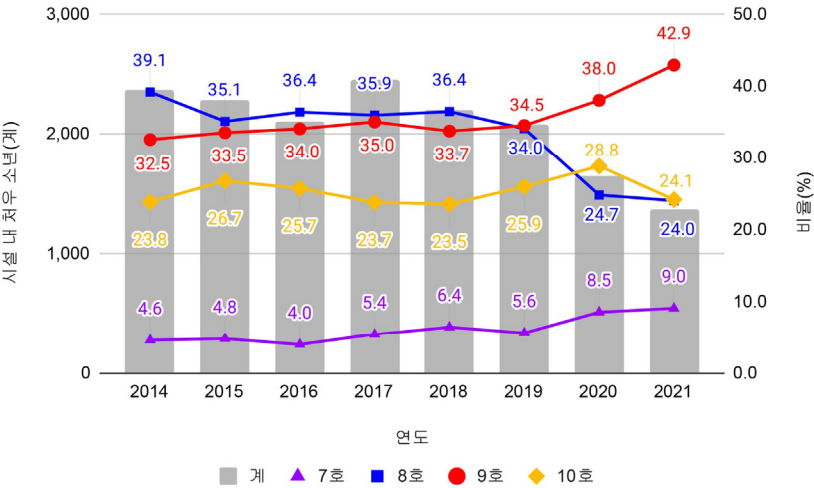
받고 수용된 소년은 2014년 108명(4.6%)에서 2021년 123명(9.0%)으로 증가하였다.

표 II-49.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수용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363 (100)	2,288 (100)	2,096 (100)	2,450 (100)	2,199 (100)	2,077 (100)	1,637 (100)	1,361 (100)
7호	108 (4.6)	109 (4.8)	83 (4.0)	132 (5.4)	141 (6.4)	116 (5.6)	139 (8.5)	123 (9.0)
8호	925 (39.1)	802 (35.1)	762 (36.4)	880 (35.9)	801 (36.4)	707 (34.0)	405 (24.7)	326 (24.0)
9호	768 (32.5)	766 (33.5)	713 (34.0)	857 (35.0)	741 (33.7)	716 (34.5)	622 (38.0)	584 (42.9)
10호	562 (23.8)	611 (26.7)	538 (25.7)	581 (23.7)	516 (23.5)	538 (25.9)	471 (28.8)	328 (24.1)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연구진 재구성.

그림 II-21.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수용 현황(2014~2021)

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50에 제시하였다. 보호소년의 대부분은 14세 이상이었으며(최소 96% 이상), 14세 미만은 소수로 나타났다(최대 3.1%). 14세 미만은 10세에서 12세의 비중이 1% 미만을 차지하였고, 13세는 1~2%대의 비율을 보였다. 14세 이상은 16~17세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컸고, 14~15세와 18세의 비중은 20%대로 비슷하였으며, 19세 이상의 비중 10%대를 차지하였다.

표 II-50.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세부 연령별 현황(2017~2021)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소계	10세	11세	12세	13세	소계	14~15세	16~17세	18세	19세 이상
2017	2,450 (100)	34 (1.4)	0 (0.0)	1 (0.0)	3 (0.1)	30 (1.2)	2,416 (98.6)	417 (17.0)	1,213 (49.5)	601 (24.5)	185 (7.6)
2018	2,199 (100)	29 (1.3)	0 (0.0)	0 (0.0)	5 (0.2)	24 (1.1)	2,170 (98.7)	413 (18.8)	998 (45.4)	561 (25.5)	198 (9.0)
2019	2,077 (100)	59 (2.8)	0 (0.0)	0 (0.0)	4 (0.2)	55 (2.6)	2,018 (97.2)	424 (20.4)	951 (45.8)	474 (22.8)	169 (8.1)
2020	1,637 (100)	51 (3.1)	1 (0.1)	4 (0.2)	7 (0.4)	39 (2.4)	1,586 (96.9)	310 (18.9)	746 (45.6)	373 (22.8)	157 (9.6)
2021	1,361 (100)	27 (2.0)	2 (0.1)	0 (0.0)	2 (0.1)	23 (1.7)	1,334 (98.0)	304 (22.3)	597 (43.9)	287 (21.1)	146 (10.7)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시설에 수용된 소년의 성별 현황은 표 II-51에 제시하였다. 2014년에는 남성이 86.7%, 여성이 13.3%를 차지하였지만, 2021년에는 남성이 78.6%로 감소하고 여성의 비중이 21.4%로 증가하였다. 즉,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비율이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51.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363 (100)	2,288 (100)	2,096 (100)	2,450 (100)	2,199 (100)	2,077 (100)	1,637 (100)	1,361 (100)
남성	2,048 (86.7)	1,939 (84.7)	1,835 (87.5)	2,116 (86.4)	1,846 (83.9)	1,697 (81.7)	1,343 (82.0)	1,070 (78.6)
여성	315 (13.3)	349 (15.3)	261 (12.5)	334 (13.6)	353 (16.1)	380 (18.3)	294 (18.0)	291 (21.4)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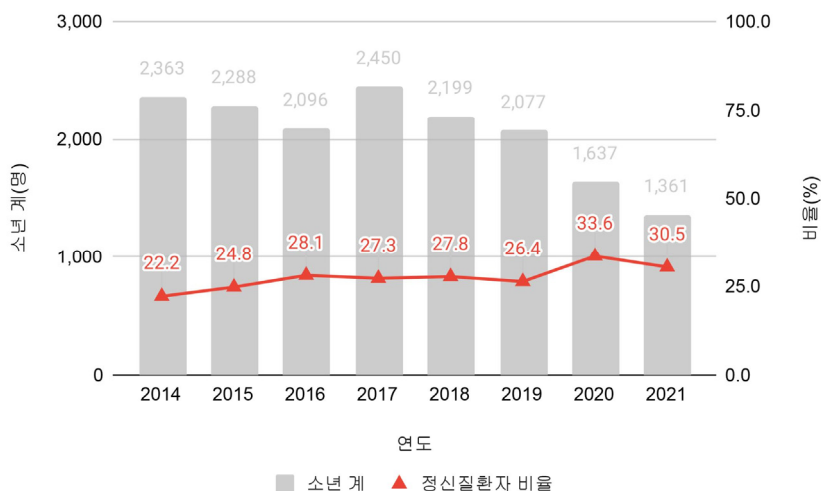
시설에 수용된 소년 중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52와 그림 II-22에 제시하였다. 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은 2014년 525명(22.2%) 이었고, 2021년 415명(30.5%)으로 비중은 증가하고 인원수는 감소하였다. 이는 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인원수 감소와 함께 절대적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의 비중은 증가하여 전체에서 30%를 초과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II-52.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363 (100)	2,288 (100)	2,096 (100)	2,450 (100)	2,199 (100)	2,077 (100)	1,637 (100)	1,361 (100)
정신질환자	525 (22.2)	568 (24.8)	590 (28.1)	669 (27.3)	611 (27.8)	548 (26.4)	550 (33.6)	415 (30.5)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연구진 재구성.

그림 II-22. 시설 내 처우 정신질환자 비율 현황(2014~2021)

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연령과 사범별 현황은 표 II-53에 제시하였다. 전체 사범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호관찰법 위반이었다. 보호관찰법 위반은 2017년 995명(40.6%), 2018년 834명(37.9%), 2019년 784명(37.7%), 2020년 531명(32.4%), 2021년 487명(35.8%)으로 최근 5년간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절도범죄로 수용된 보호소년은 2017년 420명(17.1%)에서 2021년 189명(13.9%)으로 감소하였다. 폭력범죄는 2017년 303명(12.4%)으로 전체 사범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21년에는 175명(12.9%)으로 감소하였다. 성폭력 범죄로 수용된 소년은 2017년 185명(7.6%)으로 사기횡령 범죄(139명, 5.7%)보다 높았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1년에는 성폭력 범죄로 수용된 소년이 49명(3.6%)으로 사기횡령 범죄로 수용된 소년보다(69명, 5.1%) 낮게 나타났다. 수용된 소년 중 소년법위반과 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7년에는 각각 16명(0.7%)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21년에 소년법위반은 126명(9.3%), 우범은 47명(3.5%)으로 증가하였다.

표 II-53. 시설 내 처우 보호소년 연령 및 사범별 현황(2017~2021)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2,450 (100)	34 (1.4)	2,416 (98.6)	2,199 (100)	29 (1.3)	2,170 (98.7)	2,077 (100)	59 (2.8)	2,018 (97.2)	1,637 (100)	51 (3.1)	1,586 (96.9)	1,361 (100)	27 (2.0)	1,334 (98.0)
폭력	303 (12.4)	1 (0.0)	302 (12.3)	357 (16.2)	4 (0.2)	353 (16.1)	304 (14.6)	7 (0.3)	297 (14.3)	231 (14.1)	4 (0.2)	227 (13.9)	175 (12.9)	0 (0.0)	175 (12.9)
교통	147 (6.0)	0 (0.0)	147 (6.0)	128 (5.8)	0 (0.0)	128 (5.8)	137 (6.6)	0 (0.0)	137 (6.6)	110 (6.7)	1 (0.1)	109 (6.7)	104 (7.6)	0 (0.0)	104 (7.6)
절도	420 (17.1)	5 (0.2)	415 (16.9)	350 (15.9)	6 (0.3)	344 (15.6)	326 (15.7)	11 (0.5)	315 (15.2)	268 (16.4)	10 (0.6)	258 (15.8)	189 (13.9)	1 (0.1)	188 (13.8)
사기횡령	139 (5.7)	1 (0.0)	138 (5.6)	158 (7.2)	3 (0.1)	155 (7.0)	127 (6.1)	1 (0.0)	126 (6.1)	86 (5.3)	0 (0.0)	86 (5.3)	69 (5.1)	0 (0.0)	69 (5.1)
강력	36 (1.5)	0 (0.0)	36 (1.5)	49 (2.2)	2 (0.1)	47 (2.1)	29 (1.4)	0 (0.0)	29 (1.4)	19 (1.2)	3 (0.2)	16 (1.0)	18 (1.3)	2 (0.1)	16 (1.2)
마약	14 (0.6)	0 (0.0)	14 (0.6)	6 (0.3)	0 (0.0)	6 (0.3)	14 (0.7)	1 (0.0)	13 (0.6)	2 (0.1)	0 (0.0)	2 (0.1)	2 (0.1)	0 (0.0)	2 (0.1)
풍속	39 (1.6)	0 (0.0)	39 (1.6)	24 (1.1)	0 (0.0)	24 (1.1)	30 (1.4)	0 (0.0)	30 (1.4)	22 (1.3)	1 (0.1)	21 (1.3)	31 (2.3)	1 (0.1)	30 (2.2)

	2017			2018			2019			2020			2021		
성폭력	185 (7.6)	10 (0.4)	175 (7.1)	139 (6.3)	1 (0.0)	138 (6.3)	140 (6.7)	11 (0.5)	129 (6.2)	78 (4.8)	6 (0.4)	72 (4.4)	49 (3.6)	1 (0.1)	48 (3.5)
경제	6 (0.2)	0 (0.0)	6 (0.2)	7 (0.3)	0 (0.0)	7 (0.3)	14 (0.7)	1 (0.0)	13 (0.6)	4 (0.2)	0 (0.0)	4 (0.2)	2 (0.1)	0 (0.0)	2 (0.1)
기타	134 (5.5)	7 (0.3)	127 (5.2)	93 (4.2)	2 (0.1)	91 (4.1)	83 (4.0)	1 (0.0)	82 (3.9)	67 (4.1)	0 (0.0)	67 (4.1)	62 (4.6)	1 (0.1)	61 (4.5)
보호관찰법위반	995 (40.6)	7 (0.3)	988 (40.3)	834 (37.9)	5 (0.2)	829 (37.7)	784 (37.7)	12 (0.6)	772 (37.2)	531 (32.4)	8 (0.5)	523 (31.9)	487 (35.8)	8 (0.6)	479 (35.2)
소년법위반	16 (0.7)	1 (0.0)	15 (0.6)	28 (1.3)	2 (0.1)	26 (1.2)	38 (1.8)	8 (0.4)	30 (1.4)	139 (8.5)	6 (0.4)	133 (8.1)	126 (9.3)	9 (0.7)	117 (8.6)
우범	16 (0.7)	2 (0.1)	14 (0.6)	26 (1.2)	4 (0.2)	22 (1.0)	51 (2.5)	6 (0.3)	45 (2.2)	80 (4.9)	12 (0.7)	68 (4.2)	47 (3.5)	4 (0.3)	43 (3.2)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연구진 재가공.

(1) 7호 처분 현황

소년보호재판에서 7호 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의 현황은 아래 표 II-54와 같다. 전체 보호처분 결정 중에서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비율은 최소가 2016년 0.4%(105명)이고 최대가 2019년 1.1%(269명)로 대체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의 정원에 한계로 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I-54. 7호 처분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7호 처분	183 (0.7)	141 (0.5)	105 (0.4)	198 (0.8)	230 (0.9)	269 (1.1)	189 (0.7)	193 (0.9)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7호 처분을 받고 법무부의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의 수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표 II-55와 같다. 7호 처분은 법원의 처분 결정 현황과 마찬가지로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2017년 132명에서 2021년 123명으로 인원수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은 2017년 8.3%(11명)에서 2021년 10.6%(13명)로 증가하였고, 14세 이상의 소년 비율은 2017년 91.7%(121명)에서 2021년 89.4%(110명)로 감소하였다.

표 II-55. 7호 처분 연령별 수용 현황(2017~2021)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2(100)	141(100)	116(100)	139(100)	123(100)
14세 미만	11(8.3)	12(8.5)	19(16.4)	19(13.7)	13(10.6)
14세 이상	121(91.7)	129(91.5)	97(83.6)	120(86.3)	110(89.4)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7호 시설에서 출원하는 인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56과 그림 II-23과 같다. 2018년부터 기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무부는 7호 처분 퇴원 이후에 “보호관찰관을 통한 치료적 처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퇴원 전에 단기 보호관찰로 처분변경을 활성화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2: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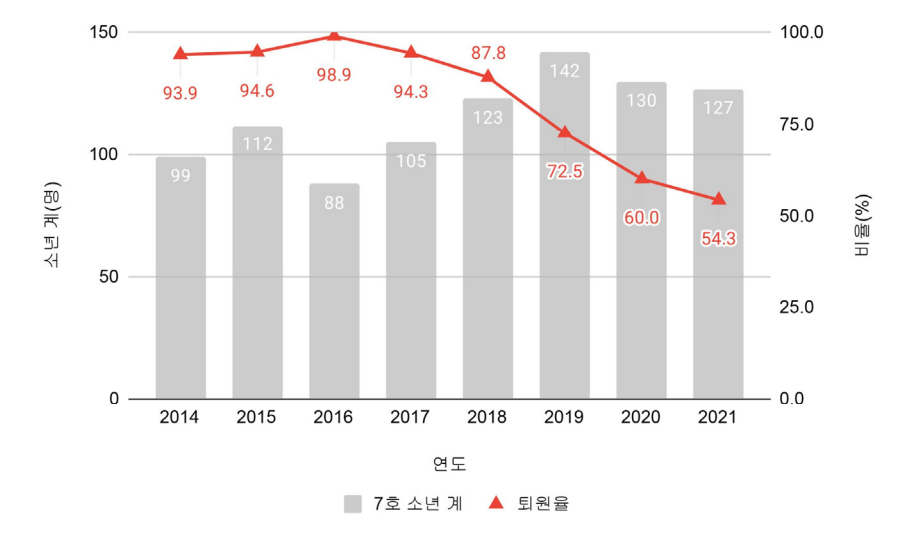
표 II-56. 7호 출원 현황(2014~2021)

(단위 : 명(%))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9(100)	112(100)	88(100)	105(100)	123(100)	142(100)	130(100)	127(100)
퇴원	93(93.9)	106(94.6)	87(98.9)	99(94.3)	108(87.8)	103(72.5)	78(60.0)	69(54.3)
기타	6(6.1)	6(5.4)	1(1.1)	6(5.7)	15(12.2)	39(27.5)	52(40.0)	58(45.7)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 주: 7호 보호소년의 '기타 출원'은 '7호 처분의 취소'와 '단기 보호관찰로의 처분변경'에 의한 출원으로 구성된다.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연구진 재가공.

그림 II-23. 7호 출원 현황(2014~2021)

(2) 8호 처분 현황

시설 내 처우에서 쇼크구금이라고도 불리는 8호 처분의 현황은 표 II-57과 같다. 법원의 8호 처분 결정은 2014년 1,257명에서 2021년 579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보호처분 결정 중에서 8호 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4~5%대를 유지하다 2021년에는 2.6%로 감소하였다. 특히, 8호 처분은 단독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으며 대부분이 장기보호관찰인 5호 처분과 병합된 형태로 처분되었다.

표 II-57. 8호 처분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8호 처분 합계	1,257 (5.1)	1,321 (5.1)	1,015 (4.3)	1,099 (4.5)	1,203 (4.9)	1,061 (4.4)	1,011 (4.0)	579 (2.6)
8	-	5 (0.02)	3 (0.01)	-	9 (0.04)	25 (0.1)	6 (0.02)	13 (0.1)
5+8	1,257 (5.1)	1,316 (5.1)	1,012 (4.3)	1,099 (4.5)	1,194 (4.9)	1,036 (4.3)	1,005 (3.9)	566 (2.6)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8호 처분의 수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표 II-58과 같다. 8호 처분의 수용 현황은 법원의 처분 현황과 비슷하게 2017년 880명에서 2021년 326명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9년 707명에서 2020년 405명으로 300명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3월~5월, 12월에 수용인원이 없었기 때문이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1: 254). 연령별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14세 이상의 소년이 97% 이상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8호 처분으로 수용된 소년 중에는 14세 미만의 연령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58. 8호 처분 연령별 수용 현황(2017~2021)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880(100)	801(100)	707(100)	405(100)	326(100)
14세 미만	9(1.0)	5(0.6)	20(2.8)	7(1.7)	2(0.6)
14세 이상	871(99.0)	796(99.4)	687(97.2)	398(98.3)	324(99.4)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8호 시설의 출원 현황은 표 II-59와 그림 II-24에 제시하였다. 8호 처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97% 이상의 소년들이 8호 처분의 1개월의 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9. 8호 출원 현황(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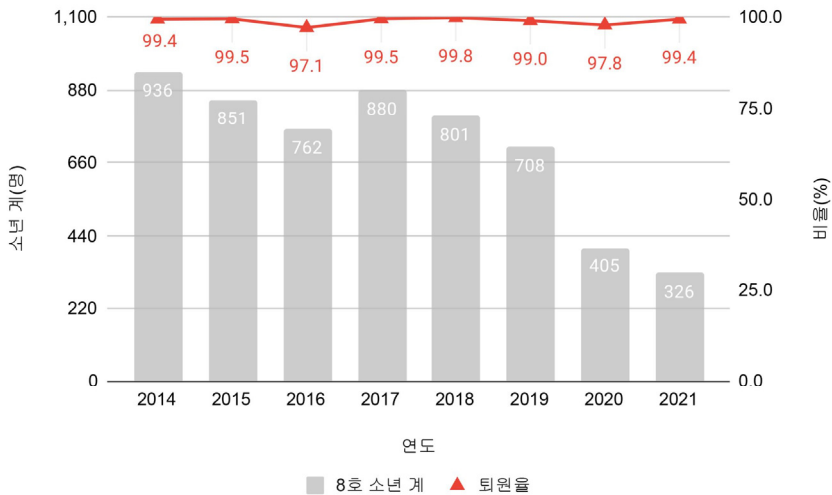
(단위 : 명(%))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36 (100)	851 (100)	762 (100)	880 (100)	801 (100)	708 (100)	405 (100)	326 (100)
퇴원	930 (99.4)	847 (99.5)	740 (97.1)	876 (99.5)	799 (99.8)	701 (99.0)	396 (97.8)	324 (99.4)
기타	6 (0.6)	4 (0.5)	22 (2.9)	4 (0.5)	2 (0.2)	7 (1.0)	9 (2.2)	2 (0.6)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 주: '기타 출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구속 등으로 출원하거나 검정고시 응시, 직업훈련 자격 응시 등으로 출원을 연기한 보호소년을 포함.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그림 II-24. 8호 출원 현황(2014~2021)

(3) 9호, 10호 처분 현황

법원에서 내려지는 9, 10호 처분 현황은 표 II-60에 제시하였다. 9호(단기 소년원) 및 10호(장기 소년원) 처분은 전체 보호처분 결정 중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약 1,600명 정도의 인원이 해당하고, 차지하는 비율도 6~7%였지만, 2021년에는 1,050명(4.7%)으로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2021년의 소년원 처분의 변화는 단기 처분인 9호(750명 → 608명)보다 장기 처분인 10호 처분의 감소(823명 → 442명)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0. 9, 10호 처분 현황(2014~2021)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처분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25,579 (100)	22,144 (100)
소년원 처분 합계	1,625 (6.6)	1,660 (6.4)	1,540 (6.5)	1,728 (7.1)	1,621 (6.6)	1,601 (6.6)	1,573 (6.1)	1,050 (4.7)
단기 처분(9호)	812 (3.3)	794 (3.1)	770 (3.3)	972 (4.0)	842 (3.4)	821 (3.4)	750 (2.9)	608 (2.7)
장기 처분(10호)	813 (3.3)	866 (3.3)	770 (3.3)	756 (3.1)	779 (3.2)	780 (3.2)	823 (3.2)	442 (2.0)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소년원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438명으로 최대 인원이 수용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912명이 수용되었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14세 이상의 소년이 수용되는 경우가 97.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4세 미만의 경우 2.3% 이하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기소년원 처분인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만 처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II-61. 9, 10호 처분 연령별 수용 현황(2017~2021)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소계	9호	10호*	소계	9호	10호
2017	1,438 (100)	14 (1.0)	11 (0.8)	3 (0.2)	1,424 (99.0)	846 (58.8)	578 (40.2)
2018	1,257 (100)	12 (1.0)	6 (0.5)	6 (0.5)	1,245 (99.0)	735 (58.5)	510 (40.6)
2019	1,254 (100)	20 (1.6)	13 (1.0)	7 (0.6)	1,234 (98.4)	703 (56.1)	531 (42.3)
2020	1,093 (100)	25 (2.3)	11 (1.0)	14 (1.3)	1,068 (97.7)	611 (55.9)	457 (41.8)
2021	912 (100)	12 (1.3)	6 (0.7)	6 (0.7)	900 (98.7)	578 (63.4)	322 (35.3)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주: 「소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12세 이상의 소년만 처분 가능함.

소년원 처분의 출원 현황은 표 II-62에 제시하였다. 9호 처분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하여 처분 기간을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가 9호 처분 출원 인원 중 2014년 40.1%(346명)에서 2021년 22.8%(132명)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임시퇴원율은 2014년 57.4%(496명)에서 2021년 72.9%(423명)로 크게 증가하였다.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10호)을 받은 소년의 만기퇴원율은 더욱 낮게 나타났는데, 2014년 10.3%(73명)에서 2021년에는 오직 7.3%(36명)만이 처분 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임시퇴원율은 2019년 77.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외 기간에는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처분변경, 처분취소, 구속 등으로 출원하거나 검정고시 응시, 직업훈련 자격 응시 등으로 출원을 연기한 소년에 해당하는 기타의 비율은 2014년 6.1%에서 2021년 8.8%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II-62. 9, 10호 출원 현황(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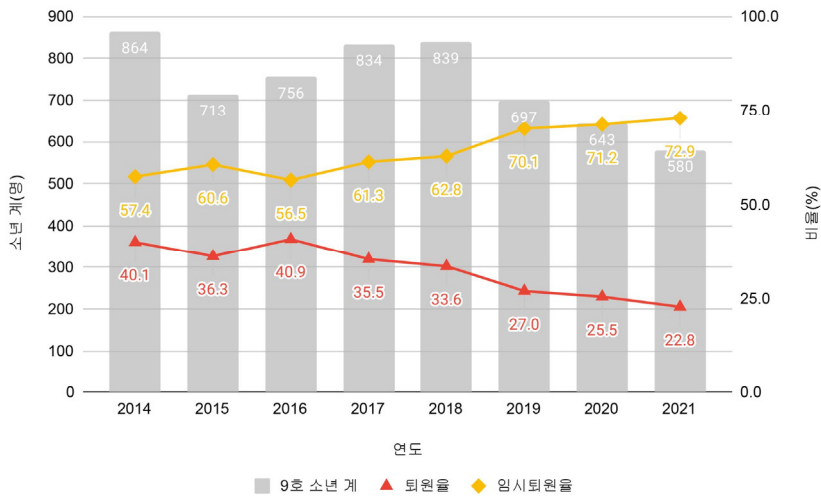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호	계	864 (100)	713 (100)	756 (100)	834 (100)	839 (100)	697 (100)	643 (100)	580 (100)
	퇴원	346 (40.1)	259 (36.3)	309 (40.9)	296 (35.5)	282 (33.6)	188 (27.0)	164 (25.5)	132 (22.8)
	임시퇴원	496 (57.4)	432 (60.6)	427 (56.5)	511 (61.3)	527 (62.8)	489 (70.1)	458 (71.2)	423 (72.9)
	기타	22 (2.5)	22 (3.1)	20 (2.6)	27 (3.2)	30 (3.6)	20 (2.9)	21 (3.3)	25 (4.3)
10호	계	709 (100)	566 (100)	610 (100)	530 (100)	648 (100)	501 (100)	493 (100)	491 (100)
	퇴원	73 (10.3)	71 (12.5)	56 (9.2)	56 (10.6)	70 (10.8)	68 (13.6)	49 (10.0)	36 (7.3)
	임시퇴원	593 (83.6)	457 (80.8)	519 (85.1)	437 (82.4)	542 (83.6)	387 (77.2)	401 (81.3)	412 (83.9)
	기타	43 (6.1)	38 (6.7)	35 (5.7)	37 (7.0)	36 (5.6)	46 (9.2)	43 (8.7)	43 (8.8)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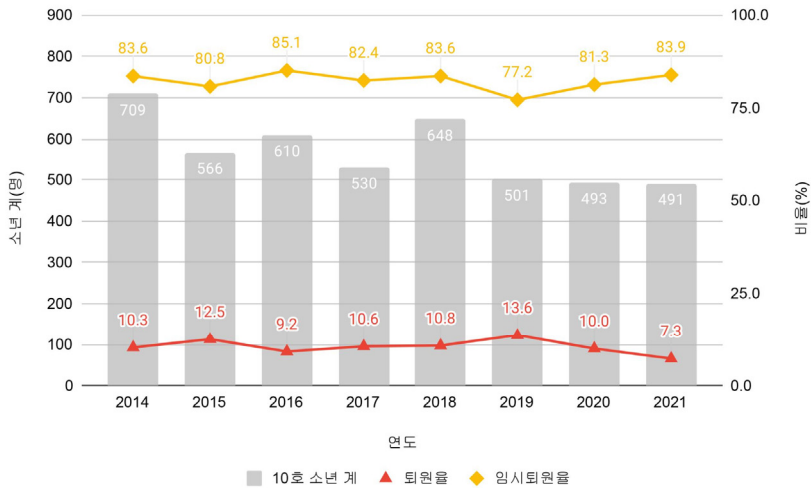
* 주: '기타 출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구속 등으로 출원하거나 검정고시 응시, 직업훈련 자격 응시 등으로 출원을 연기한 보호소년을 포함.

소년원 처분인 9호와 10호의 퇴원 및 임시퇴원에 대한 비율은 그림 II-25과 그림 II-26에 제시하였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만기퇴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임시퇴원율은 증가하였다.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만기퇴원율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임시퇴원율은 높게 나타났다.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연구진 재가공.

그림 II-25. 9호 출원 현황(2014~2021)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연구진 재가공.

그림 II-26. 10호 출원 현황(2014~2021)

5) 소년분류심사원 현황

보호처분은 아니지만 임시조치로 소년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년분류심사원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법원에서 임시위탁을 결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접수된 인원은 2014년 4,025명에서 2021년 2,667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어 분류심사를 받은 이후 처리된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보호처분 결정이 전체의 96%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심리를 개시하지 않거나 타법원으로 이송하거나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가 각각 1%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불처분 결정은 1~2%대로 나타났다.

임시위탁 후 보호처분이 결정된 경우를 사회 내 처우(1호부터 5호 처분 결정에 해당), 중간 처우(6호 처분 결정), 시설 내 처우(7호부터 10호 처분 결정에 해당)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 내 처우의 비중은 2014년 62.8%에서 2021년 58.3%로 감소하였지만 세 가지 처분 유형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시설 내 처우의 비중이 2014년 25.9%에서 2021년 21.1%로 높게 나타났다. 중간 처우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4년 7.2%에서 2021년 16.7%로 증가하였다. 이를 임시조치 되지 않고 결정된 보호처분 전체 결과와 비교하면 사회 내 처우, 시설 내 처우, 중간 처우의 비중이 차이가 존재하였다. 임시조치 되지 않고 바로 결정된 보호처분 유형 중에서 시설 내 처우 비중이 10% 안팎으로 나타나고¹²⁾, 중간 처우는 최대 6.5% 이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¹³⁾, 소년분류심사 이후에는 중간 처우 및 시설 처분으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12) 전체 보호처분 결정 중 시설 내 처우는 2014년 3,065건(12.5%), 2015년 3,122건(12%), 2016년 2,660건(11.3%), 2017년 3,025건(12.4%), 2018년 3,054건(12.5%), 2019년 2,931건(12.1%), 2020년 2,773건(10.8%), 2021년 1,822건(8.2%)이다.

13) 전체 보호처분 결정 중 중간 처우는 2014년 882건(3.6%), 2015년 931건(3.6%), 2016년 1,101건(4.7%), 2017년 1,034건(4.2%), 2018년 1,266건(5.2%), 2019년 1,497건(6.2%), 2020년 1,614건(6.3%), 2021년 1,436건(6.5%)이다.

표 II-63. 소년보호 임시조치(임시위탁결정) 및 처리인원(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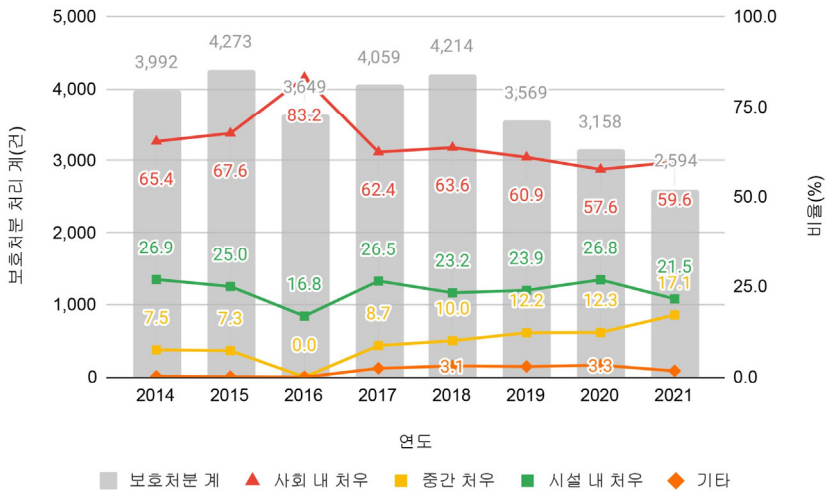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4,025	3,921	3,403	3,393	3,965	3,320	3,029	2,667
처리	소계 ¹⁾	4,154 (100)	4,452 (100)	3,769 (100)	4,159 (100)	4,304 (100)	3,664 (100)	3,239 (100)	2,655 (100)
	보호처분 ²⁾	3,992 (96.1)	4,273 (96.0)	3,649 (96.8)	4,059 (97.6)	4,214 (97.9)	3,569 (97.4)	3,158 (97.5)	2,594 (97.7)
	사회 내 처우	2,610 (62.8)	2,890 (64.9)	3,036 (80.6)	2,533 (60.9)	2,682 (62.3)	2,175 (59.4)	1,818 (56.1)	1,547 (58.3)
	중간 처우	300 (7.2)	312 (7.0)	0 (0.0)	353 (8.5)	423 (9.8)	437 (11.9)	389 (12.0)	444 (16.7)
	시설 내 처우	1,074 (25.9)	1,067 (24.0)	613 (16.3)	1,075 (25.8)	979 (22.7)	853 (23.3)	847 (26.2)	559 (21.1)
	기타	8 (0.2)	4 (0.1)	0 (0.0)	98 (2.4)	130 (3.0)	104 (2.8)	104 (3.2)	44 (1.7)
	심리불개시	31 (0.7)	37 (0.8)	24 (0.6)	16 (0.4)	12 (0.3)	4 (0.1)	5 (0.2)	3 (0.1)
	불처분결정	110 (2.6)	124 (2.8)	84 (2.2)	67 (1.6)	57 (1.3)	57 (1.6)	45 (1.4)	42 (1.6)
	타법원에이송	15 (0.4)	11 (0.2)	10 (0.3)	14 (0.3)	16 (0.4)	30 (0.8)	28 (0.9)	15 (0.6)
	검사에게송치	6 (0.1)	7 (0.2)	2 (0.1)	3 (0.1)	5 (0.1)	2 (0.1)	3 (0.1)	1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0 (0.0)	0 (0.0)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1) 임시조치 된 이후 처리된 인원내 해당함.

2)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1호~5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 6호 처분은 중간 처우, 7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내 처우로 구분함.



* 출처: 법원행정처(2014~2021).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 주: 1) 임시조치 된 이후 처리된 인원에 해당하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만을 대상으로 보고함.
 2)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1호~5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 6호 처분은 중간 처우, 7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내 처우로 구분함.

그림 II-27. 임시위탁 결정 이후 보호처분 처리 현황(2014~2021)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에서 실시되는 소년분류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64와 같다. 전체 분류심사 건수는 2014년 5,543건에서 2015년 5,804건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5,116건으로 감소, 다시 2017년에는 5,614건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18년부터 분류심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3,620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류심사 중 일반 분류심사의 비율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58%부터 최대 71.6%까지 차지하였고, 특수분류심사는 최소 28.4%부터 42%를 차지하였다.

표 II-64.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4~2021)

(단위 : 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543 (100)	5,804 (100)	5,116 (100)	5,614 (100)	5,385 (100)	4,755 (100)	4,267 (100)	3,620 (100)
일반	3,467 (62.5)	3,477 (59.9)	2,969 (58.0)	3,905 (69.6)	3,853 (71.6)	3,235 (68.0)	2,853 (66.9)	2,514 (69.4)
특수*	2,076 (37.5)	2,327 (40.1)	2,147 (42.0)	1,709 (30.4)	1,532 (28.4)	1,520 (32.0)	1,414 (33.1)	1,106 (30.6)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 주: 특수분류심사는 상습비행자, 성격·행동이상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검사 외에 MMPI, BGT 등의 추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심층적인 분류심사임.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 임시위탁된 소년의 연령 및 사범별 현황은 표 II-65에 제시하였다. 전체 임시위탁 소년 중 14세 미만은 2017년 266명(4.5%)이고, 14세 이상은 5,643명(95.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021년에는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임시위탁 소년이 367명(9.5%)으로 증가하고 14세 이상은 3,509명(90.5%)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사범 유형 중에서는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임시위탁 된 소년이 가장 많았다.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은 2017년에는 1,782명으로 전체 사범 중 30.2%를 차지하였고, 이후 감소하여 2021년에는 871명으로 22.5%로 나타났다. 그다음 임시위탁 소년 사범 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폭력과 절도였다. 2017년 폭력 사범은 1,121명(19.0%), 절도 사범은 1,133명(19.2%)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이후 2021년에 폭력 사범은 551명(14.2%), 절도 사범은 629명(16.2%)으로 감소하였다. 성폭력 범죄는 2017년 417명(7.1%)이었다가 소폭 감소하여 2021년에는 248명(6.4%)으로 나타났다. 교통범죄와 사기횡령 범죄는 2017년에 각각 328명(5.6%), 326명(5.5%)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는 교통범죄가 261명(6.7%), 사기횡령범죄가 215명(5.5%)으로 나타났다. 임시위탁 소년 사범 유형 중 소년법위반과 우범은 눈에 띄는 증가폭을 보였다. 소년법위반 소년은 2017년 76명(1.3%)에 불과하다가 2021년에는 215명(5.5%)으로 증가하였고, 우범소년은 2017년 135명(2.3%)이었다가 2021년 478명(12.3%)으로 인원수와 비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II-65. 임시위탁 소년 연령 및 사범별 현황(2017~2021)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5,909 (100)	266 (4.5)	5,643 (95.5)	5,703 (100)	327 (5.7)	5,376 (94.3)	4,955 (100)	362 (7.3)	4,593 (92.7)	4,297 (100)	304 (7.1)	3,993 (92.9)	3,876 (100)	367 (9.5)	3,509 (90.5)
폭력	1,121 (19.0)	45 (0.8)	1,076 (18.2)	1,146 (20.1)	69 (1.2)	1,077 (18.9)	850 (17.2)	39 (0.8)	811 (16.4)	647 (15.1)	28 (0.7)	619 (14.4)	551 (14.2)	38 (1.0)	513 (13.2)
교통	328 (5.6)	4 (0.1)	324 (5.5)	363 (6.4)	6 (0.1)	357 (6.3)	256 (5.2)	5 (0.1)	251 (5.1)	288 (6.7)	7 (0.2)	281 (6.5)	261 (6.7)	7 (0.2)	254 (6.6)
절도	1,133 (19.2)	72 (1.2)	1,061 (18.0)	1,106 (19.4)	89 (1.6)	1,017 (17.8)	970 (19.6)	84 (1.7)	886 (17.9)	785 (18.3)	72 (1.7)	713 (16.6)	629 (16.2)	81 (2.1)	548 (14.1)
사기횡령	326 (5.5)	5 (0.1)	321 (5.4)	388 (6.8)	10 (0.2)	378 (6.6)	327 (6.6)	10 (0.2)	317 (6.4)	281 (6.5)	4 (0.1)	277 (6.4)	215 (5.5)	8 (0.2)	207 (5.3)
강력	79 (1.3)	2 (0.0)	77 (1.3)	84 (1.5)	3 (0.1)	81 (1.4)	55 (1.1)	1 (0.0)	54 (1.1)	61 (1.4)	4 (0.1)	57 (1.3)	54 (1.4)	2 (0.1)	52 (1.3)
마약	32 (0.5)	7 (0.1)	25 (0.4)	17 (0.3)	0 (0.0)	17 (0.3)	18 (0.4)	1 (0.0)	17 (0.3)	3 (0.1)	0 (0.0)	3 (0.1)	10 (0.3)	1 (0.0)	9 (0.2)
풍속	92 (1.6)	1 (0.0)	91 (1.5)	85 (1.5)	0 (0.0)	85 (1.5)	68 (1.4)	5 (0.1)	63 (1.3)	67 (1.6)	7 (0.2)	60 (1.4)	125 (3.2)	7 (0.2)	118 (3.0)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성폭력	417 (7.1)	34 (0.6)	383 (6.5)	411 (7.2)	44 (0.8)	367 (6.4)	353 (7.1)	40 (0.8)	313 (6.3)	274 (6.4)	34 (0.8)	240 (5.6)	248 (6.4)	29 (0.7)	219 (5.7)
경제	13 (0.2)	0 (0.0)	13 (0.2)	26 (0.5)	1 (0.0)	25 (0.4)	23 (0.5)	2 (0.0)	21 (0.4)	8 (0.2)	0 (0.0)	8 (0.2)	4 (0.1)	1 (0.0)	3 (0.1)
기타	375 (6.3)	31 (0.5)	344 (5.8)	317 (5.6)	12 (0.2)	305 (5.3)	264 (5.3)	15 (0.3)	249 (5.0)	193 (4.5)	4 (0.1)	189 (4.4)	215 (5.5)	21 (0.5)	194 (5.0)
보호관찰법위반	1,782 (30.2)	32 (0.5)	1,750 (29.6)	1,399 (24.5)	34 (0.6)	1,365 (23.9)	1,196 (24.1)	50 (1.0)	1,146 (23.1)	886 (20.6)	30 (0.7)	856 (19.9)	871 (22.5)	37 (1.0)	834 (21.5)
소년법위반	76 (1.3)	10 (0.2)	66 (1.1)	113 (2.0)	19 (0.3)	94 (1.6)	140 (2.8)	25 (0.5)	115 (2.3)	318 (7.4)	26 (0.6)	292 (6.8)	215 (5.5)	25 (0.6)	190 (4.9)
우범	135 (2.3)	23 (0.4)	112 (1.9)	248 (4.3)	40 (0.7)	208 (3.6)	435 (8.8)	85 (1.7)	350 (7.1)	486 (11.3)	88 (2.0)	398 (9.3)	478 (12.3)	110 (2.8)	368 (9.5)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연구진 재가공.

6) 보호자교육 관련 현황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부가처분에 해당하는 보호자교육을 집행한 현황은 표 II-66과 같다. 2014년에는 보호자가 자원해서 보호자교육을 받는 경우가 86.5%였으나 2020년 65.1%로 급감하였는데 법무부는 이를 코로나19로 인해 자원 교육이 축소되어 나타난 감소로 설명하고 있다(법무부, 2022). 보호자교육을 의무로 실시한 경우는 2014년 1,237건에서 2016년 1,871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1년에는 단 159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호자교육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외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나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위탁한 시설에서도 집행되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표 II-6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4~2021)

(단위 : 건(%))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192 (100)	8,964 (100)	9,465 (100)	6,337 (100)	4,978 (100)	3,053 (100)	703 (100)	495 (100)
자원	7,955 (86.5)	7,532 (84.0)	7,594 (80.2)	5,614 (88.6)	4,289 (86.2)	2,668 (87.4)	458 (65.1)	336 (67.9)
의무(부가처분)	1,237 (13.5)	1,432 (16.0)	1,871 (19.8)	723 (11.4)	689 (13.8)	385 (12.6)	245 (34.9)	159 (32.1)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7) 조사 관련 현황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이외에 실시되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와 청소년비행 예방센터의 조사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보호소년이 보호관찰소에서 받는 법원의 결정전조사는 2014년 8,154건(65.9%)으로 나타나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 보호사건을 포함한 전체 조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전조사가 6,888건(38.1%)으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건수(8,491건, 46.9%)보다 감소하였다.

표 II-67.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1)

(단위 : 건(%))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373 (100)	17,678 (100)	16,931 (100)	16,606 (100)	19,597 (100)	19,007 (100)	17,813 (100)	18,096 (100)
소년보호사건	8,154 (65.9)	8,847 (50.0)	8,046 (47.5)	7,795 (46.9)	8,601 (43.9)	7,578 (39.9)	7,644 (42.9)	6,888 (38.1)
가정보호사건	4,051 (32.7)	8,298 (46.9)	8,079 (47.7)	7,750 (46.7)	9,842 (50.2)	10,260 (54.0)	8,685 (48.8)	8,491 (46.9)
아동보호사건	26 (0.2)	372 (2.1)	541 (3.2)	733 (4.4)	986 (5.1)	1,115 (5.9)	1,426 (8.0)	2,660 (14.7)
성매매 보호사건	128 (1.0)	161 (0.9)	261 (1.5)	327 (2.0)	163 (0.8)	52 (0.3)	51 (0.3)	49 (0.3)
기타	14 (0.1)	0 (0.0)	4 (0.0)	1 (0.0)	5 (0.0)	2 (0.0)	7 (0.0)	8 (0.0)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조사는 2014년 4,261건(29.8%)에서 2019년 2,421건(16.4%)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2020년 2,589(40.1%), 2021년 2,968건(39.8%)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 II-6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4~2021)

(단위 : 건(%))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4,281 (100)	15,165 (100)	16,466 (100)	17,112 (100)	14,092 (100)	14,743 (100)	6,460 (100)	7,456 (100)
상담조사	4,261 (29.8)	4,119 (27.2)	3,993 (24.2)	4,179 (24.4)	3,224 (22.9)	2,421 (16.4)	2,589 (40.1)	2,968 (39.8)
청소년 심리상담	10,020 (70.2)	11,046 (72.8)	12,473 (75.8)	12,933 (75.6)	10,868 (77.1)	12,322 (83.6)	3,871 (59.9)	4,488 (60.2)

* 출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4.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보호소년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제도를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보호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다양한 문헌과 통계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년범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통계자료의 구축 필요

보호소년의 범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자료를 각각 살펴봐야 했고, 부분적으로만 파악이 가능하였다. 특히 저연령 소년의 범죄가 흉포화, 전문화된다는 주장의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기준으로 촉법소년의 강력(흉악)범죄는 2013년 558건(5.6%)에서 2021년 1,247건(10.0%)으로 증가하였지만, 강력(흉악)범죄의 증가 추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강력(흉악)범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강력(흉악)범죄를 형법과 특별법에 명시된 범죄명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서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구분의 범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강간 미수 등의 통상적으로 흉악범죄로 생각되는 범죄가 있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피해자의 신체촬영과 같은 통신매체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성관련 범죄가 있다. 본 장에서는 두 가지 범죄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의 강력(흉악)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해석할 때에는 세부 범죄 내용을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의 범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소년보호제도 내에서 소년의 요보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

소년의 범죄 특성뿐만 아니라 요보호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의 사법연감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의 가족관계, 주거형태 등에 대한 한정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었다. 소년법의 목적대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소년에게 조정되어야 할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우범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법원에서의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우범소년 사건의 발생 및 처리 동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범소년의 사건 접수는 2013년에 10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446명으로 약 10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게다가 2021년 기준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중 심리불개시 결정이 24.5%, 불처분 결정이 7.8%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우범소년의 경우 심리불개시는 11%, 불처분은 6%에 불과하였다. 특히, 보호처분 결정 중에서도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시설에 수용되는 비중이 전체 보호처분 결정 중에서 2021년 기준 9.7%였으며, 중간 처우 처분의 비율인 23.5%까지 합하면 약 33.2%로 높게 나타났다(전체 보호소년의 중간 처우 6.5%와 시설 내 처우 처분의 비율 8.2%를 더하면 14.7%임). 우범소년에게 이러한 중간 처우 및 시설 내 처우 처분을 하는 것은 우범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설에서 범죄소년에게 범죄를 학습하고, 비행 또래와의 접촉을 촉진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우범소년 보호 방안 및 우범소년에 관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을 위한 처분제도 개선

소년원에 수용된 인원수는 감소 추세이나 7호 처분자를 수용하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비중은 증가하였다(19년 5.6% → '20년 8.5% → '21년 9.0%). 또한 소년원에 수용된 인원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의 비중도 2020년부터 30%를 초과하고 있어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재활소년원의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만기퇴원이 2018년 87.8%에서 2021년에는 단 54.3%로 급감하였다. 대신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출원한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을 통한 치료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처분변경신청(단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변경)하여 출원시키는 비율이 2018년 12.2%에서 2021년 45.7%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황은 정신질환 및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보호소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보호관찰 처분의 개선 및 소년원 처분 임시퇴원 후 재범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은 성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소년원 임시퇴원자의 재범률과 장기보호관찰(5호) 처분자의 재범률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보호관찰 처분자의 재범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실시되는 보호관찰이 집중적인 후속 조치로 기능하여 시설에서의 교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재범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여 보호관찰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6) 보호처분 집행기관 및 지역 균형을 위한 시설 확대

보호처분 집행기관 중 사회복지적 접근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서 소년을 보호하는 개념을 지닌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과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처분 집행기관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법원의 6호 처분 결정은 2014년에 비해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6호 처분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정원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법원의 1호 처분 결정 비중이 전체 보호처분 결정 중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신병인수위탁보호를 수행하는 기관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단 7개의 시도에만 존재하였다. 그마저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보호처분 집행기관이 시설의 설립 취지대로 기능하고 보호처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집행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최소 시도 단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 및 분석

- 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개요
- 2. 소년보호재판 자료 설계
- 3. 소년보호재판 자료 분석 결과
- 4. 소결 및 시사점

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개요

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이 장에서 분석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방의 법원 소년부에서 판사가 재판 준비를 위해 작성한 비망록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사건의 특성, 소년의 심리·정서·행동 특징, 교우관계,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처분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자료는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소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특정 기간에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기나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이 메모는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사건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며 소년보호제도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는 심리 개시가 결정되어 재판 기일이 잡힌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한 명의 소년부 판사가 재판을 준비하면서 보호소년의 처우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 준비 메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의 기본 단위는 심리 개시가 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을 기준으로 한 자료는 불처분, 보호처분 결정 등을 포함하여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재판은 한 개 이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건’을 기본 단위로 한 분석을 통해 범죄유형, 범죄시간, 공범여부 등 소년이 가담한 사건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재판의 당사자인 ‘소년’

14) 이 장은 한윤선 부교수(서울대학교)가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를 분석하고 공동집필 하였음.

을 기준으로 재판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하여 분석하면 소년의 개인 및 환경 특성, 소년의 재판 이력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자료에 한 소년에 대하여 단 1개의 재판 준비 메모가 있는 경우는 ‘단수재판’으로,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복수재판’이라고 정의하였다. 복수재판은 (1) 소년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일자에 심리가 다시 열리는 경우, (2) 임시위탁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일자에 심리가 다시 열리는 경우, (3) 독립적으로 발생한 다른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 복수재판 중 (1)과 (2)는 중복재판이라 하였다.

소년보호재판은 사건유형에 따라 5개의 사건부호가 있는데(‘푸’, ‘크15’, ‘트16’, ‘푸초’, ‘푸집’), 본 연구 자료로 활용된 재판 준비 메모에서는 ‘푸’, ‘푸초’, ‘푸집’만 등장하므로 3개의 유형에 대한 분석만 이루어졌다. ‘푸’ 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로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 ‘푸초’ 사건은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등 소년보호신청사건을 의미하고, ‘푸집’ 사건은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에 해당한다.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에서는 ‘푸초’ 사건은 보호처분변경신청, ‘푸집’ 사건은 보호처분집행감독으로 사건명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서는 재판메모에 기록된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소년보호사건(‘푸’)은 경찰서장, 검사, 형사법원을 통해 송치가 이루어지거나 보호자가 경찰서,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통고제도를 통해 시작된다. 반면에 소년보호신청사건(‘푸초’)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소년에 대한 처분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 소년부는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푸집’)은 1호, 6호, 7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처분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법원이 감독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하게 된다.

15) 소년보호항고사건
16) 소년보호재판항고사건

2.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3단계를 거쳐 추출하였다. 첫째, 사건 날짜 정보가 모두 있는 재판 준비 메모만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한 자료 중 최초 사건의 발생 날짜와 보호소년의 생년월일을 활용하여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의 연령을 계산하였다. 셋째,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추출한 자료 중 연구대상 기간(2013년 3월~2018년 2월) 동안 해당 소년에 대해 열린 모든 재판에 대한 준비 메모를 다시 추출하였다.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이 촉법소년이었던 재판은 728건이었다. 728건의 재판 이외에 연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소년에 대하여 중복재판이나 독립된 사건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732건이었다.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은 728건과 732건을 합한 총 1,460건의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이다.

본 연구를 위해 추출한 총 1,460건의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를 분석단위 기준으로 다시 (1) 재판 기준 (2) 사건 기준 (3) 소년 기준의 독립된 자료로 구축하였다.

첫째, 재판을 분석단위로 구축한 자료는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총 1,460건의 재판 중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의 재판이 1,345건(9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처분변경 신청사건(‘푸초’ 사건) 재판이 112건(7.7%),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푸집’ 사건) 재판이 3건(0.2%)이었다. 한편, 각 재판은 사건의 종결 여부에 따라 각각 ‘최종판결’과 ‘최종판결 아님’으로 구분된다. 최종판결을 나타내는 처우로는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검찰송치, 기각, 화해권고 등)가 있으며, 최종판결이 아닌 경우는 소년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타 임시조치(장기상담, 장기시험관찰, 전문가진단 등)가 내려진 경우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총 1,460건의 소년보호재판 자료 중 최종판결이 있는 재판은 총 929건이며, 이 중 보호처분이 757건, 불처분이 156건, 기타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종판결이 아닌 재판은 총 531건이며, 이 중 불출석이 409건, 임시위탁이 111건, 기타(상담, 전문가관찰 등)가 11건이었다.

표 III-1.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결과

(단위 : 건(%))

재판구분		소년보호사건 재판		보호처분변경신청/ 보호처분집행감독 재판		소계	
처리구분							
최종판결	보호처분	681(50.6)	842 (62.6)	76(66.1)	87 (75.7)	757(51.8)	929 (63.6)
	불처분	156(11.6)		0(0.0)		156(10.7)	
	기타	5 ^a (0.4)		11 ^b (9.6)		16(1.1)	
최종판결 아님	불출석	392(29.1)	503 (37.4)	17(14.8)	28 (24.3)	409(28.0)	531 (36.4)
	임시위탁	100(7.4)		11(9.6)		111(7.6)	
	기타	11 ^c (0.8)		0(0.0)		11(0.8)	
계		1,345(100.0)		115(100.0)		1,46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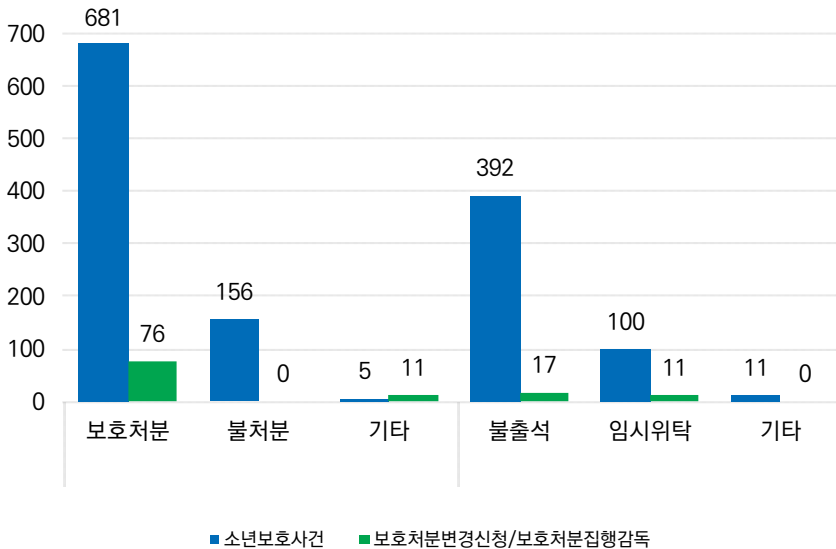
* 주: ^a검찰송치, 기각, 화해견고 등; ^b기각 등; ^c장기상담, 장기시험관찰, 전문가진단 등

그림 III-1.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현황

둘째, 재판 준비 메모는 각 재판에서 심리하는 개별 ‘사건’을 분석단위로 하여 구축할 수 있다. ‘사건’을 분석단위로 한 자료 구축에서는 소년보호사건(‘푸’ 사건)만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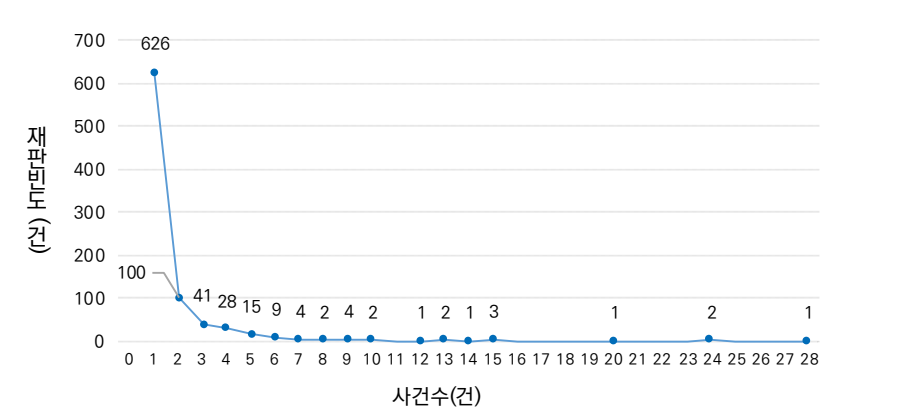
하여 구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은 총 1,483건이었다. 1건의 재판에서 1개 이상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재판 당 다뤄지는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은 평균 1.8건이었다(재판 당 최소 1건, 최대 28건).

표 Ⅲ-2. 사건 수 별 재판 빈도

(단위 : 건(%))

사건 수	재판 빈도	사건 수 X 재판 빈도
1건	626(74.3)	626(42.2)
2건	100(11.9)	200(13.5)
3건	41(4.9)	123(8.3)
4건	28(3.3)	112(7.6)
5건	15(1.8)	75(5.1)
6건	9(1.1)	54(3.6)
7건 이상	23(2.7)	293(19.8)
계	842(100.0)	1,483(100.0)
전체	평균 1.8, 표준편차 2.3, 최소값 1, 최대값 28	

* 주: 여기에서 사건 수는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을 의미함.
사건 수 7건 이상은 전체 사건 수의 1% 미만으로 사건 수 7~28건을 통합하여 제시하였음.



* 주: 여기에서 사건 수는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을 의미함.

그림 Ⅲ-2. 사건 수 별 재판 빈도

셋째, 재판 준비 메모는 ‘소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구축할 수도 있다. 한 명의 소년이 여러 번 재판을 받는 경우¹⁷⁾가 있으므로 재판 자료는 1,470건이지만 재판을 받은 소년의 수는 728명이다. 연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약 5년 동안 소년 한 명은 평균 2건의 재판(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포함)을 받았고, 최대 25건의 복수재판을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Ⅲ-3. 촉법소년(최초 재판 기준) 연도 별 재판 빈도

(단위 : 명(%))

연 도	2013 ^a	2014	2015	2016	2017	2018 ^b	계
계	155 (100.0)	202 (100.0)	126 (100.0)	121 (100.0)	102 (100.0)	22 (100.0)	728 (100.0)
보호처분	107 (69.0)	145 (71.8)	72 (57.1)	77 (63.6)	66 (64.7)	11 (50.0)	478 (65.7)
불처분	10 (6.5)	21 (10.4)	17 (13.5)	22 (18.2)	17 (16.7)	10 (45.5)	97 (13.3)
임시위탁	6 (3.9)	12 (5.9)	9 (7.1)	5 (4.1)	11 (10.8)	1 (4.5)	44 (6.0)
불출석	32 (20.6)	21 (10.4)	26 (20.6)	13 (10.7)	7 (6.9)	0 (0.0)	99 (13.6)
기타	0 (0.0)	3 (1.5)	2 (1.6)	4 (3.3)	1 (1.0)	0 (0.0)	10 (1.4)

* 주: 1) ^a2013년 3월~12월; ^b2018년 1월~2월.

2) 이 표는 복수재판으로 인해 소년 정보가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최초 재판 정보만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 재판은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을 포함함.

2) 조사표 항목

재판 준비 메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표 Ⅲ-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표의 항목 구분은 크게 자료 특성, 판결 특성, 사건 특성, 보호소년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17) ① 소년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임시조치로 인해 중복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② 새로운 사건 발생으로 소년이 독립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③ 보호처분변경신청이나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으로 추가 재판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함.

표 III-4. 조사표의 구성

구분	소구분	항목
자료 특성	재판 개요	재판 기일, 재판 순서
	복수재판 관련	복수재판 여부, 중복재판 이유(가위탁, 불출석 등)
판결 특성	보호처분	1~10호, 기타(보호자특별교육, 외출제한 등)
	보호처분 외	불처분, 임시위탁, 기타(검찰송치, 화해권고 등)
사건 특성	사건 관련	사건 발생 날짜, 사건 발생 시간, 범죄명, 범행 장소
	공범 관련	공범 수
보호 소년 특성	인구사회 특성	성별, 재판 당시 거주 특이사항
	가족 관련	가족구성원 관련 정보, 부모 혼인(변경)상태, 학대방임, 부모갈등, 경제적 상황 등이 드러나는 문구 일체
	학교 관련	재판 당시 학업 상태, 전학/자퇴/유예 경험, 학교생활, 징계 유무
	비행 관련	가출, 무단결석, 외박, 음주, 흡연, 중독(게임, 컴퓨터), 성매매, 노래방/피시방/당구장 출입, 성경험, 음란물, 기타(문신, 오토바이, 도박 등)
	심리정서 관련	자해/자살시도/자살충동 유무, ADHD, 인지관련장애(지적장애, 경계선장애), 품행장애, 우울증, 분노/충동조절장애 진단 여부
	전과 관련	전과유무, 전과 수, 전과 일시, 전과 처분결과
	기타	신체적 특성, 피해경험, 특기, 진로/진학 희망, 사회복지시설 거주 경험

먼저 자료의 특성에 따른 조사표의 구성은 재판 개요와 복수재판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재판 개요에는 재판 기일, 재판 순서 등이 포함된다. 복수재판 관련한 항목으로는 복수재판 여부와 중복재판 이유 등이 해당된다. 재판은 재판 수에 따라 단수재판과 복수재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수재판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소년에 대하여 1건의 재판만 열린 경우이다. 복수재판은 연구대상 기간 동안 소년에 대해 2건 이상의 재판이 열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2건 이상의 독립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각각 개시된 경우, 이전 재판에서 임시위탁 처분을 받았거나 이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의 사유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판 기일이 잡힌 중복재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판결 특성은 보호처분, 보호처분 외 등으로 구성된다. 처분결과는 판사가 수기로 처분결과를 기입하였거나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년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 사이의 처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나 외출제한 등의 기타 처분 내용에 관해 코딩하였다. 보호처

분 외에 불처분, 임시위탁, 기타(검찰송치, 화해권고 등) 판결 또한 각각 코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사건 특성은 사건, 공범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사건 관련 정보는 개별 사건의 발생 날짜 및 시간, 개별 사건 범죄명, 범행 장소를 코딩하였다. 공범 관련 정보는 공범의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건에 개입된 공범의 수를 기록하였다.

보호소년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학교, 비행, 심리정서, 전과 관련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과 재판 당시 거주 특이사항이 포함된다. 성별은 원자료에 명시적인 기록은 없으며 가족구성원의 정보나 처분결과 정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연구진이 추가로 정보를 입력하여 코딩하였다. 재판 당시 거주 특이사항은 원자료에 친구집, 친척집, 시설(교회 등) 거주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코딩하였다. 가족 관련 특성은 가족구성원 관련 정보, 부모 혼인(변경) 상태, 학대방임 여부, 부모 갈등, 경제적 상황 등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하여 재판 준비 메모에 기록된 내용을 텍스트 그대로 기록하였다. 가족구성원 관련 정보로는 가족구성원 구분(예를 들어 친생모, 친생부 등), 거주상태(예를 들어, 동거, 별거, 수감 등), 직업, 보호소년과의 관계(예를 들어, 사이가 나쁨) 등을 의미하며, 부모 혼인(변경) 상태는 재판 당시 부모의 혼인 상태 및 과거 혼인 상태 등의 정보를 기록하였다. 학교 관련 특성은 재판 당시 소속 및 학업 상태, 전학/자퇴/유예 경험 여부, 학교 징계 여부 등에 대해 자료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를 기록하였다. 비행 관련 특성에는 가출, 무단결석, 외박, 음주, 흡연, 중독(게임, 컴퓨터), 성매매, 노래방/피시방/당구장 출입, 성경험, 음란물, 기타(문신, 오토바이, 도박 등) 경험의 정보가 명시된 경우 이분형 변인을 생성하여 각각의 비행경험 유무로 코딩하고('유'=1, '무'=0), 비행 경험 텍스트도 그대로 기록하였다. 심리정서 관련 특성은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시도/자해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ADHD, 인지관련장애(지적장애, 경계선장애),品行장애, 우울증, 분노/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 기록하였다. 전과 관련 정보는 전과 유무, 전과 수, 전과 처분 일자, 전과 처분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코딩하였다. 기타 특성으로는 보호소년의 신체적 특성, 학교폭력 등 피해 경험 여부, 보육원이나 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거주 경험, 특기, 진로/진학 희망사항 등의 정보가 드러난 경우, 텍스트 그대로 기록하였다.

3) 연구변인 설계

(1) 위기요인 키워드

분석에 사용한 위기요인 키워드는 여성가족부(2022: 179)의 ‘위기 스크리닝 척도’와 경찰청 소년업무처리규칙 제17조의 ‘소년환경조사서(재비행위험성 평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과 아동청소년학·아동가족학·청소년복지학 전공자로 이루어진 연구진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키워드 구성을 수정하고 정교화하였다. 위기영역은 크게 개인, 가정, 학교/또래로 구분되며, 영역별로 각각 13개, 11개, 6개의 세부 위기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변인은 표 III-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표에서 각 요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탐색하여 사건을 구축하고, 해당 키워드의 유무를 통해 이분형 변인(‘유’=1, ‘무’=0)을 생성하였다.

각 영역별 위기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영역은 보호소년 개인과 관련된 13개 위기요인으로 정신질환, 신체질환, 인지 관련, 음주, 흡연, 가출, 중독, 성매매, 과한 성적관심, 심리(성격, 태도), 위험 행동/활동 관련, 성폭력 피해경험, 자살 관련 위기요인을 포함한다. 각 위기요인을 반영하는 여러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공황장애’, ‘우울증’, ‘틱장애’, ‘정신과병원’ 등의 키워드가 존재하면 정신질환 위기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길거리배회’, ‘불량교우관계’, ‘상당 거부’ 등의 키워드는 위험 행동/활동 관련 위기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정 영역은 보호소년 개인이 아닌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11개 위기요인으로 정신질환, 신체질환, 중독, 형 집행 유무, 형제자매 비행, 가정폭력 및 갈등, 학대 방임 경험, 보호자 사망, 부모 별거/이혼/가출, 경제적 문제, 사회복지시설 거주경험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신체질환은 가족구성원의 신체질환을 말하며, ‘간암’, ‘소아마비’, ‘파킨슨 병’, ‘백내장’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다. 형제자매 비행의 경우 소년의 형제 혹은 자매의 특성 중에 ‘보호관찰’, ‘소년원’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면 해당 위기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교/또래 영역은 보호소년의 학교 및 주변 친구와 관련된 6개 위기요인으로 학교징계 유무,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행또래, 학업성적/태도, 결석(무단결석), 학업중단 경험(자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학업성적/태도는 보호소년의 부정적인 학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적최하위권’, ‘수업분위기 저해’ 등을 키워드로 갖는다. 한편, 대부분의 위기요인 변인 생성이 키워드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행또래는 조사표 내 사건특성의 공범판

런 항목을 통해 비행도래의 유무를 판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변인을 생성하였다.

표 Ⅲ-5. 영역별 위기요인 세부 변인 및 키워드(예시)

구분	연번	위기요인	키워드
개인 영역	1	정신질환	공황장애, 과잉행동장애, 놀이치료, 몽유병, 분노조절장애, 불면증, 상담치료, 우울성 행실장애, 우울증, 자폐증, 정신과 치료 등
	2	신체질환	간질, 골절, 귀에서 진물, 꼬리뼈를 다친, 뇌전증, 두개골 골절, 맹장염, 물혹, 백혈병, 복강염, 비뇨기과 수술, 사고로 장기간 입원 등
	3	인지 관련	경계선지능, 말이 어눌함, 언어발달이 늦어, 언어이해력과 표현력이 낮음, 언어치료기관, 인지능력 낮음 등
	4	음주	소주, 알콜 의존, 음주
	5	흡연	교내흡연, 금연, 담배
	6	가출	가출, 무단외박, 상습가출, 외박
	7	중독	게임, 스포츠토트, 인터넷, 휴대폰, TV 등
	8	성매매	성매매, 원조교제, 키스방근무 등
	9	과한 성적 관심	무분별한 성관계, 성중독, 성충동, 야동, 야한 이야기, 음란물, 자위, 콘돔, 포르노 등
	10	심리 (성격, 태도)	감정조절부족, 공격적, 규범의식 미약, 충동적, 폭력적, 단순 무지, 대인효능감, 두려움, 리더십, 무기력증, 반항, 분노 등
	11	위험 행동/활동	길거리배회, 늦게 기상, 늦은 귀가, 당구장, 만화책, 문신, 불량교우관계, 상담 거부, 오토바이, 생활태도 불량, 일진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
	12	성폭력 피해경험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13	자살 관련	자살, 자해
가정 영역	1	가족구성원 정신질환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발달장애, 분노조절 어려움, 불면증, 소통에 장애, 언어장애, 우울증, 자폐, 저지능, 정신병원 입원 등
	2	가족구성원 신체질환	간경화, 간암, 간질, 간질환, 고관절 장애, 고지혈증, 고혈압, 골육종수술, 병원생활, 시각장애, 심장질환, 알콜성간염, 위암, 지체장애 등
	3	가족구성원 중독	게임중독, 경마도박, 도박중독, 마약상습투약, 매일 음주, 알콜 의존, 알콜중독 등
	4	가족구성원 형 집행 유무	교도소, 구치소, 마약사범, 벌금형, 범죄전력, 복역, 수감, 음주사고 등
	5	형제자매 비행	9호처분, 기소유예, 보호관찰, 소년원, 학폭으로 재판 등
	6	가정폭력 및 갈등	가정폭력, 주사, 폭력, 욕설

	7	학대 방임 경험	귀가시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머리를 마구잡이로 잘라, 면회가 전혀 없음, 방임, 부가 폭력적, 성추행, 심한 체벌, 아동학대 등
	8	보호자 사망	사망
	9	부모 별거/이혼/가출	별거, 이혼, 가출
	10	경제적 문제	빚, 개인회생, 경제문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무직, 빚, 사업 부도, 사업 실패,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수급자, 신용불량자, 억대의 피해, 일용노동, 집안 사정으로 포기, 컴퓨터와 TV가 없음, 파산신청 등
	11	사회복지시설 거주 경험	그룹홈, 보육원, 쉼터, 양육원, 위탁보호, 육아원 등
학교/ 또래 영역	1	학교 징계 유무	강제전학, 교내봉사, 교내징계,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처분, 서면 사과 처분, 징계위 회부, 징계처분, 학교봉사, 학급교체, 학폭위 징계 등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왕따, 집단따돌림, 따돌림, 학폭으로 3개월간 치료 등
	3	비행또래	공범 정보 활용
	4	학업성적 /태도	기초학력부족, 성적최하위권, 수업분위기 저해, 반성문,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가 좋지 않음, 학업스트레스, 학업에 흥미를 잃음 등
	5	결석 (무단결석)	결석 과다, 무단결석, 무단조퇴, 무단지각, 출석일수 미달 등
	6	학업중단 경험 (자퇴 등)	유예, 자퇴 등

(2) 범죄유형 키워드

재판 준비 메모에 기록된 범죄명은 첫 번째 사건에 한하여 기재되어 있다. 하나의 재판에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다루어질 수 있으나 두 번째 사건부터는 범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진이 조사표의 사건 특성 내용을 기반으로 표 III-6과 같이 범죄유형 사건을 구축하고 범죄유형을 분류하였다. 범죄유형 사전 구축을 위해 법학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차로 범죄유형을 구분하였고, 법무연수원(2023)이 발간한 범죄백서의 범죄분류 체계와 범죄 빈도 등의 연구자료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폭력범죄, 성관련범죄, 교통범죄, 소년범위반범죄, 재산범죄, 흉악범죄, 기타범죄로 범죄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때,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한 개의 사건이 2개 이상의 범죄유형으로 각각 분류될 수도 있다. 가령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이 한 개의 사건으로 함께 자주 등장하는데,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

며(절도범죄로 분류)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범죄에 해당한다(교통범죄로 분류). 따라서 이 경우, 사건은 1건이지만 절도범죄와 교통범죄 유형으로 각각 집계된다.

폭력범죄는 ‘갈취’, ‘감금’, ‘강요’, ‘공갈’, ‘상해’,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갈취’ 등의 키워드로 구분되며, 성관련범죄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성추행’, ‘성희롱’, ‘성적 수치심’, ‘음란물 유포’, ‘음란물 전송’, ‘촬영한 사진을 전송’ 등의 키워드로 구분된다. 교통범죄는 ‘도주차량’, ‘돌이받아’, ‘무면허’, ‘음주’, ‘측정불응’, ‘보행자 상해’, ‘음주’, ‘추돌’, ‘충격’, ‘충돌’ 등의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소년법위반은 ‘보호처분변경신청’, ‘푸초’, ‘기타위반’, ‘통고’ 등의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재산범죄는 형법상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절도, 사기, 장물, 손괴죄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절도는 ‘금고를 열어’, ‘돌려주지 않고 도주’, ‘~원을 빼앗음’, ‘절취’, ‘차량털이’, ‘카드 습득’ 등의 키워드로, 사기는 ‘인터넷사기’, ‘중고나라’, ‘타인 명의 카드로 물품 구입’, ‘타인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편취’, ‘횡령’ 등의 키워드로, 장물범죄는 ‘자전거 건넬받음’, ‘장물보관’, ‘장물운반’, ‘취득’, ‘타인이 습득한’ 등의 키워드로, 손괴범죄는 ‘낙서’, ‘담뱃불로 옷을 지저 구멍이 나게 함’, ‘번호판 훼손’, ‘불을 붙여 훼손’, ‘유리창 부수고’, ‘파손’ 등의 키워드로 범죄유형을 분류하였다.

강력(흉악)범죄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가 포함된다. 살인은 등장하지 않아 범죄유형에서 제외되었으며, 강도는 ‘강도’, ‘강취’, ‘특수강도’ 등의 키워드로, 성폭력은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강간 미수’ 등의 키워드로, 방화는 ‘방화’, ‘방화미수’, ‘실화’, ‘외벽을 태우려’ 등의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범죄에는 명예, 문서, 주거침입, 저작권, 정보통신공사업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명예범죄는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키워드로 구분하였으며, 문서범죄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ooo명의휴대폰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부정사용’ 등의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주거침입범죄는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신축건물에 침입’ 등의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저작권범죄는 ‘저작권’, ‘재산권’, ‘도용’ 등의 키워드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범죄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키워드를 근거로 범죄유형을 분류하였다.

현재 법무연수원(2023)의 범죄분류체계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세부 내용을 구분하여

강력(흉악)범죄와 성관련범죄로 나누었다. 강력(흉악)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강간 미수에 한정하였으며, 그 외 강제추행, 성희롱, 성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피해자의 신체촬영과 같은 범죄내용은 성관련범죄로 분류하였다.

표 III-6. 범죄유형 키워드

범죄유형		키워드(예시)
폭력		갈취, 감금, 강요, 공갈, 상해, 업무방해, 폭행, 협박, 가격 함, 때리고 밟음, 멍이 드는 상처, 영업장에서 위력 행사, 위협,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친 등
성관련		강제추행, 공연음란, 성추행, 성희롱, 성적수치심, 음란물 유포, 음란물 전송, 촬영한 사진을 전송, 휴대폰으로 피해자 촬영 등
교통		도주차량, 들이받아, 무면허, 음주, 축정불응, 보행자 상해, 음주, 추돌, 충격, 충돌, 충돌 상해 등
소년법위반		보호처분변경신청, 무초, 기타위반, 통고 등
재산	절도	금고를 열어, 돌려주지 않고 도주, 원을 빼앗음, 절취, 차량탈이, 카드 습득, 휴대폰 빼앗아감 등
	사기	인터넷사기, 중고나라, 타인 명의 카드로 물품 구입, 타인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편취, 횡령 등
	장물	자전거 건네받음, 장물보관, 장물운반, 취득, 타인이 습득한 등
	손괴	낙서, 담뱃불로 옷을 지저 구멍이 나게 함, 번호판 훼손, 불을 붙여 훼손, 유리창 부수고, 파손 등
흉악	강도	강도, 강취, 흉기휴대 2인 이상 합동 강취, 특수강도 등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강간 미수 등
	방화	방화, 방화미수, 실화, 외벽을 태우려 등
기타	명예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문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명의휴대폰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부정사용 등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신축건물에 침입 등
	저작권	저작권, 재산권, 도용 등
	정보통신공사업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4)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원자료는 보호소년에 관한 1차 자료를 참고하여 소년부 판사가 작성한 2차 자료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원자료를 코딩하여 가공하고 분석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한 계획을 검토 및 확인받고자 하였다. 심의 결과 “원자료의 특수성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연구대상자 안전을 최우선시한 전처리 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해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계획을 승인함. 본 연구계획은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방법이 잘 설계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가짐”의 내용으로 승인 통보(202304-HR-고유-003)를 받은 이후에 원자료를 코딩하고 가공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조사표를 기반으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코딩한 조사원들은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코딩 작업에 투입되었다. 연구진은 코딩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소년보호재판과 원자료의 특성, 조사표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코딩 작업 기간에 문서 관리대장을 통해 자료 열람을 관리하여 보안에 주의하였다.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는 본 연구기관 밖으로 반출된 적이 없으며, 모든 조사원들은 본 연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네트워크 접속이 제한된 기관 소유의 랩탑을 사용하여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개인 ID, 재판 ID를 부여한 이후에 소년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비식별화된 자료의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후 모든 분석은 비식별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3.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본소 사건을 다루는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에 대한 재판(1,345건)과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푸초’ 사건) 및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푸집’ 사건)에 대한 재판(총 115건)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소 사건을 다루는 소년보호재판과는 달리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이나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들

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재판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에 대하여 재판 기준 자료(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 842건), 사건 기준 자료(사건 1,483건), 소년 기준 자료(소년 728명)를 분석한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그 이후에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푸초’ 사건) 및 보호 처분집행감독사건(‘푸집’ 사건)에 대한 재판 11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서술하였다.

1) 재판 기준 분석 결과¹⁸⁾

(1) 최종 판결 처우 분류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이자 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은 842건이었다. 1~10호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가 681건(8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 사회 내 처우 결정은 643건(76.4%), 시설 내 처우 결정은 38건(4.5%)이었다.¹⁹⁾ 불처분은 156건(18.5%), 검찰송치, 화해권고 등을 포함하는 기타 처우는 5건(0.6%)으로 나타났다(표 III-7).

표 III-7. 소년보호사건 재판 최종 판결 처우 분류

처우		소년보호사건	
		사례수(건)	비율(%)
보호처분	사회 내 처우	643	76.4
	시설 내 처우	38	4.5
불처분		156	18.5
기타		5 ^a	0.6
소계		842	100.0

* 주: ^a검찰송치, 화해권고 등

18) 최종 판결이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재판만을 분석한 결과임
19) 이 보고서의 제3장에서 사회 내 처우는 1호부터 5호 처분까지, 시설 내 처우 결정은 6호부터 10호 처분까지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음. 단, 앞 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 등에서 6호 처분과 1호 및 7호 처분 일부는 중간처우로 불리기도 함을 밝힘.

(2)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의 수

소년보호사건이면서 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은 842건이며, 최종 판결로 결정되는 소년에 대한 처우 형태는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검찰송치, 기각, 화해권고 등)로 구분된다. 그러나 소년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불출석) 임시위탁 또는 상담·전문가 진단 등의 조치로 최종 판결이 미루어질 수도 있다. 분석 결과,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평균 재판 수는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결정된 경우는 842건 중 649건(77.1%)이었으며,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된 경우는 140건(16.6%), 세 번째 재판에서 결정된 경우는 24건(2.9%)이었다.

표 III-8.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

재판 수(건)	빈도(건)	비율(%)
1	649	77.1
2	140	16.6
3	24	2.9
4	7	0.8
5	6	0.7
6	1	0.1
7	2	0.2
8	5	0.6
9	1	0.1
10	2	0.2
11	1	0.1
12	1	0.1
14	1	0.1
19	1	0.1
25	1	0.1
계	842	100.0
전체	평균 1.5, 표준편차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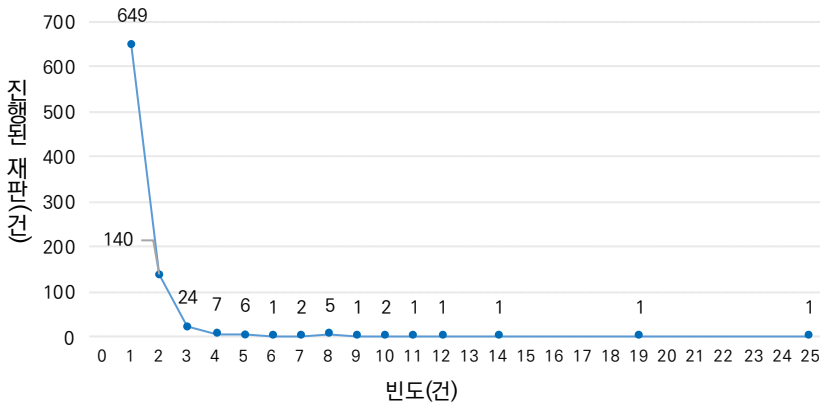


그림 Ⅲ-3.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

(3) 최종 판결 소요 기간

소년사건이 발생한 후 소년에 대한 처우가 결정되기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9개월이 걸렸고, 평균적으로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6.0개월, 표준편차 5.0개월). 최종 판결 소요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없었으며,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 처우가 결정된 경우는 72.4%,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처우가 결정된 경우는 20%였고, 7.6%는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처우별 최종 판결 소요 기간

(단위 : 건(%))

구분	불처분	사회 내 처우	시설 내 처우	계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5(3.2)	6(0.9)	1(2.9)	12(1.5)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27(17.4)	80(12.6)	1(2.9)	108(13.1)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36(23.2)	128(20.1)	2(5.7)	166(20.1)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24(15.5)	173(27.2)	8(22.9)	205(24.8)
5개월 이상-6개월 미만	21(13.6)	83(13.1)	4(11.4)	108(13.1)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4(21.9)	119(18.7)	12(34.3)	165(20.0)
1년 이상	8(5.2)	47(7.4)	7(20.0)	62(7.6)
계	155(100.0)	636(100.0)	35(100.0)	826(100.0)

* 주: 최종판결이 있는 재판 842건 중 기타 5건과 결측치 11건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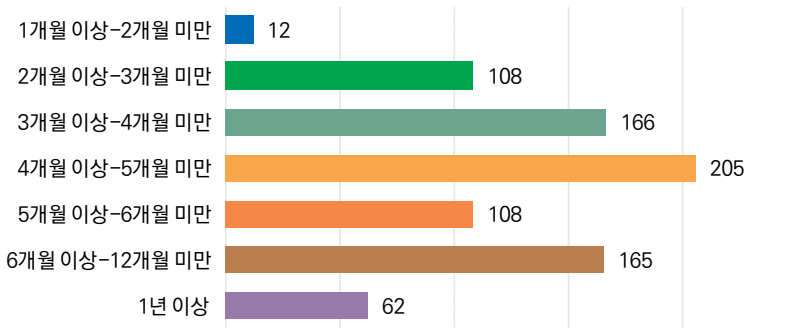


그림 Ⅲ-4. 처우별 최종 판결 소요 기간

(4) 재판 기준 보호처분별 빈도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681건에 대하여 보호처분별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소년이 한 재판에서 병합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1호 단독처분이 218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1·2호 병합처분(166건, 24.4%), 1·4호 병합처분(119건, 17.5%)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681건 중에서 6~10호 처분을 포함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 결정은 총 644건(94.6%)이며, 6호~10호를 포함하는 시설 내 처우²⁰⁾ 결정은 총 37건(5.4%)이었다.

표 Ⅲ-10.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반영

구분	빈도(건)	비율(%)
1호	218	32.0
1·2호	166	24.4
1·2·3·4호	8	1.2
1·2·3·5호	15	2.2
1·2·4호	81	11.9
1·2·5호	19	2.8
1·3호	3	0.4

20) 6호 처분은 중간 처우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극히 낮은 빈도(2건)로 인해 중간 처우 분류를 따로 만들지 않고 6호 처분을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였음.

구분	빈도(건)	비율(%)
1·3·4호	6	0.9
1·3·5호	2	0.3
1·4호	119	17.5
1·5호	5	0.7
3·4호	1	0.1
4·6호	1	0.1
5·8호	11	1.6
6호	1	0.1
7호	1	0.1
9호	10	1.5
10호	14	2.1
계	6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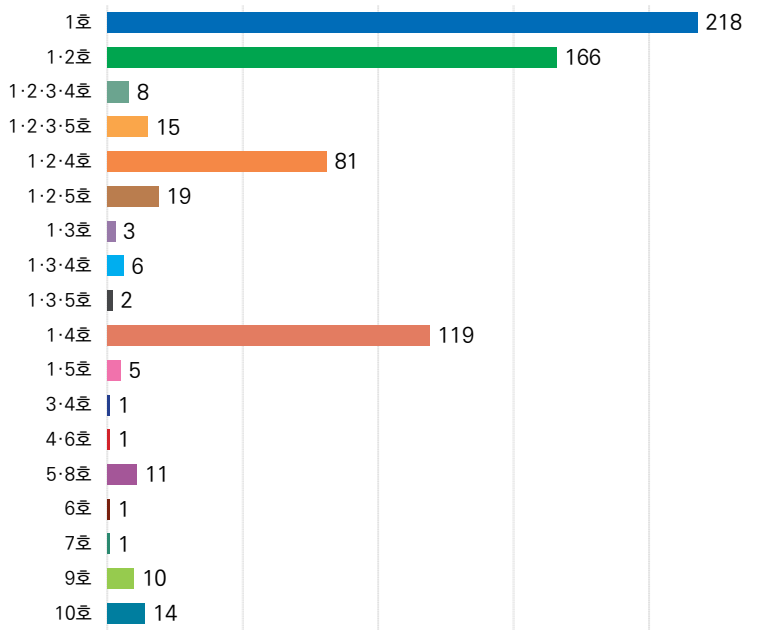


그림 Ⅲ-5.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반영

보호처분 결정을 1호에서 10호까지 독립적으로 계산한 개별처분에 따른 분석²¹⁾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1과 같다. 개별처분의 총합은 1,272건이며, 1호 처분이 642건(50.5%), 2호(289건, 22.7%)와 4호 처분(216건, 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에 따른 분석

보호처분	빈도(건)	비율(%)
1호 처분	642	50.5
2호 처분	289	22.7
3호 처분	35	2.8
4호 처분	216	17.0
5호 처분	52	4.1
6호 처분	2	0.2
7호 처분	1	0.1
8호 처분	11	0.9
9호 처분	10	0.8
10호 처분	14	1.1
계	1,2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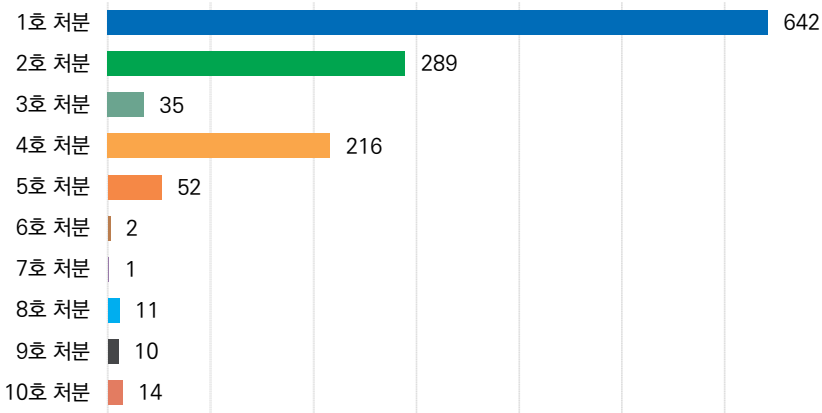


그림 III-6.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에 따른 분석

21) 예를 들어, 한 소년이 1호와 4호의 병합 처분을 받은 경우, 본 분석에서는 1호와 4호에 각각 빈도 “1”을 산입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음.

(5) 재판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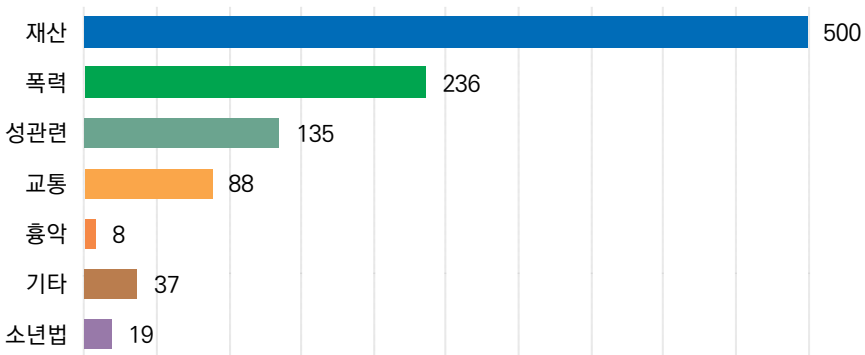
한 개의 재판에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범죄유형이 병합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유형 빈도의 총합은 최종 판결 재판의 수와 동일하지 않다. 최종 판결이 있는 소년보호재판 842건 중에, 재산범죄 사건을 다룬 재판은 500건(59.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폭력범죄 사건을 다룬 재판은 236건(28.0%), 성관련범죄는 135건(16.0%), 교통범죄는 88건(10.5%), 흉악범죄는 8건(1.0%), 기타범죄는 37건(4.4%), 소년법 위반은 19건(2.3%)이 있었다. 여기서 비율(%)은 최종판결이 있는 소년보호 재판 842건 대비 비율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표 III-12. 재판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단위 : 건(%))

재산	폭력	성관련	교통	흉악	기타	소년법
500 (59.4)	236 (28.0)	135 (16.0)	88 (10.5)	8 (1.0)	37 (4.4)	19 (2.3)

* 주: 한 개의 재판에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범죄유형이 병합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유형 빈도의 총합은 최종 판결 재판의 수와 동일하지 않음. 비율(%)은 최종판결이 있는 소년보호재판 842건을 기준으로 산출함.



* 주: 한 개의 재판에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범죄유형이 병합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유형 빈도의 총합은 최종 판결 재판의 수와 동일하지 않음. 비율(%)은 최종판결이 있는 소년보호재판 842건을 기준으로 산출함.

그림 III-7. 재판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불처분, 사회 내 처우(1-5호), 시설 내 처우(6-10호) 세 집단에 따른 처우별 범죄유형 빈도는 표 Ⅲ-13과 같다.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재판 156건에 나타난 범죄유형별 빈도의 총합은 187건, 사회 내 처우로 판결된 재판 643건에 나타난 범죄유형별 빈도의 총합은 744건이며, 시설 내 처우 재판 38건에 나타난 범죄유형별 빈도의 총합은 84건이었다. 기본적으로 사회 내 처우가 전체 처우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흉악범죄를 제외한 범죄유형에서 사회 내 처우의 비율 역시 불처분이나 시설 내 처우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관련범죄의 경우, 사회 내 처우 결정을 받은 재판의 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재판은 재산, 폭력, 성관련범죄 순으로 높은 빈도가 보고되었다.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재판과 시설 내 처우가 내려진 재판에서는 재산, 폭력, 교통범죄 순으로 범죄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3. 처우별 범죄유형 빈도

(단위 : 건(%))

구분	재산	폭력	성관련	교통	흉악	기타	소년법
불처분	89 (17.8)	56 (23.7)	7 (5.2)	18 (20.5)	0 (0.0)	12 (32.4)	5 (26.3)
사회 내 처우	380 (76.0)	155 (65.7)	120 (88.9)	54 (61.4)	4 (50.0)	24 (64.9)	7 (36.8)
시설 내 처우	28 (5.6)	23 (9.7)	7 (5.2)	14 (15.9)	4 (50.0)	1 (2.7)	7 (36.8)
기타	3 (0.6)	2 (0.8)	1 (0.7)	2 (2.3)	0 (0.0)	0 (0.0)	0 (0.0)
계	500 (100.0)	236 (100.0)	135 (100.0)	88 (100.0)	8 (100.0)	37 (100.0)	19 (100.0)

* 주: 한 재판에 2개 이상의 범죄유형이 병합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범죄유형을 합산한 수와 전체 재판 수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가령, 불처분으로 결정된 재판 156건에 나타난 범죄유형의 총합은 187건이며, 최종판결이 사회 내 처우인 재판은 643건이지만, 범죄유형의 합은 744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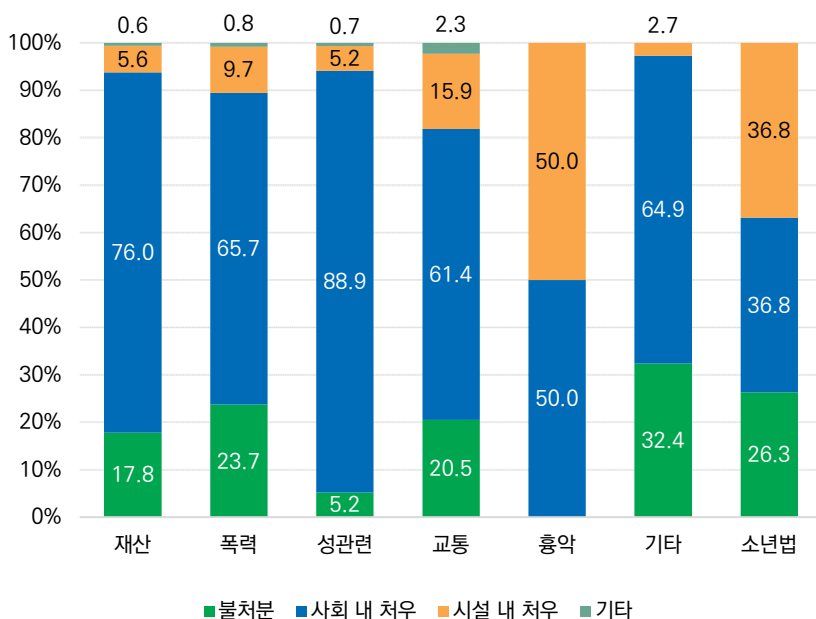


그림 III-8. 처우에 따른 범죄유형별 비율

2) 사건 기준 분석 결과

(1)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

표 III-14에 제시한 것처럼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이자 최종 판결이 있는 842건의 재판에서 다뤄진 세부 사건 수는 재판 당 최소 1건에서 최대 28건이었고, 한 재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수는 평균 1.8건이었다. 사건 1건만 다룬 재판은 626건(74.4%), 2건을 다룬 재판은 100건(11.9%), 3건을 다룬 재판은 41건(4.9%)이었다.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를 고려했을 때 사건 기준 분석에 활용되는 전체 사건의 수는 1,483건이다.

표 III-14.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

(단위 : 건(%))

재판당 사건 수	재판 수	총 사건 수
1	626(74.4)	626(42.2)
2	100(11.9)	200(13.5)
3	41(4.9)	123(8.3)
4	28(3.3)	112(7.6)
5	15(1.8)	75(5.1)
6	9(1.1)	54(3.6)
7	4(0.5)	28(1.9)
8	2(0.2)	16(1.1)
9	4(0.5)	36(2.4)
10	2(0.2)	20(1.3)
12	1(0.1)	12(0.8)
13	2(0.2)	26(1.8)
14	1(0.1)	14(0.9)
15	3(0.4)	45(3.0)
20	1(0.1)	20(1.3)
24	2(0.2)	48(3.2)
28	1(0.1)	28(1.9)
소계	842(100.0)	1,483(100.0)
전체	평균 1.8, 표준편차 2.3	

(2) 사건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전체 사건 1,483건을 세부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표 III-1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 사건 중 재산범죄가 883건(55.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어서 폭력범죄(339건, 21.3%), 성관련 범죄(181건, 11.4%), 교통범죄(133건, 8.4%), 기타(41건, 12.6%), 흉악(11건, 0.7%)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연도에 따른 사건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또한 매년 재산범죄 빈도가 가장 높았고, 폭력범죄가 그 뒤를 이었으며, 흉악범죄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연도별 사건 기준 범죄유형별 빈도

(단위 : 건(%))

연도 \ 유형	재산	폭력	성관련	교통	흉악	기타	계
계	883(55.6)	339(21.3)	181(11.4)	133(8.4)	11(0.7)	41(12.6)	1,588(100.0)
2011년	0	1	2	0	0	1	4
2012년	35	9	15	5	0	0	64
2013년	178(51.9)	103(30.0)	28(8.2)	18(5.2)	0(0.0)	16(4.7)	343(100.0)
2014년	183(56.3)	69(21.2)	31(9.5)	30(9.2)	7(2.2)	5(1.5)	325(100.0)
2015년	209(66.1)	43(13.6)	22(7.0)	36(11.4)	1(0.3)	5(1.6)	316(100.0)
2016년	151(53.9)	49(17.5)	36(12.9)	27(9.6)	3(1.1)	14(5.0)	280(100.0)
2017년	111(47.0)	63(26.7)	46(19.5)	16(6.8)	0(0.0)	0(0.0)	236(100.0)
날짜 없음	16	2	1	1	0	0	20

* 주: 1) 한 사건에 2개 이상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 사건에 대해 2개 이상의 범죄유형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범죄유형별 빈도의 합(1,588건)은 전체 사건 수(1,483건)와 일치하지 않음

2) 사건 발생 날짜 기준으로 분류한 범죄유형이므로 연구대상 기간인 2013년 이전 사건도 존재할 수 있음. 사건 발생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2013년 이전 사건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건의 특정 범죄유형의 비율을 계산하지 않음.

(3) 사건 발생 시간

보호소년과 관련된 세부 사건은 시간에 따라 발생 빈도가 상이하였다. 표 III-16과 그림 III-9에 제시한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15-18시에 사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7건, 22.7%). 다음은 18-21시(12.7%), 12-15시(11.7%), 21-24시(11.7%), 0-3시(9.9%), 3-6시(8.4%), 9-12시(6.1%), 6-9시(3.4%)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오후에서 저녁에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는 사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Ⅲ-16.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빈도(건)	비율(%)
00-03시	147	9.9
03-06시	125	8.4
06-09시	50	3.4
09-12시	90	6.1
12-15시	174	11.7
15-18시	337	22.7
18-21시	189	12.7
21-24시	173	11.7
정보 없음	198	13.4
계	1,4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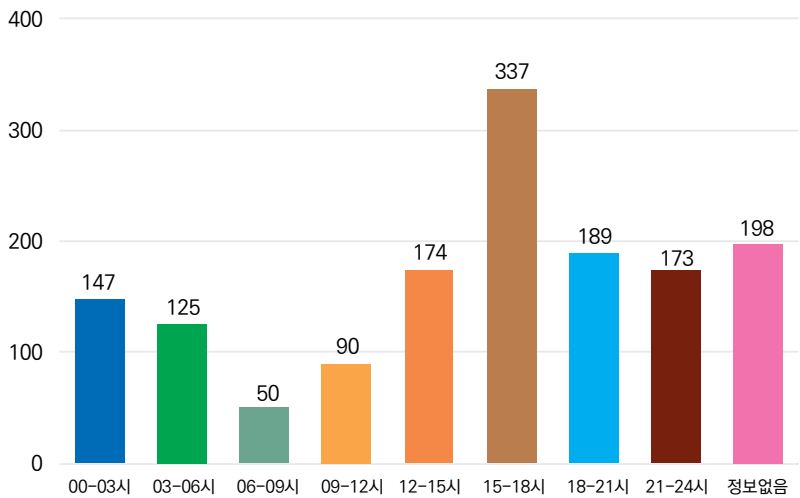


그림 Ⅲ-9.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범죄유형에 따른 사건 발생 시간은 표 Ⅲ-17과 그림 Ⅲ-10에 제시하고 있다. 교통범죄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 사건은 15-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0-3시, 21-24시와 3-6시를 포함한 심야나 새벽시간에 주로 발생하였다.

표 Ⅲ-17.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분포

(단위 : 건(%))

사건 시간	재산	폭력	성관련	교통	흉악	기타	계
00-03시	131(16.8)	13(4.3)	1(0.6)	33(26.6)	1(10.0)	1(3.1)	180
03-06시	99(12.7)	16(5.3)	3(1.9)	24(19.4)	2(20.0)	3(9.4)	147
06-09시	21(2.7)	16(5.3)	12(7.6)	1(0.8)	0(0.0)	2(6.3)	52
09-12시	56(7.2)	31(10.3)	8(5.1)	4(3.2)	1(10.0)	0(0.0)	100
12-15시	90(11.5)	61(20.3)	18(11.4)	11(8.9)	0(0.0)	5(15.6)	185
15-18시	165(21.1)	94(31.3)	61(38.6)	12(9.7)	6(60.0)	11(34.4)	349
18-21시	105(13.4)	40(13.3)	32(20.3)	15(12.1)	0(0.0)	6(18.8)	198
21-24시	114(14.6)	29(9.7)	23(14.6)	24(19.4)	0(0.0)	4(12.5)	194
계	781(100.0)	300(100.0)	158(100.0)	124(100.0)	10(100.0)	32(100.0)	1,405

* 주: 1) 범죄 발생 시각을 알 수 없는 사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2) 한 사건에 2개 이상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한 사건에 대해 2개 이상의 범죄유형이 부여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 빈도는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범죄유형별 사건 빈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음. 예를 들어, 00-03시에 발생한 사건 빈도는 표 Ⅲ-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147건이지만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범죄유형별 사건 빈도의 총합은 180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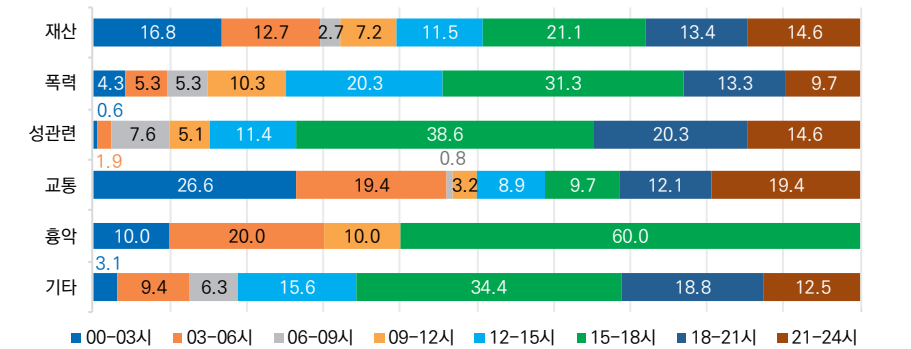


그림 Ⅲ-10.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분포

(4) 사건 당 공범 수

사건 당 공범 수는 평균 1.2명(표준편차 1.6)으로 최소 0명에서 최대 11명으로 나타났다.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는 표 Ⅲ-18과 그림 Ⅲ-11에 제시하였다. 공범이 없는 사건이 6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공범이 1명인 사건은 300건(20.2%), 공범이 2명인 사건은 217건(14.6%)이었다.

표 Ⅲ-18.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공범(명)	사건 빈도(건)	비율(%)
0	629	42.4
1	300	20.2
2	217	14.6
3	125	8.4
4	69	4.7
5	26	1.8
6	13	0.9
7	5	0.3
11	2	0.1
정보없음	97	6.5
계	1,483	100.0
전체(명)	평균 1.2, 표준편차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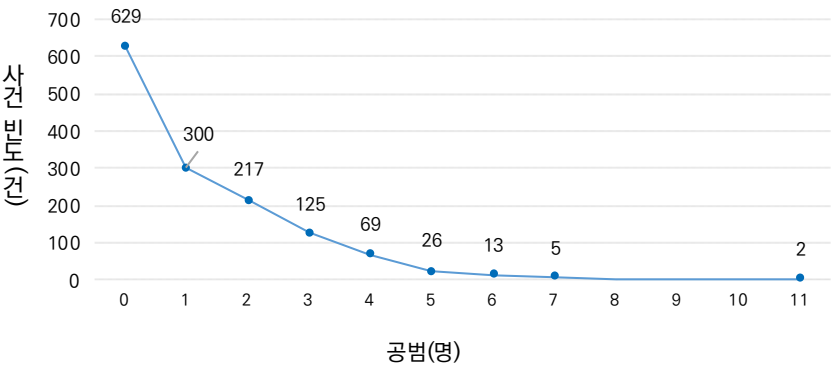


그림 Ⅲ-11.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세부 범죄유형에 따른 공범의 수는 표 III-19와 그림 III-12에 제시하였다. 폭력범죄의 경우 공범의 수가 평균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범죄의 평균 공범 수는 1.3명, 교통범죄는 1.2명, 흉악범죄는 0.8명이었으며, 기타범죄와 성관련 범죄의 평균 공범 수가 각각 0.5명으로 가장 적었다. 모든 세부 범죄유형에 걸쳐 공범이 0명인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성관련 범죄와 기타범죄는 공범이 없는 사건의 비율이 70.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범죄유형별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단위 : 건(%))

공범 수(명)	재산	폭력	성관련	교통	흉악	기타
0	291(33.0)	140(41.3)	129(71.3)	51(38.3)	6(54.5)	30(73.2)
1	245(27.7)	49(14.5)	9(5.0)	31(23.3)	1(9.1)	1(2.4)
2	165(18.7)	42(12.4)	10(5.5)	25(18.8)	0(0.0)	4(9.8)
3	83(9.4)	29(8.6)	9(5.0)	10(7.5)	2(18.2)	4(9.8)
4	35(4.0)	27(8.0)	5(2.8)	8(6.0)	0(0.0)	0(0.0)
5	14(1.6)	15(4.4)	0(0.0)	1(0.8)	0(0.0)	0(0.0)
6	6(0.7)	7(2.1)	0(0.0)	0(0.0)	0(0.0)	0(0.0)
7	3(0.3)	2(0.6)	0(0.0)	0(0.0)	0(0.0)	0(0.0)
11	0(0.0)	2(0.6)	0(0.0)	0(0.0)	0(0.0)	0(0.0)
정보없음	41(4.6)	26(7.7)	19(10.5)	7(5.3)	2(18.2)	2(4.9)
계	883(100.0)	339(100.0)	181(100.0)	133(100.0)	11(100.0)	41(100.0)
평균 (표준편차)	1.3(1.3)	1.5(1.9)	0.5(1.0)	1.2(1.3)	0.8(1.3)	0.5(1.1)

* 주: 공범 정보가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범죄유형별 공범 수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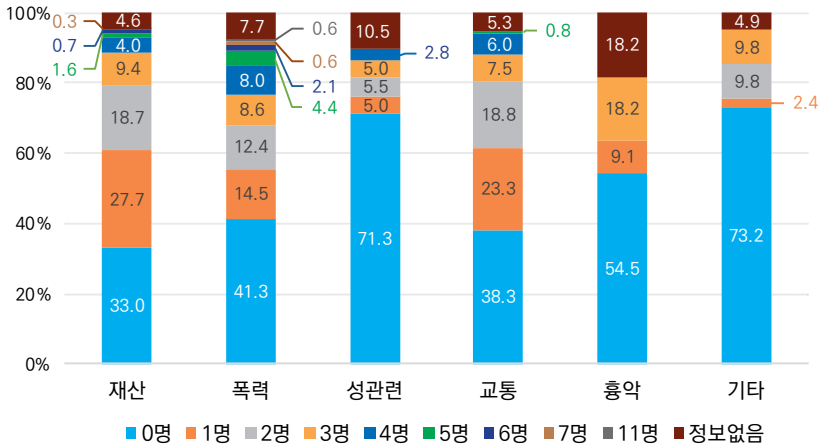


그림 III-12. 범죄유형별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3) 보호소년 기준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총 1,460건²²⁾의 재판에 관한 자료는 보호소년 728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년보호재판을 중심으로 기재된 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보호소년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게 되면 각 소년 별로 소년보호재판에 관한 생애 경험을 종단적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 소년에 대해 다수의 재판이 존재하는 복수재판 사례의 경우에는 한 소년에 대한 정보가 여러 번 투입되어 평균 산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분석 내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모든 분석은 소년보호사건(‘푸’ 사건) 재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1) 최초 사건 당시 연령 및 성별

본 연구의 자료는 최초 사건 당시 소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연구 대상 기간 내에 존재하는 해당 소년의 자료를 모두 추출한 것이며, 따라서 최초 사건 당시 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게 된다. 최초 사건 당시 소년의 평균

22) 소년보호사건(‘푸’ 사건) 1,345건과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푸초’ 사건) 및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푸집’ 사건)에 대한 재판 115건에 해당함

나이는 13세 1개월이었으며, 13세가 451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12세가 181명(24.9%), 11세가 68명(9.3%), 10세가 26명(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의 경우 연구자가 소년의 가족구성원 정보(예: ‘형’, ‘언니’에 대한 정보)나 처분결과 정보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 추정이 어려운 사례가 37.4%였다.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373명, 51.2%)이 여성(83명, 11.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 연령 및 성별

구 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연령	10세	26	3.6
	11세	68	9.3
	12세	181	24.9
	13세	451	62.0
	정보없음	2	0.3
	소계	728	100.0
성별	남	373	51.2
	여	83	11.4
	추정불가	272	37.4
	소계	728	100.0

* 주: 1) 연령 정보가 없는 경우는 최초 재판에 사건 날짜 정보가 불충분하여 소년의 연령 계산이 불가능했던 경우임 (최초 재판에는 사건 날짜 정보가 불충분하여도, 소년이 받은 다른 재판에서 사건 날짜 정보가 충분하여 연령 계산이 가능하고 이 때 촉법소년에 해당하였다면 분석자료로 추출될 수 있음).
 2) 성별은 연구자가 가족구성원 정보(예를 들어, 형, 언니 등의 표현), 처분결과 등의 정보로 추정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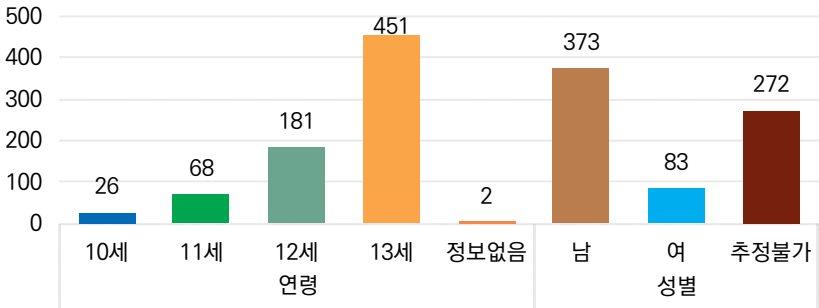


그림 III-13. 보호소년 연령 및 성별

(2)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소년 1인당 재판 수를 표 III-21에 제시하였다. 이때 재판 수는 불출석이나 임시위탁 등의 사유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여러 번 열린 중복재판을 포함한다. 연구대상 기간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28명의 소년 중 534명(73.4%)은 1번의 재판만 받았으며, 이 경우는 단수재판 사례에 해당한다. 2건 이상의 재판을 받은 복수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2번의 재판을 받은 소년은 87명(12.0%), 3번의 재판을 받은 소년은 39명(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재판을 포함하여 소년 1인당 평균 재판 수는 1.8건이었으며, 소년 1명이 받은 재판 수는 최소 1건, 최대 25건이었다. 소년 1인당 재판 수는 서로 다른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에 대한 별개의 재판 뿐 아니라 불출석이나 임시위탁 등의 사유로 동일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여러 번 진행된 중복재판까지 포함한다. 가령 재판 수가 25건인 소년은 23건의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24번째 재판에서 임시위탁 결정을 받은 후에 최종 재판인 25번째 재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표 III-21.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구분		소년 수(명, %)	
		빈도(명)	비율(%)
소년 1인당 총 재판 수 (중복재판 포함)	1	534	73.4
	2	87	12.0
	3	39	5.4
	4	20	2.7
	5	11	1.5
	6	6	0.8
	7	8	1.1
	8	4	0.5
	9	2	0.3
	10	4	0.6
	11	3	0.4
	12	1	0.1
	13	1	0.1
	14	2	0.3
	16	1	0.1
	18	1	0.1

구분	소년 수(명, %)	
	빈도(명)	비율(%)
19	2	0.3
20	1	0.1
25	1	0.1
소계	728	100.0
전체(건)	평균 1.8, 표준편차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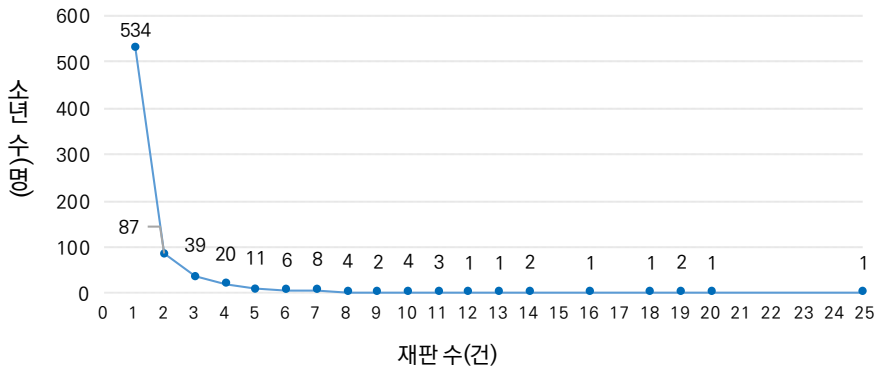


그림 Ⅲ-14.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3)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표 Ⅲ-22에는 중복재판을 제외한 소년 1인당 재판 수를 제시하였다. 중복재판이 제외되었으므로, 각 재판은 고유사건번호가 부여된 독립된 소년보호사건(‘푸’ 사건)을 다루는 재판을 의미한다. 연구대상 기간(2013년~2018년) 동안 소년은 최소 한 번의 재판에서 최대 4번의 독립된 재판을 받았으며, 중복재판을 제외하고 소년 1인당 평균 1.2건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36명(87.4%)은 1건의 재판만 받았으며, 재판 수가 2건인 소년은 59명(8.1%), 3건인 소년은 23명(3.2%)이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로 다른 4건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4건의 재판을 받은 소년은 10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구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소년 1인당 총 재판 수 (중복재판 제외)	1	636	87.4
	2	59	8.1
	3	23	3.2
	4	10	1.4
	소계	728	100.0
전체(건)		평균 1.2, 표준편차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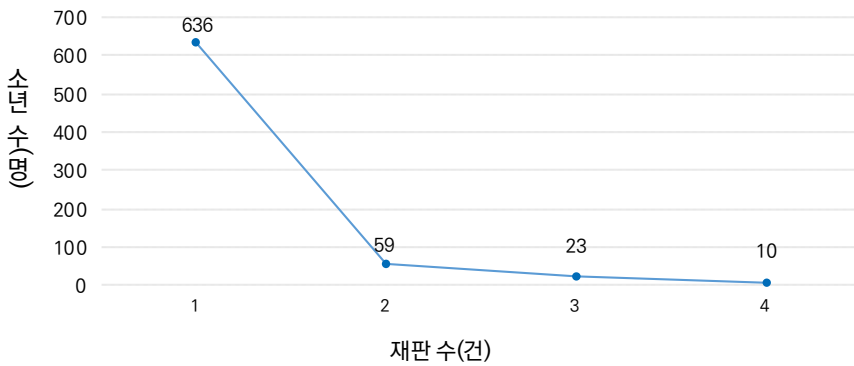


그림 Ⅲ-15.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4) 소년 1인당 최종 판결 수

최종 판결은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화해권고, 검찰송치 등)의 처분결과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임시위탁, 불출석, 기타(상당, 관찰 등) 등의 사유로 연구대상 기간 내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소년이 받은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와 해당 소년이 받은 최종 판결 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보호소년을 기준으로 최종 판결을 받은 재판 수를 살펴보면 표 Ⅲ-23과 같다. 총 728명의 소년 중, 13명(1.8%)은 최종 판결 수가 0건으로 이들은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여 최종 판결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최종 판결이 1개인 소년은 629명(86.4%)이었으며, 2개인 소년은 54명(7.4%), 3개인 소년은 23명(3.2%), 4개인 소년은 9명(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소년 1인당 최종 판결 수

구분		소년 수(명)	비율(%)
소년 1인당 최종 판결 수	0	13	1.8
	1	629	86.4
	2	54	7.4
	3	23	3.2
	4	9	1.2
	소계	728	100.0
전체(건)		평균 1.2, 표준편차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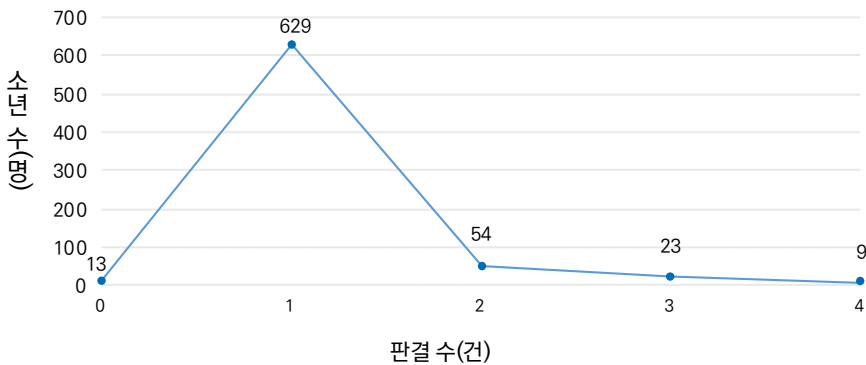


그림 Ⅲ-16. 소년 1인당 최종 판결 수

(5) 보호소년 처우 이력

보호소년의 처우 이력은 불처분과 보호처분(사회 내 처우, 시설 내 처우)의 판결 횟수를 가리키며, 소년 1인당 최종 판결 수에 포함되었던 기타(화해권고, 검찰송치 등)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보호소년의 처우 이력 집계에는 소년이 타법원 소년부에서 받은 최종 판결 정보를 포함하여 소년이 연구대상 기간 이전에 받은 최종 판결 정보까지 산입하였다. 즉, 소년의 처우 이력은 재판 준비 메모가 작성된 소년부의 처우 결과와 과거 및 타법원 소년부의 처우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표 III-24에 제시한 최종처우 기준 보호소년의 처우 이력을 살펴보면, 소년 1인당 평균 1.3회의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처우 이력이 최소 1회에서 최대 8회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728명의 보호소년 중에서 처우 이력이 1회인 소년은 597명(82.0%), 2회인 소년은 65명(8.9%), 3회인 소년은 26명(3.6%)이었으며 8회인 소년은 1명(0.1%)이었다. 처우 이력이 없는 소년 13명(1.8%)은 소년 1인당 최종 판결 수가 0건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기간 내에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여 최종 판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처우 이력 횟수에 따라 소년이 받은 최종처우를 확인한 결과, 처우 이력이 1회인 소년은 사회 내 처우 결정(81.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시설 내 처우는 5건(0.8%)에 불과했다. 반면에 처우 이력이 7회인 소년 3명이 받은 최종처우를 살펴보면 사회 내 처우 결정은 없었고 1명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이, 2명에 대해서는 시설 내 처우 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다. 처우 이력이 8회에 달했던 소년 1명의 최종처우는 시설 내 처우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우 이력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내 처우보다는 시설 내 처우 결정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II-17).

표 III-24. 보호소년 처우 이력(최종처우 기준)

처우 이력	소년 수 (명, %)	계 (건, %)	불처분 (건, %)	사회 내 처우 (건, %)	시설 내 처우 (건, %)
0회	13(1.8)	-	-	-	-
1회	597(82.0)	597(100.0)	105(17.6)	487(81.6)	5(0.8)
2회	65(8.9)	65(100.0)	13(20.0)	45(69.2)	7(10.8)
3회	26(3.6)	26(100.0)	14(53.8)	6(23.1)	6(23.1)
4회	12(1.6)	12(100.0)	3(25.0)	3(25.0)	6(50.0)
5회	10(1.4)	10(100.0)	4(40.0)	4(40.0)	2(20.0)
6회	1(0.1)	1(100.0)	0(0.0)	0(0.0)	1(100.0)
7회	3(0.4)	3(100.0)	1(33.3)	0(0.0)	2(66.7)
8회	1(0.1)	1(100.0)	0(0.0)	0(0.0)	1(100.0)
계	728(100.0)	715(100.0)	140(19.6)	545(76.2)	30(4.2)

* 주: 처우 이력이 0회인 소년은 재판에 불출석하여 최종 판결이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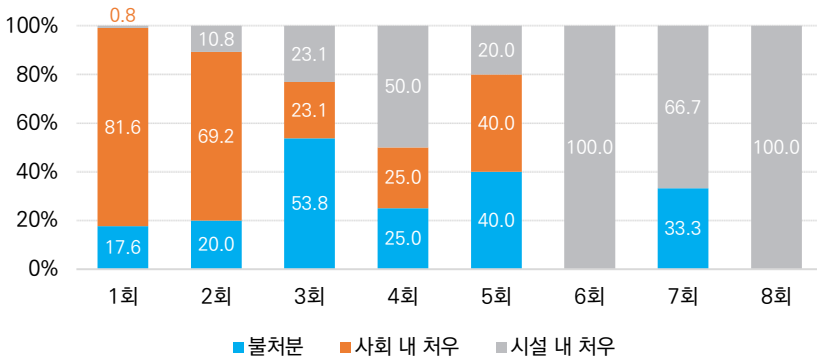


그림 III-17. 보호소년 처우 이력(최종처우 기준)

(6)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

보호소년의 보호처분 이력은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은 횟수를 가리키며, 재판 준비 메모가 작성된 소년부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 중 보호처분 결정 건수와 과거 및 타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건수를 모두 포함한다. 표 III-25에 제시한 것처럼 분석대상인 전체 보호소년 728명 중에서 610명(83.8%)이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은 513명(70.5%), 2회는 70명(9.6%), 3회는 15명(2.1%), 4회는 12명(1.6%)이었다. 나머지 118명(16.2%)의 소년은 보호처분 이력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불처분이나 기타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연구대상 기간 내에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여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 내 처우가 577건(94.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시설 내 처우는 33건(5.4%)에 불과하였다. 보호처분 이력이 1회인 경우에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소년이 506명으로 전체의 98.6%를 차지하였고, 시설 내 처우를 받은 소년은 7명(1.4%)뿐이었다. 이와 반대로 보호처분 이력이 4회인 소년 12명의 최종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내 처우가 내려진 소년이 6명(50.0%), 시설 내 처우가 내려진 소년이 6명(50.0%)으로 시설 내 처우 비율이 증가하였다. 즉, 보호처분 이력이 늘어날수록 보호처분 중 사회 내 처우보다는 시설 내 처우를 받는 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II-18).

표 III-25.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최종처분 기준)

처분이력	보호소년 수 (명, %)	보호처분(건, %)		
		소계	사회 내 처우	시설 내 처우
없음	118(16.2)	-	-	-
1회	513(70.5)	513(100.0)	506(98.6)	7(1.4)
2회	70(9.6)	70(100.0)	59(84.3)	11(15.7)
3회	15(2.1)	15(100.0)	6(40.0)	9(60.0)
4회	12(1.6)	12(100.0)	6(50.0)	6(50.0)
계	728(100.0)	610(100.0)	577(94.6)	33(5.4)

* 주: 처분이력이 없는 소년은 보호처분 외의 판결을 받거나 불출석하여 처분이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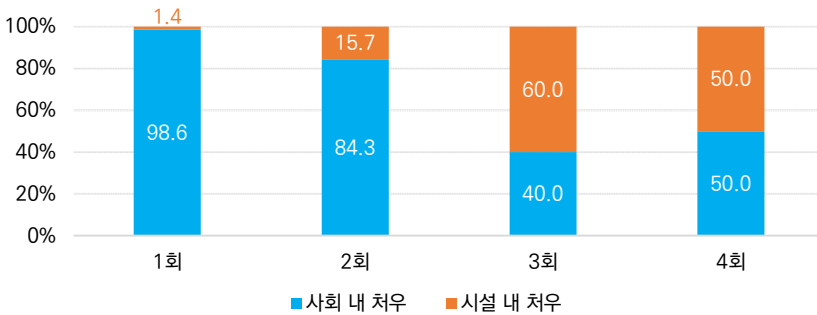


그림 III-18.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최종처분 기준)

(7) 보호소년 위agy요인 특성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소년은 다양한 위agy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사전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와 또래 관련 위agy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개인 위agy요인은 정신질환, 신체질환, 인지 문제, 음주, 흡연, 가출, 중독, 성매매/조건만남 경험, 과도한 성적 관심, 성폭력 피해 경험, 심리 관련, 위험 행동/활동 관련, 자살 관련 위험의 13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가족 위agy요인은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 신체질환, 중독, 형집행 유무, 형제자매의 비행, 가정폭력, 학대방임, 보호자 사망, 이혼/별거/가출, 경제적 문제, 사회복지시설 거주 경험의 11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및 또래 위agy요인은 학교징계유무, 저조한

학업성적/태도, 결석/무단결석, 학업중단/자퇴,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행또래의 6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보호소년의 위기요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년이 받은 모든 재판의 준비 메모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하여 파악하고 소년을 중심으로 위기요인 관련 변수를 생성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음을 밝힌다.

① 개인 위기요인

표 III-26에 제시한 것처럼 총 728명의 보호소년 중 절반가량인 358명(49.2%)은 개인 위기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개의 개인 위기요인 중, 1개 요인을 지닌 소년은 142명(19.5%), 2개 요인을 지닌 경우는 71명(9.8%)이었다. 1명의 소년이 최대 7개의 개인 위기요인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소년은 3명(0.4%)이었다.

표 III-26. 보호소년 개인 위기요인 빈도

구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개인	0	358	49.2
	1	142	19.5
	2	71	9.8
	3	71	9.8
	4	58	8.0
	5	20	2.8
	6	5	0.7
	7	3	0.4
	소계(개)	728	100.0
전체		평균 1.2, 표준편차 1.5	

소년의 개인 위기요인과 보호처분 이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처분 이력이 많을수록 위기요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II-27, 그림 III-19). 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 중 개인 위기요인이 0개인 소년은 49.7%(2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비율은 처분 이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처분 이력이 3~4회인 집단에서는 위기요인이 없는 소년의 비율이 3.7%(1명)로 매우 낮았다. 또한, 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 중 위기요

인이 4개 이상인 경우는 8.0%(41명)에 불과했으나 처분 이력 3~4회인 소년 집단에서는 위기요인 수가 4개 이상인 경우가 51.9%(14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I-27.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개인 위기요인

(단위 : 명(%))

구분		처분 이력			
		1회 (<i>n</i> =513)	2회 (<i>n</i> =70)	3~4회 (<i>n</i> =27)	계 (<i>n</i> =610)
개인 위기요인	0개	255(49.7)	7(10.0)	1(3.7)	263(43.1)
	1개	113(22.0)	8(11.4)	2(7.4)	123(20.2)
	2~3개	104(20.3)	24(34.3)	10(37.0)	138(22.6)
	4개 이상	41(8.0)	31(44.3)	14(51.9)	86(14.1)
계		513(100.0)	70(100.0)	27(100.0)	610(100.0)

* 주: 1) Pearson Chi-Squared(8)=132.5(*p*<0.001)
 2) 처분 이력 0회(*n*=118)는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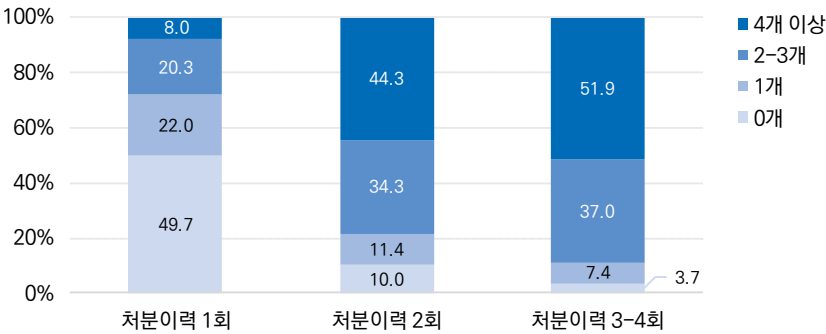


그림 III-19.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개인 위기요인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세부 개인 위기요인 분포는 표 III-28과 그림 III-20에 제시하였다. 흡연, 위험 행동 관련, 가출, 음주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처분 이력 1회, 2회, 3~4회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단, 처분 이력이 증가할 때 개인 위기요인 경험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8.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개인 위기요인 세부변인

(단위 : 명(%))

처분 이력 위기요인	1회 (<i>n</i> =513)	2회 (<i>n</i> =70)	3~4회 (<i>n</i> =27)	계 (<i>n</i> =610)
정신질환	31(6.0)	7(10.0)	7(25.9)	45(7.4)
신체질환	25(4.9)	8(11.4)	3(11.1)	36(5.9)
인지 관련	19(3.7)	2(2.9)	2(7.4)	23(3.8)
음주	77(15.0)	39(55.7)	17(63.0)	133(21.8)
흡연	124(24.2)	51(72.9)	21(77.8)	196(32.1)
가출	85(16.6)	43(61.4)	23(85.2)	151(24.8)
중독	27(5.3)	6(8.6)	1(3.7)	34(5.6)
성매매/조건만남	4(0.8)	1(1.4)	0(0.0)	5(0.8)
과도한 성적 관심	43(8.4)	15(21.4)	4(14.8)	62(10.2)
성폭력 피해 경험	3(0.6)	2(2.9)	0(0.0)	5(0.8)
심리 관련	17(3.3)	3(4.3)	3(11.1)	23(3.8)
위험 행동 관련	87(17.0)	35(50.0)	16(59.3)	138(22.6)
자살 관련	12(2.3)	5(7.1)	1(3.7)	18(3.0)

* 주: 1) 세부변인은 중복 집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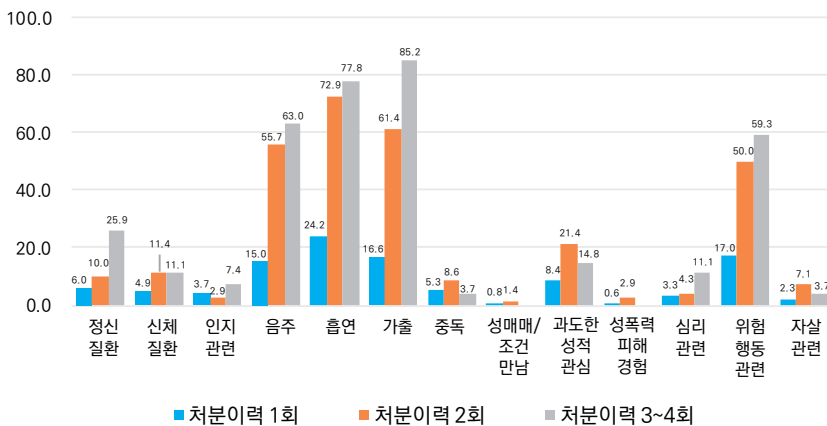
2) 처분 이력 0회(*n*=118)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II-20.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개인 위기요인 세부변인

② 가정 위기로인

총 728명의 보호소년 중 399명(54.8%)은 가정 위기로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개의 세부 가정 위기로인 중 1개 요인을 지닌 소년은 191명(26.2%), 2개 요인은 91명(12.5%)이었으며, 최대 5개의 가정 위기로인을 지니는 것(1명, 0.1%)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보호소년 가정 위기로인 빈도

구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가정 위기로인	0	399	54.8
	1	191	26.2
	2	91	12.5
	3	28	3.8
	4	18	2.5
	5	1	0.1
	계(개)	728	100.0
전체		평균 0.7, 표준편차 1.0	

소년의 가정 위기로인과 보호처분 이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인 위기로인과 마찬가지로 처분 이력이 많을수록 가정의 위기로인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Ⅲ-30, 그림 Ⅲ-21). 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 중 가정 위기로인이 0개인 경우는 56.5%였던 반면에 처분 이력이 3~4회인 소년 중 가정 위기로인이 0개인 경우가 22.2%이었다. 보호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 중에서 가정 위기로인이 3개 이상인 소년의 비율은 5.3%이지만 보호처분 이력이 3~4회인 소년은 가정 위기로인이 3개 이상인 경우가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가정 위기로인

(단위 : 명(%))

구분		처분 이력			
		1회 (<i>n</i> =513)	2회 (<i>n</i> =70)	3~4회 (<i>n</i> =27)	계 (<i>n</i> =610)
가정 위기로인	0개	290(56.5)	15(21.4)	6(22.2)	311(51.0)
	1개	137(26.7)	25(35.7)	4(14.8)	166(27.2)
	2개	59(11.5)	19(27.1)	9(33.3)	87(14.3)
	3개 이상	27(5.3)	11(15.7)	8(29.6)	46(7.5)
계		513(100.0)	70(100.0)	27(100.0)	6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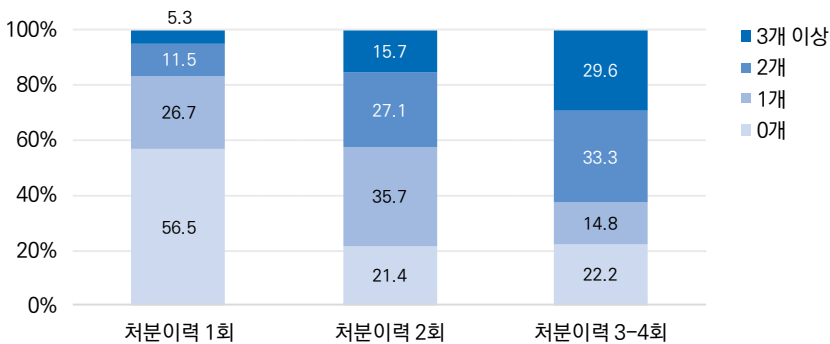
* 주: 1) Pearson Chi-Squared(6)=67.9($p<0.001$)2) 처분 이력 0회(*n*=118)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II-21.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가정 위기로인

거의 모든 세부 가정 위기로인에서 보호처분 이력이 많을수록 위기로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III-31, 그림 III-22). 소년들은 가정 위기로인 중 특히 부모의 이혼/별거/가출 경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들의 29%, 2회인 소년들의 54.3%, 3~4회인 소년들의 66.7%가 부모의 이혼/별거/가출을 경험하였다. 이어서 가족구성원의 만성적인 신체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장기입원도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처분 이력이 1회 소년의 10.1%, 2회인 소년의 25.7%, 3회~4회인 소년의 29.6%가 부모의 신체질환을 위기로인으로 가지고 있었다.

표 III-31.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가정 위기요인 세부변인

(단위 : 명(%))

구분	처분 이력			
	1회 (<i>n</i> =513)	2회 (<i>n</i> =70)	3~4회 (<i>n</i> =27)	계 (<i>n</i> =610)
정신질환	26(5.1)	7(10.0)	3(11.1)	36(5.9)
신체질환	52(10.1)	18(25.7)	8(29.6)	78(12.8)
중독	13(2.5)	5(7.1)	2(7.4)	20(3.3)
형 집행 유무	12(2.3)	1(1.4)	2(7.4)	15(2.5)
형제자매 비행	5(1.0)	3(4.3)	1(3.7)	9(1.5)
학대방임	17(3.3)	7(10.0)	5(18.5)	29(4.8)
가정폭력/갈등	11(2.1)	5(7.1)	5(18.5)	21(3.4)
보호자 사망	24(4.7)	6(8.6)	4(14.8)	34(5.6)
부모 이혼/별거/가출	149(29.0)	38(54.3)	18(66.7)	205(33.6)
경제적 문제	32(6.2)	11(15.7)	4(14.8)	47(7.7)
사회복지시설 거주	3(0.6)	3(4.3)	2(7.4)	8(1.3)

* 주: 1) 세부변인은 중복 집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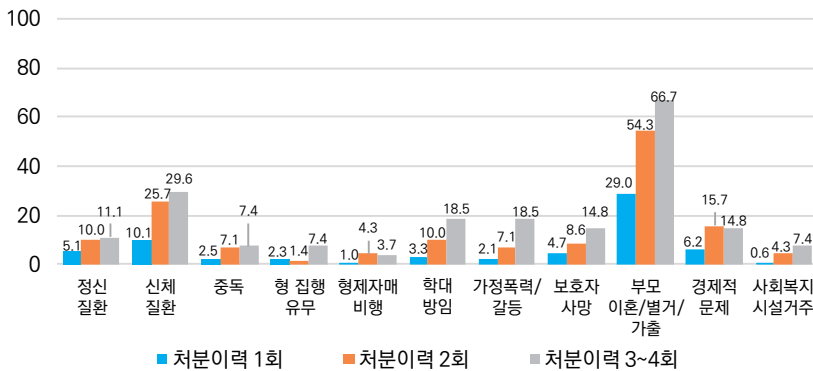
2) 처분 이력 0회(*n*=118)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II-22.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가정 위기요인 세부변인

③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마지막으로 학교 및 또래 관련 위기로인의 경우는 1개 위기로인을 경험하는 소년 363명(49.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표 Ⅲ-32). 이는 위기로인이 0개인 소년이 가장 많은 개인 및 가정 위기로인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학교 및 또래 관련 위기로인이 0개인 소년은 246명(33.8%), 2개인 소년은 106명(14.6%), 3개 이상은 12명(1.7%)이었다.

표 Ⅲ-32. 보호소년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빈도

구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학교 및 또래	0	246	33.8
	1	363	49.9
	2	106	14.6
	3	12	1.7
	4	1	0.1
	계	728	100.0
전체		평균 0.8, 표준편차 0.7	

처분 이력과 관계를 살펴보면 위기로인이 1개인 소년의 비중이 모든 처분이력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처분 이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처분 이력이 1회인 집단의 소년 중 위기로인이 0개인 소년이 35.1%였으나 처분 이력이 3~4회인 집단은 위기로인이 0개인 소년의 비중이 7.4%에 불과했다. 한편, 처분 이력이 1회인 집단은 위기로인이 2개 이상인 소년의 비율이 13.3%였지만, 처분 이력이 3회~4회인 집단 중 위기로인이 2개 이상인 소년은 44.4%로 나타났다.

표 III-33.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단위 : 명(%))

구분		처분 이력			
		1회 (n=513)	2회 (n=70)	3~4회 (n=27)	계 (n=610)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0개	180(35.1)	7(10.0)	2(7.4)	189(31.0)
	1개	265(51.7)	32(45.7)	13(48.1)	310(50.8)
	2개 이상	68(13.3)	31(44.3)	12(44.4)	12(18.2)
계		513(100.0)	70(100.0)	27(100.0)	610(100.0)

* 주: 1) Pearson Chi-Squared(6)=77.5($p<0.001$)
 2) 처분 이력 0회(n=118)는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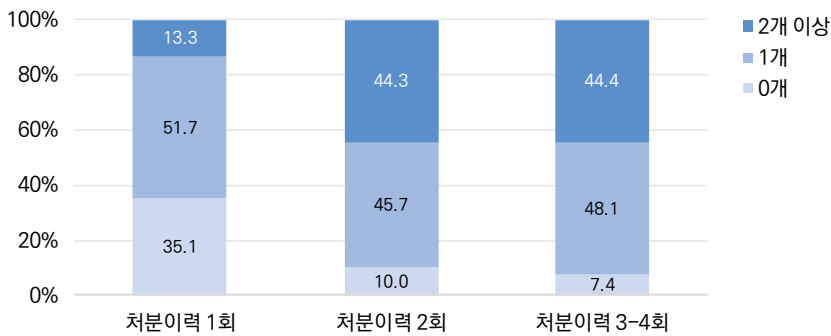


그림 III-23. 보호소년 처분이력과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소년들은 학교 및 또래 세부 위기요인 중 특히 학업중단, 결석, 낮은 학업성적 및 부정적 학업태도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위기요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처분 이력이 많을수록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경험률이 높았다. 예를 들어, 학업중단의 경우 처분이력이 1회인 소년의 16.6%, 2회인 소년의 61.4%, 3~4회인 소년의 85.2%가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의 24.2%, 2회인 소년의 72.9%, 3~4회인 소년의 77.8%가 잦은 결석 및 무단결석 경험을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으로 가지고 있었다.

표 III-34.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세부변인

(단위 : 명(%))

구분	처분 이력			
	1회 (<i>n</i> =513)	2회 (<i>n</i> =70)	3~4회 (<i>n</i> =27)	계 (<i>n</i> =610)
학교징계 유무	31(6.0)	7(10.0)	7(25.9)	45(7.4)
학교폭력 피해 경험	25(4.9)	8(11.4)	3(11.1)	36(5.9)
비행또래 유무	19(3.7)	2(2.9)	2(7.4)	23(3.8)
학업성적/태도	77(15.0)	39(55.7)	17(63.0)	133(21.8)
결석(무단결석)	124(24.2)	51(72.9)	21(77.8)	196(32.1)
학업중단	85(16.6)	43(61.4)	23(85.2)	151(24.8)

* 주: 1) 세부변인은 중복 집계될 수 있음.
2) 처분 이력 0회(*n*=118)는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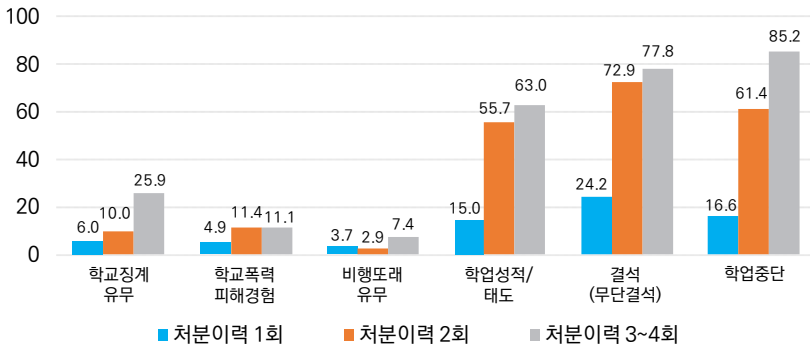


그림 III-24. 보호소년 처분 이력과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세부변인

4) 보호처분변경신청 및 보호처분집행감독 재판 기준 결과

(1) 재판 결과

보호처분변경신청(이하 ‘푸초’)과 보호처분집행감독(이하 ‘푸집’)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각각 112건과 3건이었다. 연도별 재판 건수는 표 III-35에 제시되어 있다. 푸초 재판의 경우, 연구대상 기간 동안에 연 최소 2건에서 최대 36건의 심리가 이루어졌다. 푸집 재판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건과 2건이 보고되었다.

표 III-35. 푸초/푸집/푸 재판 건수

(단위 : 건(%))

구분	보호처분변경신청 (푸초)	보호처분집행감독 (푸집)	소년보호사건 (푸)	계
2013	2(0.9)	-	225(99.1)	227(100.0)
2014	28(7.2)	-	359(92.8)	387(100.0)
2015	27(9.1)	-	269(90.9)	296(100.0)
2016	36(12.5)	-	252(87.5)	288(100.0)
2017	17(7.8)	1(0.5)	199(91.7)	217(100.0)
2018	2(4.4)	2(4.4)	41(91.1)	45(100.0)
계	112(7.7)	3(0.2)	1,345(92.1)	1,460(100.0)

표 III-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푸초 재판 112건 중 임시위탁 결정이 내려진 10건(8.9%)과 불출석 17건(15.2%)은 최종 판결로 집계되지 않았으며, 74건(66.1%)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 푸집 재판은 총 3건으로 이중 보호처분 결정은 2건, 임시위탁 결정은 1건이었다. 푸집 재판 역시 푸초 재판과 마찬가지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

표 III-36. 푸초/푸집/푸 사건 재판 결과

(단위 : 건(%))

판결구분 \ 사건구분		보호처분변경신청 (푸초)	보호처분집행감독 (푸집)	소년보호사건 (푸)
최종판결	보호처분	74(66.1)	2(66.7)	681(50.1)
	불처분	-	-	156(11.6)
	기타 ^a	11(9.8) ^a	0(0.0)	5(0.4) ^b
최종판결 아님	임시위탁	10(8.9)	1(33.3)	100(7.4)
	불출석	17(15.2)	0(0.0)	392(29.1)
	기타	-	-	11(0.8) ^c
계		112(100.0)	3(100.0)	1345(100.0)

* 주: ^a기각 등, ^b검찰송치, 기각, 화해권고 등, ^c장기상담, 장기시험관찰, 전문가진단 등

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보면, 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이하 ‘푸’)과 푸초 혹은 푸집 사건의 재판이 같은 기일에 열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두 재판에 대하여 각각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재판 중 한 개 재판에서는 불처분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다른 재판에서는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표 Ⅲ-3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 자료 내에서 이처럼 한 소년에 대한 푸 재판과 푸초/푸집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된 경우는 총 46건이었다. 먼저, 푸 재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난 38건의 재판과 같은 기일에 진행된 푸초/푸집 재판에서의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푸 재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났을 때, 푸초/푸집 재판에서 9호 처분이 난 경우는 8건(21.1%), 10호 처분 결정이 난 경우는 8건(21.1%)으로 소년원 처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푸 재판에서는 불처분 결정이 났지만, 같은 날 개시된 푸초/푸집 재판에서 시설 내 처우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50%에 달했다. 한편, 푸초/푸집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난 8건의 재판과 같은 날에 열린 푸 재판 결과를 보면 8건 중 2건(25.0%)이 시설 내 처우 결정이 내려졌으며, 임시위탁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3건(37.5%)이었다.

표 Ⅲ-37. 푸 사건과 푸초/푸집 사건 재판 결과 비교

재판 결과		재판 수(%)
소년보호사건(푸) 재판	보호처분변경신청(푸초) /보호처분집행감독(푸집) 재판	
불처분	1호, 2호, 4호	3(7.9)
	1호, 2호, 5호	6(15.8)
	1호, 2호, 3호, 5호	4(10.5)
	1호, 3호, 4호	1(2.6)
	1호, 4호	1(2.6)
	1호, 5호	3(7.9)
	5호, 8호	1(2.6)
	7호	2(5.3)
	9호	8(21.1)
	10호	8(21.1)
	임시위탁	1(2.6)
소계		38(100.0)

재판 결과		재판 수(%)
소년보호사건(푸) 재판	보호처분변경신청(푸초) /보호처분집행감독(푸집) 재판	
1호, 2호, 4호	기각	1(12.5)
1호, 2호, 5호		1(12.5)
1호, 4호		1(12.5)
5호, 8호		1(12.5)
9호		1(12.5)
임시위탁		3(37.5)
소계		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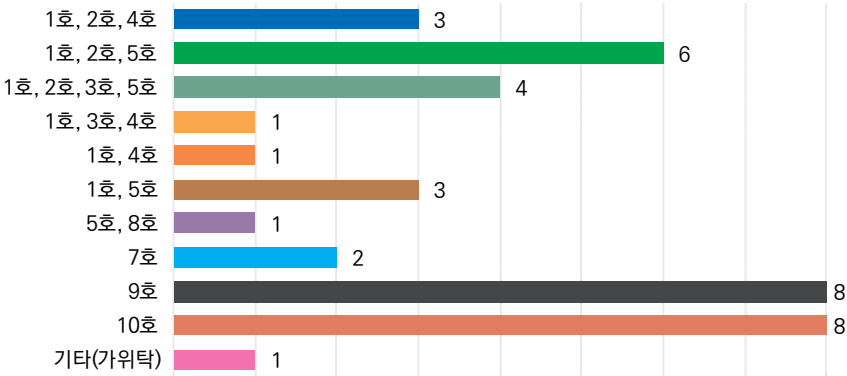


그림 III-25. 푸 재판 불처분 결정시 푸초/푸집 재판 결과

(2) 재판 기준 보호처분별 빈도

전체 푸초/푸집 사건에 대해 내려진 보호처분별 빈도를 표 III-38에 제시하였다. 푸초/푸집 재판 중 보호처분 결정이 최종 판결인 경우는 총 76건에 해당하는데 이 중 37건은 앞서 살펴본 푸 재판과 동일 날짜에 진행된 푸초/푸집 재판 결과이며, 나머지 39건은 푸 재판과 상관없이 개시된 푸초/푸집 재판 결과에 해당한다. 사회 내 처우 결정이 내려진 재판이 47건(61.8%), 시설 내 처우 결정이 내려진 재판은 29건(38.2%)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푸초/푸집 보호처분 현황

구분	보호처분변경신청(푸초) / 보호처분집행감독(푸집) 재판	
	빈도(건)	비율(%)
1호, 2호, 3호, 4호	1	1.3
1호, 2호, 3호, 5호	10	13.2
1호, 2호, 4호	10	13.2
1호, 2호, 5호	13	17.1
1호, 3호, 4호	2	2.6
1호, 4호	8	10.5
1호, 5호	3	3.9
4호, 6호	1	1.3
5호, 8호	2	2.6
7호	2	2.6
9호	15	19.7
10호	9	11.8
계	76	100.0

* 주: 보호처분집행감독 재판이 총 3건밖에 되지 않으므로 보호처분변경신청 재판과 함께 보고함.

(3) 재판 사유

푸초/푸집 재판의 사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거지 상주 및 생업 종사 미준수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소환 및 지도감독에 불응(19.0%), 재비행(16.5%) 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외출제한명령 위반(12.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위반 (5.9%), 선행유지 의무 위반 및 불량교우교제(4.4%), 학업성실 및 학업유지 위반(3.7%), 보호자보호력 미약(3.3%) 등이 있다.

표 III-39. 푸초/푸집 사건 재판 사유

구분	빈도(건)	비율(%)
보호자보호력 미약	9	3.3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반	16	5.9
선행유지 의무 위반 및 불량교우교제	12	4.4
소환불응 및 지도감독 불응	52	19.0
외출제한명령 위반	33	12.1

구분	빈도(건)	비율(%)
재비행	45	16.5
주거지상주 생업종사 위반	64	23.4
학업성실 및 학업유지 위반	10	3.7
기타	32	11.7
계	273	100.0

* 주: 1) 보호처분집행감독 재판이 총 3건밖에 되지 않으므로 보호처분변경신청 재판과 함께 보고함.
2) 기타는 주거지이전신고의무, 특별준수사항위반, 연장신청, 보호처분집행감독, 보호관찰신고 등을 포함함

(4) 위기요인²³⁾

사건 구분에 따라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이 다른 분포를 보였다. 표 III-4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개인 위기요인 수는 푸초 및 푸집 재판의 경우 3.5개로, 푸 재판의 1.2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푸초 및 푸집 재판의 경우 개인 위기요인이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81.8%인 반면 푸 재판은 21.6%에 그쳤다.

표 III-40. 사건구분별 개인 위기요인

(단위 : 명(%))

사건구분 위기요인 수	소년보호사건(푸)	보호처분변경신청(푸초) / 보호처분집행감독(푸집)
0개	358(49.2)	3(5.5)
1개	142(19.5)	2(3.6)
2개	71(9.8)	5(9.1)
3개	71(9.8)	15(27.3)
4개	58(8.0)	17(30.9)
5개	20(2.7)	11(20.0)
6개	5(0.7)	2(3.6)
7개	3(0.4)	-
계	728(100.0)	55(100.0)
전체(개)	평균 1.2 표준편차 1.6	평균 3.5 표준편차 1.4

* 주: 사건구분에 따른 위기요인 평균 비교 결과: $F_{(1,781)}=111.7(p<0.001)$

23)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 및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에는 소년 정보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본 분석은 같은 날 심리가 열린 소년보호사건(46건)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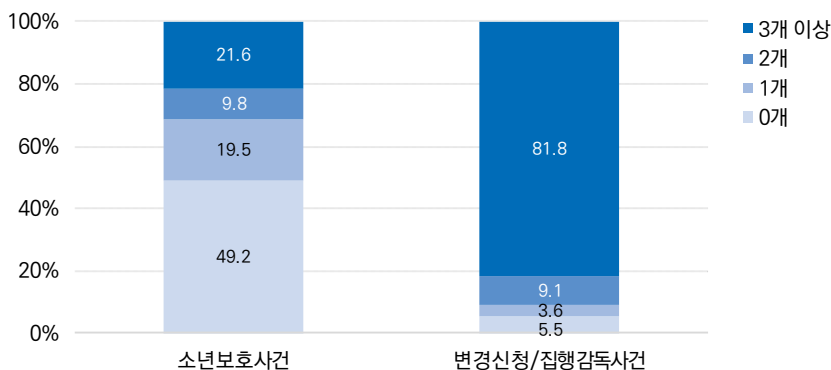


그림 III-26. 사건구분별 위기요인(개인)

표 III-4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 위기요인은 푸초 및 푸집 재판의 경우에는 평균 2개로 푸 재판의 가정 위기요인 평균인 0.7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푸초 및 푸집 재판은 가정 위기요인이 2개인 경우가 21건(38.2%)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푸 재판은 가정 위기요인이 0개인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399건, 54.8%).

표 III-41. 사건구분별 가정 위기요인

(단위 : 명(%))

사건구분 위기요인 수	소년보호사건(푸)	보호처분변경신청(푸초) / 보호처분집행감독(푸집)
0개	399(54.8)	3(5.5)
1개	191(26.2)	17(30.9)
2개	91(12.5)	21(38.2)
3개	28(3.9)	7(12.7)
4개	18(2.5)	7(12.7)
5개	1(0.1)	-
계	728(100.0)	55(100.0)
전체(개)	평균 0.7 표준편차 1.0	평균 2.0 표준편차 1.1

* 주: 사건구분에 따른 위기요인 평균 비교 결과: $F_{(1,781)}=76.3(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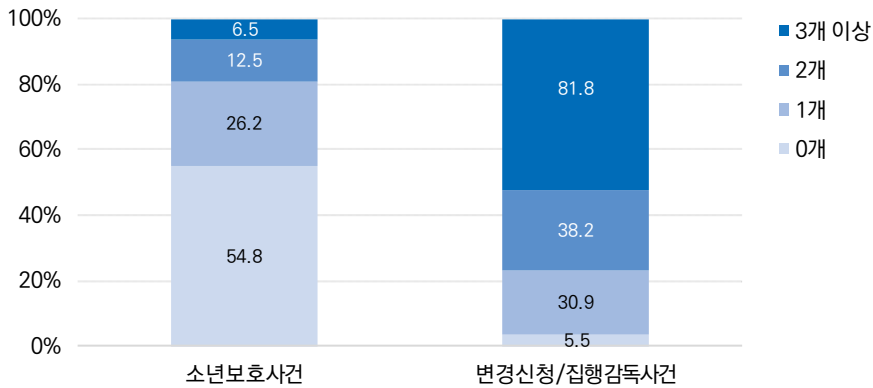


그림 III-27. 사건구분별 가정 위기요인

한편 푸초 및 푸집 재판과 푸 재판의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평균 갯수는 각각 1.0과 0.8로 보고되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푸초 및 푸집 재판은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이 1개인 경우가 26명(47.3%)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푸 재판도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이 1개인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363건, 49.9%).

표 III-42. 사건구분별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단위 :명(%))

사건구분 위기요인 수	소년보호사건(푸)	보호처분변경신청(푸초) / 보호처분집행감독(푸집)
0개	246(33.8)	15(27.3)
1개	363(49.9)	26(47.3)
2개	106(14.6)	12(21.8)
3개	12(1.7)	2(3.6)
4개	1(0.1)	-
계	728(100.0)	55(100.0)
전체(개)	평균 0.8, 표준편차 0.7	평균 1.0, 표준편차 0.8

* 주: 사건구분에 따른 위기요인 평균 비교 결과: $F_{(1,781)}=2.82(p=0.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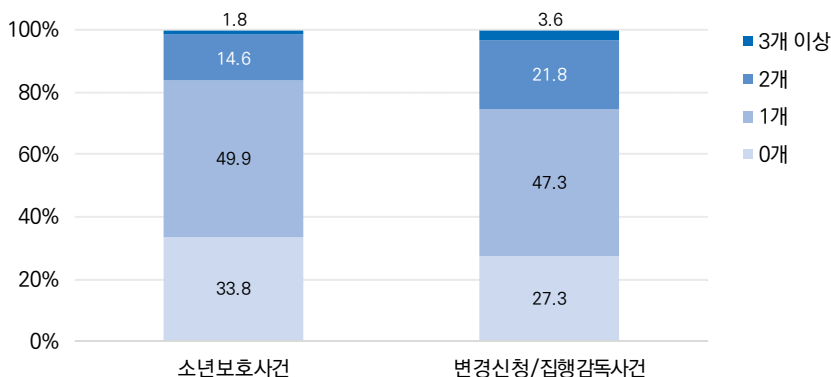


그림 III-28. 사건구분 별 학교 및 또래 위agy요인

4.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 지방 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정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재판 준비 메모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개시하기에 앞서 판결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비정형 문서로서 사건의 특성, 처우 및 처분결과, 소년의 심리·정서·행동적 특성, 가정환경, 학교적응 및 또래관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본 연구는 특히 촉법소년의 사건 양상 및 처우, 환경 특성에 초점을 두기 위해 전체 재판 준비 메모 중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기준으로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재판 준비 메모 자료의 기본 분석 단위는 재판이지만,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재판의 당사자인 소년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여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표 III-43).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재판(총 1,345건) 중 최종 판결 재판은 842건이며, 보호처분변경신청 및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에 대한 재판(총 115건) 중 최종 판결 재판은 87건이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의 재판 중 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에서 다른 세부 사건은 1,483건이었으며, 보호처분변경신청 및 보호처분집행감독 재판 중 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에서 다른 세부 사건은 273건이었다.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등장한 소년은 총 728명이며, 보호처분변경신청 및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에 대한 재판에 등장한 소년은 55명이었다.

표 III-43. 분석 단위별 사례 수

분석 단위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 및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
재판	842건	87건
사건	1,483건	273건
소년	728명	55명

* 주: 재판 기준 분석과 사건 기준 분석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판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며, 소년 기준 분석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재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표 III-44. 주요 연구결과 요약

분석 단위	내용
소년 보호 사건 (푸)	재판 • 소년보호사건 재판 최종 판결 처우 불처분 결정 18.5%, 보호처분 결정 80.9% • 보호처분 중 사회 내 처분 94.6%, 시설 내 처분 5.4% • 보호처분 결정 중 1호 단독처분과 1호를 포함한 병합처분 94.3% • 첫 재판에서 최종처우가 결정된 경우는 77.1%, 사건 발생 후 최종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걸린 경우는 27.5% • 재판에서 다른 범죄유형 중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재산범죄(59.4%), 폭력범죄(28.0%), 성관련범죄(16.0%), 교통범죄(10.5%)로 나타남 • 흉악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사회 내 처우의 비율이 가장 높음
	사건 •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은 순서대로 재산범죄(55.6%), 폭력범죄(21.3%), 성관련범죄(11.4%), 교통범죄(8.4%) • 소년보호사건의 47.1%가 15시~24시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교통범죄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심야나 새벽 시간에 발생률이 높음(21시~6시 65.3%). • 성관련범죄의 71.3%가 공범 없이 발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재산범죄와 교통범죄는 각각 67.0%와 61.7%가 공범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소년 • 불출석, 임시위탁 등으로 인한 중복재판을 포함한 총 재판 수는 소년당 평균 1.8건, 재판 수가 1건인 소년 73.4%, 재판 수가 7회 이상인 소년 4.3% • 중복재판을 제외한 고유사건번호가 부여된 독립된 재판 수는 소년당 평균 1.2건, 재판 수가 1건인 소년 87.4%, 최대 4건의 재판을 받은 소년 1.4% • 소년의 보호처분 이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내 처우 처분을 받는 소년 비율 증가 • 처분 이력이 많은 소년일수록 개인·가족·학교/또래 모든 영역에서 관련 위기요인 수가 많음
보호처분변경신청 사건(무초)/ 보호처분집행감독	• 최종 판결이 내려진 재판에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38.2%가 시설 내 처분 • 같은 날 진행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분이 내려졌을 때 보호처분변경신청 또는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50%가 시설 내 처우 결정이 내려짐

분석 단위	내용
사건(무집)	- 재판 사유로는 주거지 상주 및 생업 종사 미준수(23.4%), 소환 및 지도 감독 불응(19.0%), 재비행(16.5%) 등이 있음 - 소년보호사건 소년보다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모든 영역에서 위기요인 수가 많음

재판, 사건, 소년의 분석 단위별 주요 연구결과를 표 III-44에 요약하였다. 재판 기준 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보호사건의 최종 판결이 있는 재판 842건 중 18.5%(156건)는 불처분 결정, 80.9%(681건)는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전국 촉법소년의 처분 현황과 유사하다.²⁴⁾ 보호처분 결정이 난 재판 중 1호 처분이 포함된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1호 단독처분 혹은 1호와 함께 병합처분)는 94.3%(642건)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소년보호사건 중 첫 재판에서 최종처우가 결정된 경우는 77.1%(649건)이었다. 나머지 22.9%(193건)는 최종 판결이 결정되기까지 2회 이상의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 처우가 결정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27.5%(227건)였다. 셋째, 최종판결이 있는 재판 중 재산범죄 사건을 다룬 재판이 500건으로 59.4%를 차지했으며, 폭력범죄(28.0%)와 성관련범죄(16.0%)가 뒤를 이었다. 흉악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사회 내 처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건 기준 분석은 소년보호사건이자 최종 판결 재판 842건에서 다뤄진 소년보호사건 자료 1,483건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전체 사건 1,483건 중 재산범죄(55.6%), 폭력범죄(21.3%), 성관련범죄(11.4%), 교통범죄(8.4%)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둘째, 사건의 발생은 15~24시 사이에 전체 사건의 47.1%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해 교통범죄는 21시~6시 사이에 전체 사건의 65.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심야나 새벽 시간에 발생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관련범죄의 71.3%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재산범죄와 교통범죄는 공범이 1명 이상인 경우가 각각 67.0%와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기준 분석에서는 다음의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 기간인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불출석, 임시위탁 등으로 인한 중복재판을 포함하여 소년당 평균 1.8건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재판 수가 1건인 소년은 73.4%, 재판 수가 7건 이상인

24) 전국 기준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전체 처리 건수의 79.9%를 차지함. 이는 “표 II-16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처리 동향”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처분 건수의 총합을 심리불개시를 제외한 처리 건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임.

소년은 4.3%였다. 둘째,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최종 판결이 내려진 재판을 기준으로 소년은 평균 1.2번, 최대 4번의 각기 다른 비행/범죄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에 등장하였다. 재판 수가 1건인 소년은 87.4%, 최대 4건의 재판을 받은 소년은 1.4%였다. 셋째, 소년의 이전 처분이력 정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 소년의 보호처분 이력이 증가할수록 사회 내 처우보다는 시설 내 처우 처분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처분 이력이 많은 소년일수록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모든 영역에서 위기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변경신청 또는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처분변경신청 또는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에 대한 재판(115건)에서 보호처분이 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38.2%가 시설 내 처분에 해당하였다. 둘째, 같은 날 진행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때, 보호처분변경신청 또는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50%가 시설 내 처분이 내려졌다. 셋째, 재판 사유로는 주거지 상주 및 생업 종사 미준수(23.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소환이나 지도 감독에 불응(19.0%), 재비행(16.5%)이 그 뒤를 이었다. 보호처분변경신청 및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소년들은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모든 영역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소년들에 비해 위기로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재판 경험이 많은 소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수재판 경험은 특히 소년의 재범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728명의 소년 중 26.6%가 2개 이상의 중복재판을 경험하였다. 소년의 중복 재판은 2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고유사건번호가 부여된 독립된 사건이 발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소년이 또다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소년(87.2%)은 1건의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을 두 번 받은 경우는 8.1%, 세 번 받은 경우는 3.2%, 최대 4번 받은 경우도 1.4%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복재판은 소년의 불출석이나 임시위탁 또는 상담/관찰 등의 심리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 자료에서 소년이 불출석한 재판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전체 재판의 29.1%, 연구 대상 기간 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못한 재판의 77.9%를 차지하였다.

소년의 잦은 재판 불출석은 소년보호제도의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소년의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료에서 불출석으로 인한 중복재판이 많은 소년일수록 추가 사건이 병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최초 재판을 위한 준비 메모에 등장한 사건은 1건이었으나, 소년의 불출석으로 심리 기일이 계속해서 변경될 때마다 추가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둘째, 보호처분의 94.3%가 1호 단독처분이거나 1호 처분과 다른 보호처분을 함께 내리는 병합처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소년법(제32조)에 따르면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소년의 보호자는 부모나 친지 등 가족 구성원을 가리키는데, 보호자의 보호력이나 통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재비행 위험성은 증가한다(Baglivio et al., 2020). 특히 가정의 구조적인 결손으로 인한 경제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또래와의 부적응적 관계가 소년 재범의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윤웅장, 2017). 본 장의 분석 결과에서 45.2%의 보호소년들이 1개 이상의 가정 위기요인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이혼·별거·가출이라는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성원의 신체·정신 질환 및 중독의 건강 문제가 22.0%, 가정폭력 및 학대방임 등과 같은 관계적 문제가 8.2%, 경제적 어려움이 7.7%에 해당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가정의 위기요인은 소년의 처분 이력이 많을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보호력이 미약한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재비행에 취약한 환경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년법은 가정의 낮은 보호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감호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소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을 때 위탁 감호가 가능하다. 1호 처분 소년을 위탁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종류이며 전국 17개소²⁵⁾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는 대안적 가정의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리의 기능뿐 아니라, 소년의 신체 및 심리 정서의 치유 및 회복, 학업 적응, 진로상담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25) 2023년 9월 기준: 경기(3), 경남(4), 광주(1), 대전(2), 부산(3), 울산(1), 전북(1), 제주(2)

위탁 보호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정원이 5~10명 내외로 가용 인원이 제한적이며 소년의 감호 위탁 기간이 비교적 짧은 6개월(연장 가능)이라는 제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향후 소년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환경에서 자라며 학교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형 그룹홈의 양적 확장 방안과 더불어 증장기적 대안 가정을 마련할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소년은 가정 위기로인뿐 아니라, 개인 영역과 학교·또래 영역의 위기로인이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더 나아가 보호처분 이력이 많은 소년일수록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모든 영역에서 관련 위기로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소년의 50.8%는 최소 1개의 개인 위기로인을 경험하였다.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을 겪은 소년이 각각 7.4%, 5.9%, 3.8%였고, 게임중독, 알코올중독, 도박중독과 같은 중독을 경험한 소년이 5.6%였으며, 자살시도 및 자해 경험이 있는 소년도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 이력이 3~4회인 소년의 경우에 심리 정서적, 인지적 취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해당 그룹의 소년의 25.9%가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어려움 및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11.1%는 평소에 공격성, 충동성, 분노, 무기력감 등의 심리 관련 위기로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처분 이력이 3~4회인 소년의 7.4%는 경계선지능, 언어발달 지연 등의 인지 관련 어려움도 경험하였다. 학교 및 또래 관련 위기로인의 경우, 최소 1개의 위기로인을 경험하는 소년이 66.2%에 달했다. 특히 결석, 학업중단, 낮은 학업성적 및 부정적 학업태도에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개인이나 가정 영역과 동일하게 처분 이력이 많을수록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수도 많았다. 학업중단의 경우 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의 16.6%가 학업중단을 경험한 반면에 처분 이력이 3~4회인 소년의 85.2%가 학업중단을 경험하였다. 그 밖에도 처분 이력이 3~4회인 소년들은 학교징계를 경험하거나(25.9%), 기초학력부족 혹은 학업에 대한 흥미저하(63.0%)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년의 처분 이력과 개인·가정·학교 및 또래 영역에서의 위기로인 간의 인과관계 또는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 이력이 3회 이상인 소년들은 신체적 질환이나 장애, 심리·정서적 어려움, 인지·언어 발달 문제, 학교부적응 문제라는 취약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입 지점을 찾고 이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상담심리 및 치료를 확대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마중

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점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료의 대표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2013~2018년 동안 지방의 한 가정법원에서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적 공간적 대표성이 없어 다른 시기나 다른 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불완전한 정보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재판 준비 메모 자료는 기존 연구처럼 설문지 문항에 대해 자기보고식의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재판 자료를 토대로 심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한 것이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정보가 선택적으로 기록되었을 수 있다. 또한 재판자료를 작성하는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료에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판 준비 메모라는 기록 형식의 비정형 자료를 정형화하여 양적 자료로 변환한 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비정형 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여 소년보호재판의 사건 내용, 소년의 심리 행동적 특성 및 미시체계 환경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혼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라는 비정형 자료를 재판, 사건, 소년이라는 분석단위로 세분화하여 양적자료를 구축하였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다각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과 관련된 실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 준비 메모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년보호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 제4장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분석

- 1.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및 분석 개요
- 2.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 집단별 분석 결과
- 3.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 공통 주제 분석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 및 분석 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는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의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처분 전 조사와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현장 전문가 및 보호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10개의 면접 집단을 구성하였다.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2~4인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초점집단별로 120분 내외의 면접을 연구진이 직접 실시하였다.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집단 및 참여자 정보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집단 및 참여자 정보

집단	집단명 약어	집단 및 참여자 정보
처분 전 조사 관련 종사자	조사	• 집단정보 -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담당자 * 1집단 - 처분 전 조사 담당자(법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1집단 • 참여자 정보 - A: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15년 이상, 조사 업무 3년 이상 - B: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30년 이상, 조사 업무 7년 이상 - C: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5년 이상, 조사 업무 1년 이상 - D: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10년 이상, 조사 업무 5년 이상 - E: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10년 이상, 조사 업무 2년 이상 - F: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20년 이상, 조사업무 20년 이상

26) 이 장은 양경선 박사(서울대학교)가 공동집필 하였음.

집단	집단명 약어	집단 및 참여자 정보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1호)	1-회복	• 집단정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3인 * 1집단 • 참여자 정보 - A: 가정법원 소재지 여자 시설 종사자 - B: 지방법원 소재지 남자 시설 종사자 - C: 지방법원 비소재지 여자 시설 종사자
보호관찰소 (2, 3, 4, 5호)	보관	• 집단정보 - 수도권 보호관찰소 직원 2인 * 1집단 - 비수도권 보호관찰소 직원 3인 * 2집단 • 참여자 정보 - A: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10년 이상, 소년 업무 5년 이상 - B: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5년 이상, 소년 업무 5년 이상 - C: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20년 이상, 소년 업무 20년 이상 - D: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20년 이상, 소년 업무 20년 이상 - E: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5년 미만, 소년 업무 2년 이상 - F: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20년 이상, 소년 업무 2년 이상 - G: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10년 이상, 소년 업무 2년 이상 - H: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5년 이상, 소년 업무 3년 이상
아동보호 치료시설 (6호)	6-보호	• 집단정보: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 3인 * 1집단 • 참여자 정보 - A: 수도권 여자 시설 종사자 - B: 비수도권 남자 시설 종사자 - C: 비수도권 시설 종사자
소년원 (7, 8, 9, 10호)	소년	• 집단정보 - 의료재활소년원 직원 * 1집단 - 수도권 여자 소년원 직원 * 1집단 - 비수도권 남자 소년원 직원 * 1집단 • 참여자 정보 - 의료A: 경력 20년 이상, 소년 업무 20년 이상 - 의료B: 경력 20년 이상, 소년 업무 5년 이상 - 의료C: 경력 20년 이상, 소년 업무 10년 이상 - 의료D: 경력 30년 이상, 소년 업무 20년 이상 - A: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20년 이상, 소년 업무 20년 이상 - B: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10년 이상, 소년 업무 10년 이상 - C: 현재 수도권 근무, 경력 5년 미만, 소년 업무 3년 이상 - D: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30년 이상, 소년 업무 30년 이상 - E: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15년 이상, 소년 업무 15년 이상 - F: 현재 비수도권 근무, 경력 15년 이상, 소년 업무 15년 이상

2) 조사 내용

소년보호제도에 관한 기존의 자료들과 관련 연구 문헌,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면접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집단 간 공통 주제와 집단별 특정 주제로 구성하였다. 공통 주제는 소년범죄 추이와 소년범들의 개인 및 가정 특성,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화 논의에 대한 의견, 보호처분의 교정효과 제고 및 소년범죄 예방 방안 등이며, 세부 주제는 소년보호 전문가들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 및 기관 특성에 따른 질문을 준비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조사의 주요 질문을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질문지를 포함하여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의 전 과정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았다(202304-HR-고유-003).

표 IV-2.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주요 질문

면접 집단	집단별 주제(질문)
모든 집단	• 소년범 연령 변화 여부에 대한 생각과 그 이유 • 소년범죄 유형 변화 여부에 대한 생각과 그 이유 • 소년 가정환경의 전반적 특성과 변화 • 현장 전문가로서 소년범죄 예방 및 감소 방안 제언 • 본인이 종사하는 현장에서 보호처분의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처분 전 조사 관련 종사자	• 처분 전 조사 내용 • 처분 전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관의 자격 • 처분 전 조사 위탁 절차 • 처분 전 조사 절차 및 조사서 작성 과정 • 조사 불출석 시 처리 절차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1호)	• 1호 시설 전국 현황 및 종사자 네트워크 상황 • 1호 시설 지정 및 인가 기준, 자원 등 • 1호 시설 수용 소년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 사례 • 1호 시설 입소 가능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
보호관찰소 (2, 3, 4, 5호)	•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의 교정효과 •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처분의 교정 기능 강화 방안 • 수강 및 사회봉사 기관 지정 및 운영 방식 •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강사 구성 및 운영 방식 • 보호관찰 절차 및 내용 • 4호 처분과 5호 처분의 차이 및 관리 방식 • 보호관찰의 교정 효과 • 보호처분변경 신청 상황 및 관련 절차

면접 집단	집단별 주제(질문)
아동보호 치료시설 (6호)	• 6호 시설 전국 현황 및 종사자 네트워크 상황 • 6호 시설 지정 및 인가 기준, 재원 등 • 종사자 자격, 처우 및 교육 상황 • 6호 시설 필수 운영 프로그램 및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 • 보호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상황 • 보호소년 취업 및 진로 지도 상황
소년원 (7, 8, 9, 10호)	• 처분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조기 퇴원, 3개 기간 제한 등) • 교과 교육 운영 상황 및 개선 의견 • 직업 교육 운영 상황 및 개선 의견 • 지역사회 및 일선 학교 연계 상황과 행정절차 개선 의견 • 지역 중심 배정과 특성화 프로그램 배정에 대한 의견

3) 분석 방법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의 분석을 위해 모든 녹음 내용을 전사한 다음, 2-3회에 걸친 녹음 파일의 재청취 및 전사본 수정을 통해 분석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전사를 마친 후에는 전사된 면접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관련된 개념, 용어, 아이디어 등을 메모 및 코딩하였다. 코딩된 단어와 문장 및 단락 등을 재배열하여 범주화하고 범주별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와 메모, 범주, 주제를 교차하여 비교하면서 해체하고 재범주화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주제를 정교화하였다. 주제를 종합하여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별로 분석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처분별 공통 주제를 다시 도출하여 별도로 서술하였다.

분석 결과를 서술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는 인용문이 있으면 본문에 직접 삽입하였으며, 이때에는 가독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괄호와 대괄호를 사용하였다. 소괄호 안의 내용은 발화자 정보, 중략 등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에 해당하며, 대괄호 안의 내용은 원문에는 없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인용문의 발화 맥락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직접 문장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 집단별 분석 결과

1) 처분 전 조사

(1) 소년에 특화된 조사 인력 필요

소년에 대한 처분 전 조사는 소년의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보호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보호처분이 보안처분과 구별되는 것처럼 처분 전 조사는 비행사실 인정을 위한 자료수집이 목적인 수사와는 구분된다. 물론 조사 단계에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소년사건에서 조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전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때문에 소년에 대한 처분 전 조사는 소년의 비행 원인을 찾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년 개인을 넘어 가정의 보호력,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처분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처분 의견을 쓸 때도 소년의 비행 사실뿐 아니라 가정의 보호력을 상당 부분 고려하게 된다. 보호자와 소년의 관계뿐 아니라 가정의 형태, 보호자의 훈육 방식, 비행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 보호자의 경제적 안정성,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성, 보호자의 범죄경력 등이 조사 실무상에서 보호자의 보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일반 성인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의 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전문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중략) 원래 성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접근, 흔히 얘기하는 비행 사실, 그니까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형법상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지금까지는 한 10년 전까지는 파악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요건에 따라서 기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분만 결정만 하면 되는 게 우리나라 형사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그거와 유일하게 아니었던 게 지금 소년법이거든요. 소년법에서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요보호성이라고 하는 비행 사실이라고 하는, 이 범죄사실과는 다른,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여건이나 전반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 행동과학의 전반적인 범 전문성이 이 안에 녹아들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조사-F)

처분 전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소년의 경우 학력이 낮고 생각하는 훈련이 덜 되어 있으며 어휘력이 아직 성인의 수준이 이르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하여서 더욱 성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발달적으로 청소년기는 높은 자의식과 상상적 관중(imaginary audience), 개인적 신화(personal fable), 위험감수행동과 더불어 또래 압력 및 동조라는 특징을 갖는다(Berk, 2008: 189, 499). 청소년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고, 또래 집단과 있을 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상담 형식의 조사가 효과적이며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이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아예 어른들은 사회화가 되어 있는 과정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하는데 어른이라고 해서 말을 또 다 잘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특, 약간의 차이는 학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휘력 자체가 학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해내는 능력 자체가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단조롭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뭐 이렇기는 한데... 어, 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또 애들이 또 얘기를 해요. (조사-D)

이와 같은 소년의 특성과 소년에 대한 처분 전 조사의 전문성 요구를 반영하여 법원은 법원조사관 중 소년사건조사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고(대법원규칙 제2991호), 법무부는 보호직 공무원 중에 별도의 자격 인정시험을 거쳐 조사관과 전문조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법무부훈령 제1413호). 다만 모든 법원에 소년사건조사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호관찰소의 경우도 법무부의 조사관 또는 전문조사관이 소년에 대한 처분 전 조사만을 전담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과가 별도로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자격 인정을 받은 조사관 또는 전문조사관이 없는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지도 담당수이다. 보호직 공무원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분류심사를 담당할 때는 기관 특성상 소년 조사만을 수행하지만, 규정상 3년마다 순환하게 되어 있어서 소년 조사 업무만을 계속 수행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1순위는 이제 조사관 자격증 취득한, 저희 법무부의 그거를 (중략) 이제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채용 되시는, 우리 선배님처럼 분류심사 상담 쪽으로 특별채용 되신 분들. 그리고 그것도 없는 기관이 있어요. 그분들도 없는 기관은 이제 뭐 이렇게 심리학이나 교육학 뭐 사회복지학 이쪽에 이제 그 학사학위 있으시고 저희 쪽에서 3년 동안 일하신 경력이 있으면 이제 조사관으로 우선 되는 거죠. (조사-E)

(2) 조사의 분화와 조사기관별 특징

앞서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법과 제도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원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처분 전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며, 기본적으로 조사 명령은 법원 조사관에게 내려진다.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조사, 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보호관찰소의 조사, 그리고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로 나뉘게 된다. 조사 기능이 기관별로 분화된 데에는 조사 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조사기관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소년의 비행정도,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대략 파악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정보가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종의 조사 의뢰서 형태로 사건기록을 요약하여 법원 조사관이 아닌 외부(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로 조사를 위탁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키스(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에 등록되어 관리된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독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되 연계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후로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시스템을 구축하되 각 정보를 공통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한다(신성식, 2015).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독립된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관 간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의 기록을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자) 법원 입장에서는 기록 안에, 이건 종이 기록인데요, 종이 기록 안에 경찰 조사 내용은 모두 있죠. 있는데, 이 기록을 이제 기록 보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유출할 수가 없어요. (중략) 그리고 이 기록을 나갈 근거가 솔직히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중략)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게 외부로 나갈 때는 그래도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정보

는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기본 정보가 뭔지를 이제 만들어서 양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뢰서 형태로 보내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시는데. (중략) 처분 이후의 기록은 저희들이 [법원]에 촉탁을 해서 [법무부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파악이 필요할 경우에 [조사 위탁]을 보내드리고 그걸 또 잘해 오세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기관]은 경찰조사는 못 보셔요. [반대로 법원은] 지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전에 뭐 처분 기록 그러니까 뭐 보호관찰소라든가 이러한 처분결과들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열람이 안 되죠. (조사-F)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의 특성상 처분 전 단계에서도 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 단계에서 소년들은 정해진 기관에서 조사와 처분 전 교육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교육을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원 외부에 조사 위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법원 내에서 바로 기록을 열람하고 소년부 판사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원 조사에서도 소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조사 전후로 조사관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며, 소년과 보호자에게 보호처분 결정 이후의 집행감독 과정 설명과 비행예방을 위한 조치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보호관찰소는 범죄 유발 요인을 찾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의 환경을 파악하는 데에 보다 집중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소년과 보호자는 각각 약 1시간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거나 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와 전화 면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가기도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는 앞의 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 비해 교육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조사는 교육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서 조사 뿐 아니라 상담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한번에 6-12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3일 간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을 진행하며, 교육에 참여하는 소년의 태도와 교육결과는 행동관찰 결과로서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취합되어 소년부 판사에게 전달된다.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에 위탁하여 분류심사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4주간의 수용생활 동안 행동관찰 및 조사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 전에 소년에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양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조사는 조사 중 유일하게 소년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기능을 하여 성매매 혹은 가출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한다.

(3) 소년의 비행에 대한 빠른 개입으로서 처분 전 단계의 유용성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조사하기 위해 판사가 내리는 결정을 임시위탁이라고 부른다. 이는 말 그대로 임시위탁이어서 임시조치로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수용시설에서 조사와 교육을 동시에 받도록 하는 결정이다.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임시위탁은 목적과 내용은 다르지만 단계상으로만 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과 유사한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 임시위탁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의해 내려지는 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처분 전에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임시위탁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소년법 체계가 소년의 발달단계상의 특징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는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 정도 임시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중략) 여기는 이제 (중략) 그래도 좀 바로 그나마 빨리 쇼크를 줄 수 있는? 네. 너무 늦어요 다. 재판까지도 너무 늦고, 그 절차를 밟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8호 처분도 좀 바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은 자기가 왜 가는지든 까먹고 그냥 가라니까 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재판 보기 전에 심사원에 빨리 보내는 거는 애들한테 더 충격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저는 8호 처분 뭐 쇼크 구금에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심사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조사-C)

애들이 막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집단으로 다니면서 가출해서 정신없이 이제 그 비행에 빠져들 때 심사원에 딱 위탁을 하면 그때 이제 그 성찰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모든 행동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뭐가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동조하듯이 막 하는데, 위탁을 딱 되면 그때 이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애가 가출해서 바깥에서 생활하면 애가 또 무슨 사고를 칠건지, 또 어떤 피해자가 양산될 건지, 또 어떤 그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늘 이제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는데 위탁을 시키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보호자들도 있거든요. (조사-B)

2) 1호 처분(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위탁)

(1) 가정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1호 처분 중의 하나인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위탁받아 보호하는 기관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가정의 형태를 이루어 함께 생활하는 해당 시설의 특성상 아이들 개개인을 살피고 개별적인 지도 및 교육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중간처우 시설인 6호 처분 위탁 시설과 마찬가지로 사전 허락 없이 시설을 이탈할 수는 없지만 외출 및 외박, 학교 등교 등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시설 종사자가 소년들을 매일 개별적으로 지도하며 가정의 보호력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6호 처분 위탁 기관과의] 가장 큰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여기는 저희 1호에서는 핀셋으로 지도를 한다고 보면 그야말로 매일매일 얼굴 마주치면서 한 마디 한 마디, 애 단어 하나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6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최소 50명에서 많으면 80명까지도, 제일 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90명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냥 단체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6개월 동안 몸이 저절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감정까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 1호하고 6호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이 뭐 학업을 하든, 같이 교육을 받더라도 그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6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아마 각자 그 아이에 맞게 해서 어떤 애한테는 네 뭐 이거를 가르치고 저거를 가르칠 수도 있고 하면서 완전히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큰 차이가 좀 있을 거 같아요. (1-회복-B)

가정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이 운영의 목적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 일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소년이 처분 후에 돌아갈 가정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모상담과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설] 상담소하고 MOU를 맺어서 정식 페이(pay)를 하고 아예 상담을 종합 심리검사도 다 하고 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요. 부모 상담도 아예 상담 선생님한테 맡겨 가지고 부모 상담도 다 한 회기 정도, 아니 한 10회기 정도 다 한 다음에 가족 상담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갖고 좀 나가서 같이 잘 지낼 수 있게 상황을 만드는 걸 좀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중략) [부모교육] 수강명령처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오게끔].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요청도 저희한테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해요 아예. 근데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저희 상담센터에 수강명령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하고 MOU를 맺어있어서 저희가 진행할게요 라고 하면 거기서 더 좋아해요. 부모수강명령도 그 상담센터에 가는 [보호자] 특별교육도 거기로 가는데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할게요 (중략) 라고 해서 8시간을 무조건 참석하게 돼서 그 8시간을 이용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좀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좀 후원금 통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1-회복-B)

(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사법형 그룹홈으로 출발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16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로 1호 처분을 위탁 집행하는 시설로서의 역사가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소에서 총 수용가능한 정원이 전국 기준으로 200명이 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2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한 기관에서 100여 명이 가까운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다른 처분 시설과 달리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은 경험이 부족한 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1호 처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소년보호처분의 취지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소년부 판사와 관할 법원에서는 해당 시설에 꾸준히 보호소년을 위탁하지만, 담당 소년부 판사가 바뀔 때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어서 관할 지역에 해당 시설이 없다면 법원에 따라서 1호 처분 시설로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존재를 아예 알지 못하는 소년부 판사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아직 인지도가 낮다 보니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보호처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이 낮은 편이라는 것이 현장의 생각이다.

이제 소년 재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 판사님들께서 그런 아직 그런 게 좀 잘못에 대한 어떤 죄를 부과하는 어떤 그 벌을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1호 괜찮나? 6호 괜찮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소년 재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사님도 이해에 따라서 1호, 6호를 구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1-회복-A)

소년부에 1호에 관련된 시설에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또는 보조인]로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및 직원들을 못 믿으신다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이들 위탁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오롯이 본인 성향에 달린 거죠. (1-회복-C)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1호 처분 시설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설별로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과 보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전국 단위의 협의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운영방법 및 정보를 공유하고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정과 유사한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과 생활을 같이 하며 개별화된 지도로 지원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 있지만 세세한 사항들은 각 시설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매뉴얼도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면서도 세세한 부분은 시설의 특성과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근거법이 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한 매뉴얼 개발의 구심점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추구하는 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판사님들이 혹은 회복지원시설 없는 곳의 지역의 판사님이라 하더라도 이 회복지원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왜냐면 전국에 소년부 판사님들 10호나 뭐 6호나 7호 기관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호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어야 관심을 가질까 말까 하는 정도기 때문에 판사님 성향을 좀 많이 탄다 라는 게 유일한 장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에 가깝죠. (중략)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협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 각 지역 소년부 판사님이 생기면 이렇게 좀 회복지원시설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1-회복-C)

3) 2호 처분(보호관찰소 수강명령)

(1) 수강명령 집행의 소규모화 및 재원 마련 필요

수강 장소를 보호관찰소로 지정하여 내려지는 수강명령은 대부분 40시간 처분으로 내려지는데 실무상으로는 하루 8시간씩 5일 연속으로 수강을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주로 방학 때 집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년들의 학교 수업권 보장과 수강명령 출석률 확보,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소년들의 특징, 강사 예산문제 및 대상자 관리의 수월함을 현재 집행방식의 이유로 들었다.

수강은 거의 5일을 내리 쫓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보호관찰 사실을 숨기고 비밀로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전부 다 방학 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범죄유형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방학 때 주로 집행하면. (중략) 사실 [나눠서 집행하려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대상자 관리의 문제도 있는 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출석을 잘 안 해요 성인들과 다르게. 한 번 왔을 때 8시간 쫓 시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예산적인 문제 저희가 강사료도 (중략) 첫 시간이 10만 원이고 추가 시간은 계속 2만 원씩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라서 한 회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00만원, 120만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하려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보관-A)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소년의 수강 일정을 구성하다 보니 성관련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제외하고는 연령, 성별, 범죄명과 상관없이 모든 소년들을 모아 놓고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앉아 강의를 듣고, 교통준법교육, 성교육, 강절도 예방 등 자신의 죄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수강명령 처분을 받으면서 거주 지역을 넘어서는 비행소년들의 연결망이 생기고 서로 범죄를 배우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친구 사귀는 게 제일 문제가 많아요. 사회봉사건 수강이건 40시간 동안 다른 동네 소위 말해 노는 애들도 오토바이 타고 오면 갈 때도 같이 타고 가고 그러거든요 막 뭐 오토바이 좀 괜찮은 거 타고 오면 하고. 밥을 먹으러 갈 때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너는 뭐 때문에 왔냐, 너 담당 [보호관찰관은 누구냐],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요. 그 선생님이 좀 빡빡하다, 이 선생님은 조금만 해도 경고장 때린다 이런 게 서로 애들끼리 정보도 교환을 하고 (중략) 거기서 이게 불량 애들

사귀는 그게 되게 커가지고 보호자들도 그걸 걱정하고 저희도 통제를 하려고 해도 솔직히 통제
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친해지는 거기 때문에. (보관-A)

[도박관련 강의시간에] 애들한테 도박이 왜 나쁜지 본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라고 하고 막 그랬
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갔더니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몰랐던 애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광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교육이 돼요 교육받으러 와서.
그래서 아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도박은 따로 빼기도 좀... 하, 인원 하며
우리가 집행하는 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 둘을 [따로 빼서 별도의 수강을 받으러
교육을] 보내고 이려는 게? 그러니까. 소년은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보관-E)

(2) 소년수강의 전문성 제고 및 강사 인력 확보 노력 필요

수강명령 집행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나 집행해야 할 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보호관찰소마다 수강명령 집행에 편차가 상당하였다. 현재 법무부는 성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경우 수강명령 집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 단위 기관에 '수강집행센
터'를 설치하고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자체 인력이 성폭력,
가정폭력, 약물 및 알콜 치료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수강집행센터'로 지정된 보호관찰소라고 할지라도 소년수강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처음 개시교육 이후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외부강사를 초빙하는가에 따라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가 매우 달라지며,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여 수강명령 집행 시간표를
구성하는 것 또한 개별 직원의 역량에 달려있는 상황이었다.

그냥 사실 다 담당자의 재량이고 (중략) 그러니까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그게 조금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근데 그리고 또 사실은 여기서 하시는 분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기서 하
는 분들이 다 근처에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돌려쓰기 식으로 거의 많이 하죠.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애들의 출석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기 강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 이 강사 선생님한테 맡기면 애들도 되게 말을 잘 따르

2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수강명령. <https://www.moj.go.kr/cppb/724/subview.do>에서 2023년 10월 13
일 인출.

고 그 집단 했을 때 뭔가 문제행동도 많이 없고 그런 강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 선생님은 1년 전부터 예약을 했어요. 진짜로. 최근 6개월 동안에 예약이 하나도 하루도 빈틈없이 꽉 차 있으니까. 미리 1년 치를 예약을 다 잡아 놓거든요. (보관-A)

수강명령 집행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관들은 수강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수강명령 집행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명령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년의 특성에 맞게 수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강사에게 제공할 수강명령 집행 매뉴얼을 제작하여 강사에 따른 교육내용과 질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현재는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 후에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소년수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강사가 어떤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의의 질 확보를 위해 현장 실무자가 제시한 방안 중 또 다른 하나는 전국 보호관찰소가 공유할 수 있는 수강명령 풀의 체계적인 구성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각 지소에 담당자들에게 맡길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뭐 그분이 학력이 맞는지 이거를 이렇게 증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수강 강사들을 증빙이나 이런 거를 본부에서 싹 다 일괄로 다 등록해서 전문 특화 분야 뭐 이 사람은 준법 운전 전문, 이 사람은 폭력 수강 전문으로 해서 본부에서 다 검증을 하고 등록해서 각 본부에서 이 소위 말하는 강사 인력풀 명단을 아예 다 만들어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막 부담, 검증하는 절차 없이, 즉 이쪽에 와서 강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언제든지 법무부에 등록을 해서 검증을 해서 강사 능력 인정을 받은 분들을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 명단이나 목록을 보고 저희가 연락해서 쓸 수 있게끔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보관-A)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한 수강명령 집행도 소년수강의 전문성을 높여 2호 처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으로도 예산의 문제로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로 협조하여 소년 수강명령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집행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다.

저희 같은 법무부 기관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부 아이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강을 좀 대신해 준 집행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중략) 법원에서요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뭐 수강교육이나 이렇게 대안교육 뭐 12시간 이렇게 받으라고 2호 받은 애들 중에 상담만 이렇게 12시간 받으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호가 무조건 수강이 아니고 그냥 대안이나 상담 교육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상담 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법원에서 기관을 정해줘요. 청비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보관-B)

저희가 돈이 없어서 보냈던 것도 있어요. (웃음) 애들 집단이 5명에서 8명 때문에 120만 원씩 지출하기가. 준법운전은 100명 하는데 120이면, 학생은 10명, 8명 하는데 120만원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근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그쪽은 약간 수강 강사를 써야 되는 예산이나 약간 그런 게 조금 넉넉한데 왜 소위 말해 이렇게 손님이 많이 안 오는. 예산은 이만큼 강사료를 뵈었는데 법원에서 솔직히 많이 보내면 많이 하는 거고 조금 보내면 그냥 예산이 그냥 남는 거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략) 그러면 이제 그 강사 예산도 써야 되고 저희도 적체된 인원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얘기를 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저희 애들 거기 가서 수강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관-A)

현재 수강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집행과는 성인과 소년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방학 기간이 아닐 때에는 성인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으로 일정이 짜여 있었다. 수강명령 대상자 구성을 살펴봐도 소년은 성인에 비해 그 수가 적어 소년수강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반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어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집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재원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광역 보호관찰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강집행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소년수강의 경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단독 수강명령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수강명령은 2007년 소년법 개정 전에는 단독 처분이 아닌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에 병합되는 부가처분이었다. 수강명령을 독립적인 보호처분으로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한데에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단독처분으로 내려졌을 경우에 현장에서 실무자들은 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담당자에게 소년을 지도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이다.

사실은 저희가 수강이랑 봉사하면서 조금 고충이 이 아이들도 알아요 나의 진짜 선생님은 보호관찰 선생님이라는 거를. 제가 말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보호관찰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SOS를 치는 거죠. 애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선생님이랑 자기가 1년 2년 동안 가야 되는 걸 알고, 저는 40시간 80시간만 이행하면 나는 다시 안 볼 사람인 거를 애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관-A)

단독 2, 3호 처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독 2, 3호 오면 애들한테 뭐 하지 마 하지 마 저희가 이럴 권리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에도 다 그렇게 명시가 됐고. 애들은 단독이면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62조에 따르라 그러거든요 62조. 보호관찰관의 명령 지시에 따르면 돼요 명령 집행에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할 의무가 없어요 단독은 2, 3호 처분은. (중략) 단독 2, 3호는 없어야 된다 제가 느끼기에. 이게 여기에 지도 감독이라는 이제 보호관찰 개념이 들어가야죠. 애니까. '야 학교 똑바로 가. 그래서 이거 방학 때 하는 거야.' 전화해보면 학교 안 가요. 근데 단독은 못해요 우리가. 제가 사회봉사해라 수강해라 지시 내리는 게 안 돼요. (중략) 단독 2, 3호를 없애야 된다는 게 보호관찰이 붙어야 돼요 잔소리 하려면. 애들은 보호관찰 있으면 말 잘 들어요. (보관-C)

4)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

(1) 소년에게 적합한 사회봉사 발굴 필요

사회봉사명령은 대부분 40시간으로 처분이 내려지며, 지역 내 복지시설이나 농촌 등 사회봉사명령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필요한 일손을 돕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은 일에 대해 숙련도가 떨어지고 발달단계의 특성 상 충동성이 강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보니 사회봉사기관에서 소년을 봉사자로 원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소년이 사회봉사를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복지관 혹은 농촌 봉사로 한정되어 있었고, 성인 사회봉사 집행 시에 소년을 한두 명 끼워서

보내는 식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고 있었다.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한 종사자는 소년들을 성인 봉사자들과 함께 보내게 되면 소년이 성인에게 범죄를 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성인과 분리하려고 노력하지만 소년을 보낼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보통 복지관 아니면 농촌 봉사라고 해서, 농협을 연계해서 저희가 농가에 가서 뭐 오이를 따든가 뭐 화분을 같이 물을 한다든가 이런 농촌으로 가는데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싫어해요. 모든 복지관이란 모든 농가에서 싫어해서 저희가 보낼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보내는 게 애들이 복지관의 문제는 애들이 핸드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장애인 비하 발언이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종락) 아무래도 애들이 설거지나 이런 것들이 능숙하지가 않잖아요? (종락) 조금 봐서 상태 양호하거나 열심히 한다는 다짐을 받고 보통 복지관에 보내는데 대부분은 싫어해요. 농촌에 보내도 싫어하는 게 어른들 할아버지라든가 좀 나이가 있으면 그래도 일손이 일머리라는 게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따라 하는데, 애들은 뭐 이렇게 잡초를 제거를 하면 그 새순을 다 뽑는단든가, 버섯도 다 요 모양을 해라 했는데 버섯 심어놓은 거 다 뽑아서 한 줄을 다 망쳐버린단든가. (보관-A)

복지관 혹은 농촌에서는 현장 일에 도움이 되는 성인 봉사자를 위탁받기 위해 마지못해 소년들을 함께 봉사자로 받기는 하지만 막상 소년들을 위탁 받은 뒤에는 단순한 일들 위주로 잠깐씩만 일을 시키고 계속 앉아서 쉬거나 기다리게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소년들을 보낼만한 적합한 사회봉사 기관을 찾지 못했을 때는 보호관찰소 내에서 서류정리나 스테이플러 찍기 등 단순 업무를 시키며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년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일에 미숙하고 숙련도가 떨어져서 봉사지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만 14세 이상인 사회봉사명령 처분의 연령하한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종사자들이 실제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 사회봉사는 공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혹은 해안 길 청소 등 육체를 움직이며 노동하고, 실제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되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바가 있는 일들이었다. 소년들이 사회봉사명령의 취지대로 사회에 유익한 무보수 근로를 통해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경험한 바는 일반 봉사는 좀 모르겠어요 애들이 느끼는지. 근데 제가 OO에 있을 때 그때 한창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독거 노인들 사시는 데 가서 도배를 저희가 보호관찰소 전체적으로 한 몇 년을 했어요. 도배, 장판 갈아주고. 그때는 제가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웬만하면. 방학 때. 그래서 애들 짐 들어내는 거랑 이제 치우는 거랑 그걸 시키니까 그때는 애들이 되게 처음에는 아 뭐 더럽다 냄새 난다. 뭐 좀 OO아파트가 환경이 조금 안 좋잖아요. 오래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권자고 그러니까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 담배 냄새, 뭐 찌 냄새 뭐 장난 아니거든.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그때 한 1년 반 했나? (중략) 한 500세대 이상 했으니까.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느끼는 점이 있는 걸 느꼈어요 저도. (중략) 저는 이제 복지관 가서 시간 때우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보관-C)

(2) 직접 집행의 필요성

현재 소년을 협력기관에 봉사자로 보낸 후에는 특별히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소년 간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협력기관에서 소년을 관리하는 형태로 사회봉사명령이 집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현장 순시를 통해 많게는 매일부터 적게는 일주일에 1회까지 방문하며 봉사상황을 살피고는 있지만 출퇴근 여부나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확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보호관찰관이 함께 사회봉사를 하며 소년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년들의 가정환경, 면담 내용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며 비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강명령 집행이 강사에게 오롯이 맡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맡겨져 소년에 대한 지도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에 협력 집행이 아닌 직접 집행을 내실 있게 운영할 때에는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저희가 작년에 뭐 했냐면 해양 청소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좀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정말 저희가 우리가 체험 학습 겸 정말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거 직원이 같이 감독하면서 (중략) 그렇게 해야 되고 (보관-D)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종사자들은 소년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년보호관찰과 수강 및 사회봉사 담당자를 일원화하여 보호관찰관들이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호관찰관과 사회봉사 담당자가 일원화 되어 소년을 밀도 있게 관리하는 것이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금 소년 관찰하고 사회봉사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저희도 개에 대해서 뭐 상황을 보긴 봅니 다마는 보호관찰 담당자만큼 알 수 없고요 내용을. 가정환경이라든지 면담 내용 알 수 없고. 그래서 그것도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어요. 소년, 소년 보호관찰 담당자가 봉사도 이렇게. 그러 니까 직접적으로 배치는 안 돼 있지만, 어떤 아까 직접 가게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장소에. 우리 체험학습처럼. 환경 정리하면 같이 감호직원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애한테도 상담하 면서 걸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관-D)

5) 4호, 5호 처분(보호관찰)

(1) 소년보호관찰은 기피 업무

소년보호관찰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소년 보호관찰이 성인 보호관찰에 비해 손도 많이 가고 소진이 많이 되는 업무라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기피업무 중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먼저, 소년보호관찰은 성인보호관찰과 달리 대상자 한 사람 만 관리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대상과 소통이 필요하였 다. 소년에 대해 파악하고, 소년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 학교 교사, 지역사회(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등)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했다.

저도 지금 누구한테 뭐 너 무슨 업무 할래? 하면 저는 소년만 빼고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 요. (중략) 너무 이제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소진이 많이 되가지고 힘들어서 지금은 솔직히 이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소년 업무를. 일하면서 너무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차이기도 많이 차이고 좀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서 다른 업무보다는 오히려 더 기피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뭐 신규 직원이나 좀 처음 해 본 직원들은 이제 의욕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몇 번 겪다 보면 저 같은 친구도 은근히 많더라고 요. 아 차라리 그냥 성인을 했지 소년은 못 하겠다. 왜냐하면 또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손도 많이 가고 하는 일도 많고 해서. (보관-G)

그니까 소년보호관찰이 가장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대상자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아빠도 상대해야 되고 선생님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가끔 지역사회도 연계될 때가 있어요. (중략)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뭐 아니면 쉽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한 4-5명을 같이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엄청 오고 그쪽에 가서 방문해서 면담할 일도 있고 확인해 보면 그쪽 얘기가 또 다 달라요. 선생님한테 했던 얘기가 다르고, 이쪽 얘기했던 얘기가 다르고 저한테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삼자대면 해야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손도 많이 가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소년이 좀 이제 마음으로 하는 업무다 라고 하는 게 아이를 진짜 생각을 하면 정말 할 게 많아지고 (보관-B)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소년들의 주 활동시간이 보호관찰관이 퇴근한 이후인 저녁시간이라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이 있더라도, 보호관찰관의 전화만 받고 몰래 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근무시간인 낮보다는 밤에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아이들과의 연락이 SNS를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도 실질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저희가 시간을 사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9시 11시부터 뭐 2시까지 3시까지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랜덤으로 가는데 애들이 한 1, 2, 3주 정도 하면 패턴을 알아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시간 이 시간이다 하면 그걸 받고 간다든가. 하루에 최대 세 통이 가거든요. 보통 세 개 전화 다 받았다. 그럼 이제 그때 나가는 거죠. (보관-A)

저는 그 애들이랑 이제 연락할 때 저는 제, 그니까 애들이 밤낮이고 막 연락을 하니까 저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중략) 그리고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똑같이 똑같이 연락 오고 뭐 톡 오고 이러면 뭐 밤에도 갑자기 “선생님 뭐가 이상해요”, “전화가 안 와요” 이런 다음에 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내일 출석 있는데 선생님 지금 이제 자는데 내일 뭐 늦게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들 북이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직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할수록 본인이 약간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보관-G)

소년보호관찰의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가 있기는 했지만 면접에 참여한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했던 소년 수는 많게는 최대 150명일 때도 있었다. 또한 현재 1명의 대상자를 1명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대가 불가능하고 주말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대상자들과 추가적으로 소통할 뿐 아니라,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근무들을 고려해볼 때 현재와 같이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게 되면 소년에 대한 밀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호관찰관 1인이 관리하는 대상자 수를 줄이고 탄력 근무 제도를 활용하여 소년의 주 활동시간인 저녁 시간에도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소년 보호관찰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원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대상자 대비. 뭐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해외만 봐도 훨씬 적은 수로 되게 밀도 있게 보호관찰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소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렇게 밀도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뀔 여력이 있는 아이들 이니까. 좀 더 적은 수로 해 가지고 면담도 좀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출장 같은 것도 갈 때 이제 솔직히 저희가 많은 수를 가다 보니까 그냥 확인하고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집에서 엄마랑도 면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뭐 평균적으로 저희가 50~60명, 60~70명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 줄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게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적인 업무 압박도 엄청나거든요. 이게 과도해지면 실제로 해야 될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도외시하게 되니까. (중략) 상황 입력을 저희가 면담을 하고 나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명수가 많으면 당연히 대충하게 되고 되게 성의 없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모 직원은 거의 복사 붙여놓기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정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보관-B)

(2) 소년보호관찰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필요

성인보호관찰과 달리 소년보호관찰은 주로 신입직원들이 맡는 편이었다. 신입직원들이 성인을 담당하기에는 나이가 다소 어리기도 하고, 소년이 성인보다 순응도가 높기 때문에 다루기에 좀 더 쉬운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성인과는 좀 더 나이가 있는 직원을 더 배치하시고 소년과는 좀 더 젊은 직원? 약간 신규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되는 거 같아요. (중략) 처음에 이제 발령되시고 나서 보통 소년과로 많이 가요. 왜냐아무래도 대상자들이 나이 차이가 나랑 별로 안 나면 좀 무시하고 이렇게 말을 지도를 안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신규직원들이 보통 젊잖아요. 그래서 소년과로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보관-B)

그러나 소년보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소년 보호관찰의 업무 난이도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총동적이고 즉흥적인 소년의 특성상 재범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대로 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소통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호 시설의 한 종사자는 소년이 보호관찰을 잘 받을 자신이 없어서 6호 시설 수용 기간을 자의로 연장한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것은 보호관찰관들이 소년을 잘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발달단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나가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한 달에 한번 보호관찰 받는 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보호관찰을 보호관찰소에서 와서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자기 발로 찾아가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보호관찰 못 받아서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중략) [준수사항 위반이] 두 번 세 번 쌓이면 경고 받고 구인장 날아가고 이러니까 (중략) 아이들이 생활 패턴이 일단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고 이 생활 패턴이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한테. 완전히 낮밤이 바뀌어 있고 (6-보호-B)

따라서 소년보호관찰을 무조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신입직원에게 맡기기보다는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소년전담직원을 두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시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소년도 사실 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뭐 이렇게 신규 직원 위주로 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예를 들어서 뭐 자격 조건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소년에 대해서 정말 뭐 이렇게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투입해가지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밖에서는 이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전문성 있게 좀 해 나가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은 성인 같은 경우는 같은 보호처분인데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쪽은 전담 직원을 하거든요. 근데 소년은 전담 직원 제도는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주로 약간 이제 소외되듯이 해서 조금 이제 관심 있거나 잘 이렇게 관심 많은 분들은 좀 소년을 좀 맡기고 해도 되지 않나. (보관-H)

또한 소년의 특성상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해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호처분은 부모나 보호자 외에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통해 여러 종류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에도 소년에게 보호관찰관은 자신을 감시하는 대상인 동시에 보호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성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았다.

진짜 심할 때 6개월 동안 4명 바뀔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할 때는. (중략) 그때 한번 담당자 갑자기 뭐 육아휴직 들어가고, 임시로 맡았다가 새로운 신규가 왔는데 하다가 뭐 힘들다 해서 또 바뀌고 해서 하니까 그때는 보호자랑 대상자랑 다 스트레스인 거죠. 막판에 그 마지막에 받으신 분이 완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쫓가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지역은 6개월마다 담당자가 바뀌니까 2년 동안 담당자가 4명인 대상자들도 있고. (보관-A)

위의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인사발령이 새로 나기 때문에 5호 처분을 받아 2년 장기관찰을 하는 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내에 최소한 4명의 보호관찰관을 만나게 되는 구조였다. 기피업무로 꼽히는 소년보호관찰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소년보호관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호관찰이 소년보호처분으로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6호 처분(아동보호치료시설 위탁)

(1) 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사이에서 각자도생

법원 소년부의 6호 처분은 소년의 생활범위와 행동에는 제한을 두되, 소년원 수용과 달리 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통해 소년을 위탁하고 보호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비행소년을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적 접근으로 돌보고 보호한다는 개념을 적용한 보호처분이 바로 6호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법원의 6호 처분 소년 감호 위탁 기관으로서의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로서 보육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보호처분 집행 위탁기관으로서 매월 집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법원과 보건복지부 양쪽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성격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로서 지켜야 할 상황이나 6호 처분 위탁 시설로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감호 및 교육에 관해서는 두 기관 모두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세심한 관리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

6-보호-B: 아동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의무교육 받아야 되는 시간들로 쪽 되어 있고 (종락) 유괴예방, 성관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빠진 거죠 이제 아이들은?

6-보호-A: 아이들 인권교육이요?

6-보호-B: 올해 바뀐 거 같더라고요.

6-보호-A: 그래요?

6-보호-B: 저희도 몰랐어요. 아무도 안 알려줘 가지고

연구자: 원래는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6-보호-B: 그러니까요. (웃음) 법이 바뀌면 알려줘야 되는데 법은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질 수도 없고

복지부나 법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을 주는 것은 사실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그 저희 말씀해주신 아동복지 분야 사업안내, 또는 관리안내 이런 책자는 거의 운영에 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 인건비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정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안전교육은 어떤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뭐 1년에 몇 시간씩 받아야 되고, 거의 이런 것이 주고요. 또 회계처리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주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뭐 필수로 너네가 이수를 해라 라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6-보호-C)

법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지만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비행을 저질러서 보호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아 위탁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다보니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식과 업무능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보호치료시설 종사자로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감호에 관해 제공받는 별도의 교육이 없다보니 종사자들은 스스로 관련 교육을 찾아서 듣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무 규정이 아니고 관련 교육이 많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모든 시설이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의 감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보호치료시설이라고 하는 특성에 맞는 교육을 뭐 진행해 주는 곳도 없고, 개설된 것도 본 적이 없고. (중략) 그래서 이제 뭐 다 우리 이제 필드에 뛰시는 분들이시니까. 이 사회복지사 라이선스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뭐 버거운 친구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들 이제 관련된 공부들도 하시고 추가적인 어떤 정보도 습득하시고, 또 특히 요즘엔 임상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좀 알아야 대처도 하고 대비도 하고 하니까. 저부터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을 했고 (6-보호-B)

6호에 맞는 교육이라고 하면,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 건 없지만, 00대 배 무슨 교수님이 주관하신 회복적 교정 전문가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웃음) 이제 그게 저희가.. 저희 이런 파트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거 같아서 저희가 한 5년 전엔가 한 직원 10명이 우르르 가서 다 받고 온 적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6호? 아니면 이런 소년보호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6-보호-A)

소년에게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과 생활지도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매뉴얼이 없다보니 최근에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스스로 자조모임을 만들어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6호 처분 위탁 집행 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매뉴얼 개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자 지역이 멀리 떨어져있고 별도의 지원 없이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라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6-보호-B: 시설장님들 모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우리 이제 OO하고 몇 군데 6호 기관에서 워낙 각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발걸음도 좀 맞추고 걷는 방법도 좀 서로 배우고 그러자는 측면에서 이제 OO에서 주최를 해서 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시작한 거긴 하지만 저희가 3번 만났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6-보호-A: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연구자: 아주 최근에 그럼 처음?

6-보호-A: 그렇죠. 아주 최근이죠. 작년

6-보호-B: 한 1년 전부터.

연구자: OO에서 뭔가 편당을 따셨나 봐요?

6-보호-A: 네, XX재단에서 따가지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치료 어떤 매뉴얼? 모델을 만들어보 자 해서 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나 봐요.

6-보호-B: 네 각각의 매뉴얼들은 있는데, 장단점들을 좀 서로 취합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자 했는데 조금 삐그덕하네요.

소년들은 6개월간의 처분 기간 동안 시설 내에서 생활하면서 학과수업과 직업훈련교육, 특기적성교육,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은 각 시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6호 시설마다 설립 취지와 운영방침이 다르고 보건복지부나 법원에서 6호 시설이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나름의 개성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학과수업과 직업훈련을 모두 내부교사가 진행하는 시설도 있는 반면, 모든 수업을 외부강사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운 시설도 있는 반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시설도 있었다. 모든 시설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회복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지만 6호 처분 집행을 위탁하여 아이들을 감호하는 시설로서 소년들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 6호 시설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다른데 저는 어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하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나름대로의 개성? 그런 것들이 하는데. 하지만 어떤 정말 이 6호에 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치료에 필요한 보호 치료에 필요한 엑기스, 그거를 이제 사실 우리 실무자들이 좀 우리가 좀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실 XX재단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OO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참 잘 안 되고 있지만. 정말 핵심, 뭐가 뭐는 꼭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좀 함께 좀 정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개성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것만큼은 해야 하는 거 그거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보호-A)

(2)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상담원 인력 증원 필요

앞서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시설 당 임상심리상담원 1명을 두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실무자들은 이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상담과 심리검사 일체를 외부에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하는 시설도 있었다. 그러나 외부에 위탁하는 것조차도 비용 문제 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용한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시설 종사자는 7호 처분 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어떤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부탁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한 소년을 위탁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절실하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저희는 이제 임상심리상담원 선생님이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분이 그 지능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그런 아이 관련된 종합심리검사는 전부 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중략) 근데 OO이라는 지역이 워낙 이렇게 농촌이고, 또 주변에 가까운 도시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심리검사를 해주는 곳이 XX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OO에 한 군데가 생겼는데 (중략) 8월 말까지 하고 또 폐과를 해 가지고 이제 XX으로만 그렇게 다녀야 되다 보니까, 아마 좀 검사가 늦어지는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6-보호-C)

그리고 저희 안에서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임상심리상담원이 한 명, 정말 이 아이들은 이제 아픈 아이들인데 40명 뒀다 100명을 갖다가 임상심리상담원이 혼자 하는 건 [어렵죠] [임상심리상담원은] 오로지 하루 종일 상담만 하게 해요. 그런데도 이 신입 그 심리검사 이런 것들이 제때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임상심리상담원이 뭐 맘 같아서는 20명당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6-보호-A)

(3) 아이들이 '상담쇼핑'을 하지 않도록 정보 공유 필요

시설에 배치된 임상심리상담원이 단 한 명인 것에 더하여 소년들의 이전 조사 기록이 법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으로부터 공유되지 않는 점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년들은 수사기관과 법원, 조사기관 등을 거치면서 환경조사와 심리검사 및 상담을 받게 되며 그 결과가 모두 기록되어 판사의 처분 결정에 활용된다. 그렇지만 관행상 정보의 연계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보호치료시설이 6호 처분 소년을 위탁받을 때에 전달받는 정보는 법원의 처분결정문 한 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들을 6개월 간 돌보며 치우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입소하면 처음부터 모든 신상조사와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6-보호-A: 아이랑 넘어오는 거는 처분 결정문. 그날 판사님의 처분 결정문. (중략)

6-보호-B: [분류심사서는] 안 주는 게 원칙이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되게 서운한 건데. 이 미 다 아이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어떤 진행 과정이 4주 동안 진행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쪽으로 넘겨주는 것 자체가 심사원에서 원치 않는다 해 가지고, 원치 않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략)

6-보호-C: 네, 저희는 그 분류심사원에서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거의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분 결정문조차도 어떤 부분은 당일애 줘서 보내는 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6-보호-B: 이미 심사원에서 뭐 많게는 풀배터리(Full-battery)²⁸⁾까지 한 친구들도 있고 웬

28)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Assessments)로 웨슬러지능검사, 다면적인성검사, 로르샤흐검사, 집-나무-사람검사, 동적가족화검사, 벤더-게슈탈트검사, 문장완성검사, 투사검사 등을 포함하며, 2~4시간의 검사시간이 소요된다.

만한 검사를 다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검사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희들한테 제공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받은 지 채 뭐 2개월도 안 돼서 다시 같은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 신뢰도를 또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중략)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해볼 수는,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는 다시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는 뭐 검사라든지.

연구자: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겠네요.

6-보호-A: 상담 쇼핑이라고도 말해요. 아이들이 '나 이거 다 알아요' 이래요. 왜냐하면 또 학교 꿈드림센터, 지역 내 꿈드림센터 뭐 이런 데서도 해보고 이래서 '나 이거 안 해도 돼, 다 해봤어요.'

범죄 및 수사기록 등의 정보를 민간기관에 공유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조치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심리검사 결과조차 전혀 공유되지 않아 위탁 기관에서는 아이들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고 아이들은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학과교육에도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

6호 시설 종사자들은 각 시설이 시설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느 한 가지 특정 프로그램이 소년들에게 효과적이라기보다는 시설 내의 다양한 요소들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져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 가장 먼저는 시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종사자들이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생활하는 시간이 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오는 2박 3일 국토순례 여행, 선생님과의 상담시간 등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생활과 태도를 보고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이야기였다.

소년들에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6호 처분 위탁 시설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소년들이 완수하게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치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격

증을 공부해서 취득한다든지 검정고시에 합격한다든지, 혹은 국토순례를 완주하는 등의 경험은 기존의 학교에서 낮은 학업성취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아이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맛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6호 처분 소년을 위탁받아 돌보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위탁 소년들의 출석 일수 인정을 위해 학과교육을 제공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학과 교육을 제공하여 검정고시를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소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한 시설종사자의 말은 보호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보호처분 전문가로서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을 감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일단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였다는 부분, 그니까 치유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 (중략) 저는 이 검정고시랑 학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야말로 꼴찌였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고.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 이 안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못하면 못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내가 구구단을 몰랐는데 알게 됐어, 알파벳도 몰랐는데 단어 200개 300개를 알았어, 그거 자체가 아이한테 자신감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줘서 그게 그것 자체가 (중략)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사실 저희가 학과 전공자들이 아닌데, 올해 이번 8월 시험도 12명 봐서 100% 다 붙었어요. 이제 뭐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르치는 사람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중요한 거지. 오히려 이게 밖에서 수학 강사 했던 분이 오셔갖고 아이를 가르치는데 한동안 너무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르치던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중략) 아이들은 정말 눈높이. 뭐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그 능력 그 학습 능력이 아니라 코칭, 복지 마인드 그게 이제 주요한 거 같아요. (6-보호-A)

(5) 처분 기간보다 더 오래 시설에 머무는 소년들

현재 6호 처분 집행을 위한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에 한해서 1번 연장이 가능하다. 6호 처분의 위탁 기간 연장이나 처분 연장 신청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마다 의견이 달랐다. 현재도 시설에 기간 연장을 하여 6개월보다 더 오래

머물고 있는 소년이 많은 시설이 있는 반면, 위탁 중인 소년 거의 대부분이 6개월 후에는 퇴소한다는 시설도 있었다. 후자는 감호 위탁 기간 동안 소년들의 행동 교정과 생각 변화를 이끌어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6호 처분 시설의 목적이므로 연장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전자는 소년 본인이 의지가 있을 때에는 기간 연장이 소년의 재범예방을 돕고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퇴소 이후에 소년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비행과의 접촉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진 연장이 거의 대부분 한 75에서 80% 정도가 자진 연장이예요. 그중에는 보호자 요청이 한 건 정도씩 들어있는 거고. 거의 아이들이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때문에 연장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6-보호-A)

퇴소시켰는데 다시 오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뭐 그중에 한 아이는 결국에는 이제 다 한 6개월 있다가 재판 받고 다시 왔지만 (웃음) 이제 나가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이제 비행과 접촉되는 접촉면이 늘어나니까 불안해서 전화가 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뭐 통고 얘기도 좀 하고 판사님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6-보호-B)

이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처분 연장을 통해 시설에 머무는 모습은 소년보호처분이 가정을 대신하여 아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보호처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을 다 받고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소년들을 처분 연장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소년들 중에 처분이 종료된 후에 원래 생활하던 시설에서 다시 받아주지 않아서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데 이제 시설에서 온 아이들이 제일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게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설로 가야 되는데 시설이 받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뭐 저희가 듣기로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어떤 그 시설에 있던 아이가 우리 다른 위탁 기관에 갔다가 돌아올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게 조례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다 받는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설들도, 아니,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뭐 좀 보호자가 없고 시설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 6호 기관에 있다가 만기 퇴소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6-보호-B)

제가 이제 이 얼마 전에 OO에서도 사례결정위원회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요. 기존의 시설 양육시설에서 온 아이들은 1차적으로 양육시설에서 수용을 하도록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미 법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중략) 실은 이렇게 담당 공무원의 의지인 거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싸워서라도. (6-보호-C)

7) 7호 처분(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 의료재활소년원 시설에 적합한 소년을 위탁해야

전국에서 유일한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소년원은 전국의 소년부 판사들이 7호 처분을 통해 소년을 위탁하기 위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6호 처분 시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7호 처분이 필요한 소년이지만 대전소년원을 포함하여 위탁할 시설에 자리가 부족한 까닭에 법원에서 6호 시설로 보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우울과 망상 등이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소년이 7호 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6호 시설로 오게 되었는데 시설에 있는 동안 함께 생활하는 다른 소년들이 매우 힘들어 하였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들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의료 처우가 필요한 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 법무부 시설은 여전히 대전소년원 1개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보호자가 있음에도 양육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양육시설에서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뭐 아주 반항적이고 아이들하고 다투고 학교 안 가고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통고제를 이제 했었던 아이고요. 그래서 그 의료소년 7호 처분을 하시고 싶으셨지만 그때 마침 7호 기관에 자리가 없어서 저희한테 보내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 데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다. 다른 아이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무서워(하고). (중략) 아이가 기본적으로 신경약을 먹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망상도 있고 우울도 깊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6-보호-C)

의료재활소년원 시설 수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에 적합하지

많은 소년들이 7호 처분을 받아 대전소년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작 7호 처분이 필요한 소년들이 입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일반소년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ADHD나 단순 품행장애를 가진 소년들이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되는 경우이다. 법원에서 9호, 10호 처분을 받아 일반소년원에 입원하게 되어도 ADHD 병증 등의 소견이 있으면 각 소년원에서 7호로 처분변경신청을 하여 의료재활소년원에 입원하게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재활소년원에서는 7호 처분에 적합한 소년의 요건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각 소년원에서 정신과, 그냥 밖에 진료 보고 저희한테 그냥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올 애도 와야 되지만 품행장애가 심한 애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네가지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낼 때도 있어요. 요새 뭐 정신과 진단 안 나오는 저기가 어디 있어요. 소년원 아이들 ADHD 뭐 행동장애 다 저기하니까. (소년-의료 B)

그게 뭐냐 하면 의료 처우에 적합하고 부적합한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 품행장애, ADHD 막 이런 애들 대부분이잖아. 그런 애들은 90% 일반 소년원으로 가도 되는데 (중략) 그 판사님이 거기 보면 또 전화가 온 거야 며칠 전에.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처분변경해서) 또 보내도 되냐고.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냐 요건은 뭐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우리 간호과에서 만든 아 간호과가 아니라 우리 의무과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보내주려고. 적합, 부적합, 그 의료 처우에 적합한, 7호 처분에 적합한. (소년-의료D)

두 번째 경우는 병원에서의 전문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이 의료재활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경우이다. 대전소년원 종사자는 현재 청소년을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법원에서 병원 치료 명령을 내리고 보호자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면 7호가 저희 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병원으로도 7호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병원 치료 명을 내면 법원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병원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안 받는 거 아시죠? 문제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을 받는 정신과 병동이 거의 없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병원 찾기도 힘들고 돈도 내야 되는데 여기로 오게 되면 돈도 안 내. 그리고 여기 그냥 딱 위탁시키면 편한 거예요. (소년-의료A)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늘리고 이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에 소아청소년 진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소년보호 위탁 시설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중장기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 5대 국립정신병원 등에 소아청소년 병상을 확보하는 것,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소년 병상을 마련하는 것 등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7호 처분 운영 현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재활소년원에 맞는 시스템 구축 필요

대전소년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의료재활소년원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우선 앞장의 국내 보호소년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재활소년원은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감호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가 부재하였다. 그 대신 대전소년원이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은 몇 개의 병원에서 네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소년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뷰 당시에는 약사나 임상병리사도 부재하여 소년원의 간호 인력들이 처방약을 외부 약국에서 받아 와서 복약지도를 하고, 관련 서류 업무를 처리하는 일까지 모두 담당하는 상황이었다.

뭐 인맥을 통하기도 하고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소년원 의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그 의사 선생님 제일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페이 문제, 시간 문제가 안 맞는 거예요. (중략) 이제는 또 다른 병원하고 어떻게 협약을 그래도 맺어서 네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중략) 그래서 간호사가 한 명씩 붙은 거예요. 붙어서 솔직히 말해서 레지던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오면 가족, 부모님하고 전화하고. 과거력, 아니면 병원 입원했던 병원에 전화해서 우리

가 공문을 보내서 진료 기록 같은 걸 다 받는단지. 이래서 히스토리를 다 하고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이걸 다 레지던트가 했던 것처럼 해서 주는 거예요. (중략) 애는 지금 애가 불편해요.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처방을 다시 받고. 근데 그 선생님도 외부에서 병원을 병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전화한다고 해서 통화가 안 되는. (소년-의료A)

그래서 간호사가 약도 짓고 그 다음에 임상 병리 일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 병리 검사를 못하는 거고, 외부 병원에 의뢰를 하고 보내야 돼서 그런 서류 정리나 그런 게 더 많은 건 아니죠? 피 뽑아서 보내는 것보다 뽑고 나서 서류 정리하고, 또 오면 서류 정리하고, 그거 뭐 시스템에 장착시키고 그런 일을 다 해요. 지금 상황은. (소년-의료-B)

수도권에 있는 일반소년원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의료재활소년원보다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수월하여 오히려 의료재활소년원이 7호 처분 소년을 위탁하는 시설로서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은 수도권 일반소년원의 의료 처우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년-A: 안에 저희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두 분이 계시서. 지금 상주하지는 않으시고 저희가 이제 정신과 관련해서 매주 오시죠. 월수로 해갖고 학생들한테 진료하시고 저희 투약하시고

연구자: 월, 수? 두 번이나 오시네요?

소년-A: 두 분이시니까요.

연구자: 아 한 번씩. 한 분은 월요일에 오시고 한 분 수요일에 오시고?

소년-B: 사실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년보호기관은 TO가 있지만 구해지지가 않아요. 다행히 OO소년원은 뭐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시간제로 이제 모실 수가 있어서 모시게 됐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그러면 의무과에는 상주하시는 그냥 일반 진료 보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소년-A: 당연히 저희 의무과장님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 두 분

소년-B: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 두 분 (중략) 그 다음에 치과 진료는 자원봉사로 (중략) 계속 오시죠. 저희 치과 시설도 있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중략)

소년-A: 이 안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 돼 있어서 바로 투약이 가능하고요. 정신과적인 거는 어차피 그것을 하셨잖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직접 주시는 거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이 따로 있지만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재활소년원은 소년원이기 때문에 일반소년원과 같은 법을 적용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점 또한 의료재활소년원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되고 있었다. 의료재활소년원 종사자들은 의료재활소년원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소년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입원실을 갖추는 등의 시설 확충과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재활소년원에는 별도의 입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한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부재한 상황이었다. 수갑 포승이 가능하지만 30분이라는 시간제한이 있었고,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강박은 불가능했다.

저희는 의료소년원이지만 모든 것들은 소년원에 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소년원에 속해 있지만 기본 틀은 소년원이지만 의료소년원만의 여기만의 아이들을 좀 관리할 수 있고 뭔가 그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년-의료A)

소년-의료B: 그리고 자해를 할 때마다 저희가 어떤 신체적인 난동을 피운다든가 자해를 한다든가 이럴 때 신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소년-의료A: 수갑 포승인데 그거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소년-의료B: 30분이에요, 30분.

연구자: 근데 법에 쓸 수 있다고 돼 있던데.

소년-의료A: 근데 사실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감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중략)

연구자: 여기는 강박을 못해요?

소년-의료B: 못하죠. 정신과 의사가 없는데. 병원이 아닌데.

(3) 의료재활소년원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보호제도 필요

의료재활소년원의 종사자들은 소년원에 근무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의료처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교사 등에게는 별도의 의료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소년들이 정신과적 문제와 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의료처우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매뉴얼 또한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업무 담당자가 재량껏 진행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 선생님들께서 막 처음에 왔는데 애가 막 손 긁고 자해하고 피가 이렇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되게 난감하시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애들. 선생님 저 환청 들려요, 귀신 보여요, 이랬을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또 선생님 밤에 당직할 때 선생님 저 배 아파 죽겠어요 데굴데굴 구르는 아이. 정말 배가 아픈 건지 쇼를 하는 건지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판별하기가 좀 힘드신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소년-의료A)

의학적 사유로 7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돌발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입원실 등 필요한 시설과 보호장비 사용 등에 관한 제도를 탄탄히 하는 것은 보호소년 뿐 아니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 소년들이 종사자를 신체적으로 공격하여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소년원 교사가 소년에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비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식이었다. 실제로 면접에 참여한 소년원 교사들의 몸에는 아이들이 때리고 할퀴어 생긴 상처들이 가득했다.

아까 저도 와서 둘째 날인가 어떤 선생님이 당직 선생님이 자기 팔하고 바지를 내리더니 허벅지 물린 데가 있더라고. 진짜 이빨자국이 와 이만한 게 (주먹만한 사이즈) 있어요. 깜짝 놀랐어. 그걸 물렸대. 그것도 그 선생님도 나이 오십이 넘었는데 (헛웃음). 애들한테 선생님이 물려갔고 그 흉이, 그게. 와~ 오래 가 그거는 이빨자국.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여기가 많죠, 다른 소년원보다. 여기 애들 그런 사고가, 직원들이 다치는 사고도 많고. 애들끼리도 사고도

많지만. 전국에서 아마 직원들이 다치는 사고는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의료소년원이니까.
(소년-의료D)

소년-의료-A: 이렇게 우리가 폭행당하고 이랬을 때 제도적으로 조금 뭐랄까, 내가 애들한테
예를 들어, 맞아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맞았을 때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맞으면 공식적으로 하루 이틀 예를 들어 연가를 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략)

연구자: 물린 직원은 어떻게 치료 어디 가서 받으셨대요?

소년-의료-D: 그냥 자비로 치료받고 병원 다니고 그런 거죠.

8) 8호, 9호, 10호 처분(소년원 송치)

(1) 소년원별 차별화 및 기능 분담 필요

현재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전국 소년원 수는 9개이다. 부산소년원은 10호 처분을 받은 남자 소년만을 수용하지만 다른 소년원들은 모두 9, 10호 처분 소년을 함께 수용하고 있으며, 전주, 청주, 제주소년원은 8호 처분자도 수용하여 별도의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권 지역, 8호 처분 소년을 수용하는 전주소년원과 청주소년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년원들은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소년원을 포함하여 모두 분류심사원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소년원으로 분류심사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자 소년만을 수용하는 소년원에서도 분류심사대행소년원의 기능을 겸하여 여자 소년을 임시위탁하는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산소년원은 실제로 1개 층만 남자 소년원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1개 층은 임시위탁된 여자 소년, 1개 층은 임시위탁된 남자 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소년원은 분류심사업무만이라도 다른 기관에서 담당해주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였다.

소년-의료C: 대전 소년원이 있고 대전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같이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
니까 저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처럼 분류심사원을 같이 또 가지고 있는데 저기까지 저
간호사 의료팀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중구난방이고.

연구자: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소년-의료C: 네. 업무 로딩이 많이 걸리죠.

연구자: 법무부에서 심사원을 늘린다고는 하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소년-의료B: 여자분류심사원이 서울에 생긴다는 거고. 저희는 이제 좀 의료소년원이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힘든 학생들인데, 힘든 학생들인데 기관을 그렇게 같이 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로딩이 많이 걸리고, 애네들한테 집중하는 거가 조금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8호 처분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소년원도 9, 10호 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8호 처분 소년을 위해 1개월의 특수단기 인성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 보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한 비행을 저지르고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과 함께 수용하여 범죄를 배우고 악감화가 될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 소년원은 가급적이면 8호 처분을 지양해 달라고 법원 소년부에 따로 요청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이 또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한명 들어오면 그만큼 또 인력이 그만큼 거기에 또 필요가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고유 업무를 하고 있다가 또 그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 이제 한명의 학생 때문에 이제 또 업무를 4주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8호 처분을 좀 지양해 달라고 그런 것들을 요청하긴 예전에 했는데. (소년-E)

8호 처분은 법원에서 처분을 받고 바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지정된 날짜에 소년원에 입원하다보니 비행을 저지른 시기,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시기와의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소년분류심사원 관계자는 8호 처분보다 오히려 임시위탁 처분이 쇼크구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8호 처분 도입의 취지가 비행소년에게 짧게나마 수용생활을 경험하게 하여 충격을 줌으로써 비행 예방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지금의 8호 처분 제도를 개선하고 별도의 전담 소년원 혹은 제3의 보호기관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들 중에는 뚜렷한 범죄명이 없이 기타위반(통고) 등으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으로 송치된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소년원 내 소년들의 범죄의

경중과 특성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 관계자는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학교나 시설 등에서 관리가 어려워 통고 등으로 소년보호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에 실제로는 중한 비행을 저질렀는데도 해당 범죄로 법원에 송치되기 보다는 우범이나 통고, 보호관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기 경우도 상당하다고 하였다. 이 경우는 소년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기 어려워 업무 담당자들이 생활 및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법원에서도 이제 애들 하다가 안 되시면 [소년원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떤 애네들의 비행이라는 어떤 딱 규격에 맞춰서 뭐 절도라든가 아니면 폭력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해요. 다. 애가 어떻게 뚜렷하게 비행을 해서 왔다가보다는 어떤 관리적 차원에서 안 돼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 꽤 있거든요. (중략) 그니까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비행이 명확해서 애는 뭐, 애는 뭐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는 뭐 우범, 소년법 위반, 통고, 뭐 보호관찰법 위반 다 하니까 안에 다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뭉그러져 있으니까. 재비행도 보니까, 보면 성비행이 있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센 비행도 들어있는데, 그냥 그거로 [우범, 소년법 위반, 통고, 보호관찰법 위반 등으로] 돼 있고 (소년-A)

한편, 소년원 처분을 여러 번 받은 범죄소년은 더 이상 소년원에서의 감호 및 교육하는 것이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행성이 매우 심한 소년을 다른 소년들과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악감화의 가능성이 있고, 소년원 처분을 여러 번 받아 이미 기존의 프로그램을 다 경험한 소년에게는 더 이상 제공할 교육이 없어 수용기간 동안 성행교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한 소년원 관계자는 10호 처분을 3번 받아서 같은 소년원에 여러 번 수용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상한을 조정하기 전에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도 형사 처분을 해야 할 소년들은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여 비행과 범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실은 비행성이 애는 성인 범죄 못지않고 악화돼 있는데 이런 애를 소년원에 보내서 소년원 전체 애들에 악풍을 풍기는 애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이 어리다고 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너무 많이 우리가 사법제도에서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애는 충분히 형사 처벌해

서 소년교도소 보낼 애들을 보호처분해서 소년원 와서 분위기 흐리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연구하, 이거 연구하실 때 이제 저는 그래요.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을 퇴원한 학생이 다시 뭐 10호나 9호 처분 받는 거는 이거는 소년원에 가서 더 이상 사실 10호 처분 받고 와서 여기 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배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사실 10호 처분 받고 나서 또 재비행했다 하면 형사처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략) 그래서 사실 그거 내리는 거 저연령화해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사실 뭐 좋은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제도도 사실 뭐 형사처.. 14세 이상 처벌도 제대로 뭐야? 형사처벌 안 하는데 내린다고 처벌하겠습니까? 그렇지? (소년-D)

(2) 소년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필요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년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양질의 보호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 교사들은 단순히 교과목을 가르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훈육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소년원의 교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소년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가르칠 뿐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큰 편이다. 또한, 교과과목도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가르쳐야 하고, 소년마다 원적학교가 다르다보니 수십 개의 학교와 연락을 취하고 소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소년원 교사들은 종사자 한 사람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 또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오게 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수사기관 협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학교는 여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교무과만 해도 교무부만 해도 교무부 업무를 한 5~6명의 선생님들이 업무를 나눠서 해도 다 많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학사 담당 선생님 한 명이 모든 걸 다 진행하고, 또 학교는 뭐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인데 여기는 중등과 고등학교도 다 통합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개별적인 학교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하니깐 업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중략) 저는 고등반 담임인데 고3 애들 이제 뭐 수시라든가 이제 대입 관련해서 이제 하면, (중략) 여기 선생님들이 뭐 애들을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없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걸.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안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소년-C)

요즘은 일단 한두 건 가지고 일단은 그걸로 재판을 해가지고 일단 보내놓은 다음에 나머지 개가 그동안 저질렀던 것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별 건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조사하고, 또 그게 일정 기간 또 차면 그걸 가지고 또 선고를 다시 하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런 일 처리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교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이제 수사기관 협조도 해야 되고 (소년-B)

한 소년원 교사는 결국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좋은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소년원을 증설하여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소년의 수를 줄이고 직업훈련, 상담 등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실무자들이 토로하는 업무 과중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들이 보호소년 개개인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돌볼 수 있도록 하여 보호처분의 효과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 담임선생님 역할만 일단 딱 보면, 담임선생님은 학교 담임 역할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밖에서 관심과 사랑을 거의 못 받다 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담임 한 분당 애들을 한 6~7명씩 이렇게 맡게 되면 결국 밖에서 부모가 애 6~7명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또 낮에는 또 애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되지. 근데 그걸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 (소년-C)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다 잘해주라 뭐 어떻게 해서 뭐 해라라는 거는 그 성과는 선생님이 내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떤 제도나 뭐 학과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해봤자 시스템적인 건데 그거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라서, 저희 직원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직원이 좀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열정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는 차원에서 좀 해주셔야. (소년-A)

또한 소년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소년원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소년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교육부가 2022년 10월에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은 소년원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입원 초기 교과 및 학습준비도 진단 지원과 지역 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컨설팅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년원에 교과나 직업훈련, 상담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을 함께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으로 소년원에 파견된 교사가 대안교육의 형태로 보호소년들을 지도함으로써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인력과 재정 및 프로그램을 모두 소년원 학생들에게 제공한 사례(서현숙, 2021)는 보호소년을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협조한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3) 퇴원 이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

9, 10호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소년들은 처분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임시퇴원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통 10호는 12개월, 9호는 4개월 정도가 되면 임시퇴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임시퇴원이 결정되면 대략 5일에 걸쳐 체험학습, 봉사활동, 보호관찰 사전교육 등의 사회복귀교육을 받고 퇴원하게 된다. 사실 5일간의 사회복귀교육으로 퇴원 이후 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시퇴원이 결정된 후 사회복귀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늘리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시퇴원 이후에 모든 소년이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귀교육 중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보호관찰 사전교육은 비교적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 실무자들은 그 밖의 사회복귀교육으로 월세 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 소년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보호력이 약하여 비행을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경우가 많은 보호소년들의 특징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국 소년원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용접에 진짜 뭐 적성이 있어서 용접반 지원해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자기 특성이나 그것을 보다는 자기가 생활하기 편한 곳 그런 것을 찾아요. 목적 목표 의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런...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공과, 공과 이렇게 큰 대표적으로 공과를 만들어서 하는 직업 교육보다는 개인 특성에 맞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필요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초년생이 취업할 수 있는 뭐 면접법이라든지 뭐 또 아니면 운전면허라든지. 또 제가 볼 때는 뭐 방 전월세 부동산 같은 거 매매계약서 어떡어떻게 하면 지 권리를 찾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교육을 가미한 그런 직업훈련소년이 되면 오히려. 뭐 제과 전국에 제과제빵 소년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제주도 있고 제과제빵 졸업한 애들 통계 뽑아 가지고 거기서 분야에서 취업한 애들 따지면 5프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교육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회적 경험을 한 하는 그런 체험교육 위주로 소년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소년-D)

학교를 다니다가 소년원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임시퇴원 이후에 원적학교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보호소년은 퇴소 이후에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년원에 있는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원 이후에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년들은 보호처분 이전의 환경에 다시 노출되기 때문에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직업을 갖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고 재비행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최정원, 강경균, 강소영, 김혁 외, 2018: 134), 소년원 퇴원 후에 안정된 직업 연계를 위한 공식적인 루트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는 직업훈련 담당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직업을 소개해주거나 법무복지공단 일자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 정도가 직업연계의 통로였으나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 교사들은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임시퇴원 하는 소년들을 담당하게 될 보호관찰관이 퇴원 이후 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교과랑 직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퇴원을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하고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직군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경력들이 경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나갈 때 애들이 나갈 때 그런 쪽하고 연계도 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요 나갈 때. 그러니까 나가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애가 어떤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어떤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약간 연계도 시켜주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직업 갖게 되면 사고를 덜 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소년-F)

임시퇴원 취소로 들어오면서 자퇴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교과반이 고등반이어서 고등반으로 왔는데, 조만간에 나가는데 이제 뭐 진로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는데, 이제 직업 이렇게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는 게 없어 가지고.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말한 거는 보호관찰 받았던 보호관찰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많은 자료를 이렇게 소개해주실 거다 라고 저는 상담을 했거든요. (소년-C)

그러나 보호관찰관을 통한 사회정착 지원은 임시퇴원한 소년들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보호직 공무원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해당 소년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처분기간의 잔여기간만 살면 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여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임시퇴원이 취소될 경우에는 원래 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아닌 보호관찰 처분의 잔여기간만큼 수용기간을 늘려 퇴원 이후의 보호관찰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9호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게 9호 그니까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인데 임시 퇴원을 한 4개월 한 20일 되면 임시 퇴원을 해요. 그러면 잔여기간이 한 1개월 20일 정도 남잖아요. 1개월 10일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9호 애들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 퇴원해서 나가면 애들이 보호관찰소 말을 안 들어요. 내 다시 들어가서 1개월 10일만 살면 보호관찰 안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것을 역이용해서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9호 처분자들은 보호관찰도 안 받고 가서 말도

안 듣고 다시 임시퇴원 취소해서 들어와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호도 늘리고, 또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퇴원 취소를 그냥 1개월 10일만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재 9호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10호 처분으로 처분 변경을 하든지 좀 강력하게 해야 9호도 생활 지도하기도 편하고 교육하기도 좋을 거 같아요. (소년-D)

3. 소년보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자료 공통 주제 분석 결과

1) 점점 더 미성숙해지는 소년들

소년보호 처분을 집행하는 현장 종사자들은 소년보호 시설에서 예전에는 거의 보기 어려웠던 초등학교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주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를 가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범법행위인지고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잦다고 하였다. 소년원 처분을 여러 번 받아 오는 경우도 재범 시에 더 심화된 범죄를 저질러서 오기보다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 연령의 소년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극히 드물고 청소년기의 충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기비행’이 많으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취약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가출하여 시작된 성매매로 인한 우범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사실 범죄자라는 비행소년이라는 게 너무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 인식들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행을 하는 거고 자기가 이걸 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범법행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니까 물어보면 장난으로 그랬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어려졌다 그러나요 아이들 사고방식이? 인식하는 사고방식이 좀 어려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비행이라고 그러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졌어요. (소년-F)

그리고 지금은 뭐 성매매라고 하지 않지만, 지금 우범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비행명이 우범인데, 우범 그 이면을 보면 성매매 피해. 그래서 그게 2000년대 10년 전에 5건이 있었다면 작년엔 이 27건 71명 중에. (중략) 그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서 어떤 비행이 뭐 많느냐? 우범이

많아요. 결국은 이제 가출해서 1차적으로 가출, 결국은 또 뭐 성인 남자, 뭐 또래 남자애들과의 어떤 그런 경험들. 결국 그걸로 통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범이 주죠. (6-보호-A)

1-회복-A: 그냥 나는 그냥 우범으로 오잖아. 성매매해서 왔는데.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 오냐고. 다 100%

1-회복-C: 그렇죠. 자기가 잘못을 안 한 줄 알고 있죠.

연구자: 아, 성매매 한 친구들 여자애들은 우범으로 들어오나요?

1-회복-A: 네. 우범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우범해가지고 딱 이렇게 우범만 해가지고 딱 보내셨어요, 아이들을. 근데 지금은 다 병합돼요. (중략) 처음에 우범 했을 때 얼른 보내주셔야 사실은 아이들이 효과가 좀 있는데.

소년보호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 상한연령 하향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기준을 연령이 아닌 범죄의 종류로 삼아 중범죄는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경우 아직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나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13세로 내린다고 했을 때 처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중략) 실제로 13세로 내렸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강력범죄. 강력 비행. 강력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죠. (중략) 그런 건 좀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건 사실 몇 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시기비행)니까. (중략) 애들이 이제 사실 자잘한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연령 기준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단순히 그냥 13세로 내린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소년-F)

결국은 다시 사회로 돌아와 함께 살아갈 아이들이고 우리 사회가 수용하여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내용은 무엇이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며 현재의 보호처분을 더 잘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의 증가

면접에 참여한 모든 소년보호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소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재활소년원이 아닌 일반소년원 수용 인원 중 약 60%가 정신건강 의학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종사자도 있었으며, 한 분류심사업무 담당자는 10년 전에 비해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소년의 수가 두 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보호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는 대체로 품행장애, ADHD,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이 언급되었다. 법무부 수용시설 뿐 아니라 1호나 6호 처분 소년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중간처우 시설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복용하는 소년들이 늘고 있었다.

저희는 주로 7호에 갔던 친구들이 저희 [1호] 시설로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7호를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1호랑 7호랑 거의 비슷한 유형의 아이들이. 조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냐 아니냐로 나뉘기 때문에 7호에서 이제 그 기간을 다 마치고 집으로 보내려고 할 때 집으로 보내면 똑같이 또 사고로 이어지고 비행으로 이어질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이제 법원에 부탁을 해서 저희 시설로 연락이 온단 말이죠. 처분변경해서 아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 가면 사고 칠 것을 예상해서 법원에서 이제 소년원과 같이 7호 대전소년원과 같이 얘기를 해서 저희 시설로 온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시설에서 마찬가지로, 아이 아이는 좀 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겠나 그러면 처분변경 통해 가지고 7호로 간 경우도 있고. (1-회복-C)

현재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들은 7호 처분을 통해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할 수 있지만, 대전소년원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인원이 증가하여 일반소년원이나 중간처우 시설 등에서 전문적인 의료처우가 필요한 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소년들과 모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이나 위탁 보호 시설도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해당 소년들이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다른 보호소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년-A: 그런 학생들이 오면 일단 그 학생 본인한테도 굉장히 손해고. 그러니까 조기에 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걸 해줄 수 없으니까. 네. 그 학생의

그런 문제 행동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감내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문제는 애네들은 이제 또 수업을 들으러 학과장 올라가서 온전히 수업을 그냥 있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이제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대전 갈 애들을 여기다 넣어서

연구자: 아 다른 친구들이?

소년-A: 네. 우리가 저런,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냐? 뭐 또 학과장뿐만 아니라 생활관에 가서도 호실에서 뭐 이제 적응 못하면 혼자 호실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거기서도 이제 계속 막 소란이 하면 옆 호실이나 여긴 방음시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죠. 그런 문제점들이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멀었.. 멀었죠? (웃음)

정신질환과 더불어 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여러 집단에서 등장하였다. 보호소년으로 위탁되어 오는 아이들 중 지능이 낮은 소년들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절한 자극과 교육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종사자도 있었다.

제가 조금 놀라운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라온 양육환경에서 제대로 케어가 안 돼서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그에 맞는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 그 결과지를 보면 어떤 정서상으로 큰 문제가 있다 라기 보다는 거의 지적 능력에 따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2차적인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6-보호-C)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호소년들이 보이는 분노조절의 문제가 부모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주목할 만하다. 이전에 비해 소년들의 원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졌다거나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소년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반면, 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시설 종사자도 있었다.

1-회복-C: 오히려 예전에는 무조건 한부모, 조손가정, 혹은 아예 부모가 없거나 위탁 가정 이런 경우였는데 요즘에 오히려 엄마 아빠 암전히 잘 있는데, 이혼 가정도 아니고

1-회복-B: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은 부모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니까 교육이나 어

면 보호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부모들한테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대화해 보면 기본적인 사회 성향이나 경제적인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상담을 시켜보면 이제 분노 조절이 나 또 알고리즘에 빠져있다든가. (중략)

1-회복-A: 아이가 이렇게 [옥하고] 올라오는 아이들 있죠? 부모님 얘기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릴 때 그냥 막 이렇게 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 조금 크니까 나오는 거예요.

소년범죄의 원인이 정신질환이나 지적 능력의 부족에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핍이 범죄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년들이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보호처분 관련 시설 종사자는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한 사람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년들의 비행과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주변화 된 소년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적절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숙고해보아야 한다. 소년범죄의 현황과 보호처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에 인력과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수준과 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식을 적용하여 지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소년보호처분 종사자들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집을 나왔다 그러면 어떤 집안의 사연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아팠어요. ADHD 성향이 좀 강했던 거 그거 공통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거를 치료를 미리 못 해줬다. 부모도, 부모도 그거를 인지를 못 할 수도 있고. 한 사람도 제대로 못 했다. 그거를 애들 이렇게 잡아서 못 했고, 학교도 또 사실은 그걸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기초교육은 애들이 IQ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에요. 기초교육을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교육하면 되는데 그것을 집단 교육은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집단 놓고 애는 잘하는데. 애를 맞추겠어요? 잘하는 애를 맞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교육. 시설에 이렇게 왔으면 1호 시설에 왔으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맞는 아이에 맞는 (중략) 인성 교육 차곡, 학교 교육 차곡 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조금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까지는 배워줘야 교정이 된다 이렇게 저는 봐요. (1-회복-A)

3) 소년범죄 증가의 이면

소년보호 전문가들은 소년범죄의 사건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흉악 범죄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고되는 비행 건수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까지도 법원에 송치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자극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소년들의 범죄를 자주 접하게 된 일반 대중들이 소년범죄가 증가할 뿐 아니라 흉포화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였다.

아이들이 더 나빠졌냐? 더 나빠졌다는 건 아니고요. 진화를 한 거죠. 진화를 한 거고. 사건의 수가 훨씬 는 거는 맞아요. 팩트로는. 근데 흉악 범죄의 비중은 확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신고하는 문화도 아니었고 신고한다고 걸리는 문화도 아니었고 경찰도 쉬쉬하고 대충 이런 거 너희끼리 화해해 하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굶고 굶고 굶다 보니까 터지니까 흉악범죄도 많이 나왔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 당한 애들은 당하기만 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상 누가 누구를 신고해도 그냥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대고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모든 데 카메라가 있고. 그러니까 범죄가 진화했고 시대가 바뀌어서 범죄 건수는 늘었다. 근데 흉악 범죄 비중은 줄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대책은 필요하다. (1-회복-C)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지면 언론이 전부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애들 한 건 하면 보호자들이 뭐 .또 언론을 의식한 사람들이 자꾸 제일시 하고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거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년-D)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들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흉악범죄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고,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여자 소년들의 경우 유흥비 마련을 위한 성매매가 늘었고 남자소년들은 인터넷 사기와 도박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소년보호 전문가들은 성인범죄 유형의 변화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성인들 사이에 만연한 한탕주의가 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마음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아이들 남자애들은 토토, 여자애들은 성매매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중략) 사실 이걸 비단 애들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막 불었었잖아요 한탕주의가. 왜 일을 하나? 코인하면 되는데 주식하면 되는데 로또되면 되는데 (1-회복-C)

또한, 소년보호 전문가들은 소년들의 범죄가 전문화되거나 정교해진다기보다는 상습화된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소년들이 비행과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경우에는 비행을 멈추지 못하고 반복하여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범죄를 반복하는 소년들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청소년기의 반항 심리와 미성숙함으로 인해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 관성을 따라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도 하였다. 한 시설 종사자는 변하지 않는 가정환경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비행친구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점도 비행의 상습화의 이유 중 한가지로 꼽았다. 비행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불량교우랑 접촉을 막기 위해서 보호자한테 임시 퇴원할 때도 항상 전에 전화 전날 [보호자한테] 전화하면서 친구들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임시퇴원 나오면 친구들이 와 있어요, 이미. (중략) 그게 이제 아마 보호자가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 정도 되면 보호자들이 애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관리가 안 되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중략) 재비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은 사실 제일 큰 건 불량 교우들이라고 생각해요. 못 끊어요. 그거를 고 또래 애들이. 재미있으니까, 놀러다니면. (소년-F)

아무 환경이 변함이 없으니까. 보호자도 그렇고 보호력도 그렇고 개가 처해있는 뭐 형편이라든가 환경에 교우환경, 교우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이

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죠) (소년-B)

4) 적극적인 보호자 교육이 필요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벌하기보다는 소년을 교육하고 보호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년의 보호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받게 된다. 처분 전 조사는 보호자도 소년과 함께 조사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 시에 보호자들은 자녀의 비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울기도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애들하고 엄마랑 같이 면담을 하면 애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 먼저 하든가 엄마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불려서 하니까 따로따로 하니까 아무리 빨리해도 30분은 걸릴 거예요. (중략) 근데 이제 좀 집이 문제가 있거나 아이가 뭐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좀 얘기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1시간 넘어가는 거 우습죠. 또 엄마가 또 할 얘기가 많은 경우도 많고요. 어머니들이 이미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이한테 힘든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와서 하소연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애가 이렇고 학교에서 이렇고 어떡하면 좋냐 하면서 막 우시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시간은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아무리 안 잡아도 (보관-B)

보호소년에게 보호자가 있는 경우라면 결국 미성년자인 소년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은 소년의 보호자이며, 소년이 처분을 받고 돌아가면 다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주체도 소년의 보호자이다. 보호자가 소년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아이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소년은 보호처분이 끝난 뒤에도 다시 재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수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종사자는 모든 수감을 통틀어 보호자 특별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보호자로서 보호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강하면서 항상 제일 효과가 저는 모든 수강에서 통틀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보호자 특별 교육이에요. 보호자분들한테 애들이랑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일종의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데, 애들의 현재 특성은 이렇고 말할 때 이렇게도 해야 한다 그런거였는데 이거를 법으로 강제해주지 않으면 엄마들이 그거를 8시간 동안 배울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이걸 안 받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되냐 약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데 보호자 교육은 좀 대부분 강사진들이 또 거의 전반적으로 (중략) 관찮아서 보호자 교육은 엄마들이 그 진짜 느끼는 게 많아서 가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오히려 애들보다 저는 (웃음) 보호자분들을 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조금 강해서. 보호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보관-A)

이와 같이 다양한 수용시설들은 보호자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 특별 교육과 더불어 각 시설 나름대로 보호자 상담이나 가족캠프 등을 진행하며 보호자가 소년의 처분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나 상담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년보호 전문가들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단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 꾸준한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가정의 보호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와 부모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교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좀 너무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인 상담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하고. 저희도 지금 가족 캠프라는 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는. 근데 12시간이에요. 이틀 동안 운영을 하고 끝나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꾸준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좀 아이와 보호력이 좀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E)

가정의 회복과 보호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호처분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소년범죄가 감소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집단별 면접에서 여러 번 강조되어 나타났다. 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의 경우 보호자가 소년에 대한 감호를 제대로 제공하

는지 관리 감독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보호자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 결정의 유예나 불처분 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만큼 보호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소년의 재범률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아이들한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중략)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그 양가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의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배울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복지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 보호자가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훈육에 대한 방식들을 배워나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의 상황에서라도 만약에 1호 처분이 부과가 된다면 그 보호자들의 이런 훈육 방식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하실 때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조사-D)

이렇게 또 그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통 이제 외국은 문제해결 법원이라고 하면, 그 가정과 부모, 법원이 어떤 의미의, 계약은 아니고요, 처분 결정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중략) 이런 거 이런 걸 이수했을 경우에는 이 처분 결정을 이제 일부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불처분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요. (조사-F)

소년이 성장하면서 미주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위기들마다 부모의 보호가 충분하기만을 바라며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에 보호자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소년을 보호하는 다양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자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소년에게도 보호자 외에 다른 성인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할 경우에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를 통한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는 성인의 수를 늘려 보호체계를 촘촘히 하는 방안의 하나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멘토링 뭐 이렇게 붙여주고 뭐 보호관찰위원님들도 붙여주고 뭐 이러지만, 사실 저는 보호자에 대한 그런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의 개입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사-D)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아이를 감시할 수 있는 대상, 관찰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느는 거니까. 담당 보호관찰관, 학교 선생님, 보호자 외에 한 명이 더 느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제일 영향이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보호관찰관이랑 위탁보호위원이거든요. 제일 무시하는 거는 부모랑 학교 선생님이고. 경찰은 경찰도 요새는 애들은 어른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위탁을 간다,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소년원 간다 이걸 인지하는 게 되게 애들이 빠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 저희 그러니까 위탁보호위원이랑 담당보호관찰관인 거죠. (1-회복-C)

그 어쨌든 치료보다는 예방 비용이 훨씬 더 적잖아요. 저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좀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치되어도 한 명 정도 이렇게 있고. (중략) 막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미리 파악을 해서 상담, 대화 한 번 더 하고 뭐 길을 좀 터주고 좀 이려면 그래서 좀 6호까지 6호도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확실히 학교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들은 좀 그 효과가 있거든요. (중략) 학교사회복지사가 좀 학교에 몇 명씩 좀 그 사회복지팀이 있어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 (중략) 사실은 학교에서 일하는 게 작업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뭐 그 가정환경 취약한 것도 뭐 금방 파악이 되니까. 그것도 뭐 지역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학교 사회복지사니까. (6-보호-A)

5) 소년보호의 불균형

소년보호 전문가들을 면접한 결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데에 같은 처분일 지라도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른 편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 등 지역별로 소년보호의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1호 처분 집행을 위탁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6호 처분 집행을 위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해당 시설들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도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소년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무색한 상황이기도 하였다(그림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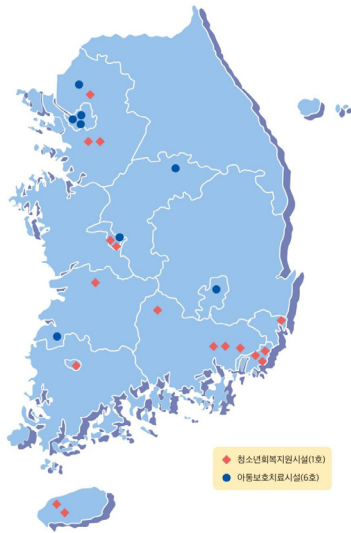


그림 IV-1.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과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분포도

인력 자원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있는 보호처분 관련 시설이 월등하게 많았다. 수감명령 집행을 위한 강사를 섭외할 때에도 제한된 강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은 섭외 가능한 인력풀이 비교적 넓었고,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인력을 구할 때에도 보다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수도권 지역의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한 종사자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의 이점 때문에 직업훈련을 위한 외부강사 채용, 의료처우를 위한 의료 인력의 초빙, 지역사회의 후원 등이 다른 지역보다 수월한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이나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에 개소된 보호처분 관련 시설들은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자원이 부족하여 소년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1호 처분 위탁 시설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도 종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소년-A: 저희가 좀 이게 수도권의 장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다 보니까.
(중략) 조금 더 저희가 도움을 받기는 사실은 이쪽이 인구도 많고 하시는 분 직업이나 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 많죠). 그래도 좀 어렵긴 해요. 저희가 이게 외부에 있는 페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중략) 그리고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도 뭐, 뭐 OO[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좀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 인성교육이나 이쪽에서 조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연구자: 먼저 연락이 오세요? 아니면 발굴을 어떻게 하세요?

소년-A: 저희가 필요하면 연락을 드릴 때도 있고요. 그쪽에서 먼저 저희 쪽에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다고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도 뭐 다 하잔다고 해도 다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좀 나눠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면 들어오시고, 아니시면 뭐 다음에 기회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봐 주세요,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고.

[인력을] 못 구한 거죠 저희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못 맡기겠는 거예요 사실상. 일단 행정은 저보다 OO에 잘하시는 분이 없고. 저도 잘 못하지만 그냥 법제화되면서 배우기 시작한 거니까. 저도 진짜 못하지만 그냥 할 줄 아는데 다른. 일단 저희는 OO은 특이 케이스인 게 다들 청소년과가 있으시죠?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으시고? 저희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청소년 관련 된 게 저희밖에 없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주무관이란 계장님이란 바뀌면 제가 업무를 알려드려야 돼요 오히려. (1-회복-C)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담당자에 따라서도 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이 불균형하였다. 보호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개인의 역량에 맡겨진 부분이 많았으니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종사자의 열정과 능력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수강집행은 담당자와 강사의 개인 역량에,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집행은 보호관찰관의 개인 역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소년들이 지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각 처분 명령에 대해 보다 잘 정비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자: 그러면 그 강사분들한테 드리는 매뉴얼, 교육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관-A: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네. 그래서 강사분이 각자 뭐 이렇게 책이나 뭐 그런 거에 나와 있는 가져가서 하기도 하고, 매번 달라요. (중략)

연구자: 근데 강의 종류가 사실 여러 개잖아요? 뭐 강절도 예방도 있고 뭐 교통 관련. 근데 그게 다 그냥

보관-A: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요. 성폭만 전문화해서 하고요.

연구자: 나머지 그냥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보관-A: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한 명이 40시간 할 때도 있고, 뭐 3일은 뭐 이렇게 인성교육하고 하루는 뭐 준법 관련 전문 교육하시고. 근데 그것도 내가 그게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사실 대충 이런 식으로 해라 나와 있긴 한데 계획을 그렇게 올린다 해도 강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강의를 한다는 사실은 보장이 없어요. (중략) 뭐 좀 쪼개서 하고 싶어도 2시간을 이 사람은 뭐 인성교육하고 이 시간에는 뭔가 소방 관련 애들 막 구조 구급 그런 거 하고 싶어도 그 시간을 2시간 3시간 쪼개서 안 오려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소년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직원 간의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떠냐 하면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이 있으면 어떤 직원은 말 그대로 딱 그 지침 선에서만 해요. 딱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도 절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뭐 저희가 뭐 보통 소년 넣으면 분류 등급이 집중, 주요, 일반이거든요. 성인도 마찬가지로. 집중이면 월 1회 대면 접촉, 주요는 월 1회, 뭐 일반은 격월 1회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딱 그 정도면 만나는 거죠. 근데 어떤 직원은 저는 한 10회 15회도 만나봤어요, 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결국은. 그 차이가 그 애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그 차이도 되는 거고 관리도 되는 거고 재범 방지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중략) 근데 딱 그 선만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딱 지침. 형식적인 말, 멘트. 이러면 애들이 그냥 금방 알아요. (보관-F)

4. 요약 및 시사점

소년심판은 소년보호재판이라고도 불린다. 소년법이 소년의 죄를 심판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재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년을 비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소년보호시설, 수많은 소년보호 전문가들이 개입하게 된다. 해당 단계마다 소년이 만나게 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제도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년보호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을 위해 적합한 보호처분이 무엇인지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으게 된다. 소년에 대한 처분 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관에게는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성인범과 달리 아직 성장 중인 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수사가 아닌 생활환경조사로서 소년에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및 법무부에서 소년에 대한 처분 전 조사만을 담당하는 인력은 극히 소수이다. 조사 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고, 별도의 처분 전 교육 명령과 임시위탁 처분을 통해 소년의 비행에 초기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처분 전 단계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관련 인력과 제도를 보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호 처분은 기본적으로 보호자에게 소년을 위탁하는 제도인데 보호재판을 받는 소년들은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가 일반 소년들에 비해 많은 편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탁보호위원 위탁 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소년을 위탁하는 1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2016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아 법원 소년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인데, 청소년회복지원센터의 자조적인 노력과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현재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법원에 보급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도입 취지에 맞는 시설의 수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내실 있는 소년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호 처분인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소년 수강은 중점 업무가 되기 어렵고, 2호 처분이 단독으로 내려질 경우 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집행할 때 소년들은 연령, 성별, 범죄명과 상관없이 모두 한데 모여 동일한 내용의 수강을 하루에 8시간씩 5일 연속으로 듣게 된다. 인력과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소년 수강의 영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별도의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강명령 집행의

질이 개별 강사와 소년수강 담당자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소년 수강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3호 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소년에게 적합한 사회봉사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현재는 성인범이나 소년범 모두 사회봉사명령 위탁기관에 보내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4세 이상이면 처분이 가능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소년들은 사실상 근로 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을 수 있다. 실제로도 소년은 온전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여 위탁기관에서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고 발달단계 특성상 충동성이 강한 소년들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기관에 상당 부분 일임하는 것은 보호처분으로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접 집행하는 방식, 사회봉사명령 처분의 연령하한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4, 5호 처분인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가 유일한 집행기관이다. 소년 대상 보호관찰은 소년의 특성상 소년을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대상(보호자, 학교, 지역사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소년을 돌보아야 하는 보호로서의 개념이 강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사무가 발생하는 까닭에 보호관찰소에서도 기피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년보호관찰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하는 소년의 수를 성인 보호관찰에 비해 현저히 줄이고 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호 처분을 위탁하여 집행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임상심리상담원의 수가 1명이다. 또한, 법무부나 법원의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전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소년에 대한 정보는 일절 제공받지 못한다. 또한 보호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이 없다보니 개별 기관 수준에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시설을 운영해 가고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는 학교와 사회에서 주변화된 소년들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여 학과 교육도 사회복지적 접근으로 수행하고자 애쓰고, 처분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소년과 생활하기도 하며 소년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치료 시설을 위해 임상심리상담원 인력 증원,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하는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7호 처분으로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된 소년들은 모두 대전소년원으로 모인다. 이전에 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에 의료재활소년원은 여전히 대전소년원 1개여서 7호 처분이 필요한 소년들이 6호 처분 시설로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지 않고도 일반소년원에서 적정수준의 의료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소년원 외부에 소년을 입원시킬만한 의료시설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의료재활소년원이 목적에 맞는 기능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상근 전문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소년원은 8, 9, 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수용하고 분류심사 대행소년원으로 임시위탁 처분 받은 소년들의 수용과 조사 업무 또한 동시에 수행한다. 소년들이 거주지역 근처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그렇지 않은 소년이 한 데서 생활하여 악감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수용하기 위해서는 소년원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 처분을 받지 않은 소년들을 임시위탁하여 조사하고 교육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소년원이 대행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별도의 소년분류심사원을 증설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소년원마다 기능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원 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교육부 등의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퇴원 후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예전에 비해 소년들이 점점 더 미성숙해지는 면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소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행성이 심화된다고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비행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문제,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비행이 쉬워진 점이나 가출로 인한 우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처벌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내용과 배경을 면밀히 살펴 현재의 보호처분을 더 잘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소년은 아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현장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던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여 보호자가 소년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소년보호에 필요한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과 담당자에 상관없이 소년보호가 일정 수준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 및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제5장 해외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

- 1. 들어가며
- 2. 영국
- 3. 독일
- 4. 일본
- 5. 시사점

1. 들어가며

외국의 법제 및 청소년 범죄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 일단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의 법제나 정책이 전가의 보도라고 할 수는 없고, 어느 나라이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가운데 적절한 개입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감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각기 상이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영국, 독일, 일본의 법제 및 개입 등 청소년 범죄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국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개입에 있어 다기관 연계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국가인 만큼 영국의 법제 및 청소년 범죄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다. 더욱이 시기에 따라 엄벌화와 다이버전의 적극적 활용이 청소년 범죄 대응의 장면에서 각각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독일은 대륙법계의 대표 국가이자 소년법제를 형사법제로 일원화하고 소년범죄 사건을 소년특별절차에서 다루고 있으면서도 소년청을 통해 교육적 관점을 중시하고 있어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법원의 소년범죄의 대응에 있어서도 교육사상을 강조하고 있어, 그 내용과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유사하면서도 가정재판소 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색을 가진다. 일본의 제도는 가정재판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년부에서의 개입 또는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9) 이 장은 김혁 부경대학교 부교수(1절, 4절, 5절), 이유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절), 고명수 육군사관학교 조교수(3절)가 집필하였음.

2. 영국

1) 개관

(1) 연령 기준

영국 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로마법과 앵글로색슨 전통, 그리고 교회법을 들 수 있다. 형사책임능력 기준연령 또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로마제국이 기원전 43년경부터 서기 410년경까지 약 460년까지 영국을 지배하면서, 로마법이 영국 사회 전반에 이식되었다. 로마법은 형사책임능력의 기준을 생식가능성 및 결혼적합성이라는 신체적 조건에 두고, 이러한 신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인 성숙자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부과하였고,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였다. 이러한 형사책임능력 기준은 법리의 형태로만 존재하였으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성숙기에 달하는 연령을 14세로 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주호노, 2010: 49-51). 다만, 성숙기에 달하지 않은 미성숙자라고 하더라도 성숙기에 가까운 경우에는 완전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주호노, 2010: 50). 성숙기에 가까운 미성숙자 기준 연령에 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형사책임능력 기준연령에 대해서는 8세, 10세반, 14세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주호노, 2010).

로마법 외에 앵글로색슨 전통 역시 형사책임능력 기준연령에 영향을 미쳤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앵글로색슨 세력의 통치와 덴마크 등 노르만족의 침입을 겪으면서, 중세 영국에서는 크누트 대왕 법전의 전통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Crowley, 1975: 1). 이에 따라 크누트 대왕 시기 시행되었던 부락책임제(frankpledge)가 활성화되었다. 부락책임제는 일종의 경제·치안 자치조직으로, 13세 이상의 부락민들에게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은 부락민은 자신의 경제적·법적 이익을 주장할 권리와 함께 자신으로 인한 발생한 민사적·형사적 갈등을 해결할 의무도 지도록 하였다(Crowley, 1975: 1-2). 따라서 13세 미만의 자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적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부락책임제가 13세 이상의 부락민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은 것은 로마법에서 제시한 신체적 성숙도나 현대의 기준인 규범적 이해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영위함으로써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을 보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Crowley, 1975: 14-15).

부락책임제가 해체된 중세 말기 이후, 영국의 형사책임능력 기준연령은 7세로 대폭 하향조정 되었다. 이러한 하향조정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대한 판단 변화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식량 부족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유아사망률 급증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7세 이상의 아동에게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Hawes & Hinder, 1991: 280). 1700년대 영국 법원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7세로 설정하면서도,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행위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Doli incapax*를 적용하였다. 즉, 법원은 검사가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에게 행위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는 특출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였다(Cipriani, 2016: 74-75).

영국에서 처음으로 형사미성년 기준연령을 명문화한 것은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정의 붕괴와 국가 치안기능의 마비, 경제적 혼란 속에서 소년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소년범죄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전후 노동인력의 공급부족이 발생하자 청소년들에 대한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소년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2에서는 소년법원의 관할과 권한이 확대되고 최초로 구금 처분을 대체하는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Norrie, 2017: 19). 이듬해 의회는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8세로 상향하였고,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에서는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보호와 관리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이 현재의 10세로 상향되었다.³⁰⁾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이 10세로 명문화되었지만, 여전히 *Doli incapax* 법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그 소년에게 행위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했다. 즉, 14세 미만의 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사실상 검사가 개별 소년의 특출한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는 한 14세

30) legislation.gov.uk.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s)16(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3/37/section/16>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사책임능력 기준연령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1993년 James Bulger 사건으로 14세 이하 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보수당 정권의 엄벌화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면서(Gardian, 2023.2.10.) Doli incapax 법리의 순차적 폐지가 진행되었다. The Sexual Offences Act 1993은 14세 미만의 남성을 성범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소년이 성행위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였던 판례법리를 명문으로 폐지하였고,³¹⁾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일반 소년사건에서 Doli incapax 법리를 폐지함으로써 10세 이상의 모든 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³²⁾

(2) 주요 법률개정사항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39조는 각 지역에 경찰과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소년을 보호·감독하는 기구인 Youth Offending Team(이하 “YOT”)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와 경찰, 보호관찰기관 등 소년사법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정부들은 매년 협의를 통하여 YOT의 구성과 재정, 활동에 관한 소년사법 연간계획서(Youth Justice Plan)를 Youth Justice Board(이하 “YJB”)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활동에 대해서는 Children Act 1989 별표2의 항목에 맞춰 평가·기획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처리되던 소년의 무단침입, 무리짓기 등 방해행위(nuisance)와 소란행위(annoyance)를 반사회행위(anti-social behaviour)로 분류하고, 성인과 분리하여 소년에 대한 다양한 감독 및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반사회행위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해당 제도의 도입을 통해 반사회행위만을 이유로 소년을 구금처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감독과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반사회행위의 개념과 구체적인 처분은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는 2000년 이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하여 소년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동법 제38조 제6항은 피의소년이 경찰에 의해 유치되

31) legislation.gov.uk. The Sexual Offences Act 1993 (s)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3/30/section/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32)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3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34/england>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어야 경우 반드시 성인과 분리하여 지역 소년구금시설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제57조는 YOT나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피의소년이 경찰에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경우 경찰이 해당 기관에 반드시 그 이유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Children Act 2004는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소년사법 유관기관 개편에 따라 이들의 권한과 의무 및 협력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는 지방정부가 지역 아동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유관기관에는 경찰과 보호관찰기관, YOT가 포함된다. 동법 제11조는 이러한 유관기관들과 구금시설들의 최우선적 의무는 아동과 소년의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Criminal Justice Act 2003 제13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보석(bail)을 결정할 경우에 소년의 보호와 복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보석은 불법의 정도와 사회적 위험성이 최우선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법 제170조와 제172조를 통해 소년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uncil)의 설치, 「소년사건 선고에 관한 원칙 기준집(Overarching Principles - Sentencing Youths)」을 고려한 법원의 구금선고 및 보호처분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동법 제108조를 통해 14세 이전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증거를 성인 피의자의 판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은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 다양화와 위험성 평가절차의 체계화를 위한 조치들을 입법하였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법률이다. 동법 제1장은 사회복귀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 YRO)을 신설하여 구금 외에 다양한 다이버전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다이버전에는 야간통행금지, 약물치료, 프로그램 참가명령 등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사회복귀명령을 재판 중에도 미리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임시조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판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와 처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법에는 사회복귀명령 외에도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제시되어 있다. 동법 제38조는 고연령 소년에 대하여 사회복귀명령보다 엄중한 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보수 노동명령은 사회봉사명령(community order)을 위반하거나 반사회행위 등을 범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무보수로 지역사회에서 최고 240시간의 노동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처분은 소년의 복지와 함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재범위험성 평가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YJB는 소년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동법 제17조는 YJB에서 개발한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12조를 통해 법원이 구금처분을 내리면 YOT 등으로부터 판결전조사서(pre-sentence reports)를 받고 검토해야 한다.³³⁾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제92조는 지역 시설 구금 또는 유치 처분 시에 피의소년이 거주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정부를 법원이 직접 지정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피의소년이 처분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년을 감독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아동이 보호훈련소(secure training center)나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me)에 구금될 경우,³⁴⁾ 법원이 지정한 지방정부는 피의아동에게 보호아동에 준하는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담당할 역할 및 책임을 정한 구금시설 배치계획(Detention Placement Plan), 피의아동이나 소년이 구금될 시설이 이들의 복지와 재범방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는 제70조부터 75조를 통해 지방정부에 구금된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건강 복지 서비스(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 Plan)’를 검토하여야 하고, EHC Plan이 적용되는 소년에 대하여 구금기간 동안 필요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책임기관의 자의적 행정을 방지하고 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의무를 동법 제28조를 통해 부과하고 있다.

33) 소년은 판결전조사서 제출과 검토가 의무이지만, 성인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제출 및 검토 여부가 결정된다.

34) 영국의 소년구금시설에는 보호훈련소와 아동보호시설 그리고 소년범죄자시설(young offender institutions)이 있다. 이 시설들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역할을 겸하며, 소년의 연령과 취약성에 따라 구분하여 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역할을 겸하는 소년범죄자시설은 성인 교도소와 유사한 환경으로 주로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이 구금된다. 소년범죄자시설과 아동보호시설의 중간규모인 보호훈련소에는 12세에서 17세 사이 소년을 구금하며, 15세에서 17세 사이 소년은 소년범죄자시설에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성이 있는 소년들에 한하여 수용한다. 아동보호시설은 10세에서 17세 사이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2~30명의 작은 규모로 운영된다 (Ministry of Justice, Her Majesty's Prison & Probation Service, 2022: 4).

2) 소년사법절차와 운영체계

(1) 소년사건 처리 절차

10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의 소년사건에 대한 처리는 소년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도 외출금지명령(local child curfew)이나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이 내려질 수 있다.³⁵⁾

① 경찰단계

경찰은 다양한 다이버전 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소년의 복지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지역의 YOT 및 지방정부의 아동관련 부서와의 협력 하에 아동에 적합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Youth Justice Board, 2013: 6-8).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는 소년주의처분(youth caution)³⁶⁾이 있다. 경찰이 소년주의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YOT에 통지해야 한다.³⁷⁾ 소년이 기소된 이후에도 검사가 소년주의처분이 소년에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년주의처분을 내려 경찰에게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소년주의처분은 크게 일반 소년주의처분과 조건부 소년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전에 경찰단계의 처분은 초범자와 재범자를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였지만, 2012년 법 개정 이후 범죄경력 유무에 따라 처분의 종류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³⁸⁾ 일반 소년주의처분은 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고, ② 피의소년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③ 경찰이 기소나 조건부 소년주의처분(youth conditional caution)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릴 수 있다.³⁹⁾

35)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21시부터 06시까지 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외출을 금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Explanatory Notes (s)109), 외출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YOT의 감독을 받는 아동안전명령의 대상이 되고, 아동안전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시설 유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Crime and Disorder Act 1998 (s)11).

36) 과거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으로 훈계(reprimand)와 다양한 경고(warning)를 규정하였는데,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s)135(1)에 의해 이 제도들이 폐지되고, 소년주의처분(Crime and Disorder Act 1998 (s)66ZA)으로 대체되었다.

37)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66ZB(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ZB>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38) 단, 성인과 공범으로 일반형사법원에 기소될 사건이나 혐오범죄 또는 가정폭력과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소년주의처분을 내릴 수 없다(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Youth Offender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youth-offenders>에서 5월 23일 인출).

조건부 소년주의처분은 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② 피의소년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③ 검사가 기소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기소보다는 소년대상 조건부주의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④ 피의소년에게 처분의 법적 강제성과 위반 시 기소가능성을 설명하였고, ⑤ 소년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의 효과를 인정하고 준수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⁴⁰⁾ 조건부 소년주의처분에 부과되는 조건에는 대상 소년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 사회복귀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고, 특정 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총 20시간을 넘을 수 없다.⁴¹⁾ 경찰의 조건부 소년주의처분의 경우, YOT가 부과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년의 부과조건 이행을 감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법원단계

가. 개요

경찰은 소년주의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검사는 증거 확보 여부 등 범죄와 관련된 모든 요소와 소년의 환경이나 복지 등에 대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5-6). 검사가 검찰규칙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의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⁴²⁾

소년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원(youth court)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성인과 공범인 사건의 경우에는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재판이 진행된다.⁴³⁾ 소년법원에서는 보호처분(community sentence)과 구금훈련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에는 위탁명령(referral order)과 피해회복명령

39)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66Z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ZA>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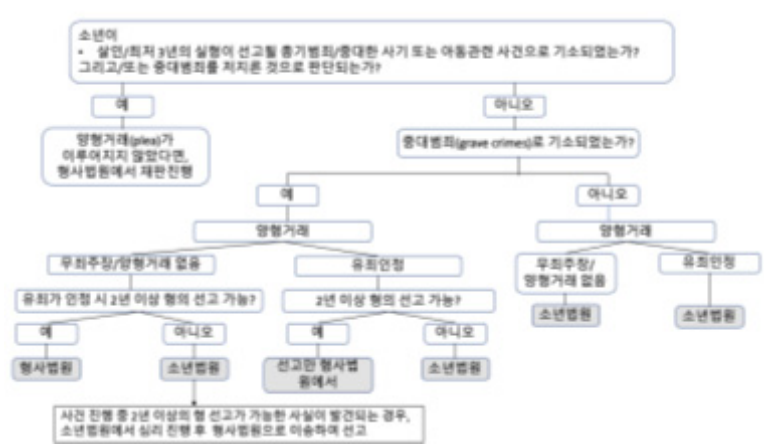
40)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66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A>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41)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66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A>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42) R v. Chief Constable of Kent and Another ex parte L, R v. DPP ex parte B (1991) 93 Cr App R 416.

43) legislation.gov.uk.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9(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43/section/29>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reparation order), 사회복귀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이 있다. 구금훈련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허용되며 최단 4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⁴⁴⁾ 또한 12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금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고기간 중 처음 절반의 기간은 시설에 구금되며 나머지 절반의 기간은 구금상태에서 풀려나 외출금지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⁴⁵⁾



* 출처: Sentencing Council(2017). Sentenc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p. 12.

그림 V-1. 소년사건 관할배분

소년에 대하여 장기 2년의 구금 및 훈련명령 이상의 형이 필요한 경우, 소년법원은 형사법원(crown court)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⁴⁶⁾ 형사법원으로의 이송 여부는 전적으로 소년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그 대상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 형사법원으로의 이송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살인과 중대범죄(grave crimes)가 있다.⁴⁷⁾ 중대범죄

44) legislation.gov.uk.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4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43/section/24A>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45) HM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Placing young people in custody: guide for youth justice practitioner s. <https://www.gov.uk/guidance/placing-young-people-in-custody-guide-for-youth-justice-practitioners>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46) legislation.gov.uk.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43/section/24>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47) 살인에는 모살 및 고의살인(murder)뿐만 아니라 recklessness로 인한 manslaughter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Judicial College, 2020: 38), 무면허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사망도 포함한다(Ministry of Justice, 2022).

란 ① 행위자가 성인이었다면 14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성범죄나 폭력범죄,⁴⁸⁾ ② 성폭행·아동성범죄·아동인 가족을 성적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아동인 가족이 성적행위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행위,⁴⁹⁾ ③ 총기관리법상 법정 최저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위반범죄가 포함된다.⁵⁰⁾ 다만 중대범죄의 경우에도 소년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인정 등 재판의 진행은 소년법원에서 하고, 이후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 형사법원에서 선고만 내리도록 할 수 있다.⁵¹⁾ 중대범죄를 행한 소년의 사건을 이송 받은 형사법원은 징역형 이외의 다른 형을 선택할 수 없을 경우에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소년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동일한 상황에서 성인에게 부과하였을 형량 이상을 선고할 수는 없다.⁵²⁾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소년법원 뿐 아니라 형사법원도 지역 YOT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건 및 소년의 환경과 특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되어 있으며, 소년법원에서 구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전조사서를 YOT로부터 제출받아야 하고, 법원은 양형판단 시에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⁵³⁾

나. 법원처분의 유형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원(치안법원)뿐만 아니라 형사법원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보석처분과 구금처분, 그리고 관리·감독을 받는 사회내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석이나 사회내처분의 경우 외출금지 등 다양한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주로 사회복귀명령(rehabilitation order)의 내용이 되는 의무사항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처분은 물론 임시조치로서도 사회복귀명령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은 여러

48) legislation.gov.uk.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9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9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49) legislation.gov.uk. Sexual Offences Act 2003 (s)13, (s)25, (s)26.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50) legislation.gov.uk.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43/section/24>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51) legislation.gov.uk.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3B.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3B>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52) legislation.gov.uk.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91(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9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53)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ct 2003 (s)15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4/section/156>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외출금지명령이나 약물치료명령 등 15가지 이상의 사회 내 처우를 사회복귀명령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⁵⁴⁾

사회복귀명령은 소년의 범죄행위가 충분히 심각한 경우에 사회방위와 재범방지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구금처분보다 사회내처분이 적합한 경우에 결정되는 유형이다.⁵⁵⁾ 사회복귀명령은 최대 3년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소년이 부과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선고된 처분 중 절반 이상을 완수한 경우에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⁵⁶⁾ 소년이 사회복귀명령에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벌금 또는 다른 유형의 사회복귀명령 조건을 부과하거나 집중감독·감시명령(intens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me) 또는 지방정부시설 위탁명령(remand to local authority accommodation)을 내릴 수 있다.⁵⁷⁾

사회복귀명령 결정 시에 법원은 YOT의 의견서를 참조하고 YOT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의 내용을 정하게 된다.⁵⁸⁾ 우선 감독명령(supervision requirement)⁵⁹⁾의 경우에는 사회복귀명령 기간 동안 YOT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이 YOT의 의견을 참조하여 횟수를 결정하지만, 진행 중 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YOT 담당자가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특정활동금지명령(prohibited activity requirement)은 해당 소년이 범한 범죄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나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이 포함된다.⁶⁰⁾ 외출제한명령(curfew requirement)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외출제한 시간도 하루 2-16시간만 가능하다. 외출제한명령의 경우 전자감독명령(electronic monitoring requirement)과 병과할 수 있다.⁶¹⁾ 또한 현재 소년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거나 보호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54)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2009). Overarching Principles – Sentencing Youths. p. 14.

55)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ct 2003 (s)148(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4/section/148/2007-10-01>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56)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Sch. 1, para. 2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4/schedule/1/paragraph/27>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57)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Sch. 2, para. 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4/schedule/2/paragraph/6>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58) Youth Justice Board (2010a). Making it count in court. p. 12.

59) Ministry of Justice Consultations. Youth Rehabilitation Orders. https://consult.justice.gov.uk/sentencing-council/sentencing-youths/user_uploads/youth-rehabilitation-orders.pdf-1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60) 위의 자료.

61) UK Government.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Bill: Equalities Impact Assess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olice-crime-sentencing-and->

지방정부시설 거주명령(local authority residence requirement)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⁶²⁾ 이외에도 약물중독치료명령(drug treatment requirement), 정신치료명령(mental health treatment requirement), 교육명령(education requirement) 등 다양한 비구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2) 소년사법 관련 기관

① Youth Justice Board(YJB)

YJB는 독립적인 비정부 위원회로 소년사법 정책을 검토·결정하고 소년사법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YJB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10명 내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주로 경찰, 소년정책 전문가, 보건전문가, 치안판사, 지방정부 담당자, 민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임명된다.⁶³⁾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41조는 YJB의 임무로, 각 지역의 YOT, 경찰, 법원, 구금 및 보호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협력체제를 총괄하고, 법무부·내무부·교육부 등 관련부처 장관에게 소년사법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하고, 소년사법정책 개선안을 검토하고, 이를 관련부처 장관에게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② Youth Offending Teams(YOT)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모든 지방정부에 하나 이상의 YOT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YOT는 YJB로부터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받지만, YJB나 법무부가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소년정책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Ministry of Justice, 2016b).⁶⁴⁾ YOT의 구성은 각 지역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법률상 또는 정부지침상 주요 내부기관으로는 YOT 운영위원회(YOT management board)와 YOT 운영자(YOT managers)가 있다. YOT 운영위원회는 재정과 지역의 소년사법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courts-bill-2021-equality-statements/electronic-monitoring-in-the-police-crime-sentencing-courts-bill-equalities-impact-assessment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62) Sentencing Act 2020(s)24.; 한국의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처분과 유사하다.

63)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41(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4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 Youth Justice Resource Pack. Londo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p. 6.

64)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38(3)(a)&(b).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하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장이 임명한다(Home Office, 1998: 40). 구성원은 법무부나 교육부 등 법률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모든 기관 관계자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협력관계에 있는 소년법원 판사, 주택공급업자, 지역안전책임자 등이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Youth Justice Board, 2013: 9).

YOT 운영자는 정부지침상 요구되는 기관(법률상 기관은 아님)으로 YOT 실무자들에게 업무를 분담한다. 또한, YOT 운영위원회와 실무자들 간의 가교역할, 법원 등 협력기관과의 연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Youth Justice Board, 2013: 12).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39조 제5항은 각 YOT가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보호관찰직원, 사회복지사, 경찰, 보건부서 관계자, 교육부서 관계자를 실무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원, 보호관찰소, 경찰과 같은 협력기관의 YOT 참여는 법률로써 강제되고 있다.⁶⁵⁾

YOT는 개별 소년사건들을 실무자에게 배당하고 실무자들은 소년사법 전반에 걸친 실질적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경찰단계의 체포·조사 때부터 재판과정 및 구금기간, 그리고 퇴소 이후 사회 적응기까지 포함한다. YOT의 주요 업무는 ① 지역 소년범죄 예방사업, ② 경찰에서 체포·조사 단계에 있는 피의소년 지원, ③ 사회봉사명령 중인 소년 지도·감독, ④ 각종 보호조치 지도·감독, ⑤ 법원에 소년의 처우에 대한 의견 제출, ⑥ 법원에서 구금 결정시 판결전조사서 제출, ⑦ 구금 중인 소년 면담 및 관리, ⑧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지도·감독 등이 있다(Youth Justice Board, 2013: 10-11).

한편 YOT는 소년사법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소년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할 법률상 의무를 진다.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의 일원으로서의 협력의무는 물론(Youth Justice Board, 2010b: 4),⁶⁶⁾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국(children services) 및 지역 아동안전위원회(safeguarding children board)와의 협력의무도 진다.⁶⁷⁾

65)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39(7).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66) MAPPA는 사회 안전 확보와 범죄위험 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로, YOT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67) legislation.gov.uk. Children Act 2004 (s)10(4)/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Regulations 2006.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③ Youth Custody Service(YCS)

YCS는 교정 및 보호관찰국(HM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HMPPS) 산하기관으로 2017년에 신설되었다.⁶⁸⁾ 소년구금시설 관리 및 운영 책임, 법원에서 구금처분을 받은 소년의 시설 배치, 구금상태 아동의 감독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YCS 또한 YOT 등 다른 소년사법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YJB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④ YOT와 기관협력체계

영국은 소년사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원선주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에 대한 처분 결정 권한은 법원에게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소년사법기관이 소년들을 밀접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으로 Crime and Disorder Act 1998를 제정하면서 YJB 및 YOT를 신설하고, 지역단위에서 소년을 지도·감독할 기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원의 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⁶⁹⁾ 이에 따라, Children Act 2004 제11조에서 소년사법 관련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YJB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소년사법정책을 총괄하면서 지방차원에서의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원·감독하는 한편, 소년사법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YJB의 연구 및 자문 범위는 소년사법 관련 입법을 위한 의견도출과 소년사법 정책 수립에서부터 소년사법 관련 예산에 대한 자문까지 포괄한다(Ministry of Justice, 2016a: 8). YJB의 주요 임무는 각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YOT를 관리·감독하고, YOT와 지방의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원하며, 협력체계 구축과 보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있다.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의 주요 취지는 지방의 소년사법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내에서 관리·감독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모든 지방정부에게

68) HM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Placing young people in custody: guide for youth justice practitioners. <https://www.gov.uk/guidance/placing-young-people-in-custody-guide-for-youth-justice-practitioners>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69) Ministry of Justice (2016a). The government response to Charlie Taylor's Review of the Youth Justice System. p. 7.

반드시 YOT를 설립하고 소년에게 필요한 자원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였다(Ministry of Justice, 2016a: 8). YOT는 경찰의 사건 인지 시부터 수사, 법원에서의 재판절차 및 구금 및 구금 이후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소년사건 전체에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YOT의 협력기관에는 지방경찰, 지방정부의 교육 복지부서, 사회복지부서, 지방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의료기관 및 지방정부의 약물관리팀 까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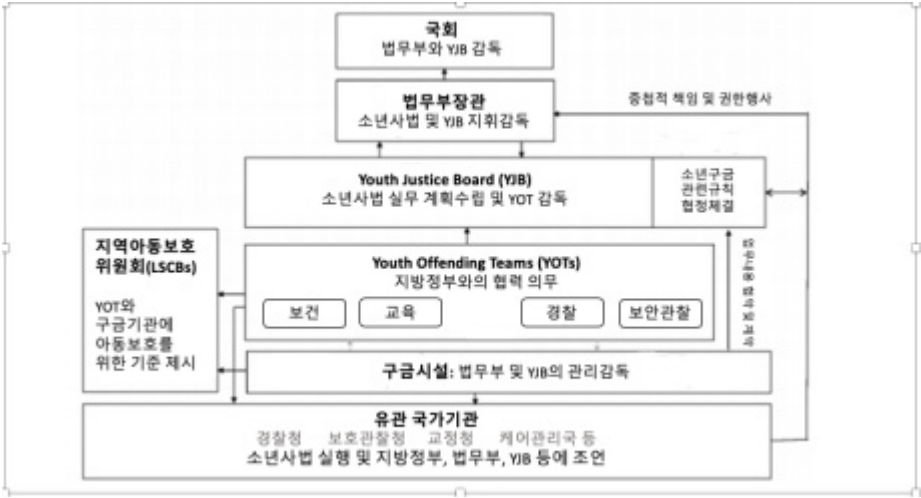


그림 V-2. YJB와 YOT의 기관 협력체계

* 출처: Ministry of Justice(2016a). The government response to Charlie Taylor’s Review of the Youth Justice System. p. 9.

YOT의 운영기금은 YJB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된다(Ministry of Justice, 2016a: 8). YJB는 지방의 YOT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에 지원금을 분배하는데, YJB가 제시하는 정책 및 요건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⁷⁰⁾ 2021/2022 연도에 YJB는 약 9천4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중 약 86%인 8천2백만 파운드를 지방의 YOT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에 지원하였다.⁷¹⁾ 지방정부의 경제적

70) UK Government. Guidance for Conditions of Youth Justice Grant 2023–202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nditions-of-youth-justice-grant-2023-24/guidance-for-conditions-of-youth-justice-grant-2023-2024>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71) Youth Justice Board (2022a).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1/22. p. 16.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YJB의 지원금은 각 지방 YOT 예산의 16~86%를 구성한다(Ministry of Justice, 2016a: 8). 대부분의 지방 YOT 재정은 지방정부에 의해 지원되고, 지방정부는 YOT 및 그 협력체계 지원방안 마련 요건을 충족해야 법무부나 YJB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연령별 대응과 처분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 중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인 10세가 저지른 범죄는 약 0.06%이다. 전체 소년범죄 중 11세가 저지른 범죄는 0.29%, 12세는 1%, 13세는 4%, 14세는 11%를 차지하여 14세에 이르는 때에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Youth Justice Board & Ministry of Justice, 2022). 15세, 16세, 17세가 각각 19%, 26%, 40%로 전체 범죄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14세를 기점으로 소년에 대한 처분의 내용과 종류가 개별화될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연령대를 살펴볼 때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들이 저지른 전체 사건 중에서 중대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이고 15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들의 경우에는 16%에 달하여 중대범죄를 저지른 저연령 소년과 일반범죄를 저지른 저연령 소년에 대한 차별취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Youth Justice Board & Ministry of Justice, 2022).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인 10세를 기준으로 사회 내 처우, 시설정책 및 양형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10-11세, 12-14세, 15-17세로 나누어 개별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1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사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이 최대 90일 동안 야간외출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⁷²⁾ 소년법원은 야간외출제한 조치를 위반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보호명령(child safety order)을 내릴 수 있다.⁷³⁾ 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주로 지역의 YOT의 감독을 받게 되며, 아동보호명령상의 이행사항을 위반하면 법원은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10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로 평가될 행위를 한 경우 부모는 아동의 재범방지를 위한 협조를 약정하는

72)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s)4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16/section/48>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73)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11: 아동보호명령은 야간외출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하여 위협, 해악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보호명령은 최장 12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1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11>/2014-04-22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서약서를 YOT와 작성하게 되고, 위 서약서상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지도명령(parenting order)을 통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⁷⁴⁾

표 V-1. 연령별 대응과 처분 개요

연령	구속	형사법원이송	전자감시장치	구금시설
10-12	예외적 가능	가능	불가	아동보호시설
12-15	가능	가능	가능	보호훈련소
15-18	가능	가능	가능	청년범죄자시설

(1)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구속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⁷⁵⁾ 따라서 소년에 대하여 보석처분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위탁보호시설(foster placement)이나 아동복지 시설(children’s home) 등 비구금 시설에 소년을 배치하게 되고,⁷⁶⁾ 비구금 시설 배치 시에도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⁷⁷⁾ 다만 YOT가 소년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법원은 출입통제형 아동시설(secure children’s home)에 소년을 배치할 수 있다(Youth Justice Board, 2022b).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나, 소년법원에서의 가장 중한 처분인 구금훈련명령은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중 2년 이상의 구금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된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⁷⁸⁾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구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주로 출입통제형 아동

74)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s)23/(s)24.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75) legislation.gov.uk.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s)98, (s)99.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76) legislation.gov.uk. Children Act 1989 (s)2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section/2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77) legislation.gov.uk.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s)9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2/10/section/94>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78) legislation.gov.uk.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4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43/section/24A>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시설인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me)에 수용하여 15세 이상의 소년과 분리하고 있다.⁷⁹⁾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시설의 수용인원을 40명 이하로 두어 감독자 1인당 담당하는 소년의 수를 조절하고 있고, 주당 30시간의 교과교육을 실시하면서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⁸⁰⁾

(2)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중대범죄로 판단되는 폭력·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경우, 성인의 경우라면 14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소년의 범죄행위가 소년법원에서의 구금훈련명령 또는 형사법원에서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과거 조건부 보석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그 조건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하다.⁸¹⁾ 다만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은 보석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비구금시설이나 출입통제형 아동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법원은 전자감시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⁸²⁾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원에서 구금훈련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형사법원 관할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소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과거에는 소년법원이 상습범인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만 구금훈련명령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⁸³⁾ 2020년 법개정으로 인하여 피의소년이 상습범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구금훈련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구금훈련선고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⁸⁴⁾ 살인이나 강간 등 사회에 대한 유해성이 높은 범죄를 특정하여 해당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의 유해성이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년법원에서의 최대 구금기간인 2년

79) 단, 12세 이상 15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도 또래의 소년들로부터 분리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통제형 아동시설 배치가 가능하다.

80) Department for Education. Children accommodated in secure children's homes.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ildren-accommodated-in-secure-childrens-homes/202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81) legislation.gov.uk.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s)98, (s)99.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82)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s)94; 소년에 대하여 구속, 구금훈련명령 또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83) legislation.gov.uk.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10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10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84) legislation.gov.uk. Sentencing Act 2020 (s)416(1), Schedule 28.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다.⁸⁵⁾ 구금훈련명령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보호훈련소에 배치된다. 보호훈련소는 출입통제형 아동보호시설과 달리 민간기업이 지방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당 30시간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각 구금훈련센터인 보호훈련소의 정원은 50명에서 80명 사이로 아동보호시설에 비하여 규모가 크다.⁸⁶⁾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

2020년 법 개정 이전에는 15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구금훈련명령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도 구금훈련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두 연령대 사이에 내려지는 처분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되었다. 다만 구금훈련명령 또는 징역형을 받은 소년들을 배치하는 시설에서 차이가 있다. 여성 소년의 경우 17세까지 구금훈련센터에 구금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 18세가 넘어야 성인 시설로 이감되는 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남성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범죄자시설에 수감된다.⁸⁷⁾ 15-17세 소년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훈련소에 배치되고, 18세에 이른 소년도 성인교도소보다 소년범죄자시설에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1세까지 소년범죄자시설에 머물 수 있다. 18-21세 소년은 18세 미만의 소년과 독립된 건물에서 생활하게 된다(HM Inspectorate of Prisons, 2021: 17-19).

소년범죄자시설은 15-21세 남성 청소년을 수감하는 시설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되는 보호훈련소와 달리 교정청(Prison Service)에 의해 운영되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총 5개 시설이 있다. 소년범죄자시설에서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나 주당 25시간으로 다른 시설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강도가 떨어진다. 관리자와 수감자의 비율도 다른 청소년 구금시설에 비해 높고, 성인 교도소를 포함하여 시설 내 폭행사건 비율이 가장 높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⁸⁸⁾

85) 살인의 경우에는 12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Sentencing Act 2020 (s)250, Schedule 21; 단,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구금훈련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86) UK Government. Children in custody. <https://www.gov.uk/children-in-custody>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87) 청년범죄자 시설은 15-21세 남성 청소년을 수감하는 시설로 18세 미만의 소년은 독립된 건물에서 생활하게 된다(UK Government. Children in custody. <https://www.gov.uk/children-in-custody>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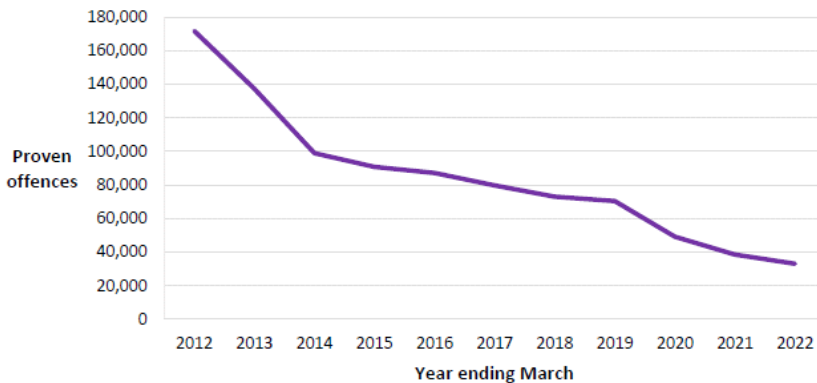
88) politics.co.uk. Young Offenders Institute. <https://www.politics.co.uk/reference/young-offender-insti>

4) 청소년 범죄 실태 및 현황

(1) 개관

협의가 입증된 소년범죄 사건(proven offence)⁸⁹⁾은 2010년 약 198,400건에서 2020년 약 49,100건으로 약 75%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33,0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Youth Justice Board, 2023: 21). 이러한 감소는 모든 범죄유형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특정 유형의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절도 및 장물죄는 2012년 전체 협의가 입증된 사건 중 15%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7%까지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Youth Justice Board, 2023: 21). 폭력범죄나 강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사건의 수는 2010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협의가 입증된 사건 중 중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7%에서 2022년 3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범죄도 2012년에 비하여 그 비중이 1.6%p 증가하였다.

Figure 4.1: Number of proven offences by children, England and Wales, years ending March 2012 to 2022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21.

그림 V-3. 협의가 입증된 소년범죄 사건 추이

tutions/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89) 협의가 입증된 사건은 경찰에 입건되어 그 사실관계가 판명되어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후 경찰의 경고조치 및 법원의 선고를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경찰에 신고 되었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전체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중범죄를 비롯한 전체 범죄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각 범죄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중범죄로 분류되는 종류의 범죄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폭력범죄의 경우 2010년에는 20%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35%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고, 강도의 경우에도 3%에서 7.1%로 증가하였다. 성범죄는 2010년 1%에서 2022년 3%로, 약물 관련 범죄도 7%에서 10%로 증가하였다. 즉, 비교적 경한 범죄인 절도, 장물죄 및 법규명령 위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범죄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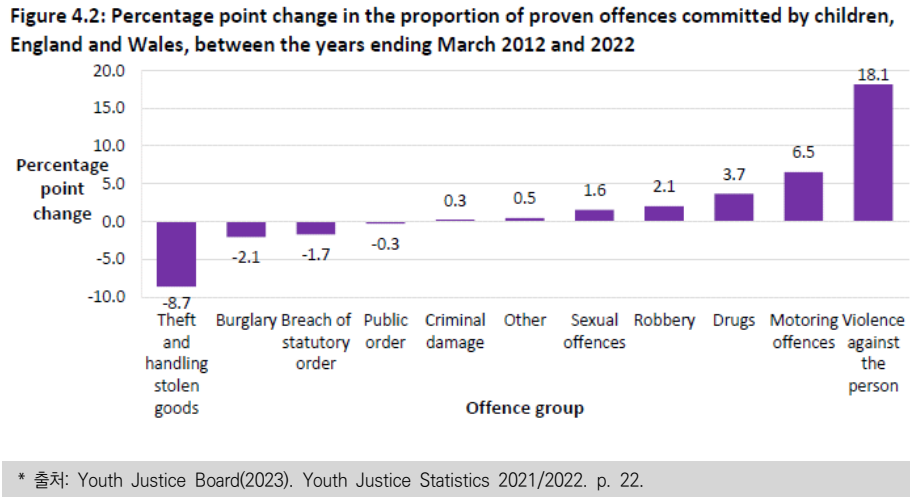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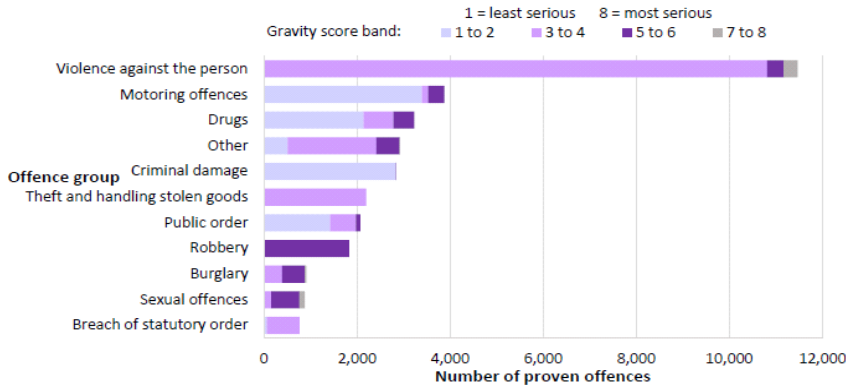


그림 V-4. 혐의가 입증된 소년범죄 사건의 증감률

중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YJB는 범죄의 중대성 점수(gravity score)를 1에서 8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강도, 야간주거침입, 성범죄는 5 이상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폭력범죄는 약 4% 정도만 5 이상의 중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⁹⁰⁾ 절도나 장물죄는 모든 경우 최대 3에서 4 정도의 중대성에 그치고, 자동차 관련 범죄의 경우에도 80% 이상이 1에서 2 정도의 중대성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2022년 혐의가 입증된 전체 사건 중 1%인 약 190건에 대하여 최대치인 8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2020년의 0.3%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90) Youth Justice Board (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2. p. 24.

Figure 4.3: Proven offences by children, by offence group and gravity score band,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March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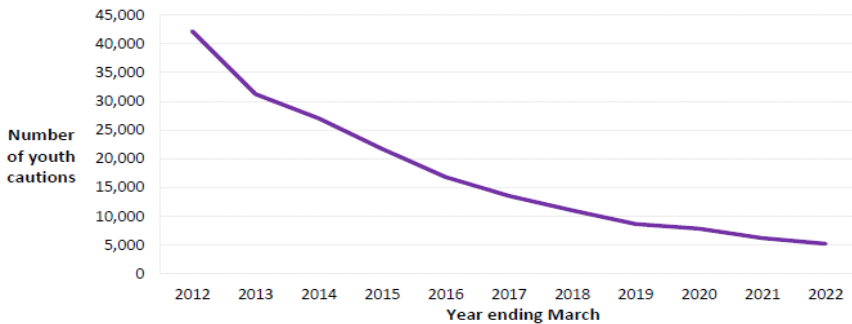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23.

그림 V-5. 혐의가 입증된 소년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분포

(2) 경찰단계

소년주의처분의 건수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감소세에 있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루어진 소년주의처분 건수는 총 13,800건이었으며, 이 역시 전년대비 감소한 수치이다.

Figure 1.6: Trends in youth cautions given to children, England and Wales, years ending March 2012 to 2022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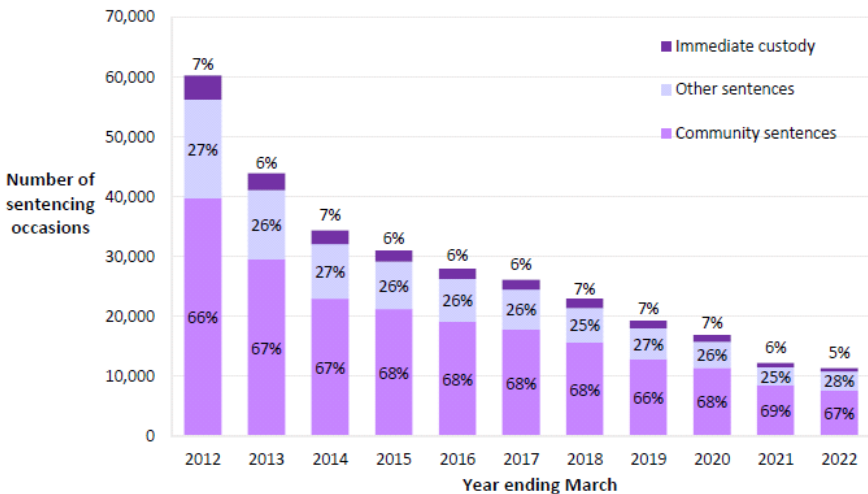
그림 V-6. 소년주의처분(youth caution) 추이

(3) 법원단계

① 법원의 처분

소년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진행되지만, 2010년 이후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소년재판 중 약 3~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1,400건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26%는 보호관찰 없는 약식재판으로 이루어졌고, 13%는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약식재판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재판에 의한 선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처분(community sentence)은 2012년 이후 매년 약 67%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고, 이 중 60% 이상이 위탁명령(referral order)이었다(Youth Justice Board, 2023: 27).

Figure 5.3: Number of sentencing occasions of children in all courts by sentence type, England and Wales, years ending March 2012 to 2022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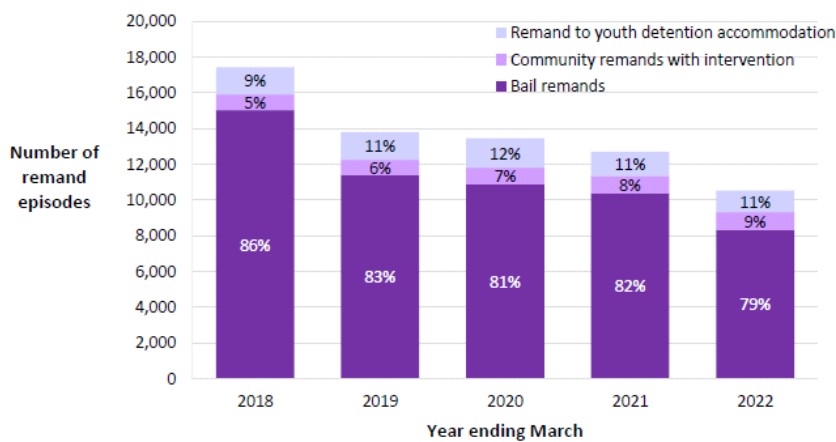
그림 V-7. 법원의 처분 종류

법원에서 선고된 보호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원에서 선고된 약 10,500건의 보호사건 중, 약 79%가 조건부 보석을 포함한 보석명령이었

고, 약 11%가 구금훈련명령 등 구금처분이었으며, 약 9%가 사회복귀명령 등 사회 내 처우에 해당되었다(Youth Justice Board, 2023: 27). 2018년 이후 보석명령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발표 통계상 86%에서 2023년 발표 통계상 79%로 감소하였다. 보석명령의 감소에 따라 사회복귀명령 등 의무부과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사회 내 처우의 비중이 2019년 발표 통계상 5%에서 2023년 발표 통계상 9%로 증가하였다. 구금처분 역시 2019년 발표 통계상 9%대와 비교하였을 때, 2020년 발표 통계 이후로는 약 11%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단, 전체 보호처분의 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 발표 통계에서는 2019년 발표 통계보다 약 7,000명 감소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6.1 Types of remand given to children

Figure 6.1: Type of remand given to children, England and Wales, years ending March 2018 t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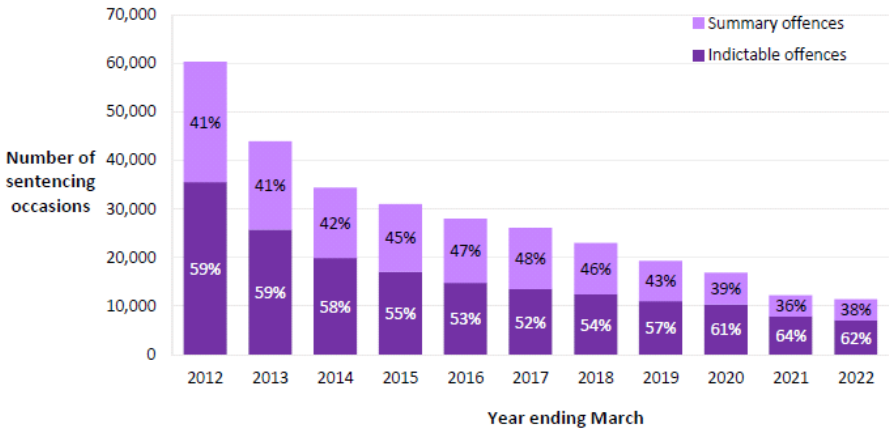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32.

그림 V-8. 법원의 보호처분의 종류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원에서 진행된 전체 소년사건 중 약 62%가 배심재판의 대상이 되는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 38%가 치안판사에 의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한 범죄(summary offence)로, 2012년 이후 기소가능범죄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중한 범죄로 인정된 사건 중 78%에 대하여 피해회복명령(reparation order), 사회복귀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 등 보호처분(community order)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약 7%는 구금훈련명령 등 구금처분 선고가 이루어졌다(Youth Justice Board, 2023: 32). 반면 약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중 49%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선고가 내려졌고, 구금처분 선고 비율은 1%에 불과하였다(Youth Justice Board, 2023: 32).

Figure 5.5: Number of sentencing occasions of children sentenced in all courts by type of offence, England and Wales, years ending March 2012 to 2022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29.

그림 V-9.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선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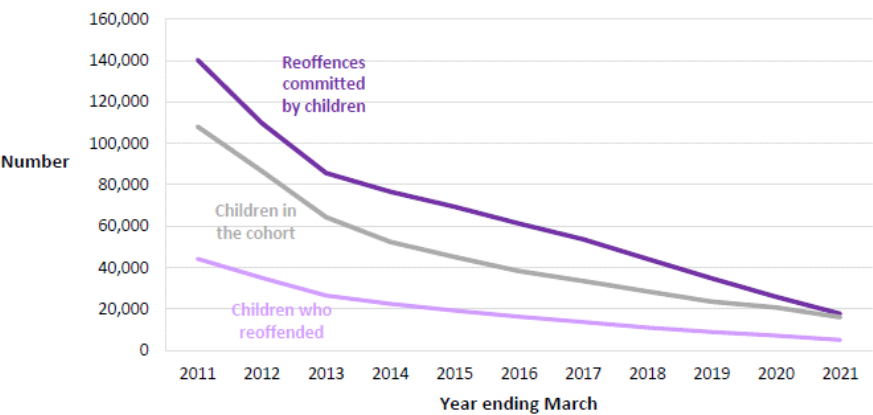
② 재범률

2022년 발표 통계에 의하면 소년의 재범 건수는 2021년 발표 통계에 비하여 약 3%p 감소한 31.2%를 기록하였다(Youth Justice Board, 2023: 54). 재범 소년의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30% 감소하였고, 재범을 반복하여 특별관리를 받는 소년의 수도 전년도에 비하여 23% 감소하였다. 다만, 이러한 감소는 소년범죄 자체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법원 업무 정지의 장기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재범 건수 자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 발표 통계상 재범 총건수 17,600건 중에서 소년 한 명당 재범 수는 약 3.54건이었다. 소년 한 명당 재범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3% 감소하였으나, 10년 전인 2012년 발표 통계상 3.18명보다 11% 높은 수치이

다. 즉, 재범을 저지르는 소년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재범 소년 한 명당 재범 건수는 증가하였다.

Figure 9.1: Number of children in the cohort, children who reoffended and reoffences, England and Wales, for children entering the cohort in the years ending March 2011 to March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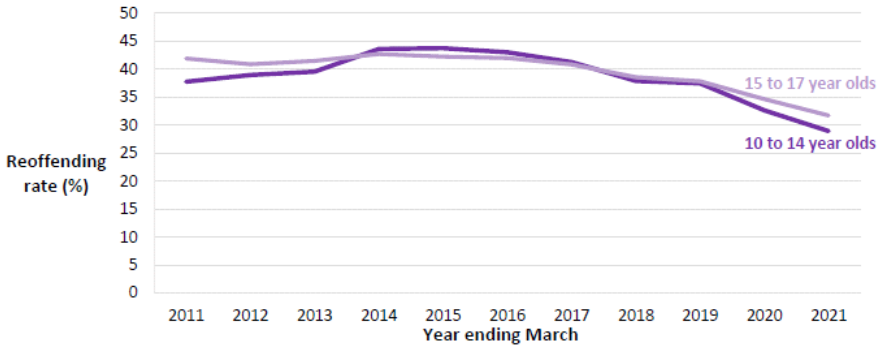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54.

그림 V-10. 재범 건수와 재범 소년의 수

재범 소년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5세에서 17세 사이 소년의 비중이 가장 크며, 2021년 발표 통계상 전체 특별관리 대상 소년 중 78%를 차지하였던 15세 이상 17세 이하 소년의 비율이 2022년 발표 통계에서는 82%로 소폭 증가하였다(Youth Justice Board, 2023: 56). 한편, 소년들의 연령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5년 발표 통계 이후 4년간 10-14세 사이 소년의 재범률이 15-17세 사이 소년의 재범률을 넘어선 바 있으나, 2018년 발표 통계 이후로는 15-17세 사이 소년의 재범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Youth Justice Board, 2023: 56). 전체 재범률은 15-17세 사이 소년이 더 높지만, 재범 소년 한 명당 재범 건수는 2013년 발표 통계 이후 10-14세 소년이 더 높았다. 2022년 발표 통계에 따르면, 10-14세 재범 소년 한 명당 재범 건수는 3.66건이었고 15-17세 재범 소년 한 명당 재범 건수는 3.52건이었다.

Figure 9.4: Reoffending rate by age group, England and Wales, for children entering the cohort in the years ending March 2011 to March 2021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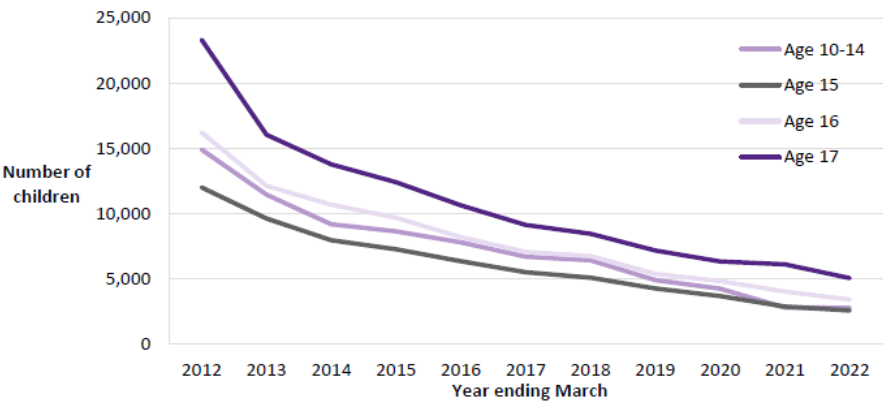
그림 V-11. 연령별 재범률

성인과 마찬가지로 소년도 과거 범죄 행위 건수가 많을수록 재범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22년 발표 통계에 의하면 초범인 소년의 재범률은 16.4%에 그쳤으나 11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재범률은 63.8%에 달했다(Youth Justice Board, 2023: 54). 재범 소년 한 명당 과거 재범 건수는 증가세에 있다가 3년 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발표 통계상 재범 소년 한 명당 재범 건수는 3.54건이었다. 2022년 이전 통계에서는 주로 공공질서위반이나 경범죄가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인 것과 달리 2022년 발표 통계에서는 사기 범죄가 재범률이 가장 높았으며, 2년 안에 사기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약 3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uth Justice Board, 2023: 58).

(4) 연령별 현황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단계에서의 소년주의처분이나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소년은 모두 13,800명으로, 2012년 통계에 비하여 79%가 감소하였고, 2021년 통계에 비하여 13%가 감소하였다. 경찰의 주의처분이나 법원의 선고를 받는 소년의 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Figure 3.4: Number of children receiving a caution or sentence by age, England and Wales, years ending March 2012 to 2022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19.

그림 V-12. 연령별 소년주의처분 또는 선고 소년 분포

경찰의 소년주의처분이나 법원의 선고를 받은 전체 소년 중 10-14세가 20%이고 15-17세가 80%를 차지하였다. 전체 영국의 미성년자 중 10세 이상 17세 이하의 소년의 비율은 36%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소년범죄의 경우 1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로, 전체 영국의 10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중 남성의 비율이 51%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년범죄의 경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2: Age group and sex of children receiving a caution or sentence compared to the general 10 to 17 populatio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March 2022

	Age group		Sex	
	10 to 14	15 to 17	Boys	Girls
Children receiving a caution or sentence	20%	80%	86%	14%
10 to 17 population	64%	36%	51%	49%

Supplementary Tables: Chapter 3, Tables 3.3 and 3.4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18.

그림 V-13. 소년주의처분 대상자 분석

지난 10년간 초범인 소년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2년 통계에서 36,987명이 초범으로 소년사법 절차의 대상이 되었으나, 2022년 통계에서는 약 8,016명으로 10년간 약 78% 감소하였다(Youth Justice Board, 2023: 14). 2022년 초범에 관한 통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범의 평균연령은 15.4세로, 2012년의 15.1세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범인 소년 8,016명 중 10-12세가 320명으로 4%, 13세가 650명으로 8%, 14세가 1,172명으로 15%를 차지하였고, 15세 이상 17세 이하가 7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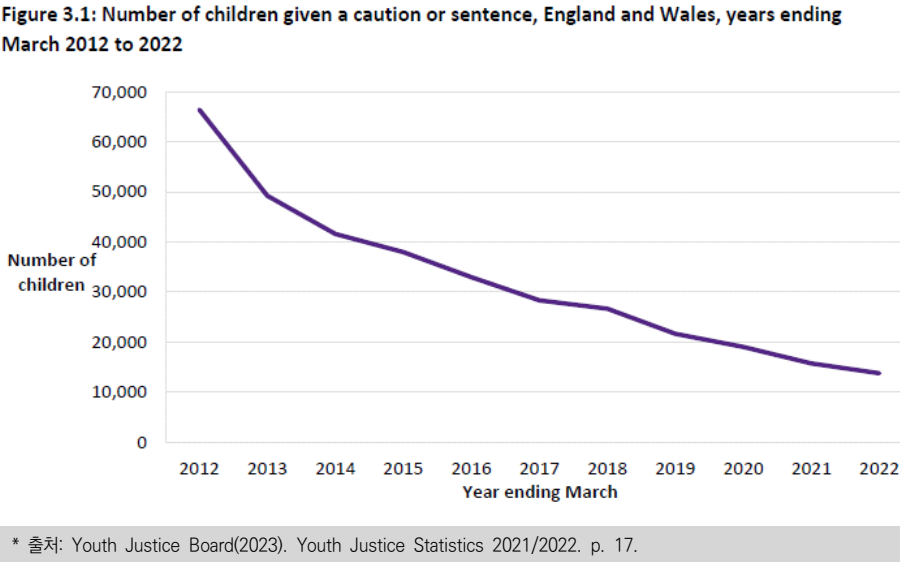


그림 V-14. 소년주의처분 또는 선고를 받은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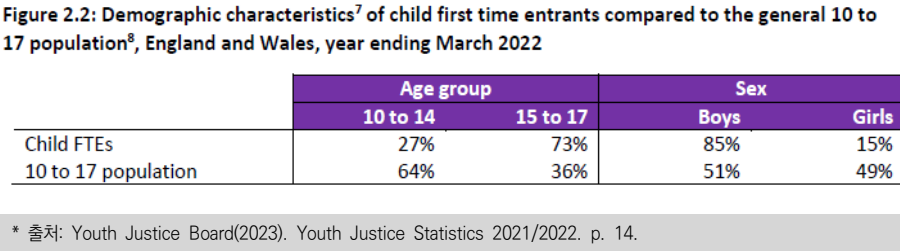


그림 V-15. 초범 소년 분포

연령별 범죄 중 범죄의 중대성 분포를 살펴보면, 10-14세는 해당 연령의 전체 범죄 중 중범죄(5-8)가 12%를 차지하였고, 15-17세는 16%를 차지하였다. 10-17세 전체 범죄 중 10-14세의 중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이고 15-17세의 중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달하는데, 이는 15-17세의 범죄 건수가 10-14세의 범죄에 비하여 3.5배 가량 높은 데에서 기인한다.

Figure 4.4: Proportion of proven offences by gravity score band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March 2022

		Gravity score band	
		Least serious: 1 to 4	Most serious: 5 to 8
Age	10 to 14	88%	12%
	15 to 17	84%	16%
Ethnicity	Asian	82%	18%
	Black	74%	26%
	Mixed	81%	19%
	Other	74%	26%
	White	87%	13%
Sex	Girls	94%	6%
	Boys	83%	17%

* 출처: Youth Justice Board(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p. 23.

그림 V-16. 연령별 중대범죄 분포

5) 소결

영국은 소년사법 개혁 이후인 200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소년범죄 감소를 이루어 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1990년대 후반 영국의 소년사법 개혁은 중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대응을 포함하고 있어서 엄벌화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 소년사법 개혁의 핵심은 소년을 밀접하게 관리하기 위한 YOT 등 지방의 여러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있다. 올해 초 발표된 영국 정부의 Anti-Social Behaviour Action Plan 역시 비행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년비행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소년들을 지역사회로 다시 포섭하는 방안들이 주로 제시되었다.⁹¹⁾

91) HM Government (2023). Anti-Social Behaviour Action Plan. pp. 9-11.

영국 정부는 YJB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 별로 상황에 적합한 세부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소년들이 범죄에 이르지 않은 반사회적 행위로 적발되거나 범죄 행위로 경찰에 입건되는 때부터 재판, 구금 및 사회복귀까지 소년사법 전 과정에 YOT가 개입하여 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며 다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노력과 YOT 등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은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관리·감독 없이 방치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 소년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소년들을 꾸준히 돌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최근에는 YOT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가 관료화되어 소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 속에서 소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 YOT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 협력체계에 더하여 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및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Turnaround 프로그램,⁹²⁾ National Youth Guarantee 프로그램,⁹³⁾ Alternative Provision Specialist Taskforces와 같은 다양한 사회 내 처우들이 실시되고 있다.⁹⁴⁾ 특히 학계에서는 소년들이 소년사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소년사법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재범을 자제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Child First Offender Second(CFOS) 모델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⁹⁵⁾ 영국 정부는 이러한 소년사법 개혁안에 대하여 꾸준히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소년사법을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 지방정부 내에서의

92) UK Government (2022.5.20.). £300 million to cut youth crime and make streets safer. <https://www.gov.uk/government/news/300-million-to-cut-youth-crime-and-make-streets-safer>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93) Cultural Learning Alliance (2023.6.26.). What is the National Youth Guarantee (NYG)? <https://www.culturallearningalliance.org.uk/what-is-the-national-youth-guarantee-nyg/>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National 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은 소년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까지 모든 소년들이 교외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5억 8000만 파운드를 조성하여 2022년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94) UK Government (2021.9.3.). Targeted support for vulnerable young people in serious violence hotspots. <https://www.gov.uk/government/news/targeted-support-for-vulnerable-young-people-in-serious-violence-hotspots>에서 2023년 8월 26일 인출; Alternative Provision Specialist Taskforces는 소년들이 학교내외에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사회복지, 언어치료 전문가 등이 집중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정부로부터 약 1,500만 파운드 기금을 받아 실시되고 있다.

95) CFOS 모델의 의의와 실험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유경, 2023: 123-129)

소년을 중심으로 한 다기관 협력체계, 그리고 소년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소년범죄의 전반적 감소에 가장 큰 요소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국의 형사책임능력 기준연령은 10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Doli incapax 폐지는 영국 정부의 엄벌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2세 미만 소년에 대한 구금처분 전자감시장치 금지 규정 및 실제 경찰 및 법원에서 처분대상 소년 연령 통계를 감안하였을 때, 중범죄의 경우에만 14세 이하 소년에 대한 강제적 처분이 이루어지며 실질적으로 강제적 처분의 주요 대상은 15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다이버전을 통해 소년사법 절차에 유입되는 소년의 수 감소 및 14세 미만 소년의 범죄 유입 수 감소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독일

1) 개관

(1) 연령 기준

독일은 14세 미만인 자를 아동(Kind)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소년(Jugendlicher)으로,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는 청년(Heranzwachsener)으로 분류한다(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 제1조 제2항).

표 V-2. 연령별 형사책임

연령	분류	형사성년의 종류	적용법률
14세 미만	아동	절대적 형사미성년	아동·청소년지원법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	상대적 형사성년	소년법원법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	청년으로서 형사성년	형법

* 출처: 김성은(2016).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p. 34.

독일 형법 제19조는 14세 미만인 ‘아동’을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는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형법인 소년법원법도 적용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⁹⁶⁾을 적용한다. 이 점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소년법 제4조 제2호)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독일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은 상대적(또는 제한적) 형사성년⁹⁷⁾으로 규율한다. 소년은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자가 될 수 있으나 소년법원법 제3조에 따라 행위 시에 도덕적·정신적 성숙⁹⁸⁾, 불법통찰능력 및 행위조정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이 점에서,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범죄소년)을 절대적 형사성년으로 보고 형법 또는 소년법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⁹⁹⁾

독일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청년’¹⁰⁰⁾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소년법원법을 적용한다. 법원이 환경적 조건을 포함하여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행위 시에 청년의 도덕적·정신적 성숙 정도가 소년과 동일하다고 보았거나(소년법원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범행의 유형, 상황, 동기를 감안할 때 소년비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동항 제2호)에는 일반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원법을 적용한다.¹⁰¹⁾

96) 사회법 제8권(Sozialgesetzbuch(SGB)–Achstes Buch(VIII)– Kinder- und Jugendhilfe)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97) 용어 관련해서는 Ostendorf(2007) Rn. 33 ff. 참고.
 98) 정신적 성숙 여부는 인지적 요소로 법과 불법을 이성적으로 구분하고 규범 간 관계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덕적 성숙 여부는 법과 불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자세한 내용은 김성은(2016) p. 35 참고).
 99) 우리나라에서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행위 시점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그 자의 행위는 임의적 형 감경 대상이다(형법 제10조 제2항). 독일 소년법원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달리 그 소년을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보는 것이다.
 100) 소년법원법 제105조 제3항은, 청년에 대한 소년형벌의 상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청년이 모살(독일 형법 제211조, 법정형: 무기자유형; 살해음,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해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해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을 범한 경우에는 최대 15년형을 부과할 수 있다.
 101) 청년의 범죄에 대해 일반형법이 아닌 소년형법(소년법원법)이 적용된 비율은 다음과 같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0: 18; Statistisches Bundesamt, 2022: 18에서 부분발췌; 소년형법 적용 비율은 필자가 추가함).

연도	소년형법 적용 건수	일반형법 적용 건수	소년형법 적용 비율
2016	32,108건	20,766건	60.72%
2017	31,189건	19,245건	61.84%
2018	30,273건	19,442건	60.89%
2019	30,785건	18,971건	61.87%
2020	26,743건	18,761건	58.77%
2021	25,140건	15,915건	61.23%

(2) 소년범죄 경향

독일 소년형법은 교육사상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에 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소년형법의 기본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1990년 중반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알브레히트(Albrecht)는 2002년 제64회 독일 법조인 대회에서 교육사상을 비판하며 소년형법도 행위책임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소년이 성인에 비해 더 가혹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진국, 2002: 41).

또한, 소년 또는 아동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소년법에 대한 엄벌과 소년형법 적용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일련의 소년 또는 아동범죄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소년형법 적용연령 인하 논의가 다시 촉발되기도 하였다. 2023년 2월 21일,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녀 4명이 13세 소녀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 소녀들은 피해 소녀의 코를 때리고 담뱃재와 콜라를 머리에 부었으며, 그 현장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다.¹⁰²⁾ 같은 해 3월 11일에는 12세 소녀가, 12세와 13세 소녀 두 명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였다.¹⁰³⁾¹⁰⁴⁾ 4월 4일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0세 소녀가 목에 외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고, 피의자 중 한 명이 룸메이트였던 11세 아동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¹⁰⁵⁾

102) 독일 Heide(하이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13세 아동을 제외한 14세 이상 소녀들에게 법원은 사회봉사 50시간을 명하고, 영상녹화를 통한 강요, 손괴, 인격권 침해, 위험한 신체상해를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그리고 반폭력 및 피해자 공감교육을 단체로 이수할 것을 명하였다.

Süddeutsche Zeitung (2023.6.6.). Vier Mädchen nach Überfall auf 13-Jährige verurteilt. <https://www.sueddeutsche.de/panorama/prozesse-heide-vier-maedchen-nach-ueberfall-auf-13-jaehrige-verurteilt-dpa.urn-newsml-dpa-com-20090101-230605-99-949854>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DELME REPORT (2023.4.9.). Jugendkriminalität nimmt zu. <https://weserreport.de/2023/04/umzu-regional/delmereport/delmenhorst/jugendkriminalitaet-nimmt-zu/>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103) 독일 프로이덴베르크(Freudenberg)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 Luise 이름을 따 Luise사건이라고 한다. Merkur (2023.10.9.). Fall Luise: Was Experten zur Art der Tötung sagen - und wie die 12-Jährige in der Heimat gesehen wurde. <http://www.merkur.de/deutschland/nordrhein-westfalen/messerstiche-getoetet-freudenberg-taeterinnen-uebertoetung-fall-luise-12-jaehrige-92223261.html>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104) 이 사건 수사당국은 가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SNS를 차단하고 범행동기와 배경에 관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조치에 대해, 가해 아동들이 이미 자백하였고 범행동기에 관한 정보는 가해자정보가 아니라 범죄정보인 바, 따라서 범행동기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ntv (2023.3.17.). Jurist kritisiert Infosperre im Fall Luise. <https://www.n-tv.de/panorama/Jurist-kritisiert-Infosperre-im-Fall-Luise-article23993754.html>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105) 독일 분지델(Wunsiedel)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해 아동은 발견 전날 11세 아동(룸메이트), 25세 성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이고, 11세 피의자 타액샘플이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고 한다.

위 사건들을 계기로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연방정부에 형사책임 연령 인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 장관은 신문 사실을 통해 형사책임 연령 인하는 냉정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14세 미만 아동의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지원법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¹⁰⁶⁾

2) 소년사건 관련 법령 및 제도

(1) 소년 사법절차

독일은 비행소년을 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JWG)과 소년법원법의 이원적 구조로 치우친다. 소년복지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와 원조 조치를, 소년법원법은 범죄 소년에 대한 형사 사법절차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죄를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관할), 소년형사사건(일반형사법원 관할)으로 규율하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검사가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소년형사사건 담당재판부가 소년범죄 전체를 처리한다는 차이가 있다. 범죄소년에 대한 제재조치로 소년형벌 외에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다. 다만 양 제재 중 어느 것을 부과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년법원이 결정한다.

소년사법 절차가 개시되면 그 사실이 소년사법 보호관에게 통지된다(소년법원법 제70조). 소년사법 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생활 및 가족관계, 발전과정, 과거 행실 등을 가능한 빨리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여(제43조 제1항), 피의자의 '인격'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양육권자, 법정대리인, 학교 및 직업훈련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야 한다.¹⁰⁷⁾ 그리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소년 피의자에 대해 심리학적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경찰이 소년사건을 송치하면 소년전담 검사는 해당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ntv (2023.4.7.). Tod von Zehnjähriger wirft Frage nach Strafmündigkeit neu auf. <https://www.n-tv.de/panorama/Tod-von-Zehnjaehriger-wirft-Frage-nach-Strafmuendigkeit-neu-auf-article24040322.html>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106) ntv (2023.4.7.). Tod von Zehnjähriger wirft Frage nach Strafmündigkeit neu auf. <https://www.n-tv.de/panorama/Tod-von-Zehnjaehriger-wirft-Frage-nach-Strafmuendigkeit-neu-auf-article24040322.html>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107) 만약 이 절차로 소년이 직업교육 기회나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원치 않은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직업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

불기소처분(형사소송법 제170조 제2항)을 하거나, 다이버전 절차를 거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년형별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에 검사 또는 소년법원 재판장이 피의자를 신문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원법 제44조). 소년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그에게 적합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년법원은 판결 확정 전까지 소년에게 임시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71조 제1항).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소년을 적절한 대안시설(Heim, 이하 하임)¹⁰⁸⁾에 일시적으로 수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임시교육명령이나 기타 조치로는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년을 미결구금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하임에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으로 재범방지에 충분하지 않고 미결구금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구속영장에 밝혀야 한다(제72조 제1항). 16세 미만의 소년을 도주의 위험을 이유로 미결구금하려면, 소년이 이미 절차를 회피하였거나 시설에서 도주하였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동조 제2항).

소년법원에 의한 공판절차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판절차와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소년법원의 공판 심리와 판결 선고는 공개되지 않는다(제48조 제1항). 다만 절차에 관련된 사람 외에 피해자, 양육권자, 법정대리인¹⁰⁹⁾, 보호관찰관, 교육보조자, 하임과 같은 소년 교육지원시설의 장은 참석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교육상 목적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소년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교육상 이유로 소년 피고인을 심리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제51조 제1항).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에 관해 심리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부과하게 된 사유, 소년의 인격적 특성(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특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다만 판결이유가 소년에게 알려질 시에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제2항).

간이화된 소년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제76조)도 있다. 법원이 지시만을 부과하거나, 사회법 제8권 제30조에 의한 교육 원조(소년법원법 제12조 제1호)만을 명하거나,

108) 소년청이 위탁 운영하는 대안시설로, 개인방, 작업장, 집단상담실, 목욕실, 식당, 체육실을 갖춘 일종의 주거공간이다. 사회복지사, 상담사, 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생활환경에 놓인 소년에게 상담, 교육, 치료프로그램, 심리·정서적 지원, 복지서비스, 생활지도, 학업·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하임에서 생활하는 인원은 8~10명 정도이고, 직원 4명이 근무한다고 한다(김웅수, 2018: 83, 88).

109) 일정 요건 하에 양육권자 및 법정대리인도 심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제51조 제2항).

징계처분만을 부과하거나, 운전을 금지시키거나,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최대 2년간 신규면허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검사는 이 절차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년법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년법관은 구두 심리에 기초하여 판결로 선고하고(제78조 제1항) 검사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제2항).

(2) 소년 사법기관

① 소년법원

소년법원(Jugendgerichte)에는 소년단독판사(Jugendrichter), 소년합의부(Jugendkammer), 소년참심법원(Jugendschöffengericht)이 있다(소년법원법 제33조 제2항).

소년단독판사는 교육처분, 징계처분, 부가형, 운전면허 박탈 처분이 예상되는 소년비행 사건을 관할하며(제39조 제1항), 최대 1년의 소년형벌을 선고할 수 있으나 정신병원 수용은 명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소년합의부는 배심법원(Schwurgericht) 관할에 속하는 중범죄(제41조 제1항 제1호)를 관할한다. 그리고 소년참심법원이 사건규모를 이유로 합의부로 회부한 사건을 인수한 경우(제2호), 소년에 대한 절차가 성인에 대한 절차와 병합되었는데 해당 성인에 대한 관할권이 대재판부(große Strafkammer)에 있는 경우(제3호), 검찰이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인 범죄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소년합의부에 기소한 경우(제4호), 피고인이 일정 범죄¹¹⁰⁾를 이유로 5년 이상의 소년형벌 또는 정신병원 수용이 예상되는 경우(제5호)에 관할권을 갖는다. 제1심 합의부는 직업법관 3인, 참심법관 2인(남성 1인, 여성 1인)으로 구성된다(조광국, 2013: 102-103).

소년참심법원은 다른 소년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소년비행을 관할하는데(제40조 제1항), 실무상으로는 중간 정도의 중범죄를 관할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법관 1인, 참심법관 2인(남성 1인, 여성 1인)으로 구성된다(조광국, 2013: 103).

② 소년청

소년청(Jugendamt)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 기관이다. 각 지방마다 설치되어 있고, 행정부서와 소년보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지

110) 소년법원법 제7조 제2항의 범죄(생명, 신체적 완전성 또는 성적 자기결정에 반하는 범죄, 형법 제251조(강도치사죄)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원법에 따라, 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제14조), 응급상황에 처한 소년부조(제20조), 집단 사회봉사활동(제29조), 교육부조(제30조), 사회교육적 가족지원(제31조), 주간 그룹 교육(제32조), 전일제 돌봄(제33조), 하임 내 교육(제34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사회 내 통합 지원(제35조)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년사법 보호관¹¹¹⁾

소년사법 보호관(Jugendgerichtshilfer)은 조직상 소년법원이나 법무부의 하위 기구가 아닌 독립 자문기구이다. 소년청 소속직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소년사법 보호관이 된다. 소년법원은 공판 개시 전부터 소년사법 보호관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임하여야 한다(소년법원법 제50조 제3항).

소년사법 보호관은 조사·감독 기능과 소년에 대한 후견·원호·교육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소년의 인격과 가족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성장 과정을 조사하고,¹¹²⁾ 해당 소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소년에게 어떠한 조치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소년법원에 표명한다(제38조 제2항). 지시¹¹³⁾, 의무부과 처분(아래 (4)-(2)-가, ③-나 참고)을 받은 소년에게 보호관찰관¹¹⁴⁾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이 해당 처분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소년사법 보호관이 감독하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면 위반사실을 소년법원에 통보한다. 그리고 소년사법 보호관은 형 집행 내내 소년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소년이 지역사회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돌본다(동조 제5항).

(3) 비공식적 절차종결 처분

공식적 절차종결은 소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이며,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절차종결 처분으로는 가해자-피해자 조정, 검사에 의한 절차종결(소년법원법 제 45조)를 포함한 다이버전¹¹⁵⁾, 법원에 의한 절차종결(제47조)이 있다.

111) 소년사법 보호관은 소송절차 또는 처분절차에 각각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절차 전반에 걸쳐 관여하므로 국내 제도상 일치하는 개념은 없는 상황이다.

112) 실무상 경미한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법무부, 2005: 106).

113) 소년법원은 지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사법 보호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소년법원법 제38조 제6항).

114) 보호관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소년사법 보호관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115) 2000년 이후 통계를 보면, 소추대상 소년범죄의 약 68-70% 이상이 다이버전으로 종결된다. 대부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이다(Heinz, 2014: 126).

① 가해자-피해자 조정

경찰 단계를 포함하여 소년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활용하는 비공식적 절차종결 수단이 다. 사과, 위자료 지급, 손해배상, 손해 제거를 위한 노동 등의 형태로 회복을 도모한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조정에 동의하여야만 가해자-피해자 조정이 진행된다.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절차 중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가해자-피해자 조정 절차는 범죄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추가 비행을 예방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② 검사에 의한 절차종결

형사소송법 제153조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즉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소년 사법절차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형사소추로 인한 공익이 없다면 검사는 '법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 중죄인 경우에도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데(동조 제2항), 교육적 효과가 있는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시되었고, 검사가 동조 제3항에 따른 법관의 개입도 공소제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이다. 가해자-피해자 조정을 위한 가해자의 노력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 조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또한, 소년이 자백하였으며, 검사가 공소 제기의 필요성은 없으나 지시 또는 의무부과 처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소년법관에게 해당 처분으로 소년을 훈계할 것을 제안하였을 때 소년법관이 이 제안에 동의한 경우에 검사는 해당 소년이 그러한 지시 또는 의무부담을 따를 때에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③ 법원에 의한 절차종결¹¹⁶⁾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소년법관이 비공식적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중간절차 및 공판절차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153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즉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소년사법 절차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형사소추로 인한 공익이 없는 경우(제1호),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상 교육적 효과가 있는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시된 경우(제2호), 법관이 판결에 의한 재판이 필요하지

116) 국내의 심리불개시 결정에 해당한다.

않다고 보고 자백한 소년에 대해 지시 또는 의무부와 처분한 경우(제3호), 소년이 미성숙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4호)에 소년법관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법관은 위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소년에게 최대 6월의 기간을 정해줄 수 있다. 소년이 지시, 의무부담, 교육적 효과가 있는 조치를 따르면 소년법관은 절차를 종결한다.

(4) 보호처분

소년법원법에 따른 제재수단으로는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 징계처분(Zuchtmittel), 소년형벌(Jugendstrafe)이 있다.¹¹⁷⁾ 보호처분의 성격이 강한 교육처분과 달리, 징계처분과 소년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을 위한 제재(Laue, 2022: § 5, Rn. 13)이기 때문에 징계처분도 형벌적 내용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식적 분류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형벌은 아니며, 소년형벌만이 진정한 의미의 형벌에 해당한다. 소년법원법 제13조 제3항도 징계처분은 형벌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살펴볼 때 교육처분과 징계처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교육처분

교육처분은 범죄소년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의 처분과는 거리가 있다(Laue, 2022: § 5, Rn. 13).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육처분은 소년의 범죄를 전제로 부과되기 때문에(소년법원법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복지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지원법상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¹¹⁸⁾

교육처분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떤 교육처분을 부과할 것인지는 소년법관이 정한다. 독일은 교육처분 우선주의로 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처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처분을 명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징계처분 또는 소년형벌을 선고한다.¹¹⁹⁾ 교육처분으로 충분한지는 범죄소년의 교육 결핍의 성격과 정도를 살펴

117) 이 외에도 부수처분, 보안처분(정신병원 수용(형법 제63조), 중독치료기관 수용(소년법원법 제93조a, 형법 제64조), 행장감독(형법 제68조), 운전면허박탈(형법 제69조)이 있다.

118) 교육처분은 범죄를 전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과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임승차와 같이 경미한 범죄를 처음으로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제5호(‘원호자의 원호 및 감독에 복종할 것’) 지시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Laue (2022). MüKo-StGB/JGG. § 5, Rn. 17).

119) 다만 소년법관은 교육처분이 교육적으로 충분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년의 행위책임이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¹²⁰⁾, 그러한 교육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처분을 명하게 된다. 소년법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처분에는 지시(Weisungen), 교육 원조(Hilfe zur Erziehung)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시

지시는 범죄소년의 생활 태도를 규율하여 교육을 촉진하고자 부과하는 명령 또는 금지 조치이다. 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은 거주지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제1호),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 또는 하임에 거주하면서 보호 및 감독을 받을 것(제2호), 일정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에 종사할 것(제3호), 노동급부를 이행할 것(제4호), 원호자의 원호 및 감독에 복종할 것(제5호), 사회화 훈련과정에 참여할 것(제6호), 가해자-피해자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제7호), 특정 인물과 교제하지 말 것, 식당 또는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제8호),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할 것(제9호)을 지시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다. 소년법원은 해당 조항의 예시 이외의 사항도 지시할 수 있다.

나. 교육 원조

교육 원조는 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였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거나, 정상적인 성장이 침해되었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법무부, 2005: 109). 교육 원조를 위하여 교육보조자(Erziehungsbeistand)를 선임하고 사회법 제8권 제30조에 따른 교육 원조(소년법원법 제12조 제1호), 하임 내 교육 원조(동조 제2호)를 실시한다.

② 징계처분

징계처분은 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교육처분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법무부, 2005: 109). 소년법원법 제13조 제2항의 징계처분으로는 경고(Verwarnung), 의무부과(Erteilung von Auflagen), 소년구

확신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Laue (2022), MüKo-StGB/JGG. § 5, Rn. 18).
120) 특히 명하고자 하는 교육처분이 확인된 교육 결핍(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향후 범죄위험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교육처분의 기대되는 모든 효과 외에도 소년의 개인적·사회적 환경, 범죄 상황, 범죄 후 전개 상황, 형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Laue (2022), MüKo-StGB/JGG. § 5, Rn. 15 f.).

금(Jugendarrest)이 있으며, 각 징계처분은 병과 가능하다. 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의 교육처분 우선주의는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상 필요성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교육처분이 징계처분에 비해 항상 경미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교육처분인 하임 입소 또는 하임 내 교육은 징계처분인 경고에 비해 소년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aue, 2022: § 5, Rn. 20 f.).

가. 경고

경고는 소년법원법 제14조에 따라 소년 범행의 불법을 효과적으로 질책하기 위해 부과하는 처분이다.

나. 의무부과

소년법관은 소년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제1호),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것(제2호), 사회 기관에서 노동급부 할 것(제3호), 공익단체에 기부할 것(제4호)과 같은 의무를 범죄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 소년구금

소년법관은 소년법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휴일구금(Freizeitarrrest), 단기구금(Kurzarrest), 장기구금(Dauerarrest) 형태로 소년구금을 명할 수 있다. 휴일구금은 자유 시간(근로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 주 근로시간이 시작할 때까지의 주말)에 구금하는 형태이며, 최장 2단위의 자유시간(1단위는 47시간)¹²¹⁾동안 구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단기 구금은 교육상 연속적으로 구금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합목적으로 보이고 그 집행으로 직업훈련이나 업무가 방해받지 않는 경우 명할 수 있으며, 최장 4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동조 제3항).¹²²⁾ 장기구금은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간 이뤄지는 구금이다(동조 제4항).

121) Jugendarrestanstalt Verden. Formen des Jugendarrestes. https://www.jaa-verden.niedersachsen.de/startseite/informationen_fur_arrestierte_und_angehorige/formen_des_jugendarrestes/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122) Jugendarrestanstalt Verden. Formen des Jugendarrestes. https://www.jaa-verden.niedersachsen.de/startseite/informationen_fur_arrestierte_und_angehorige/formen_des_jugendarrestes/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5) 소년형벌

소년형벌은 소년교도소(Justizvollzugsanstalt)에 범죄소년을 감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이다(소년법원법 제17조 제1항). 소년의 유해한 성향이 실제로 나타나 교육처분이 나 징계처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한 책임을 이유로 하여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소년형벌이 선고된다(제17조 제2항). 보호처분과 달리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하지만 소년형벌에서도 교육사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제18조 제2항). 소년법원법 제27조는 소년법원이 소년형벌을 선고하기 전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6)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

시설 내 처우는 개별 주 법무부 산하 집행국이 담당한다. 앞서 살펴본 임시교육명령(제71조 제2항), 미결구금(제72조), 교육처분 중 하임 내 교육 원조(제12조 제2호), 징계처분 중 소년구금(제16조), 소년형벌(제17조)이 시설 내 처우에 해당한다. 그 외의 시설 내 처우로는 보안처분(제7조; 중독치료기관 수용(제93조a, 형법 제64조), 정신병원 수용(형법 제63조))이 있다. 독일은 시설 내 처우(특히 소년구금과 소년형벌)를 받은 소년의 재범률이 70%를 상회하자(조광국, 2013: 116), 시설 내 처우로 인한 낙인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시설 내 처우를 지양하고 있다. 또한, 보충성원칙과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다이버전, 가해자-피해자 조정과 같은 비공식적 절차종결을 우선한다.

사회 내 처우(제9조, 제12조 제1호, 제14조, 제15조)는 소년청이 담당한다. 사회 내 처우 중에서도 원호적 제재를 억압적 제재보다 우선하여 택하고 있고, 교육과 처벌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하고 소년에게 부담이 가장 경미한 처분을 택할 것이 요구된다(Laue, 2022: § 5, Rn. 21). 사회 내 처우로 충분하지 않으면 비로소 시설 내 처우를 검토하는데, 시설 내 처우도 소년에게 가장 경미한 부담을 주는 처분을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청소년사법지원협회(Deutsche Vereinigung für Jugendgerichte und Jugendgerichtshilfen e.V., DVJJ)¹²³⁾는 2002년에 휴일구금, 단기구금을 폐지하고 장기구금은 최대 2주까지만 할 수 있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123) 독일청소년사법지원협회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여하는 모든 직업군 내 전문가들의 학제 간 협력을 촉진하고, 형사정책적이고 실무관련된 독립자문기관의 역할을 한다. 약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년마다 독일 소년사법대회(Deutscher Jugendgerichtstag)를 개최한다(DVJJ. Wir über uns. <https://www.dvjj.de/die-dvjj/#wir>에서 2023년 8월 28일 인출.).

3) 청소년 범죄 실태 및 현황

(1) 청소년범죄 추이 및 특성

① 전체범죄 대상 통계

표 V-3을 살펴보면 최근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소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유죄 선고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소년 인구 10만 명당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수는 표 V-4와 같다.

표 V-3. 소년, 청년, 성인별 유죄선고 수(2016~2021)

연도	총계	소년	청년	성인
2016	737,873	29,620	52,874	655,379
2017	716,044	28,479	50,434	637,131
2018	712,338	29,005	49,715	633,618
2019	728,868	28,299	49,756	650,813
2020	699,269	24,732	45,504	629,033
2021	662,100	21,463	41,055	599,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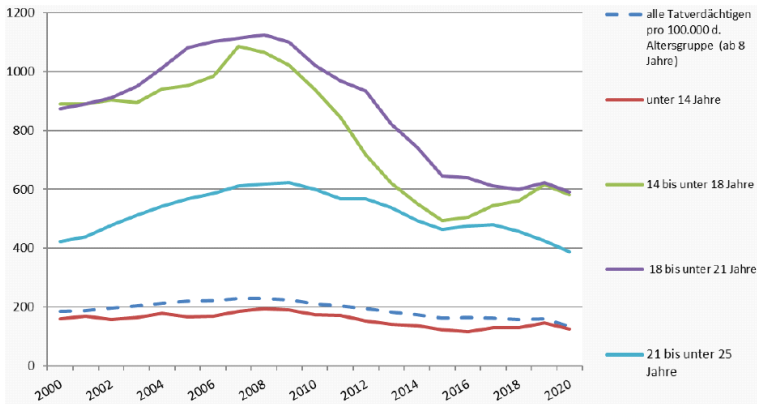
*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2020).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18. p. 16;
Statistisches Bundesamt(2022).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21. p. 16.

표 V-4. 소년, 청년, 성인별 인구 10만 명당 유죄 선고받은 사람 수(2016~2021)

연도	전체	소년	청년	성인
2016	788	803	1,669	754
2017	754	774	1,570	722
2018	736	799	1,512	704
2019	743	801	1,521	711
2020	711	712	1,444	684
2021	670	627	1,362	646

*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2020).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18. p. 18;
Statistisches Bundesamt(2022).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21. p. 17.

최근 소년에 대한 유죄선고의 절대적 수뿐만 아니라 소년 인구 10만 명당 유죄를 선고받은 소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물론 청년, 성인에 대한 유죄선고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소년에 대한 유죄선고 감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년 사법절차를 공식적 절차종결보다는 다이버전, 가해자-피해자 조정과 같은 비공식적 절차종결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죄선고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출처: Arbeitsstelle Kinder- und Jugendkriminalitätsprävention(2021). Zahlen - Daten - Fakten Jugendgewalt. p. 13: 연방범죄수사청이 발간한 경찰범죄통계 자료를 토대로 만든 그래프임.

그림 V-17. 아동, 소년, 청년, 성인별 인구 10만 명당 피의자 수(2000~2020)

그림 V-17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아동, 소년, 청년, 성인별로 인구 10만 명당 전체범죄 피의자 수를 보여준다. 대략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모든 그룹에서 인구 10만 명당 범죄 피의자 수가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년 그룹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피의자 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인구 10만 명당 범죄 피의자 수가 가장 적은 그룹은 8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다음으로는 21세 이상 25세 미만의 성인,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 순이었다. 표 V-5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22년 전체범죄 피의자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아동이 전체 피의자 중 약 4.44%, 소년이 9.03%, 청년이 7.68%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집단별로 연령범위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표 V-5. 연령별 전체범죄 피의자 수(2022년)

(단위 : 명(%))

총계	2,093,782(100%)		
아동	93,095(4.44%)	6세 미만	4,283(0.2%)
		6 ~ 8세	4,109(0.19%)
		8 ~ 10세	8,600(0.41%)
		10 ~ 12세	21,559(1.02%)
		12 ~ 14세	54,544(2.6%)
소년	189,149(9.03%)	14 ~ 16세	91,087(4.35%)
		16 ~ 18세	98,062(4.68%)
청년	160,998(7.68%)	18 ~ 21세	160,998(7.68%)
성인	1,650,540(78.83%)	21 ~ 23세	113,115(5.4%)
		23 ~ 25세	108,216(5.16%)
		25세 이상	1,429,209(68.25%)

* 출처: Bundeskriminalamt. PKS 2022 Bund - Tatverdächtige insgesamt.
<https://www.bka.de/DE/AktuelleInformationen/StatistikenLagebilder/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2022/PKSTabellen/BundTV/bundTV.html?nn=211742>에서 부분발췌; 괄호 안 비율은 필자가 추가함.

② 주요 범죄유형별 통계

표 V-6에 제시된 2021년 주요 범죄유형별 소년 재판 및 유죄선고 수를 살펴보면, 독일에서 소년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는 폭행·상해죄, 절도죄, 마약범죄, 강도죄이며, 소년 중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소년에 비해 유죄선고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6. 주요 범죄유형별 소년 재판 및 유죄선고 수(2021년)

범죄유형	재판	유죄선고	
생명에 대한 죄 (형법 제211조 내지 제222조)	24	20	14-16세 7
			16-18세 13
신체 완결성에 반하는 죄 (형법 제223조 내지 제231조)	8,344	4,495	14-16세 1,841
			16-18세 2,654

범죄유형	재판	유죄선고		
성적 자기결정에 반하는 죄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4조)	1,682	917	14-16세	395
			16-18세	522
모욕 (제185조 내지 제200조)	1,350	671	14-16세	208
			16-18세	463
자유에 반하는 죄 (형법 제232조 내지 제241조a)	687	296	14-16세	113
			16-18세	183
절도죄 (형법 제242조)	7,052	3,344	14-16세	1,439
			16-18세	1,905
(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243조 제1항 제2문 제1호, 제244조 제1항 제3호)	1,118	719	14-16세	294
			16-18세	425
강도, 공갈, 운전자에 대한 공격 (형법 제249조 내지 제255조, 제316조a)	2,098	1,524	14-16세	612
			16-18세	912
사기 (형법 제263조)	1,147	610	14-16세	172
			16-18세	438
교통범죄	2,341	1,166	14-16세	284
			16-18세	882
마약범죄	5,537	3,074	14-16세	685
			16-18세	2,389

*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2022).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21. p. 24.

(2) 소년보호처분 현황

① 교육처분 현황

2021년 교육처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처분의 99.44%가 지시이며(표 V-7), 이 비율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5년에도 교육처분을 받은 소년 중 99.11%, 교육처분을 받은 청년 중 99.51%가 지시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도 교육처분을 받은 소년 중 99.35%, 교육처분을 받은 청년 중 99.58%가 지시 처분을 받았다(Eisenberg & Kölbel, 2023: § 9, Rn. 5).

표 V-7. 교육처분 부과현황(2021년)

전체 ¹²⁴⁾	지시	교육 지원	하임 내 교육
22,337(100%)	22,213(99.44%)	100(0.44%)	24(0.1%)

*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2022).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21. p. 335; 괄호 안 비율은 필자가 추가함.

② 징계처분 현황

징계처분으로는 의무부과(57.47%)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주로 사회봉사, 공익단체 기부 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V-8). 징계처분 중 경고는 27.95%, 소년구금은 14.56%였으며, 소년구금 중에서는 장기구금, 휴일구금이 주로 활용되었다.

표 V-8. 징계처분 부과현황(2021년)

전체	44,032		
소년구금	6,415	장기구금	3,333
		단기구금	338
		휴일구금	2,229
		소년구금(소년법원법 제16조a)	515
의무부과	25,309	손해배상	1,285
		공익단체 기부	10,030
		피해자에 대한 사과	188
		사회봉사	13,699
		사회봉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107
경고	12,308		

*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2022).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21. pp. 334-335 부분발췌.

(3) 소년교도소 현황

① 개관

독일은 소년교도소(Justizvollzugsanstalt)¹²⁵⁾ 외에 소년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124) 유죄 선고받은 소년 중 40.97%(2015년), 48.57%(2020년), 유죄 선고받은 청년 중 33.69%(2015년), 41.72%(2020년)가 최소 하나의 교육처분을 받았다(Eisenberg & Kölbl, 2023: § 9, Rn. 5).

125) 소년형 집행기관 공식명칭은 'Justizvollzugsanstalt'이다. 니더작센 주는 Jugendanstalt(소년시설), 라인란트

며, 구금처분도 소년교도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년교도소에서도 우리나라 소년원과 유사하게 소년의 책임의식 제고와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정재준, 2002: 98-99). 소년형벌 집행 방식으로는 폐쇄형, 개방형, 제3의 자유형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폐쇄형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한다. 주로 재범을 저지른 자, 도망의 위험이 있는 자를 이곳에 수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소년을 성인(일반) 교도소 내에 분리 수용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일반교도소 내에 분리 수용하는 소년의 인원이 전체 수용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운영한다(Walkenhorst, 2010: 23). 외관이 일반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폐쇄형 소년교도소와 달리 개방형 소년교도소에는 외벽, 창살, 특수보안 문과 같은 감금장치가 없으며 수형자를 지속적·직접적으로 감독하지도 않는다. 주로 초범을 수용하는 개방형 소년교도소의 수형자는 아침에 교도소에서 나와 일과 후 저녁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제3의 자유형태는 교도소가 아닌 소년지원시설에서 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소년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조치이다(Walkenhorst, 2010: 23).

소년형벌은 각 주(州)별로 소년형집행법률(Jugendstrafvollzugsgesetz)에 따라 집행한다. 2006년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년형 집행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소년교도소 운영은 주 정부 관찰사항임을 확인하였다(BVerfG, 31.05.2006 - 2 BvR 1673/04, 2 BvR 2402/04). 이 결정 이후 각 주는 소년형집행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독일청소년사법지원협회(DVJJ)는 소년형 집행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1) 소년형집행법률을 별도로 마련할 것, 2) 형 집행 목적을 재사회화에 둘 것, 3) 수형자에게 광범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 4)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할 것, 5) 재사회화를 위해 수형자에게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지 말 것¹²⁶⁾, 6) 소년청은 형 집행 개시부터 종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7) 형 집행을 위해 법무부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사법보호관, 정신과 의사,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협업할 것, 8) 기회를 모든 수형자에게 부여할 것, 9) 재사회화를 위해 사회 내 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0) 귀휴, 가석방, 외출을 활용하여 형 집행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형 집행 형태를 활용할 것, 11) 적시에 석방준비를 시작할 것, 12) 모든 수형자에게 개인공간에 수용될 수 있는

팔츠 주는 Jugendstrafanstalt(소년형시설)라는 명칭을 사용한다(Walkenhorst, 2010: 23).

126) 수형자에게 재사회화에 참여하라는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내용 면에서 너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권리를 보장하고, 12명을 넘지 않는 사람들과 주거그룹을 구성할 것, 13) 성인범과 분리 수용할 것, 소년교도소를 별도로 만들 것, 소년교도소는 최대 240명의 수형자를 기준으로 만들되 장기적으로는 더 작은 규모로 만들 것, 14) 여성과 소녀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할 것, 15) 편지, 전화를 통해 외부와 연락이 가능하게 할 것, 가족과의 접촉을 장려하고 징계를 이유로 제한하지 말 것, 16) 교육권을 보장할 것, 17) 사회보장체계와의 연결을 보장할 것, 18) 징계보다는 (수형자 간, 그리고 교도소 직원과의)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 19) 형 집행 중 충기를 사용하지 말 것, 20) 권리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 21) 수형자들의 소원을 처리하는 형 집행담당관(Strafvollzugsbeauftragte)을 둘 것, 22) 교도소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평가할 것, 23) 소년교도소 내에 자격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둘 것을 요구한 바 있다(DVJJ, 2007: 4-6).

② 소년교도소 수

2022년 기준 독일에는 172개의 소년교도소가 있다. 각 주별 소년교도소 수는 표 V-9와 같다.

표 V-9. 주(州)별 소년교도소 수(2022년 기준)

주(州)	소년교도소 수	주(州)	소년교도소 수
바이에른	34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6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33	함부르크	5
바덴 뷔르템베르크	18	브란덴부르크	5
헤센	16	튀링엔	5
니더작센	13	작센 안할트	4
작센	10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4
라인란트 팔츠	9	자를란트	2
베를린	7	브레멘	1

* 출처: statista. Anzahl der Justizvollzugsanstalten in Deutschland nach Bundesländern im Jahr 2023.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993902/umfrage/anzahl-der-justizvollzugsanstalten-in-deutschland/#:~:text=Insgesamt%20wurden%20im%20Jahr%202022,33%20Gef%C3%A4ngnissen%20die%20meisten%20Justizvollzugsanstalten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③ 소년교도소 내 수형자 수

2022년 3월 31일 기준 각 주별 소년교도소(폐쇄형+개방형) 내 수형자 수는 표 V-10과 같다. 제시한 주의 순서는 표 V-9와 동일하게 소년교도소 수가 많은 주의 순서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표 V-10. 주(州)별 소년교도소 내 수형자 인원수(2022년 기준)

주(州)	인원수	주(州)	인원수
바이에른	373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60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737	함부르크	37
바덴 뷔르템베르크	307	브란덴부르크	55
헤센	213	튀링겐	75
니더작센	258	작센 안할트	104
작센	132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73
라인란트 팔츠	155	자를란트	43
베를린	131	브레멘	7

* 출처: statista. Anzahl der Strafgefangenen im Jugendstrafvollzug in Deutschland nach Bundesländern am 31. März 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37477/umfrage/gefangene-im-jugendstrafvollzug-in-deutschland/>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④ 소년교도소 직원현황

소년교도소 운영에는 교도소장, 교정공무원, 교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성직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교육 결핍을 가지고 있는 소년법¹²⁷⁾의 특성상 소년교도소 운영에서 소년들을 교육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소년교도소에서 교사는 일반·직업학교 수업, 실업학교·중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위한 수업, 문맹자 및 학습 장애자를 위한 수업을 하며, 그 외에도 문화·여가활동을 조직하고 교도소 도서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교육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는 처우조사, 집행계획 수립·실행·수정, 수형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추가교육, 사회적 치료 처우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교도소 집행직원의 직업훈련 및 추가교육에도 참여한다. 특히 심리학자는 귀휴, 이감, 조기 석방 등 수감기간 완화 여부를 결정할 때 소년들을 진단하고 위기 개입(분노한 수형자

127) 바이에른 주에서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년 수형자 중 약 60%만이 학교를 졸업했고, 약 6%만이 직업훈련을 이수했다고 한다(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2022b: 44).

진정시키기, 자살 방지, 행동 장애에 대한 치료적 지원)을 수행하며 직업(재)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지원·치료에 대한 연구에도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수감기간 완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직자는 수형자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수형자와 가족 구성원 간 연락을 중재하며, 인도적인 형 집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의사는 식품 및 위생 상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수형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도 형 집행에 참여하여 수형자들의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일반교육·직업교육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수형자들의 사회적 접촉을 지원하며 석방 준비를 돕는다(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2022a: 45).

독일 내 전체 소년교도소 직원의 현황은 집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주 법무부에서는 직원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바이에른 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에른 주에는 라우펜-레베나우(Laufen-Lebenau) 교도소, 에브라흐(Ebrach) 교도소, 노이부르크-헤렌뷔르트(Neuburg-Herrenwörth) 교도소 총 3개의 소년교도소가 있다. 저연령 소년은 라우펜-레베나우 소년교도소에, 전과가 있거나 중한 형을 선고받은 17세 이상의 소년 및 청년과 21세 이상의 성인은 에브라흐 소년교도소에, 그 외의 자는 노이부르크-헤렌뷔르트 소년교도소에 수용한다(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2022b: 39, 42).¹²⁸⁾ 여성은 일반교도소인 아이차흐(Aichach) 교도소 내에 분리 수용한다. 바이에른 주는 소년구금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6개 지역¹²⁹⁾에 별도의 구금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 192명(그 중 여성은 24명)을 구금할 수 있다(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2022b: 45). 바이에른 주 내 소년교도소에는 2022년 3월 31일 기준 심리학자 19명, 교사 15명, 사회복지사 29명, 기능장 75명 등 약 5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2022b: 44). 3개 소년교도소 중 한 곳인 노이부르크-헤렌뷔르트 소년교도소 직원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8) 17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나 형량과 무관하게 라우펜-레베나우(Laufen-Lebenau)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데, 14세, 15세 소년은 교도소 내 특별구역에서 별도의 관리를 받는다.

129) 호프(Hof), 란다우 안 데어 이저(Landau a.d.Isar), 란츠후트(Landshut), 뮌헨(München), 뉘른베르크(Nürnberg), 뷔르츠부르크(Würzburg).

표 V-11. 노이부르크-헤렌뮐트(Neuburg-Herrenwörth) 소년교도소 직원현황(2020년 기준)

시설 업무	행정관리 업무	일반 집행 업무	제작 업무	간호 업무
2	13	91 (변호사 10 포함)	19 (변호사 1 포함)	4
전문 업무				
의사	성직자	교사	심리학자	사회교육자
0 (객원의사로 운영)	2	5	9	9

* 출처: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Justizvollzugsanstalt Neuburg-Herrenwörth - Kurzübersicht (Stand 31.12.2020). https://www.justiz.bayern.de/media/pdf/neuburg-herrenwoerth_2020.pdf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p. 5.

(4) 아동·청소년지원시설 현황

① 개관

아동·청소년지원시설은 치료가 필요하거나 원 가족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 안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종일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돌보거나 숙박을 제공하여 이들에게 긍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복지시설이다. 소년청과 연계된 공공시설 외에 민간 후원에 의한 시설(재단, 협회, 종교단체 등)도 있다.¹³⁰⁾ 교육처분(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호, 위 2)-(4)-나 참고)과 일시 교육명령으로서 일시수용(제71조 제2항)을 위한 장소인 하임도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중 하나이다. 교육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기능과 유사하다.

②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수

2020년 12월 31일 기준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수는 총 38,785개이며, 각 주별 시설 수는 표 V-12와 같다.

¹³⁰⁾ Titus & Jack GmbH. Jugendhilfeeinrichtungen.
<https://www.jugendhilfe.com/jugendhilfeeinrichtung/>에서 2023년 8월 30일 인출.

표 V-12. 주(州)별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수(2020년 기준)

주(州)	시설 수	주(州)	시설 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6,715	라인란트 팔츠	1,517
바덴 뷔르템베르크	5,811	작센 안할트	1,414
니더작센	4,842	튀링겐	1,398
바이에른	4,168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1,152
헤센	2,622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1,104
작센	2,427	함부르크	621
브란덴부르크	2,221	브레멘	417
베를린	1,948	자를란트	408

* 출처: statista. Anzahl der Einrich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im Jahr 2020 (31. Dezember) nach Bundesländern.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175211/umfrage/einrichtungen-der-kinder-und-jugendhilfe-nach-bundeslaendern/>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③ 아동·청소년지원시설 내 인원수

2020년 12월 31일 기준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시설 내 인원수는 총 291,297명이며, 각 주별 인원수는 표 V-13과 같다. 제시한 주의 순서는 표 V-12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수가 많은 주의 순서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표 V-13. 주(州)별 아동·청소년지원시설 내 인원수(2020년 기준)

주(州)	인원수	주(州)	인원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63,201	브란덴부르크	10,515
바이에른	42,128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9,830
바덴뷔르템베르크	32,397	작센 안할트	8,342
니더작센	31,259	튀링겐	7,319
헤센	23,264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5,501
베를린	16,142	함부르크	5,381
라인란트팔츠	14,537	브레멘	3,999
작센	14,105	자를란트	3,377

* 출처: statista. Anzahl der tätigen Personen in Einrich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im Jahr 2020 (31. Dezember) nach Bundesländern.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175221/umfrage/taetige-personen-in-der-kinder-und-jugendhilfe-nach-bundeslaendern/>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4) 소결

독일의 소년범죄 관련 제도와 그 운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년청의 기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년청은 사회교육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복지를 총괄적으로 책임진다. 부모, 민간 복지기관과 함께 3면 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보육 및 양육을 지원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김영미, 2018: 63-64). 우리나라도 공적 기관이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독일과 유사하지만, 공적 기관의 역할 및 권한 강화 측면에서 독일 소년청의 구조와 기능을 참고할 만하다. 소년청과 같은 아동·청소년 복지 총괄기구를 두는 것은 아동·청소년 복지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소년청 소속 직원은 소년법원법상 소년사법보호관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소년을 조사·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절차 전 과정에 걸쳐 소년에 대한 후견·원호·교육지원을 수행한다. 형 집행 중에는 물론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소년을 지속적으로 원호하여 소년의 지역사회 재통합을 돕는다. 소년청과 같은 전문 전담기구는 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소년범죄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도 최근 발생한 소년 또는 아동 흉악범죄를 계기로 소년법 엄벌 및 소년형법 적용 연령 인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독일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 소년법원법 개정은 대부분 형벌강화가 아니라 소년사건처리 절차 중 소년법 보호제도 마련 내지 개선을 위해 이뤄졌으며, 특히 독일은 범죄소년을 제재할 때 보충성원칙, 비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공식적 절차종결처분(다이버전, 가해자-피해자 조정) → 사회 내 처우(원호적 제재 → 억압적 제재) → 시설 내 처우로 단계화하여 소년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경미한 처분을 부과한다. 특히,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결구금하기에 앞서 임시교육명령을 활용하고, 소년형벌을 선고하기 전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선고를 유예한다.

독일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일정 요건 하에 청년에게도 소년형법을 적용한다. 소년에 비해 청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그림 V-17 참고), 사회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특성을 갖추는 사회적 성숙은 25세까지 지속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성과 생활태도가 성숙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진국, 2002:

45). 독일은 이 점을 감안하여 환경적 조건을 포함하여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 시에 청년의 도덕적·정신적 성숙 정도가 소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나, 범행의 유형, 상황, 동기를 감안할 때 소년비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형법이 아니라 소년형법을 적용한다. 독일사회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21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소년형법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19세 이상 21세 미만인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범죄통계와 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소년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범죄 양상과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독일로 이민 온 소년의 범죄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¹³¹⁾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출신 소년범들이 언어 문제로 사회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소년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이주 외국인 가정의 아동·소년에 대해 언어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아동·소년에 대해서는 재사회화를 위해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 일본

1) 개관

(1) 연령 기준

일본 형법 제41조는 14세 미만자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소년법은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특칙을 마련하고 일정 연령대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처분 등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즉 소년법은 형사책임능력이 긍정되는 소년에 대하여 형벌 대체적 개입을 우선하거나 형벌을 완화하는 한편, 반대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되거나 성인이라면 별도로 문제 삼지 않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 내지 통제의 망을 확장하고 있다. 형법과 별도로 소년법이 일정 연령층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약화하거나 개입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이유는 가변성이 풍부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131) 연방범죄수사청장은, 어린 나이에 전쟁지역에서 폭력을 경험한 많은 아동·소년들이 이민 온 것, 이민 가정이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범죄율 증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ntv, 2023.4.7.).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소년법 제1조).

소년법은 소년을 20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소년을 연령 및 행위 태양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통상 이들 소년을 비행소년으로 부르고 있다. 먼저,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20세 미만자를 말하며,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대략 10세 정도를 사실상의 하한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범소년은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경우, ③ 범죄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저속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죄를 범하거나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21년 개정 소년법은 18세와 19세 미만의 소년을 새로이 특정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상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도 일부 특례조치의 적용이 배제되는 별도의 연령층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따라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 기준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8세 미만의 우범소년, 18세 및 19세의 특정소년(범죄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³²⁾

(2) 주요 소년사건과 소년법의 개정사항

1948년 제정된 소년법은 제정 이후 약 50년 동안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으나, 200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개정은 소년이 저지른 주요 사건 또는 개별 법령의 연령 기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인데, 대체로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의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0년 개정, 2007년 개정, 2008년 개정, 2014년 개정, 2021년 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32) 소년법은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범죄소년의 연령은 14세 이상 20세 미만, 우범소년의 연령은 20세 미만이다. 다만, 소년법은 18세 및 19세의 소년에 대하여 특정소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의 경우 우범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소년으로 볼 수 있는 연령은 결국 18세 미만이 된다. 또한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여러 특칙이 적용되는 특정소년 개념을 염두에 두면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불려지기도 있으나, 특정소년은 어디까지나 범죄소년 중 일부 연령층에 해당하는 소년에 불과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특정소년은 소년심판의 대상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과 동렬에 놓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4가지 소년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2000년 개정 당시에는 원래 소년심판에서 부인(否認)사건의 사실인정을 적정화하는 데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¹³³⁾ 당시 소카(草加)사건¹³⁴⁾, 초후(調布)역전사건¹³⁵⁾, 아마가타(山形) 매트 사망사건¹³⁶⁾ 등 다수의 소년이 중대사건을 저지른 후 소년심판에서 비행사실의 인정이 문제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고베(神戸) 아동살상사건¹³⁷⁾, 사가(佐賀) 버스타취사건¹³⁸⁾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에 대한 엄벌론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것이 소년법 개정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루어진 2000년 개정에서는 ① 소년사건에서의 처분 등의 근본적 재검토, ② 소년심판의 사실인정 절차의 적정화, ③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배려가 주요 내용으로 담기게 되었다(川出敏裕, 2016: 368). ①의 경우 형사처분을 위한 검찰관¹³⁹⁾에의 송치, 즉 역송가능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인하하고, 원칙역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의 경우 소년심판의 재정합의제도 도입, 검찰관 및 변호사인 보조인의 심리 관여제도 도입, 관호조치¹⁴⁰⁾기간의 연장, 검찰관에 의한 항고 수리 신청제도의 도입, 보호처분 종료 후의 구제절차의 정비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③의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심판결과 등의 통지, 피해자 등의 심판기록의 열람·등사,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개정 역시 소년의 중대사건, 그중에서도 촉법소년이 저지른 중대사건(나가사키 사건¹⁴¹⁾, 사세보 사건¹⁴²⁾)을 계기로 촉발된 것이었다. 2007년 개정은 ① 촉법사건 조사에

133) 廣瀬健二 (1997). 少年審判における非行事実認定手続, 荒木伸怡(編), 非行事実の認定. p. 211./浜井 一夫, 廣瀬 謙二, 浪床 昌則, 河原 俊也 (1997). 少年事件の処理に関する実務上の諸問題—否認事件を中心として. p. 301.

134) 13세에서 15세의 소년 6명이 여중생을 강간한 후 살해한 사건이다.

135) 소년 7명이 피해자 5명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그중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소년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으로, 소년 중 6명이 부인하여 비행사실의 인정이 첨예하게 문제되었다(裁判所. 最判平成9・9・18刑集51卷8号571頁.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184/050184_hanrei.pdf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136) 아마가타 시내의 중학생 7명이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을 상해·감금치사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체육용구 보관창고 안의 체육용 매트 안에서 거꾸로 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이다.

137) 1997년 고베에 살고 있던 14세의 중학생이 같은 해 2월경 초등학교 여아 2명의 머리를 해머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약 1달 후 다른 초등학교 여아의 머리를 망치로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뒤 곧바로 다른 초등학교 여아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으며, 그 후 약 2개월 후 초등학교 남이를 살해한 후 머리를 질라 중학교 정문 앞에 방치한 사건이다.

138) 2000년 5월경 17세 소년이 승무원과 승객 22명이 탄 고속버스를 탈취한 다음, 여성 3명을 도축용 칼로 찔러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139) 우리의 검사에 해당한다.

140) 우리의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해당한다.

141) 2003년 7월 나가사키(長崎)에서 당시 12세였던 중학생 소년이 4세의 남아를 주차장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142) 2004년 6월 사세보(佐世保)에서 당시 11세였던 초등학교 소녀가 동급생을 커터칼로 살해한 사건이다.

관한 규정의 정비, ② 14세 미만 소년의 소년원 송치의 승인, ③ 보호관찰 중인 자에 대한 새로운 조치의 창설, ④ 국선부첨인¹⁴³⁾(付添人)제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한다(川出敏裕, 2016: 371). 특히 ①에는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사 권한 명문화, 경찰의 압수·수색·검증, 감정처분의 권한 인정,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부첨인 선임권 부여, 중대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제도 도입 등 아동복지기관 선의 원칙의 일부 수정 등이 포함되었다.

2008년 개정은 피해자 등의 소년심판 방청 제도의 도입, 가정재판소가 피해자 등에게 심판상황을 설명하는 제도의 창설, 피해자 등의 기록 열람 및 등사 범위 확대,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 청취 대상자의 확대, 성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가정재판소의 특별관할의 폐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川出敏裕, 2016: 373-374). 이러한 개정은 2000년 개정법이 5년 후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었던 데에 따른 것이며, 특히 피해자 측의 강한 요구가 개정에 반영된 것이었다.¹⁴⁴⁾

2014년 개정은 ① 국선부첨인제도 및 검찰관관여제도의 대상사건 범위 확대, ② 소년의 형사사건에 관한 처분규정의 재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08년 개정법 부칙에서 3년 후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성의 의견 교환회를 토대로 실현된 것이었다(川出敏裕, 2016: 374-375). 특히 ②의 경우 무기형의 완화형으로 선고되는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하고,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상한을 각각 10년과 5년에서 15년과 10년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개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민법, 소년법 등 법령의 규정을 균형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단행되었다(川出敏裕, 2021: 33). 그 결과 2021년 개정법은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20세 미만자로 유지하면서도 18세와 19세를 특정소년으로 새롭게 규정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 기사 등 게재 금지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인에 근접한 규제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小木曾綾, 2021: 55).

143) 우리의 보조인에 해당한다.

144) 法務省 (2007). 少年犯罪被害当事者の会, 犯罪者等による少年審判の傍聴等に関する意見書. <https://www.moj.go.jp/content/000003807.pdf>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児玉勇二 & 杉浦ひとみ (2005). 少年法改正と被害者への配慮. p. 195.

2) 청소년 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1) 소년보호사건 처리 과정

일본 소년법은 전건송치주의(재판소 선의주의)를 채택하여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별처우를 중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편, 저연령소년에 대해서는 아동 복지기관 선의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와 사법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비행소년에 대한 처리절차는 소년의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소년법은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여해야 할 소년을 발견한 사람에게 가정재판소에 통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소년법 제6조 제1항), 통고제도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인에 의한 통고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¹⁴⁵⁾

① 범죄소년

범죄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며(소년법 제40조), 구속에 관한 특칙 외에(동법 제43조, 제48조) 수사의 권한 및 내용은 성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소년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죄처분(형사소송법 제246조 단서)이나 기소유예는 허용되지 않으며, 교통반칙통고사건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외에 모든 사건은 일단 가정재판소에 송치되고 가정재판소가 사건 선별권을 가지는 이른바 전건송치주의 내지 재판소 선의주의가 적용된다. 전건송치주의는 비록 사건의 내용이 경미하더라도 소년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가정재판소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澤登俊雄, 2015: 76).

물론 실무상으로는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청, 검찰청의 3자 약정에 의해 일정한 경미사건의 경우 간이송치라고 하는 특별한 송치방식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전건송치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간략한 사건처리방식은 허용되고 있다(김혁, 2011: 75-76). 또한 경찰은 전건송치주의하에서도 비행소년의 적절한 처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시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학교 그 밖의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145) 일반인에 의한 통고는 2017년 5명, 2018년 6명, 2019년 2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보호관찰소장에 의한 통고는 2017년 8명, 2018년 5명, 2019년 6명, 2020년 2명, 2021년 5명에 불과하다(最高裁判所事務總局 家庭局, 2023: 83).

취하고 있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13조 제1항). 그러나 그러한 조치로 인해 가정재판소 송치를 늦추거나 경찰의 조치가 가정재판소의 처분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2005년과 2006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도입한 회복적 컨퍼런스(소년대화회)를 시범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전건송치주의의 한계로 인하여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小林寿一, 2010: 130).

가정재판소에 사건이 수리되면, 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전건조사주의, 소년법 제8조 제1항). 이러한 조사는 심판조건이나 비행사실의 존부에 관한 조사(법적 조사)와 요보호성에 관한 조사(사회조사)로 구분되는데, 법적 조사는 재판관이, 사회조사는 재판관의 명령을 받은 조사관이 실시한다(동법 제8조 제2항). 사회조사는 소년, 보호자 또는 관계인의 행상, 경력, 소질, 환경 등에 관하여 이루어지며(동법 제9조),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에 재판관에게 처우의견을 기재한 소년조사표를 제출한다(소년심판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 관호조치가 있었던 때에는 소년감별소¹⁴⁶⁾의 감별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데(소년법 제9조), 소년감별소의 감별은 주로 소년의 심신상황의 검사에 초점을 둔 반면, 사회조사는 소년의 성격교정 뿐만 아니라 환경조정도 포함하는 폭넓은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原口軒雄, 1978: 1). 이러한 조사기록은 소년의 요보호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처분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형사절차와 달리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사건이 가정재판소에 수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재판소의 조사 결과 심판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심판개시결정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된다(소년법 제21조).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불개시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동법 제19조 제1항), 심판불개시결정에는 심판에 부할 수 없는 절차적 불개시와 심판에 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실체적 심판불개시가 있다. 이중 후자는 심판개시요건은 충족시키지만, ①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개연성이 없고, ② 재판관에 의한 직접심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①은 심판개시 전 단계에서 소년에게 요보호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간이송치 대상사건과 같이 사안이 경미하고 특별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보호적 조치에 따라 요보호성이 해소된 경우, 별건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 등의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

146) 우리의 소년분류심사원에 해당한다.

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川出敏裕, 2016: 75). 이중 보호적 조치란 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관이 조사, 심판과정에서 행하는 사실상의 교육적·복지적 처우로서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에 기초한 비강제적인 단기간의 처우를 말한다(川出敏裕, 2016: 75). 보호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소년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반성문의 제출, 서약서 징수, 준수사항의 설정과 점검, 취학·진로지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변상, 교통사건이나 약물사건 등에서의 집단지도 등이 있다(竹内 友二, 唐澤 仁 & 鈴木 憲治, 2006: 115). ②는 보호처분의 개연성이 없더라도 재판관이 직접 심리하여 소년 및 보호자에게 감명을 주고 소년에게 책임을 자각시키는 등 심판을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면 심판을 개시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필요조차 없을 때 이루어지는 불개시결정을 말한다(川出敏裕, 2016: 75).

가정재판소는 심판개시결정을 한 때에도 처분결정 전에 소년 등에 대하여 일정한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험관찰이다(소년법 제25조). 시험관찰은 심판개시 후에 가정재판소가 소년에 대하여 중구처분의 결정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조사관에게 소년의 행동 등을 관찰하게 하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서 가정재판소의 결정으로 실시된다(川出敏裕, 2016: 209). 시험관찰은 조사기능과 처우기능을 동시에 가지는데,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일종의 프로베이션(probation)이라고 할 수 있다(平場安治, 1987: 236). 시험관찰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가정재판소는 조사·심판을 거친 다음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① 불처분 결정, ② 아동복지기관 송치결정, ③ 검찰관 송치결정(역송), ④ 보호처분 결정이 있다. ①의 불처분결정은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소년법 제23조 제2항). 전자는 비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사실상의 보호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별건으로 보호 중인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田宮裕 & 廣瀬健二, 2009: 279). 가정재판소는 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는데(동법 제18조 제1항), 이를 ②의 아동복지기관 송치결정이라고 한다.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란, 훈계·서약서의 제출, 아동복지사 등의 지도, 양부모에의 위탁,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를 말하며(아동복지법 제26조, 제27조), 아동복지법상의 조치에 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이다(동법 제4조 제1항). ③의 검찰관 송치결정은

조사 내지 심판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소년법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가정재판소가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내리는 송치결정이며(동법 제20조), 통상 역송이라고 한다. 또한 고의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죄의 사건으로서, 소년이 그 죄를 범할 때에 16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역송결정을 하여야 하며(원칙역송제도), 조사의 결과,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소년의 성격, 연령, 행상,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분 이외의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0조 제2항). 역송 후에는 일반적으로 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여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소에서 사건이 계속하게 된다.¹⁴⁷⁾ ④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② 촉법소년

촉법소년의 경우 수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에서 수사와 유사한 방식의 사건조사가 이루어진다. 경찰관은 촉법사건에 대하여 임의조사(소년법 제6조의2, 제6조의4) 및 압수·수색·검증, 감정위탁 등의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6조의5).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도 도부현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송치를 받은 때에 한하여 가정재판소가 조사 및 심판할 수 있다는 이른바 아동복지기관 선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동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경찰이 촉법소년을 발견한 경우 곧바로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요보호아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아동상담소 등에 통고하면, 아동복지법상의 조치를 취하고(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아동상담소는 추가 조사 후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아동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게 된다(동법 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한편, 일부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관 선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경찰관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 및 사형 또는 무기 혹은 단기 2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사건으로서,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통고와 별개로 사건을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6조의6). 또한 송치를 받은 아동상담소장은 이를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의7).

147) 형사재판소는 보호처분상당성이 인정되면 역송된 사건을 다시 가정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5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정재판소에 사건이 수리된 경우, 역송을 제외하면 위에서 설명한 범죄소년의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된다.

③ 우범소년

소년법은 우범소년의 조사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은 경찰법 제2조를 근거로 우범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우범소년의 경우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기관 선의 원칙이 적용된다(소년법 제3조 제2항). 다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것보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은 이를 아동상담소에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이므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우범소년이 그 대상이 된다. 나머지 절차는 역송을 제외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또한 특정소년에게는 우범소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18세 미만의 소년만을 지칭하게 된다(소년법 제65조의5 제1항).

④ 특정소년

18세 및 19세의 특정소년의 경우 보호사건의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가정재판소는 기존의 역송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그 죄질 및 정상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62조 제1항). 특히 죄를 범할 당시 16세 이상인 자가 고의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및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으로 그 죄를 범할 당시 특정소년이었던 때에도 사건을 원칙적으로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62조 제2항). 다만, 조사 결과 범행의 동기, 태양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특정소년의 성격, 연령, 행상 및 환경,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분 이외의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듯 특정소년의 범죄는 원칙적 역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범정(犯情)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분결정을 하여야 하며(成瀬剛, 2021: 100), 특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6월의 보호관찰, 2년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동법 제64조 제1항), 그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그 외에 특정소년에 대해서는 우범소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동법 제65조 제1항), 복지상의 필요에 따른 조치들의 관한 규정을 배제함으로써(동법 제65조 제2항), 소년에는

해당하지만 성인에 가까운 취급을 예정하고 있다.

특정소년의 경우 형사처분의 특례도 적용된다. 먼저, 역송된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사법경찰원¹⁴⁸⁾ 송치 특례(소년법 제41조) 및 구류(勾留)¹⁴⁹⁾ 요건의 특례(동법 제43조 제3항), 구류장¹⁵⁰⁾ 발부요건의 특례(동법 제48조 제1항), 취급 및 수용 분리의 특례(동법 제49조 제1항, 제3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67조 제1항, 제2항). 또한 피고사건의 취급분리(소년법 제49조 제2항), 부정기형(동법 제52조), 환형처분 금지(동법 제54조), 가석방에 관한 특례(동법 제58조, 제59조), 자격제한의 특례(동법 제60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나아가 행위 당시 특정소년이었던 자가 저지른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보도금지(소년법 제61조)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동법 제68조). 다만, 간이재판소의 약식명령사건(형사소송법 제461조)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도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소년법 제68조 단서).

(2)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송치, 소년원 송치의 3종류가 있다(소년법 제24조). 보호관찰은 사회 내 처우, 소년원은 시설 내 처우,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은 중간 처우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역송 사건의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소년법의 특성상 역송 비율은 극히 미미하므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¹⁵¹⁾

① 보호관찰

보호관찰처분은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소년에 대하여 실시되는 보호관찰에는 크게 ① 가정재판소의 보호처분에 의한 경우와 ②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 가퇴원을 허가받은 경우 실시되는 보호관찰이 있다.

①의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20세에 도달할 때까지이며, 결정시로부터

148) 우리의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149) 우리의 구속에 해당한다.

150) 우리의 구속영장에 해당한다.

151) 2021년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된 인원은 16명에 불과하다. 그중 무기형은 0명, 5년 초과 9명, 3년 초과 6년 이하 2명, 3년 이하 5명이다(法務綜合研究所, 2022: 155).

기간이 2년에 이르지 않는 때에는 2년이다(갱생보호법 제66조). 6개월 또는 2년의 보호관찰에 처해진 특정소년은 해당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보호관찰에는 일반보호관찰, 단기보호관찰, 교통보호관찰, 교통단기보호관찰의 4종류가 있는데, 그중 단기보호관찰과 교통단기 보호관찰은 가정재판소의 처우권고에 따라 실시된다(소년심판규칙 제38조 제2항). 단기보호관찰은 교통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비행성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단기간의 보호관찰로 갱생을 기대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통단기보호관찰은 일반 비행성이 없거나 심각하지 않고 교통관계의 비행성도 고정화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통상의 처우와 다르게 집단처우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이 실시된다(法務綜合研究所, 2022: 143). 단기보호관찰은 대략 6~7개월 정도 실시되며, 교통단기보호관찰은 대략 3~4개월 정도 실시된다. 교통보호관찰은 교통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통법규 등에 관한 지도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통상 6개월 경과 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¹⁵²⁾ 일반보호관찰은 다른 유형의 보호관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시되며, 대략 1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보호관찰소장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¹⁵³⁾ ②의 소년은 가퇴원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갱생보호법 제42조, 제40조).

보호관찰관 및 보호사¹⁵⁴⁾는 면접 등 접촉을 통해 행상을 파악하고 특별준수사항 및 생활행동지침에 관해 필요한 지시 및 지도를 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자립생활에 관한 주거 확보 및 취업 지원 등의 보도원호를 실시한다. 보호관찰 대상소년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면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준수사항에는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으로 구성된다. 일반보호관찰의 대상이 된 소년과 소년원가퇴원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처우가 이루어진다. 유형별 처우는 관계성 영역, 불량집단 영역, 사회적응 영역, 기벽(嗜癖) 영역으로 구분된다. 관계성 영역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불량집단 영역에는 폭력집단 등, 폭주족, 특수사기, 사회적응 영역은 취업 곤란, 취학, 중학생, 정신장해, 발달장해, 지적장해, 기벽 영역은 약물, 알코올, 성범죄, 도박, 기벽적 절도로 각각 구성된다(法務綜合研究所, 2022: 146). 또한 보호관찰처분 소년과

152) ‘交通事故対象者に対する保護観察の効率的運用について’(平成20年5月29日付け保護第223号), 保護局長通達.

153) ‘犯罪をした者及び非行のある少年に対する社会内における処遇に関する事務の運用について’(最高裁判所事務総局, 2008: 180.)

154) 법무대신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관과 협동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비상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며, 2021년 기준 평균연령은 65.4세이다(法務綜合研究所, 2022: 87).

소년원 가퇴원자는 전문적 처우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 처우프로그램에는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 약물 재남용 방지 프로그램, 폭력방지 프로그램, 음주운전방지 프로그램 등 4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처우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다(法務綜合研究所, 2022: 79, 146).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개선갱생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면 보호관찰 기간과 상관없이 보호관찰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써 보호관찰은 종료된다(갱생보호법 제69조). 보호관찰의 일시 해제도 가능하다(동법 제70조 제1항). 반면,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특정소년 제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중한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새로운 보호처분으로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송치 또는 소년원 송치결정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소년법 제26조의 4). 이는 보호처분의 사후적 변경제도가 아닌 준수사항위반을 새로운 심판사유로 삼은 다음, 위반사실과 요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되는 새로운 보호처분으로 이해되고 있다(川出敏裕, 2016: 245). 또한 보호관찰소장은 우범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통고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보호처분 시에 특정소년으로 2년의 보호관찰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한 때에는 가정재판소에 소년원 수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¹⁵⁵⁾ 이때 가정재판소는 소년원 수용결정을 할 경우, 결정과 동시에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범정의 경중을 고려하여 소년원 수용가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소년법 제64조 제2항). 가정재판소의 결정 시부터 보호관찰은 정지되고,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이 허가되어 석방되거나 수용가능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기간은 다시 진행한다(法務綜合研究所, 2022: 148).

한편, 가퇴원 중인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가정재판소에 해당 소년을 소년원에 재차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소년법 제71조), 가정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수용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72조).

155) 6월의 보호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특정소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송치

가정재판소는 보호처분의 하나로 소년을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에 송치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아동복지법상의 시설이며, 소년원과 달리 대부분 도도부현이 관할하는 시설이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 환경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생활지도를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동양호시설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피학대 아동 기타 환경상 양호를 요하는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아동복지법 제41조, 제44조)(최정원 외, 2018: 203). 실무상 아동양호시설 송치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소년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은 대부분 아동자립지원시설 송치이다(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2023: 64).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는 가족적 분위기에서 개방처우를 실시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실제 입소아동은 중학생 등 의무교육 중인 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川出敏裕, 2016: 249). 과거에는 부부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기숙사에 입주하여 10여 명의 아동과 같이 생활하는 부부소사제(夫婦小舎制)의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교대제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富田拓, 2015: 106).

③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 시설 내 처우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특정 소년을 제외한 재원자의 수용기간은 20세에 도달할 때까지가 원칙이나, 소년원장은 20세에 이른 후에도 송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계속 수용할 수 있다(소년원법 제137조 제1항). 재원자는 수용기간이 만료하면 퇴원하지만, 가정재판소는 일정한 경우 소년원장의 신청으로 23세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수용을 계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138조 제1항, 제2항). 또한 가정재판소는 재원자의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고, 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고려하여 교정교육을 계속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원장의 신청에 따라 26세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수용을 계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139조). 특정소년의 경우에는 범정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년원 수용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소년법 제64조 제3항), 전술한 바와 같이 2년의 보호관찰 처분 위반에 따른 특정소년의 소년원 수용기간은 1년 이내이다(동법 제64조 제2항).

소년원은 소년의 연령, 범죄 경향의 정도, 심신의 상황에 따라 5개 종류의 소년원 중 하나에 수용된다. 제1종 소년원은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대략 12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를 수용하며, 특정소년과 제2종 소년원 수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제2종 소년원은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없이 범죄적 경향이 진전된 대략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한다. 제3종 소년원은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대략 12세 이상 26세 미만의 사람을 수용한다. 제4종 소년원은 소년원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제5종 소년원은 2년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특정소년으로서 당해 보호관찰 중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고, 그 정도가 무거우며, 소년원에서 처우하지 않으면 본인의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소년원에 수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다(法務総合研究所, 2022: 134).

소년원에서는 재원자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조직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정교육과정을 정하고 있다. 교정교육과정은 재원자의 연령, 심신의 장애 상황, 범죄적 경향의 정도, 재원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기타 사정에 비추어 일정한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원자의 유형별로 교정교육의 중점적 내용 및 표준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다.¹⁵⁶⁾ 재원자의 유형에 따라 제1종 소년원의 경우 10개, 제2종 소년원의 경우 4개, 제3종 및 제4종 소년원의 경우 각각 1개, 제5종 소년원의 경우 2개의 교육과정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표준기간은 제4종 소년원을 제외하면 6월 이내와 2년 이내이다(法務総合研究所, 2022: 135, 138).

소년원 재원자에 대한 처우는 기간에 따라 장기처우와 단기처우로 구분된다. 장기처우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며 처우의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의 상한은 없다. 단기처우는 일반단기처우와 특수단기처우로 다시 구분되는데, 일반단기처우의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고, 연장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특수단기처우의 수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연장은 없으며, 구금도가 약한 원내처우와 원외위탁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개방처우가 이루어진다. 어떠한 처우로 할 것인지는 교정기관에서 결정하지만, 실무상 가정재판소가 처우권고를 한 때에는 교정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川出敏裕, 2016: 256-257).

156) 교정교육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최정원 외 (2018).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pp. 215-218.

(3) 보호적 조치와 시험관찰제도

일본 소년법은 전진송치주의를 채택하여 가정재판소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사관 등을 활용한 요보호성에 관한 충실한 조사는 향후 처분결정과 보호처분 등의 운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조사기능의 전문화는 소년의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훈계 또는 부모나 교사와의 면접에 의한 환경조정 등의 조치는 실무상 보호적 조치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조사기능이 동시에 요보호성을 해소하는 처우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년의 생활지도 및 환경의 조정, 관계자에 대한 협력의 요구,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피해자 등의 피해상황 내지 피해감정을 소년에게 전달하여 반성을 이끌어 내는 활동, 범죄피해자 등을 초청한 강습의 실시, 시민단체 등 사회자원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의 실시, 후술하는 시험관찰의 틀 내에서 카운슬링이나 케이스 워크 기법을 활용한 계속적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2023: 65). 이러한 보호적 조치는 강제성은 없지만, 가정재판소의 전문성, 특히 조사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년에게 일정한 개입을 실시하는 것으로 소년사법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중간처분의 일종인 시험관찰 역시 특색있는 제도이다(김혁, 2020). 일본의 경우 보호처분 등 종국결정에 앞서 일종의 잠정적 조치로서 시험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관찰 제도는 중간처분의 성격상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조사관의 조사를 보강·수정하고 요보호성에 관한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기능을 충실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종국처분에 앞서 심리강제를 통해 요보호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개입을 실시할 수 있고, 중간처분의 이행사항을 종국처분 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시험관찰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조사관이 소년이나 보호자와의 계속 면접을 통해 직접 관찰하는 방법, 고용주나 교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방법, 교통사건이나 신나남용사건 등에서 그룹워크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田宮裕 & 廣瀬健二, 2009: 200). 또한 시험관찰의 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도 시험관찰 결정 시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田宮裕 & 廣瀬健二, 2009: 325),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川出敏

裕, 2016: 211-212).

시험관찰에는 부수조치를 부가할 수 있다. 부수조치에는 ① 준수사항 부과, ② 조건부 보호자 인계, ③ 적당한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도를 위탁하는 보도위탁이 있는데, 이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부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 제2항). 보도위탁에는 신병부 보도위탁과 재택보도위탁이 있다. 신병부 보도위탁의 경우 소년을 보도위탁처의 시설에 거주시킨 다음 생활지도 등을 실시하며, 재택 보도위탁은 소년을 본인의 주거에 거주시키면서 교사나 고용주 등에게 생활지도만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신병부 보도위탁은 통상 민간의 독지가에게 위탁하여 그가 경영하는 회사 등에서 일하면서 수탁자의 직접 지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川出敏裕, 2016: 212-213). 최근에는 시험관찰 및 보도위탁의 내용으로 단기간의 사회봉사활동이나 합숙활동을 통해 양로원 봉사, 자연관찰학습, 창작활동, 그룹워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川出敏裕, 2016: 213-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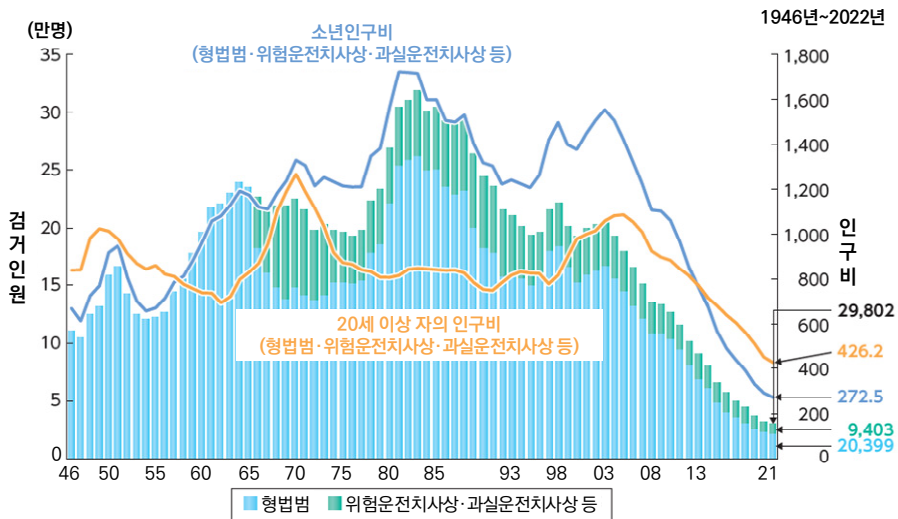
시험관찰을 종료하는 경우 조사관이 최종 처우의견을 붙여 재판관에게 보고하고(소년심판규칙 제40조 제5항, 제13조), 이를 토대로 다시 심판을 진행하여 종국결정을 한다. 시험관찰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국결정에 따라 시험관찰도 종료된다(田宮裕 & 廣瀬健二, 2009: 333).

3) 청소년 범죄 실태 및 현황

(1) 비행의 추이 및 특성

① 비행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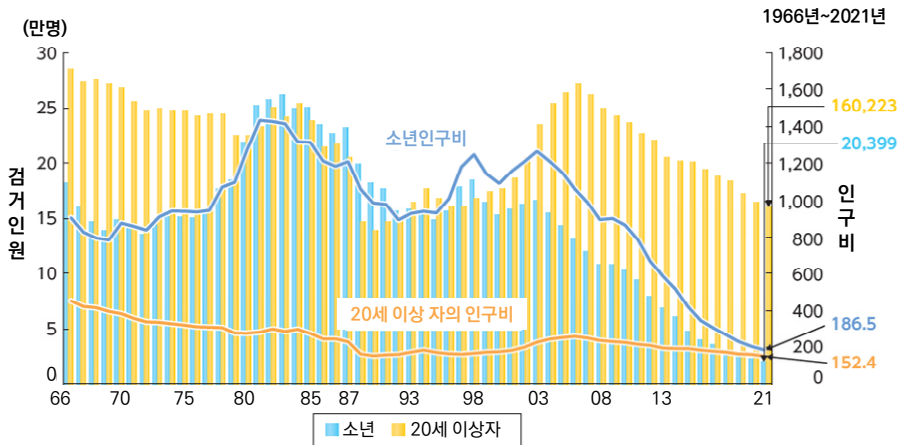
소년의 형법범, 위험운전치사상 및 과실운전치사상 등의 검거인원 및 인구비의 추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최근 30여 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부터 1998년,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각각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 경향에 있고, 2012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2021년에는 역대 최저인 2만 9,802명이었다.



* 출처: 法務総合研究所(2022). 犯罪白書. p. 104.

그림 V-18. 소년 형법범 등 검거원인

아래와 같이 인구비로 따지더라도 형법범의 경우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하여 감소 경향에 있음이 확연하다. 즉 10세 이상 소년 10만 명당 형법범 검거 인구비는 20세 이상 10만 명당 검거 인구비에 비하여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는 186.5로 가장 높았던 1981년 1,432.2에 비해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20세 이상 인구비와 비교하면 여전히 소년의 범죄율(형법범)은 1.2배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감소 경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한데, 이는 연이은 소년법 개정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가 일본 소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라거나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공을 의미한다고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일정한 성과는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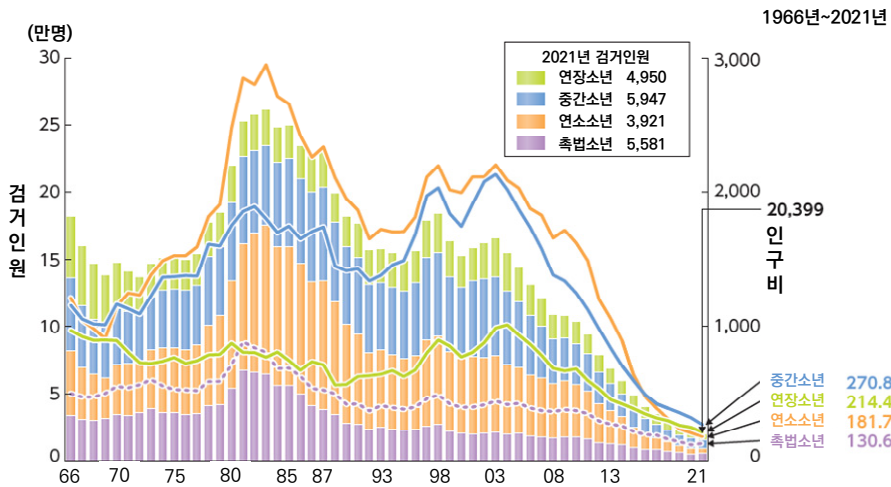


* 출처: 法務総合研究所(2022). 犯罪白書. p. 105.

그림 V-19. 형법범의 인구비(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 비율) 추이

②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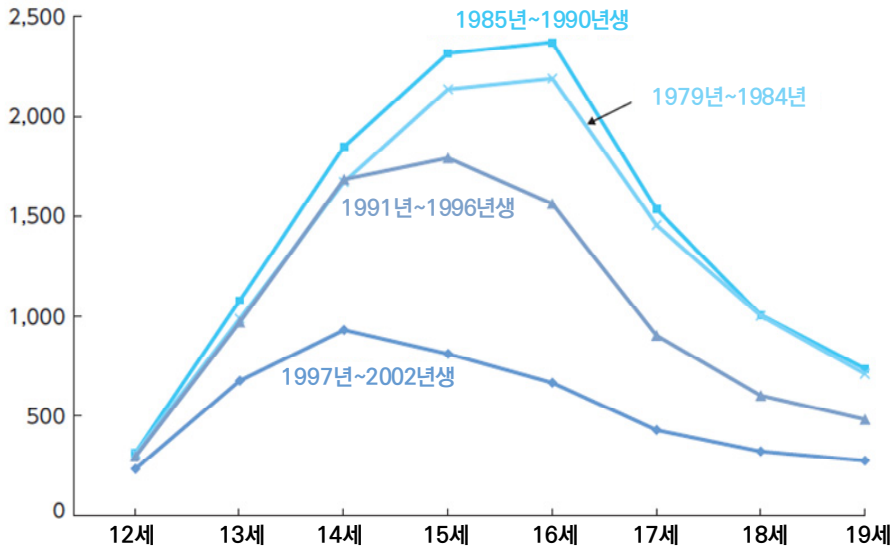
소년 형법범의 검거인원 및 인구비의 추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2019년 이래 연소소년(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인구비가 중간소년(16세 이상 18세 미만) 및 연장소년(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인구비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검거인원은 5,581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편이지만, 이는 연령 구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인구비 자체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격차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촉법소년의 비행 감소율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출처: 法務総合研究所(2022). 犯罪白書. p. 105.

그림 V-20. 소년 형법범 검거인원·인구비 추이(연령총별)

소년의 성장에 따른 비행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는 6년씩 세대를 구분하여 각 세대별로 12세에서 19세까지의 비행소년율(각 연령 10만 명당 형법범 검거 인원)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79년에서 1984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16세에 2,190.3으로 가장 높았고, 1985년생부터 1990년생 역시 16세에 2,372.7로 가장 높았다. 1991년생부터 1996년생의 경우에는 15세(1,790.7)로 낮아졌으며, 1997년생부터 2002년생은 14세(931.3)로 더욱 낮아졌다. 세대가 진행됨에 따라 소년의 비행률은 모든 연령에 걸쳐 낮아지고 있으나, 비행의 최전성기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法務総合研究所(2022). 犯罪白書. p. 106.

그림 V-21. 소년 형법범 비행소년들의 추이

최종별 동향은 소년 비행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아래의 표와 같이 최근 5년간 전체 소년 비행은 감소하였으나, 강도, 살인, 방화, 강제성교 등 흉악범죄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약 단속법 등, 각성제단속법 위반 등 마약류 범죄는 오히려 증가 경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소년 비행은 전체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으나,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14. 소년보호사건의 신규 접수인원(2017~2021)

비행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73,353	64,869	56,408	51,485	45,873
주요 형	폭력범	상해	2,530	2,432	2,460	2,056	1,904
		공갈	573	520	536	487	382
		폭행	1,194	1,154	4,070	888	892
		협박	175	163	219	209	183
		폭력범 합계	4,472	4,269	4,285	3,640	3,361

비행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범 범	홍 악 범	강도	224	242	194	348	163
		살인	27	26	30	34	25
		방화	58	42	43	32	32
		강제성교 등	86	151	139	110	120
		홍악범 합계	395	461	406	524	340
		절도	19,003	16,364	13,609	11,890	9,512
		사기	1,586	2,166	1,502	1,132	1,337
		유실물등횡령	3,529	2,647	2,212	1,735	1,121
		도품양수 등	498	419	334	323	250
		추행	755	759	709	620	671
		주거침입	1,365	1,033	841	1,042	1,020
		과실치사상	994	1,014	1,054	876	1,091
		왕래방해	10	43	6	14	9
		기물훼손 등	755	602	610	539	499
		공무집행방해	140	138	95	90	115
		기타	589	431	573	589	503
		주요 형법범 합계		34,091	30,316	26,236	23,014
특 별 범 범		폭력행위 등	144	192	119	172	117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위반	224	194	224	179	186
		경범죄법위반	2,109	1,264	1,142	1,467	1,282
		매춘방지법위반	40	31	17	26	42
		풍영법 등	64	52	41	38	14
		마약및향정신성약단속법등	340	504	726	967	1,000
		각성제단속법위반	114	99	121	107	136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위반	45	32	34	23	7
		독물및극물단속법위반	13	6	1	4	6
		기타	3,204	3,028	3,013	2,945	2,854
	특별범범 합계		6,297	5,402	5,438	5,928	5,644
우범		339	317	308	286	283	
과실운전치사상 등		15,659	13,564	11,084	9,319	8,716	
도로교통보호사건		16,967	15,270	13,342	12,938	11,401	

* 출처: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p. 72.

재비행률은 보호처분 등 소년에 대한 처우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래의 표와 같이 최근 10년간 재비행률을 살펴보면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소년사법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5. 소년보호사건 재비행률(2012~2021)

연도	합계	그중 재비행 소년	
		인원	비율(%)
2012년	46,009	19,010	41.3
2013년	40,377	15,789	39.1
2014년	37,153	14,118	38.0
2015년	32,199	12,167	37.8
2016년	27,263	9,958	36.5
2017년	24,073	8,251	34.3
2018년	21,086	7,058	33.5
2019년	19,023	5,888	31.0
2020년	18,393	5,195	28.2
2021년	15,846	4,356	27.5

* 출처: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p. 81.

(2) 가정재판소의 종국결정 등 현황

① 시험관찰 현황

소년보호사건 중 시험관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비율은 종국결정 인원 대비 시험관찰이 실시된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사건에 비해 일반사건에서 시험관찰이 실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16. 소년보호사건 시험관찰 현황(2012~2021)

연도	일반사건		과실운전치사상 등 사건		도로교통보호사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2	1,465	3.1	1,324	5.8	350	1.4
2013	1,353	3.3	1,202	5.4	199	0.8
2014	1,225	3.3	655	3.2	106	0.5
2015	1,078	3.3	128	0.7	111	0.5
2016	1,058	3.8	27	0.2	122	0.6
2017	1,196	4.9	24	0.2	115	0.7

연도	일반사건		과실운전치사상 등 사건		도로교통보호사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8	1,161	5.4	15	0.1	93	0.6
2019	1,042	5.3	16	0.1	81	0.6
2020	859	4.6	9	0.1	45	0.3
2021	735	4.5	9	0.1	53	0.5

* 출처: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p. 92.

일반보호사건의 종국결정 인원 중 신병부 보도위탁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관찰의 대부분은 재택 보도위탁이지만, 가정환경의 열악성 등으로 인하여 신병부 보도위탁이 실시되는 비율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국결정에 앞서 시험관찰이 채우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17. 일반보호사건의 신병부 보도위탁 인원(2012~2021)

연도	합계	시험관찰 합계		신병부(소년법 제25조 제2항 제3호)	
		인원	총원 대비 비율(%)	인원	시험관찰 총원 대비 비율(%)
2012	46,583	1,465	3.1	126	8.6
2013	40,987	1,353	3.3	132	9.8
2014	37,712	1,225	3.2	141	11.5
2015	32,740	1,079	3.3	113	10.5
2016	27,763	1,058	3.8	107	10.1
2017	24,603	1,196	4.9	206	17.2
2018	21,625	1,161	5.4	225	19.4
2019	19,588	1,042	5.3	204	19.6
2020	18,871	859	4.6	122	14.2
2021	16,240	735	4.5	98	13.3

* 출처: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p. 93.

일반보호사건 중 비행별로 시험관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관찰이 종국처분에 앞서 실시되는 중간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요보호

성의 정도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적시의 처우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최종별 현황도 그러한 시험관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우범소년의 경우 우범사유 자체는 심각하지 않으나, 우범성으로 인하여 가정재판소에 송치 또는 통고되므로 요보호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상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도 다른 죄명에 비하여 우범소년의 시험관찰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V-18. 비행별 시험관찰 인원

비행별	합계	시험관찰 有	
		인원	비율(%)
강도	123	17	13.8
방화	23	3	13.0
우범	188	22	11.7
폭력행위 등	92	10	10.9
강제성교 등	93	10	10.8
상해	1,641	153	9.3
공무집행방해	79	7	8.9
공갈	305	27	8.9
마약및향정신성약단속법	654	55	8.4
살인	24	2	8.3

* 출처: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p. 94.

② 종국결정 현황

가정재판소에 접수된 일반보호사건의 종국처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21년 종국 처리 인원 16,240명 중 불처분결정이 3,327명(20.5%), 심판불개시결정이 6,103명 (37.6%)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보호처분 없이 종국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처분 중에서는 보호관찰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소년원 송치, 아동자립지원시설등 송치의 순으로 확인된다. 또한 검찰관 송치인원은 극히 미미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연령초과로 인한 것이어서 일본의 소년사법실무는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우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9. 일반보호사건의 중국처리 인원(2021년)

합계		검찰관송치		보호처분				지사 또는 아동상 담소장 송치	불처분	심판 불개시
		형사 처분 상당	연령 초과	합계	보호 관찰	아동 자립지원시설 등송치	소년원 송치			
인원	16,240	79	291	6,325	4,937	112	1,276	115	3,327	6,103
비율	100.0	0.5	1.8	38.9	30.4	0.7	7.9	0.7	20.5	37.6

* 출처: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p. 96.

심지어 소년법상 검찰관 송치가 원칙인 중대사건조차 실제로는 상당수가 보호절차에서 처리되고 있어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자제하는 실무가 이어지고 있다.

표 V-20. 원칙역송사건 가정재판소 중국처리인원(2021년)

죄명	중국 처리 인원	검찰관 송치 (형사처 분상당)	보호처분					불처분	심판 불개시
			합계	소년원송치			보호 관찰		
				제1종	제2종	제3종			
살인	25	14	10	8	-	-	2	-	1
상해치사	7	1	6	5	-	-	1	-	-
위험운전	12	8	3	2	-	-	1	-	1
치사	6	5	1	1	-	-	-	-	-

* 출처: 法務総合研究所(2022). 犯罪白書. p. 123.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의 절반 이상이 불처분 및 심판불개시 결정을 통해 중국처리되고 있는데, 이들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래 표의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일반보호사건의 불처분 인원 3,327명 중 90.5%, 심판불개시 인원 6,103명 중 82.8%가 보호적 조치를 이유로 중국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불처분 및 심판불개시 인원의 대부분은 단순히 형식적 요건의 불비가 아닌 가정재판소에서의 실질적인 개입을 통해 요보호성이 해소되어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중국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1. 일반보호사건 중 불처분 및 심판불개시 인원(2021년)

불처분						심판불개시						
합계 (%)	보호적 조치	비행 없음	별건 보호중	소재 불명	기 타	합계 (%)	보호적 조치	비행 없음	사안 경미	별건 보호중	소재 불명	기타
100.0	90.5	0.8	8.7	0.0	0.0	100.0	82.8	0.1	2.5	13.4	0.7	0.4

* 출처: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p. 106.

③ 보호처분 등 현황

가. 보호관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처분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보호관찰처분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소년원 가퇴원자도 포함된다. 가정재판소와 범죄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에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보호관찰처분 소년은 6,516명, 소년원 가퇴원자는 1,560명이었다(法務綜合研究所, 2022: 144). 또한 같은 해 교통사건을 제외한 일반보호사건에 대한 가정재판소의 중국인원 중 단기보호관찰 대상자는 1,077명(21.8%)으로, 대부분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2023: 103).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형별 처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보호관찰처분 소년과 소년원 가퇴원자 모두 사회적응 영역으로 구분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소년원 가퇴원자는 특히 정신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V-22.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유형별 인정현황(2021년말 기준)

영역구분	유형	보호관찰처분 소년	소년원 가퇴원자
관계성 영역	아동학대	4 (0.1)	-
	배우자 폭력	34 (0.5)	3 (0.2)
	가정내 폭력	110 (1.5)	55 (3.1)
	스토킹	44 (0.6)	5 (0.3)
불량집단 영역	폭력단 등	16 (0.2)	22 (1.2)
	폭주족	278 (3.8)	89 (5.0)
	특수사기	276 (3.8)	144 (8.0)
사회적응 영역	취업 곤란	643 (8.8)	423 (23.5)

영역구분	유형	보호관찰처분 소년	소년원 가퇴원자
	취학(중학생 포함)	1,178 (16.1)	151 (8.4)
	중학생	239 (3.3)	15 (0.8)
	정신장애	848 (11.6)	440 (24.5)
	발달장애	525 (7.2)	257 (14.3)
	지적장애	279 (3.8)	157 (8.7)
기벽 영역	약물	686 (9.4)	267 (14.9)
	알코올	173 (2.4)	84 (4.7)
	성범죄	663 (9.1)	217 (12.1)
	도박	36 (0.5)	24 (1.3)
	기벽적 도박	23 (0.3)	3 (0.2)

* 출처: 法務総合研究所(2022). 犯罪白書. p. 146.

보호관찰의 종료 상황에 대한 검토는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래 표와 같이 보호관찰처분 소년 중 대부분은 보호관찰 기간 전에 보호관찰의 태도가 양호하여 보호관찰이 해제되었고(74.4%), 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는 13.2%, 준수 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경합하는 새로운 처분을 받아 보호처분이 취소된 비율은 12.2%였다. 소년원 가퇴원자의 경우 기간만료가 80.1%, 퇴원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호처분의 취소(11.8%)나 보호처분 재차 수용(0.2%)은 비교적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V-23. 소년 보호관찰 종료 인원의 종료 사유 비율(2021년)

전체 (%)	보호관찰처분 소년				소년원 가퇴원자				
	해제	기간 만료	보호처분 취소	기타	퇴원	기간 만료	재수용	보호처분 취소	기타
100.0	74.4	13.2	12.2	0.2	7.5	80.1	0.2	11.8	0.4

* 출처: 法務総合研究所(2022). 犯罪白書. p. 149.

나.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송치

2021년 일반보호사건 중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송치된 인원은 112명이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전국에 58개소(국립 2개소, 공립 54개소, 사립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최정원 외, 2018: 203). 국립시설에는 남아를 수용하는 국립 무사시노(武蔵野)학원과 여아를 수용하는 국립 키누가와(きぬ川)학원이 있는데, 국립시설에는 아동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자를 입소시키고 있다(川出敏裕, 2016: 248).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는 보호처분 외에도 아동상담소장 등 송치를 통해 입소되는 인원도 보호하며(소년법 제18조), 2021년 일반보호사건 중 아동상담소장 등 송치 인원은 115명이다.

다. 소년원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소년원 송치처분 인원은 총 1,421명이며, 대부분 일반보호사건이다. 가정재판소의 처우권고 중 단기처우는 일반사건(11.3%)에 비해 도로교통 보호사건(28.3%)이 2배 이상 높은데, 이는 사건의 특성상 일반사건에 비하여 도로교통 보호사건의 대상소년의 요보호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단기교육과정을 제외한 소년원 퇴원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498일이며, 가퇴원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379일이다.¹⁵⁷⁾

표 V-24.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현황(2021년)

구분	합계	처우권고		기타
		단기간 (일반단기)	특수단기간 (특수단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1,421 (100.0)	176 (12.4)	1 (0.9)	1,212 (85.3)
일반사건	1,276 (100.0)	144 (11.3)	1 (0.1)	1,131 (88.6)
과실운전치사상등사건	32 (100.0)	0 (0.0)	1 (0.1)	0 (0.0)
도로교통보호사건	113 (100.0)	32 (28.3)	0 (0.0)	81 (71.7)

* 출처: 最高裁判所事務総局家庭局(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p. 102.

157) e-stat. 少年矯正統計表. <https://www.e-stat.go.jp>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소년원은 2022년 4월 1일 현재, 전국에 46개청(분원 6개청 포함)이 설치되어 있다.¹⁵⁸⁾ 아래의 표와 같이 2021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일평균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대부분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소년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과밀 수용의 문제는 없는 듯 보인다.¹⁵⁹⁾ 소규모 소년원 운영은 개별처우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표 V-25. 소년원별 1일 평균 수용인원(2021년)

수용인원	30명 미만	30-49명	50-99명
소년원명	帯広、北海、紫明、盛岡、東北、青葉、喜連川、赤城、市原、愛光、有明高原、駿府、湖南、愛知、豊ヶ岡、京都医療、泉南、播磨、広島、貴船原、丸亀、四国、松山、筑紫、佐世保、中津、沖縄、沖縄女子(총 28개소)	水府、八街、榛名、新潟、交野、和泉、奈良、岡山、福岡、人吉農芸、大分(총 11개소)	茨城農芸、多摩、東日本医教、久里浜、瀬戸、宮川医療、浪速、加古川(총 8개소)

* 출처: e-stat. 少年矯正統計表. <https://www.e-stat.go.jp>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4) 소결

최근 20여 년간의 일본의 소년법 개정은 소년에 대한 엄벌화로 촉발되었지만, 실제 소년사법의 운영은 여전히 전전송치주의 하에서 형사처분을 회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이은 소년법 개정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 때문인지 전반적인 비행상황 및 재비행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일본의 사법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거에 비하여 비행의 최전성기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저연령자에 대한 개입의 문제는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소년의 개념을 도입한 최근의 소년법 개정은 기존의 소년범죄의 추이와 보호우선주의와는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향후 특정소년에 대한 개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소년사법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재판소의 전문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158) 法務省.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j.go.jp>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159)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수용인원을 살펴보다라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전영실, 김슬기, 김혁, 주현경, 조병철, 2021: 336).

아니다. 그러한 전문성의 중심에는 조사관이 자리 잡고 있고, 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처분의 적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보호처분의 종류는 3가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에 비하여 적지만, 보호처분 전에 시험관찰이나 보호적 조치를 통해 사실상 보호처분에 준하는 개별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적시의 개입을 통해 소년의 요보호성이 해소되고 있음을 여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 아동복지와 소년사범의 연결고리가 다수 존재하여 다양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시사점

각국의 법제와 청소년 범죄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르지 않은 반사회적 행위로 적발되거나 범죄행위로 경찰에 입건되는 때부터 재판, 구금 및 사회복지까지 소년사범 전 과정에 YOT가 개입하여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며 다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년청 소속직원이 소년법원법상 소년사범 보호관으로서 기능하면서, 단순히 범죄소년을 조사·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범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소년을 후견·원호·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담기구 내지 직원을 통해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정재판소가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소년에 대해 적절한 개입과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재판소 선의주의를 통해 재판관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 통합적인 접근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YJB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각 지방정부 별로 상황에 적합한 세부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역에는 YOT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말로만 언급되는 다기관 연계가 아니라 YJB와 YOT라는 실질적인 조직 내지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영국의 청소년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이러한 대응체계가 효과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소년청을 통해 사회 교육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복지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소년청 소속직원이 소년사범 보호관으로서 소년사범 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 소년을 조사·감독하는 것부터, 후견·원호·교육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년사법제도 내에서 아동복지와 소년사법이 상호 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연령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면서도 여전히 소년의 특성을 중시하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엄격한 사법적 대응을 기치로 형사 책임연령을 사실상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연령에 따라 구금처분이나 불이익 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강제처분을 운용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소년법의 엄벌화 및 책임연령 인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독일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청년이라는 연령층을 별도로 마련하여 개별적 성숙 정도에 따라 소년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소년형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이은 중대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특정소년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소년법의 적용범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소년보호주의 자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 즉 각국에서 중대 소년범죄로 인하여 연령 인하 논의가 제기된 결과 일부 미세 조정은 있었으나, 그 근본 사상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개입을 통한 개별처우 및 다이버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지역사회로 다시 포섭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범죄소년을 제재할 때 보충성원칙, 비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절차종결처분(다이버전, 가해자-피해자 조정), 사회 내 처우, 시설 내 처우로 단계화하여 소년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경미한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록 보호처분의 종류는 3가지에 불과하지만, 보호처분 전에 시험관찰이나 보호적 조치를 통해 소년의 개별 특성에 맞는 적시의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정책 제언 배경
- 2. 정책제언

1. 정책 제언 배경

1)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보호처분이 본래의 목적대로 소년이 처한 환경과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법령을 포함한 문헌 연구와 2차 자료 분석,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조사 및 보호처분 집행기관 담당자 대상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자료 분석, 해외 소년범죄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근거에 기반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 및 선행연구,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보호처분 현황에 대한 국내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법원에서의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동향, 보호처분별 변화 추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비록 특정 기간 동안 한 지방의 법원 소년부에서 작성되었다는 시간적·지역적 한계를 가지지만, 소년재판 및 사건의 특성, 처우이력, 소년의 개인·가정·학교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처분 전 조사 및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제도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각기 상이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영국, 독일, 일본의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장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7개 정책과제와 28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의 근거는 표 VI-1에 제시하였다.

표 VI-1-1.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

문제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과제
소년범죄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근거기반 정책 추진이 어려움	•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 인구 감소로 소년범죄 수는 감소하고 소년범죄발생배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축법소년 사건의 접수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실제 처리 건수에서는 보호처분이 감소하고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건수가 증가함 - 소년범죄자의 요보호성에 관한 정보파악이 어려움 - 소년범죄사건 접수 건수 중 강력(총악)범죄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범죄의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움(예: 강간 및 강간미수와 같은 성폭력 사건이 포함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영상기기를 이용한 신체 촬영과 같은 사건도 함께 포함되어 세부 범죄 내용의 구분이 불가능함) • 재판 준비 메모 분석 - 강력(총악)사건에서 신체 촬영 등의 성관련 사건(181건)을 분리한 결과, 강간 등의 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강력(총악)사건은 11건에 그치며, 이에 대한 불처분 결정은 0%임 - 소년보호사건의 불처분 결정은 본소 사건과 동시에 진행된 보호처분변경신청/집행감독 사건에서 차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음 • FGI 분석 - 소년범죄의 사건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비로는 총악범죄의 비중은 줄어든 경향이 있음.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도 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범죄의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자연형 소년의 범죄가 흉포화, 전문화된다는 주장의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소년보호사건 접수율의 증가와 함께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결정도 증가하였음.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경미한 사건도 소년사건으로 접수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소년보호사건이 불처분되더라도 동시에 개시되는 다른 사건에 대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소년사건 불처분 통계를 해석해야 함 • 근거에 기반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소년의 요보호성을 포함한 소년범죄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함	소년범죄 실태 파악 및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문제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과제
소년범죄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근거기반 정책 추진이 어려움	- 범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미성숙하며 정신건강이 있는 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가 전문화보다는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해외 각국에서는 중대 소년범죄로 연결 인화 노력이 제기되어 미세 조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소년보호주의 사상 자체를 유지하고 있음	•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내용이 아닌 소년의 보호를 위해 수집된 생활환경조사 및 심리검사의 내용은 보호처분 집행 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소년보호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규칙에 명시된 의무 개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소년보호종합관리시스템(TEAMS)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간 정보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소년범죄 실태 파악 및 근거기반 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소년보호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가 어려움	• FGI 분석 - 1호 처분시설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법원 소년부의 인식이 부족함 - 법원 및 법무부 소속기관이 아닌 위탁 시설은 소년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시 조사해야 함 - 조사 자료를 각 기관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해외사례 분석 - 영국은 YOT, 독일은 소년사법보호관, 일본은 가정재판소를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합적 접근체계를 갖추고 있음	• 소년보호처분 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 이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함 (예: 유해환경감시단 기능 강화) •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이웃리치 활동 강화 • 학교의 보호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적극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제고
소년의 요보호성 개선을 위한 개입 부족	•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결정 중 1호 처분이 70%-80%대를 차지함 - 소년법적자의 요보호성에 관한 정보파악이 어려움 • 재판 준비 메모 분석 - 처벌이력이 많은 소년일수록 위기요인의 수가 많음 - 개인 위기요인 중 출연, 기술, 행동관련 요인을 가진 소년이 많음 - 가정 위기요인 중 부모의 이혼, 별거·가출, 가족구성원의 신체질환,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가진 소년이 많음		

문제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과제
소년의 오폭호성 개선을 위한 개입 부족	- 학교 및 포레 위기요인 중 결석, 학업중단, 학업성적/태도 요인을 가진 소년이 많음 - 처벌이력이 많은 보호소년은 정신질환 및 인지관련 위기요인이 처벌이력이 적은 보호소년보다 많음 • FGI 분석 - 소년의 오폭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자 개입이 필요함 - 보호관찰소 수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보호자특별교육명령임 - 소년원 퇴원 후 지원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년의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복귀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 및 인지관련 위험요인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소년의 오폭호성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제고
증가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 소년범죄사건 접수 건수 중 우범소년에 대한 접수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 소년범죄사건 접수 건수 중 경찰서장 승차의 통고를 통한 접수가 크게 증가함 - 우범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건 대비 사회내치우 비중이 낮음 - 임시위탁처분자, 소년원 수용자 중 소년범 위반 및 우범으로 수용된 비율이 크게 증가함 • FGI 분석 - 온라인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 성비행이 순쉬워지고, 가출로 인한 우범의 문제가 심각함 - 보호처분 사실에 수용된 소년 중 드러나지 않은 비행 사실이 있거나 법에 지속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우범인 경우가 존재함	• 소년사건 접수 건수, 소년원 수용자, 임시위탁 처분자 중에 우범 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범 소년에 대한 사회 내 치우 비중이 낮다는 점은 우범소년제도가 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범죄 사실이 있는 소년에 대한 우범사건 처리를 지양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만 우범소년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성비행, 가출 등으로 인한 우범인 경우, 보호받아야 할 소년에 대한 별도의 절차 마련이 필요함	우범소년만을 위한 독립된 처리 절차 및 보호처분 마련

문제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과제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은 부족함	•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 소년원에 수용된 인원은 감소 추세이나 7호 처분자를 수용하는 대진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비중은 증가함('19년 5.6% → '20년 8.5% → '21년 9.0%) - 소년원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 비율이 30%를 초과함 - 의료재활소년원 위탁기간이 6개월이어서(보호관찰처분변경을 포함한) 기퇴원자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전체퇴원자의 45.7%에 달함 • FGI 분석 - 일반소년원, 의료재활소년원, 폐쇄병동에 수용할 소년의 기준을 정하고 수준에 맞는 처우를 할 필요가 있음 - 7호 처분 소년을 위탁할만한 시설 수가 매우 부족함 - 전국에 유일한 의료재활소년원임에도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가 없음	• 의료재활처우 시설을 확보하고 의료재활소년원을 증설해야 함 • 법무병원 및 국립정신병원에 보호소년 병상 마련을 검토해야 함 • 의료재활소년원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주 병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의료재활처우 수준을 다양화하고 수준별 의료 처우 시설을 확보해야 함	의료재활처우 수준 다양화 및 자원 확보
처분 전 단계에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어려움	•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 촉법소년을 포함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건수에서 보호처분 결정 비중은 감소하고 신리불개시 및 불처분 결정의 비중은 증가함 - 2021년 기준 임시위탁결정을 받은 소년 중 58.3%는 사회 내 처분을 받음 • 재판 준비 메모 분석 - 보호처분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 85% 이상임 - 소년이 불출석한 소년보호재판의 수가 전체 재판의 29.1%를 차지함 • FGI 분석 - 소년 조사는 별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나 소년 전문 조사관 수가 부족	•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절차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이버전의 다양화 및 질 제고가 필요함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신변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위탁 처분을 내리고 진중적으로 개입하여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보호처분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소년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소년에 특화된 처분조사사 인력 증원이 필요함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문제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업	과제
처분 전 단계에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기 어려움 다양한 보호처분 집행기관에서 공유되는 공식적인 매뉴얼이 없어 소년들이 받는 보호처분의 질에 편차가 발생함	- 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 1개이며 대행소년원의 업무가 과중함 - 처분 전 절차를 통한 조기 개입이 효과가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해외 각국에서는 보호처분 이전에 다양한 개입 및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8호 처분 소년원을 별도로 운영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의 쇼크 구급 기능 수행을 제한하여야 함 • 처분 전 절차를 다양화하고 기능을 분할하여 소년범죄에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보호처분 내용의 질 상향 개입 및 연계	•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 소년보호처분 중 2호 처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가 아닌 기관에서의 집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FGI 분석 - 보호관찰소 소년수강 집행 시에 별도의 교육 매뉴얼이 없고 범죄영역별로 특화된 수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보호관찰소 소년수강 집행 시 강사 선임이 담당자의 역량에 따른 달라짐 -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 담당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만한 매뉴얼이 없음 - 6호 처분 위탁 시설에게 제공되는 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공이 없음 - 수도권 지역에 소년보호 자원이 집중되어 있음 - 소년원 학교이나 교육부의 지원을 체감하지 못함 • FGI 분석 - 영국은 YJB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함	• 법원이 지정하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법원별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보급해야 함 • 법원이 직접 지정하는 1호 처분 시설과 6호 처분 시설에 대하여 법원 또는 소관부처가 소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소년에 적합한 수강과 사회봉사를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 소년원별로 자체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할 시에 발생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 등의 연계로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보호처분 내용의 질 상향 개입 및 연계

문제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과제
보호관찰소가 소년중심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소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이 높음	•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음(특히 장기보호관찰, 임시위원의 재범률이 높음)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년원 수용자의 30% 이상이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용되었고, 이는 사범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위탁 처분 소년의 20% 이상이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임시조치되었고, 이는 사범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FGI 분석 - 소년보호관찰이 업무과중으로 기피업무인 탓에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짐 - 보호관찰 처분이 병과되지 않은 2, 3호 처분자에 대한 지도가 어려움 - 보호관찰소 소년수강의 별도 교육 매뉴얼이 없고 범죄영역별로 특화된 수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에 소년에게 적합한 사회봉사 위탁기관 발굴이 어려움	• 소년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를 조정하여 소년보호관찰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보호관찰소에 구인 및 유치를 담당하는 제재전담팀 설치를 검토해야 함(예: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 구성) • 소년에 적합한 수강내용 및 강의를 개발하고 강사 인력풀을 법무부에서 관리하여 자격검증 등으로 수강의 질 제고를 모색해야 함 • 소년 수강의 기능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소년에 적합한 사회봉사를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 소년전담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감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어야 함 • 사회봉사명령의 연령 하한을 근로 기능 연령에 맞춰 상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함	보호관찰소의 소년대상 보호처분 집행의 전문성 제고 필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 강화
보호처분 집행기관 및 시설 수 부족	• 문헌 및 2차 자료 분석 - 소년보호처분 중 사회 내 처우 및 시설 내 처우 처분은 감소한 반면, 중간 처우 처분(6호 처분)은 증가함 - 6호 처분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정원이 감소함 -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은 특정 지역을 위주로 집중되어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을 두고 소년원의 분류심사원 대행업무를 축소해야 함 • 8호 처분만을 위한 소년원 운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6호 처분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증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보호처분 집행 기관 및 시설 수 확대

문제점	주요 연구결과	시사점	과제
보호처분 집행기관 및 시설 수 부족	- 2021년 기준 9호 처분자의 72.9%, 10호 처분자의 83.9%가 임시퇴원함 • FGI 분석 - 분류심사시에 처분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의견을 변경하기도 함 - 8호 처분자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분류심사원이 전국에 1개이며 나머지는 소년원에서 대행하여 업무가 과중함	- 지역별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6호 처분 시설의 임상심리상담원 수 소년 기준 증원 필요(예: 소년 30인당 1인) - 임시퇴원 비율 상한을 설정하고 출가소년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시설 내 처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중기 소년원 송치 처분 및 부정기보호처분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함	보호처분 집행 기관 및 시설 수 확대

2. 정책제언

앞서 주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파악한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총 7가지의 정책과제와 28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표 VI-2로 정리하였다.

표 VI-2. 소년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01 근거기반 통합적 소년보호정책 추진	1. 소년범죄 실태 및 요보호성에 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통계자료 구축 2. 소년보호기관 간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3. 소년보호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보호처분 집행기관 네트워크 강화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2 소년의 요보호성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	1. 보호자특별교육명령 의무 부과 및 효과지속 방안 모색 2. 학교의 보호력 제고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3. 보호처분 종료 후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시설 내 처우 사회복귀교육 내실화 5. 우범소년 기준 강화 및 별도의 처리 절차·보호처분 마련
03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1. 소년에 특화된 처분 전 조사 인력 증원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적극 활용 3. 8호 처분 소년원 운영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의 쇼크 구금 기능 수행 제한 4. 소년범죄 조기개입을 위한 처분 전 조치 활성화
04 보호처분의 질 상향평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법원이 지정한 위탁 집행기관에 제공할 소년보호 프로그램 및 지침 마련 2. 법무부 주도 소년수감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자격검증을 통한 관리 3. 소년에 적합한 수강과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4. 소년원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 협력
05 의료재활처우 수준 분화 및 자원 확보	1. 의료재활소년원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2. 국립범무병원 및 국립정신의료기관 보호소년 병상 확보 3. 의료재활처우 수준 분화 및 수준별 의료 처우 마련 4. 아동보호치료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기준 규정 개정
06 보호관찰소의 소년 대상 보호처분 집행 전문성 제고	1.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도입 및 전문성 제고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소년 수강 집행 기능 확대 3.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감독하고 운영하도록 제도 개편
07 보호처분 집행 기관 및 시설 수 확대	1. 비수도권 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 설치 및 대행소년원 축소 2.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조정, 임시퇴원 비율 상한 설정 3. 소년원 증설을 통한 처분별 소년원 운영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및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증원을 위한 지원

○ 제안배경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단편적인 정보에 기인한다. 실증적이고 검증 가능한 통계 자료의 구축을 기반으로 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소년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법원, 보호처분 집행기관, 위탁보호위원 등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근거기반 통합적 소년보호정책 추진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년범죄 실태와 요보호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하고 세분화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마다 불필요한 조사 및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보호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처분 집행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기단계의 비행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1. 소년범죄 실태 및 요보호성에 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통계자료 구축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67조의2
- 관련 기관 : 법무부,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소년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소년을 둘러싼 환경 등 보호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법원의 사법연감,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법무부의 범죄통계 등은 소년범죄 실태에 대한 부분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하지만 서로 분절되어 있어 완전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소년법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에는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소년비행 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의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1-2. 소년보호기관 간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및 규칙 : 「소년법」 제32조제5항, 「소년심판규칙」 제32조
- 관련 기관 : 법원

소년은 처분 전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법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는 법원에 보고되어 보호재판에 활용되고, 처분 이후에 처분 집행기관에 공유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다. 소년법 제32조제5항에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여 위탁 집행기관에서는 소년의 보호에 필요한 진단 검사 등의 결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 집행기관에서는 인적·경제적 비용을 들여 같은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검사 효과로 인해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현행법 및 규칙 개정의 예시를 표 VI-3에 서술하였다. 전문가 진단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보호에 필요한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VI-3. 소년법 제32조제5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32조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u>법 제12조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다</u>)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소년심판규칙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u>법 제12조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다</u>)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심판규칙. <https://www.law.go.kr/법령/소년심판규칙>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1-3. 소년보호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보호처분 집행기관 네트워킹 강화

- 관련 지침 :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제8조제4항
- 관련 기관 : 법원

보호처분 집행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소년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법원 주도로 이루어지는 소년보호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년보호협의회는 가정·지방법원의 주최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교육청, 경찰서,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집행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탁기관별 운영 현황 공유, 집행을 어려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소년을 위한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이다.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법원에서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소년보호협의회의 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 1회로 실시되던 협의회를 반기별 1회로 개최 횟수를 상향하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다.

표 VI-4.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조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법원에서 개최한다.	제8조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법원에서 개최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검색어: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재특 2008-2)	

1-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지침 및 법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 「소년법」
- 관련 부처 :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심리검사, 대안교육, 보호자특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법교육 등을 실시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초기비행 단계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소년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 전국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설립 근거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의안번호 2110123, 제안일자 2021.5.1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초기비행 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는데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과 제 3-2와 6-2를 실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표 VI-5. 소년법 제 67조 개정안(송기헌 의원 등 12인)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7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①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단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정한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23일 인출(의안번호: 2110123)

○ 제안배경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비행성 뿐만 아니라 요보호성을 고려하여 소년에게 최적의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보호 재판 준비 메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처분 이력이 많은 소년일수록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요인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비행성 개선을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을 둘러싼 환경 조정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청소년기는 특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처분 이후에 소년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적응해야 하므로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보호력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년의 요보호성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에게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의무로 이수하게 하여 가정의 보호력을 높이고, 학교에서는 소년을 교육복지안전망에 연계하여 위기를 개선하고, 처분 이후에는 청소년안전망을 활용한 소년중심의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설 퇴소 전 사회복귀교육을 내실화하여 소년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돕고, 우범소년은 위기 개입이 필요한 대상과 처분이 필요한 대상으로 나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2-1. 보호자특별교육명령 의무 부과 및 효과지속 방안 모색

- 관련 법령 : 「소년법」
- 관련 부처 및 기관 : 법원, 법원 지정 보호처분위탁기관법원 지정 보호처분위탁기관, 법무부 산하 보호처분 집행 기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의 보호력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보호자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소년보호 처분 결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처분이 1호 처분인 보호자 위탁이었다는 점은 소년보호처분에서 보호자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 소년보호 관련 교육 중에서 실무자들이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꼽은 교육이 보호자특별교육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소년법에서

부가처분으로 다루고 있는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1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내리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VI-6). 혹은, 보호자특별교육 이수 후 후속조치로 보호자가 양육방법에 어려움을 느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복지적 차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보호자특별교육은 보통 1회 8시간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대면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¹⁶⁰⁾,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온라인부모교육 이음-e 프로그램¹⁶¹⁾과의 연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보호자가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VI-6. 소년법 제 32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 ② (생략)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u>다만,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u>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16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신청. https://edu.kohi.or.kr/pt/pa/paa/Bd_paa0040d.do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161)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온라인부모교육 이음-e. http://www.cyber1388.kr/new/_counsel2/_youth/counseldata/e-um/eum_intro.asp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2-2. 학교의 보호력 제고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 관련 조례 : 지방자치단체 조례
- 관련 부처 :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소년에게 학교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하지만 연구 결과 보호소년은 학교생활에서 여러 위기를 겪고 있었다.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에서 보호소년이 무단결석, 학업중단, 낮은 학업적 흥미 등 학교에서의 위기요인들을 다수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의 보호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은 학교-가정-지역 사회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소년을 돕기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복지안전망 속에서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보호소년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사업 목적 및 목표



*출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업 목적 및 목표. <https://www.kassw.or.kr/page/s6/s2.php>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그림 VI-1.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목적 및 목표 예시

2-3. 보호처분 종료 후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관련 법령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관련 부처·기관 : 법무부·(재)한국소년보호협회, 여성가족부

보호처분 종료 이후 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적응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범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의 2배인 점과, 처분 이력이 많을수록 개인·가정·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처분 이후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소년보호 전문재단으로 청소년자립생활관, 희망드림사업(창업보육기업), 청소년창업비전센터(사회정착지원센터) 등을 통해 오랜 시간 보호소년을 지원해 왔다¹⁶²⁾. 다만, 해당 협회는 민간시설이기에 예산 운용과 인력 및 물적 자원에 한계가 존재한다(이승현, 권수진, 박선영, 고기원, 2021).

보호처분 종료 후 소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청소년안전망 사업)'와 연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통해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검증되었던 점(여성가족부, 2011)을 근거로 보호처분 종료 후 해당 소년을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2-4. 시설 내 처우 사회복귀교육 내실화

- 관련 지침 :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장 제2절 사회복귀교육
- 관련 부처 : 법무부

소년원은 소년의 임시퇴원이 결정되면 퇴원 전에 10일 이내의 사회복귀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출원이 임박한 소년은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 7시간 이상, 현장학습 및

162)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jpa.or.kr/24>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봉사활동 7시간 이상, 출원 준비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총 15시간 이상의 사회복귀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사회복귀교육은 보통 5일 내외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시퇴원 이후 받게 될 보호관찰에 대한 사전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한 소년이 사회로 돌아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사회복귀교육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취업 면접 준비 방법,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는 방법, 운전면허취득과 관련된 교육, 금융 교육 등 소년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육으로 사회복귀교육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5. 우범소년 기준 강화 및 별도의 처리 절차·보호처분 마련

- 관련 법령 : 「소년법」
- 관련 부처 : 법무부

우범소년의 증가 이면에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함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범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수용시설로 왔지만 실제로 우범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와 다르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은 비행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면접을 통해 밝혀졌다. 우범소년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은 우범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가출이나 성매매 등으로 위험환경에 노출된 소년들에게 대한 우범사건 접수는 소년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을 죄를 저지른 소년과 같은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범소년의 기준을 강화하여 촉법 및 범죄소년과 명확히 구분하고, 우범소년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와 보호처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범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을 통한 분류심사가 아닌 법원 조사관 조사,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조사 중 비행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우범소년을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의 목적이 아닌 소년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하는 조치 대신 쉼터 등의 별도 기관에 임시위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범사건의 처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는 구분될 수 있도록 사회 내 처우 처분을 위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범소년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4가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215, 제안일자 2022.12.28.)을 참고할 수 있다.

표 VI-7. 소년법 정부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으로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23일 인출(의안번호: 2119215)	

○ 제안배경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를 분석한 결과,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보호처분을 받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소년에게 3개월이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을 하는 자숙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처분 전 단계의 조기 개입 효과에 이미 주목하고 처분 전 다양한 개입 및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소년범죄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도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년 전담 조사관 인력 증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 조사 활용,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명료화, 조기개입을 위한 처분 전 조치 활성화를 제안한다.

3-1. 소년에 특화된 처분 전 조사 인력 증원

- 관련 법령 : 대법원규칙 제2991호, 법무부훈령 제1413호
- 관련 기관 : 법원, 법무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 전 조사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년을 둘러싼 환경 맥락 속에서의 소년 심리 및 행동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이 소년사법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적 기능을 맡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소년에 특화된 조사 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처분 전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관은 소년의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처분의견과 함께 조사 내용을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며, 이는 판사가 처분 결정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조사업무의 분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 중 하나인 서울가정법원에서조차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조사관은 단 6명이며, 그 밖의 다른 법원에서는 소년 조사를 위한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 전 조사의 일종인 결정 전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도 조사과가 별도로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주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조사

과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사건만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 전담 전문조사관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직 공무원의 순환업무로 조사업무만 맡기는 어려운 보호관찰소, 소년 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적극 활용

- 관련 법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
- 관련 부처 : 법무부

범죄사실이 경미하며 초기비행 단계에 있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에서 조사와 교육을 동시에 받게 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을 지양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상담조사는 3일로 구성되어 조사뿐만 아니라 법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표 VI-8 참고).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 조사 결과 소년에게 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모르고 범한 경우에는 교육을 통한 교정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처분 전에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보호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참여도와 참여태도가 모두 양호하다는 점도 처분 전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범이며 임시조치를 통해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는 소년들에게는 수용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비행의 학습을 피하고 상담조사를 통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 조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정책과제 1-4에서 제안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표 VI-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운영내용 예시

	1일차	2일차	3일차
1교시	소년법의 이해	성비행예방	안녕 폭력
2교시	진단자료 작성		안녕 공감
3교시	심리검사	생명존중	절도예방
4교시			
점심시간			
5교시	인권교육	미술로 보는 나의 심리	심리검사 해석
6교시			
7교시	법무직업체험	피해자 공감 모의법정	소감문 작성 및 수료식

*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설문자료.

*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설명자료.

3-3. 8호 처분 소년원 운영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의 쇼크 구금 기능 수행 제한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18조 제1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처우지침」
- 관련 부처 :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은 처분 전 조사인 분류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하기 위한 요건 역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이다.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위탁 처분으로 수용되는 것은 일종의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년법의 정신에 따른 그 고유의 목적은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수용시설에서 조사와 교육을 동시에 받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신병을 확보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 임시조치를 통한 임시위탁은 매우 긴요한 제도로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실무상에서 임시위탁은 짧게나마 수용생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쇼크 구금처럼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임시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의 절반 이상은 중간처우나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사회 내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에서의 처분 전 수용생활은 보호처분 위탁 집행 시설에서의 생활과 달리 비행의 경중이 다르고 연령이 다른 소년들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수용은 이미 만성적인 문제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즉각 분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임시위탁 처분을 내린다면 분류심사 업무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소년의 임시위탁 기간 또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다음 보호처분까지 평균 수개월이 걸리는 현재 소년보호재판의 조사와 심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현재 실무상에서 임시위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쇼크 구금의 효과는 정책과제 7-3에서 제안하는 8호 처분자에 대한 특수단기 소년원의 독립적인 운영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3-4. 소년범죄 조기개입을 위한 처분 전 조치 활성화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의3
- 관련 기관 : 법원, 법무부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전 조치로 시험관찰, 처분 전 교육, 청소년참여 법정, 화해권고 절차 등이 운영되고 있다. 화해권고 절차는 소년법 제25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밖의 처분 전 조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소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해석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법원행정처, 2014). 실무자들에 따르면 처분 전 조치는 아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소년들과 보호자의 참여 의지와 적극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소년의 범죄에 조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도 처분 전 조치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 위탁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이 전체 보호처분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다양한 처분 전 조치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년의 성행 개선과 환경 조정이라는 소년법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소년범죄 조기개입을 위한 처분 전 조치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처분 전 조치 사례로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재판 중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 온 ‘길 위 학교’나 서울가정법원에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가족 캠프 등이 있다.

○ 제언배경

소년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성행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때, 그 효과가 개별 집행기관이나 집행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소년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소년보호처분에 활용할 만한 자원 분포에 불균형이 있으며, 각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시설 및 개인의 역량에 따라 보호처분의 운영 내용의 격차가 상당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화된 보호처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하여 보호처분의 질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법원이 지정한 위탁 집행기관에 제공할 소년보호 프로그램 및 지침 마련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32조 제5항,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 제3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아동복지법」 제 52조 3항 가목
- 관련 기관 :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원이 법무부 관할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 소년을 위탁하여 보호처분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1호 처분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2호 처분으로 수강명령 집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6호 처분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하는 경우이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리고 소년을 인도하면서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넘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보호소년들에게 처분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호처분을 집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공유하는 공통의 매뉴얼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법원이 지정한 위탁 집행기관에 제공할 소년보호 프로그램 및 지침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보호관찰소가 아닌 기관 중 수강명령을 위탁 집행하는 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표적이다. 해당 관계자에게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였을 때 관할 법원에서 제공한 절차상의 지침이 있으나 전국의 법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문서는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의 각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의 각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시설 설치 및 종사자 기준에 관한 내용만을 다룰 뿐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자조 모임을 통해 소년 보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통의 내용을 개발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는 현재 청소년회복센터협의회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운영 매뉴얼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은 복지적 관점을 가지고 소년보호처분을 위탁 집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제공할 매뉴얼 개발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4-2. 법무부 주도 소년수강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자격검증을 통한 관리

- 관련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수강명령 등 집행에 관한 지침」
- 관련 부처 : 법무부

수강명령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할 때, 개시교육을 제외하고는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수강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섭외한 외부 강사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담당 보호관찰관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새로 발굴하고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 수강명령 집행을 실제로 파악한 결과, 새로운 강사를 발굴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강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개별 담당자에게는 큰 부담이어서 십 년 이상 같은 강사에게 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잦고,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섭외할 수 있는 강사의 질에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으로서 교육을 담당할 강사의 자격과 능력을 법무부에서 검증하여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각 보호관찰소의 집행 담당자가 확인하여 수강명령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소년수강 강사 인력풀 구축을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방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통합인력풀 시스템을, 개별 보호관찰소에서 인증된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다(그림 VI-2, 그림 VI-3).



* 출처: KICE 통합인력풀 시스템. 통합인력풀 신청하기. <https://pool.kice.re.kr/home/main.cs>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그림 VI-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합인력풀 시스템 구축 사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HOME | 시스템 | 공지사항

사업소개 전문강사 인력풀 개설강의 현황 마이페이지

HOME > 전문강사 인력풀 > 전문강사 목록

전문강사 인력풀 전문강사 목록 전문강사 소개

전문강사 목록

자격구분: ☒ 전체 ☐ 전문인력 ☐ 전문교직원 키워드: [학위, 성명 검색]

전문분야: ☒ 전체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약물 및 사이버폭력예방 ☒ 재난안전 ☒ 직업안전 ☒ 응급처치

지역구분: [전체] [지역] [시도, 시군구]

검색

전체 714명 강의명: [선택] 강의최수: [선택] 성명: [선택] 50개의 보기

강사명	지역 (시군구)	성명	생년 (나이)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전문분야	강사면허도 영장(원수)	전문강사 정보	강의수익 / 접수요청
2022.02.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	-	-	-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보기	강의수익 / 접수요청

* 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전문강사 인력풀. <https://lecture.schoolsafe.kr/illyeokpull/lecturer>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그림 VI-3.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구축 사례

4-3. 소년에 적합한 수강과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 관련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수강명령 등 집행에 관한 지침」
- 관련 부처 :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소년에 대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성인범에 대한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집행과에서 집행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업무는 보안처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때에 보호처분의 개념을 적용하여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수강을 집행할 때에 범죄영역별로 특화된 수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강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외부강사에게 제공할 만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강의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는 소년을 위한 사회봉사기관의 발굴이 어렵고 위탁 집행기관에서도 노동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소년을 위탁하기를 꺼려하여 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각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강 프로그램, 보호관찰소 직접 집행 소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개인이나 기관에 따라 보호처분의 질에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해당 보호처분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도출하였다. 수강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 법무부에서 보급을 준비 중인 통합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호 처분자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년에게 적합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처를 발굴하는 행정안전부¹⁶³⁾,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처를 연계하는 여성가족부¹⁶⁴⁾와 협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63) 1365 자원봉사포털. 메인화면. <https://www.1365.go.kr/vols/main.do#link>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16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봉사 터전 검색. <https://www.youth.go.kr/youth/dvl/ey/fcltyGrp/vlntwkActFcltyGrpLstForm2.yt?curMenuSn=1591>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4-4. 소년원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 협력

- 관련 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75조
- 관련 부처 : 법무부, 교육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한 소년원학교는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년보호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해당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수도권은 인적자원을 포함한 여러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민간에 의지하여 수용 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교육 자원을 동원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성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두 종류로 나누어 비행유형별 교육을 진행하는 A과정과 예체능, 심리치료 등 과목으로 이루어진 B과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다. 현장 실무자들은 이 밖에도 소년들에게는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들이 필요하며 이를 가르치는 생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소년원학교에서 필요한 이와 같은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법무부와 교육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민간이나 보호직 공무원인 기존 소년원 교사들에게만 의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2022년 10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소년원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소년원에 교과나 직업훈련, 상담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인력을 함께 배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여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소년원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법무부와 교육부의 연계협력을 정책과 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 제언배경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집행할 시설 및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재활처우 수준 분화 및 자원 확보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을 위탁할 시설이 부족하여 7호 처분 대신 6호 처분을 내려 복지시설에 위탁하기도 하며, 전국의 유일한 의료재활소년원은 항상 과밀 수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증상이 심각한 보호소년들을 받아주는 병원 등의 의료시설은 늘 부족하다. 따라서 일반소년원에서 의료처우가 가능한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수용해야 하는 경우, 폐쇄병동에 입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기준을 정하는 등 의료재활 처우 수준을 분화하고, 분화된 의료재활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소년의 의료재활처우를 담당할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법무병원 및 국립정신병원에 보호소년 병상을 배정하여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재활이 장기간 필요한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퇴원 후에도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반대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보호관찰에 의료재활을 부가처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에도 치료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5-1. 의료재활소년원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 관련 지침 및 규칙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관련 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현재 의료재활소년원에는 상근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고 배치 가능한 약사 정원이 있음에도 채용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이다. 20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23b) 상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배치 시설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협력을 통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을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설에 추가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재활소년원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약사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지방교정청 등 공무원 정원에는 2023년 8월 30일 기준 약무사무관 13인, 약무주사 3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에는 약무주사보 1인 만이 포함되어 있다. 직급 체계 개편을 통해 보호직에서도 6급(약무주사) 이상을 채용할 수 있게 하여 의료재활소년원의 약사 인력 충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5-2. 국립법무병원 및 국립정신의료기관 보호소년 병상 확보

- 관련 법령 : 「소년법」
- 관련 부처 : 법무부, 보건복지부

전문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이 아닌 법무병원에 소년 병상을 확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년들을 보호처분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 민간 의료시설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소아청소년 진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민간병원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중장기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7호 처분 운영 현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과 국립정신의료기관에 보호소년을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 의료시설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또한 2015년 법무부에 의해 법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심각한 증상의 7호 처분 소년들을 국립법무병원 및 국립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3. 의료재활처우 수준 분화 및 수준별 의료 처우 마련

- 관련 법령 : 「소년법」
- 관련 부처 : 법무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보호소년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재활처우 수준을 분화하고 일반소년원에서 의료처우가 가능한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수용해야 하는 경우, 폐쇄병동에 입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기준을 정하는 등 의료재활처우 수준을 분화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7호 처분에 보호관찰 처분 병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보호관찰 처분의 부가처분으로 의료재활 처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대전소년원 출원생의 퇴원 현황에서 만기 퇴원이 아닌 기타 퇴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7호 처분 종료 전 보호관찰로 처분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7호 처분에 대한 보호관찰 병과가 불가능하나 보호소년이 의료재활소년원을 퇴원한 후에도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실무에서 선택한 것이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통한 보호관찰로의 처분 변경임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호 처분에 보호관찰 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하지만 통원치료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소년에게는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의료재활 처분을 추가하여 보호관찰 중에도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제안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215, 제안일자 2022.12.28.)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의료재활 처우 수준 분화 및 앞서 언급한 7호 처분에 보호관찰 처분 병과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년법 제32조, 제32조의2 개정안을 표 VI-9에 제시하였다.

표 VI-9. 소년법 개정법률안(예시)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10. 생략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5. 생략 (이하 생략)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좌동 1. ~10.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6. 제1항제4호·제7호 처분 7. 제1항제5호·제7호 처분 (이하 생략)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생략)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u>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또는 치료·재활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u> 1.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u>보호</u> 2.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나 같은 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의 치료·재활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u>제32조의2제1항·제2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u> (이하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23일 인출(의안번호: 2119215)

5-4. 아동보호치료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기준 규정 개정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상담소는 30명 이상 1명을 배치하게 되어있지만,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6호 처분 결정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하여 수용하는 전국의 8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정원은 최소 32명부터 최대 150명까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임상심리상담원은 시설당 1명으로 배치가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소년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 없이 자체 비용으로 추가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의 증가로 인해 7호 처분을 통해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해야 하지만 정원 초과로 불가피하게 6호 처분을 내려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위탁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의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심리상담원의 경우 아동보호치료시설도 최소한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상담소와 동일한 배치 기준을 적용하여 30명 이상 1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 제안 배경

보호관찰소는 소년 보호제도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호관찰소의 주 업무는 성인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로, 보안처분의 개념을 가지고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가 집행해야 하는 처분은 보안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형벌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에 대한 보호를 통해 비행성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는 소년법의 목적을 따른다. 따라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는 교육적 접근과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소년보호처분의 2호 처분인 수강명령, 3호 처분인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인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처분인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 9호 및 10호 처분을 받고 임시퇴원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까지 담당하는 등 소년 보호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관찰소가 소년 대상 보호처분 집행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6-1.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도입 및 전문성 제고

- 관련 법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6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부처 : 법무부

현재 소년 보호관찰은 해당 업무를 위해 선발된 별도의 인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호직 공무원으로 선발된 인력이 순환보직을 통해 각 업무에 배정되는데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소년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 내에서도 기피 업무로 인식되고 주로 신입 직원들에게 배정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소년 보호관찰은 소년의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보호자와 학교,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성인 보호관찰과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보호력이 부족한 소년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보호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보호관찰관은 소년이 성장하며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어 근무 연속성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 전담 보호관찰과 제도를 도입하여 소년 보호관찰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과제의 실천을 위해 소년보호관찰관(juvenile probation officer: JPO)을 성인 담당 보호관찰관과 별도로 채용하여 교육하는 미국의 사례(김양곤, 2004: 78-79)를 참고할 수 있다.

6-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소년 수강 집행 기능 확대

- 관련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부처 : 법무부

현재 보호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처분의 약 50%를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소년 수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보호관찰소 집행과에서 집행하는 수강명령의 대부분이 성인수강인 점, 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성 있는 강사 섭외의 어려움, 소규모로 진행해야 하는 소년수강의 특성에 비해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소년 수강 집행 기능을 확대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도 처분 전 상담조사 시 3일간의 상담 및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소년에 대한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만 방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인범들과의 접촉에 대한 우려가 없는 장점도 있다. 정책과제 1-4를 통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관찰소의 소년 수강 집행 기능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도 함께 집행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3.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감독하고 운영하도록 제도 개편

- 관련 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규정(재형 2003-9)」 제4조
- 관련 부처 : 법무부

정책과제 4-3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을 감독하고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소년들을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할 때에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이 거두고자 하는 효과, 즉, “단순 노역보다는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소년에 한해서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유형을 보호관찰소의 직접 집행으로 하도록 정하고 정책과제 6-1에서 제안한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의 예시는 표 VI-10과 같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명령의 연령 하한을 근로 가능 연령에 맞춰 상향함으로써 사회봉사명령이 보호처분으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VI-10. 소년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을 위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 ④ (생 략)	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u>있으나 제3조제1항의 4, 제2항의 2에 대하여서는 그러지 아니한다.</u> ②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 배경

보호처분 집행기관 및 시설 수 확대는 현재 시설 과밀수용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처분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구분 및 처분에 따른 별도의 처우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소년원 수용인원을 조기에 퇴원시키는 임시퇴원은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기대하였던 효과를 충분히 내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다. 1호 처분 위탁시설과 6호 처분 위탁시설은 미설치 지역이 많고 시설 수가 부족하여 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거주지와 먼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또, 시설 정원 초과로 필요한 보호처분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 처분 집행기관 및 시설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7-1. 비수도권 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 설치 및 대행소년원 축소

- 관련 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관련 부처 : 법무부

처분 전 조사로서 분류심사 및 임시위탁 소년들을 감호하고 교육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위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전용 분류심사원, 경기소년분류심사원 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위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소년보호 자원을 배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각 소년원이 대행하고 있는 분류심사원의 기능을 소년원으로부터 분리하여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고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임시조치에 의한 수용 및 집중적인 처분 전 교육을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소년원 관련 규정과 함께 다뤄지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및 분류심사 내용을 따로 떼어 별도의 법률(가칭 「소년분류심사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7-2.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조정 및 임시퇴원 비율 상한 설정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32조, 제33조, 제45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7조 ~ 제61조
- 관련 부처 : 법무부

현재 소년원 송치 처분은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2가지 밖에 없는데, 소년원 수용자의 임시퇴원율은 2021년 기준 9호 처분자의 72.9%, 10호 처분자의 83.9%에 달한다. 임시퇴원자는 보통 출원 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므로 소년원에서의 사회복귀교육은 실제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보다는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년원 송치 처분 종류의 한계로 실무상으로는 임시퇴원을 활용하여 처분 기간을 조정하고 있을 수 있다. 임시퇴원자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비행의 심화 정도나 가정의 보호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의 효과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시퇴원 비율의 상한을 설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정 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한해 임시퇴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9호 처분이 6호 처분과 수용 기간이 같고 임시퇴원 시 그보다 처분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9호 처분을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기소년원 처분 신설 또는 부정기 보호처분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소년에게 필요한 기간만큼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년의 비행성 교정과 환경 조정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예시로 표VI-11에 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추가에 관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569, 제안일자 2023.1.19.)을 제시하였다.

표 VI-11.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신설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좌동 1. ~ 9. (현행과 같음) 10. 중기 소년원 송치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제10호 및 제11호-----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⑤ (생략) 〈신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중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11호----- -----. ⑧ -----제11호까지----- -----. -----.
제45조(항고의 재판)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제9호·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	제45조(항고의 재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32조제1항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 처분 -----.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s://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0월 23일 인출(의안번호: 2119569)

7-3. 소년원 증설을 통한 처분별 소년원 운영

- 관련 법령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처우지침」
- 관련 부처 : 법무부

소년원 송치 처분은 8, 9, 10호 처분에 해당하는데 남자 10호 처분 소년을 수용하는 부산소년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소년원이 9, 10호 또는 8, 9, 10호 소년의 수용을 병행하고 있다. 대행소년원은 위탁소년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 소년원도 예외가 아니다. 처분 기간이 다른 소년들은 그에 맞는 처우계획을 세워 기간 내에 보호처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과밀수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8, 9, 10호 처분자를 동시에 수용하고 교육하는 것은 운영상 보호처분의 효과를 거두는데 어려울 수 있다. 법무부(2022)는 현재 10~15명 규모의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1~2인실 비율의 확대를 목표로 시설 내에서 처분별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쇼크 구금의 효과를 기대하며 신설한 8호 처분을 운영하기 어려워 처분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8호 처분자만을 수용하는 특수단기 소년원을 운영하여 법 개정 당시 기대하였던 쇼크 구금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처분 기간별로 나누어 수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소년원의 수를 늘리거나 시설 내 생활실 등을 소규모화하여 처분 기간 내에 보호처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우 계획을 마련하여 처분별 소년원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4.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및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증원을 위한 지원

- 관련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아동복지법」 제52조 3항 가목
- 관련 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중간 처우 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과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은 소년 보호처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여 복지적 접근을 실천하며 지역사회가 소년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각 시설은 법원에서 보호소년 1인당 비용도 추가로 지급 받고 있다. 그런데 시설 수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년만 관할 법원을 통해 각 시설에 위탁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역 외의 소년까지도 경계를 넘어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해당 시설을 지역사회에 신설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시설 수 확충을 통해 지역별로 해당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규모 정원으로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보다 작은 단위(시·군·구)의 행정단위마다 설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일 것이며, 정원이 40명 이상 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시·도 단위별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시설 정원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부족한 아동시설 또는 타 시설로 전환할 것을 행정사항으로 두고 있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경래 (2018). 일본소년법의 엄벌화 정책은 성공하였는가? - 2000년대 일본소년법 개정 논의의 타당성 검토 -. **소년보호연구**, 31(3), 1-40.
- 교육부 (202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세종: 교육부.
- 김성은 (2016).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 27(3), 27-51.
- 김양곤 (2004).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04-12).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미 (2018).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사회복지법제연구**, 9(1), 41-69.
- 김응수 (2018). 독일의 소년보호정책과 법적 지원에 관한 연구 - 청소년 대안시설 하임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9(2), 81-102.
- 김혁 (2011).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11(1), 61-86.
- 김혁 (2020). 소년보호처분 전(前) 개입에 관한 일본 제도 연구. **보호관찰**, 20(2), 1-26.
- 대검찰청 (2015-2022).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배상균, 김민규, 김성규, 이유경 (2022a).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방향: 형사미성년자제도 및 소년법상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배상균, 임정재, 김성규, 김혜경, 박찬걸 (2022b).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 7호 처분 시설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2-AB-02).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법무부 (2005).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경기: 법무부 보호국.
- 법무부 (2020). **2021학년도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 경기: 법무부 소년보호과.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0~2022).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경기: 법무부.

- 법무연수원 (2023). **2022 범죄백서**. 진천: 법무연수원.
- 법원행정처 (2013~2021).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소년**. 서울: 법원행정처.
- 보건복지부 (2023a).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세종: 보건복지부.
- 서현숙 (2021). **소년을 읽다**. 경기: 사계절.
- 신동주 (2019).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법조**, 68(5), 496-528.
- 신성식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15(4), 141-147.
- 심재광 (2019).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서울: 공명.
- 안윤숙, 천종호 (2016). 비행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7(4), 165-190.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동반자 지원서비스가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2011-14).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II)**.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II)**. 서울: 여성가족부.
- 윤웅장 (2017). 소년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11(3), 1-29.
- 이승현 (2015). 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처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8(3), 59-86.
- 이승현 (2017).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진단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29(3), 7-34.
- 이승현, 권수진, 박선영, 고기원 (2022).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총서 21-AB-05).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승현, 박선영 (2017).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17-AB-03).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유경 (2023). 영국의 청소년 참여형 소년사법정책. **소년보호연구**, 36(1), 119-144.
- 이진국 (2002). 독일 소년형법의 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 **형사정책연구소식**, 73, 40-45.
- 전영실, 김슬기, 김혁, 주현경, 조병철 (2021).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연구총서 21-A-03).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재준 (2002). **각국의 소년원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2-2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광국 (2013). 독일의 소년형사사법제도 : 일반 형사절차에 대한 특수성과 보호처분 및 소년형벌의 종류와 체계를 중심으로. **외국사법연수논집**, 32, 93-198.
- 조윤오 (2012). 수감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12(1), 69-102.
- 주호노 (2010).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법조**, 59(12), 41-76.
- 최정원, 강경균, 강소영, 김혁 (2018).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연구보고 18-R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beitsstelle Kinder- und Jugendkriminalitätsprävention (2021). *Zahlen - Daten - Fakten Jugendgewalt*.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
- Baglivio, M. T., Wolff, K. T., DeLisi, M., & Jackowski, K. (2020). The rol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nd psychopathic features on juvenile offending criminal careers to age 18.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8(4), 337-364.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2022a). *Jugendkriminalität und Jugendstrafrecht, Informationen zur Jugendkriminalität und zur Jugendstrafrechtspflege in Bayern*. München: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2022b). *Justizvollzug in Bayern - Übersicht* (Stand: 31. März 2022). München: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 Berk, L. E. (2008). **아동발달** (이종숙 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Cipriani, D. (2016). *Children's rights and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 global perspective*. Routledge.
- Crowley, D. A. (1975). The later history of frankpledge. *Historical Research*, 48(117), 1-15.
- DVJJ e. V. (2007). Mindeststandards für den Jugendstrafvollzug. *Neue Kriminalpolitik*, 19(1), 4-6.
- Eisenberg, U., & Kölbl, R. (2023). *Jugendgerichtsgesetz: JGG* (24. Aufl). München: C.H.BECK.
- Hawes, J. M., & Hinder, N. R. (1991). *Children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NY: Greenwood.

Heinz, W. (2014). Das strafrechtliche Sanktionensystem und die Sanktionierungspraxis in Deutschland 1882 - 2012, (Version 1/2014). Konstanz: Konstanzer Inventar Sanktionsforschung (KIS).

HM Government (2023). *Anti-Social Behaviour Action Plan*. London: HM Government.

HM Inspectorate of Prisons (2021). *Children in Custody 2019-20*. London: HM Inspectorate of Prisons.

Home Office (1998). *Inter-departmental Circular on Establishing Youth Offending Teams*. London: Home Office.

Judicial College (2020). *Youth Court Bench Book*. London: Judicial College.

Laue, C. (2022).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StGB, Band 7: Nebenstrafrecht I, JGG, (4. Aufl). München: C.H.BECK.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 *Youth Justice Resource Pack*. Londo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Ministry of Justice (2016a). *The government response to Charlie Taylor's Review of the Youth Justice System*. London: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2016b). *Modern Youth Offending Partnerships: Guidance on effective youth offending team governance in England*. London: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2022). *Review of Custodial Remand for Children*, London: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Her Majesty's Prison & Probation Service (2022). *Children in custody: secure training centres and secure schools*. London: National Audit Office.

Norrie, K. (2017). *Legislative Background to the Treat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Report for the Scottish Child Abuse Inquiry*. Glasgow: University of Strathclyde Law School.

Ostendorf, H. (2007). *Jugendstrafrecht* (4. Aufl). Baden-Baden: Nomos.

- Sentencing Council (2017). *Sentenc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London: Sentencing Council.
-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2009). *Overarching Principles – Sentencing Youths*. London: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 Statistisches Bundesamt (2020).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18*.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 Statistisches Bundesamt (2022).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21*.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18). *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 London: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 Walkenhorst, P (2010). Jugendstrafvollzu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7/2010*, 22-28.
- Youth Justice Board & Ministry of Justice (2022). *Youth Justice Statistics 2020/21*. LONDON: Youth Justice Board, Ministry of Justice.
- Youth Justice Board (2010a). *Making it count in court*. London: Youth Justice Board.
- Youth Justice Board (2010b).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MAPPA):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 London: Youth Justice Board.
- Youth Justice Board (2013). *Modern Youth Offending Partnerships – Guidance on effective youth offending team governance in England*. London: Youth Justice Board.
- Youth Justice Board (2022a).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1/22*. London: Youth Justice Board.
- Youth Justice Board (2023). *Youth Justice Statistics 2021/2022*. London: Youth Justice Board.
- 廣瀬健二 (1997). 少年審判における非行事実認定手続, 荒木伸怡(編), 非行事実の認定. 東京: 弘文堂.
- 法務総合研究所 (2022). 犯罪白書. 東京: 法務省.
- 富田拓 (2015). 司法と福祉の架け橋 児童自立支援施設：児童福祉施設における非行少年処

- 遇とは. *罪と罰*, 52(3), 105-118.
- 浜井 一夫, 廣瀬 謙二, 浪床 昌則, 河原 俊也 (1997). *少年事件の処理に関する実務上の諸問題: 否認事件を中心として*. 埼玉: 司法研修所.
- 成瀬剛 (2021). 特定少年に対する保護処分 (特集 2021年少年法改正). *ジュリスト*, 37, 99-105.
- 小林寿一 (2010). *警察と修復司法*, 細井洋子ほか(編), *修復的正義の今日・明日*. 東京: 成文堂.
- 小木曾綾 (2021). 令和3年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法学教室*, 494, 51-57.
- 児玉勇二 & 杉浦ひとみ (2005). *少年法改正と被害者への配慮*. 東京: 成文堂.
- 原口軒雄 (1978). 社会調査と資質鑑別--少年係裁判官を志すAさんへの手紙. *家庭裁判月報*, 30(8), 1-33.
- 田宮裕 & 廣瀬健二 (2009). *注釈少年法* (第3版). 東京: 有斐閣.
- 竹内 友二, 唐澤 仁, 鈴木 憲治 (2006). 少年事件における保護的措置について. *家庭裁判所月報*, 58(10), 115-189.
- 川出敏裕 (2016). *소년법* (황순평 역). 서울: 박영사.
- 川出敏裕 (2021). 少年法の適用対象年齢の引下げを巡る議論について.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 15, 32-50.
- 最高裁判所事務総局 (2008). 法務省矯正局長, 保護局長依命通達等の発出について(抄)(平成20年5月9日付け最高裁家二第000678号家庭局長, 刑事局長通知) (通達・回答 更生保護法の施行に伴う通達の改正等について). *家庭裁判所月報*, 60(8), 179-242.
- 最高裁判所事務総局家庭局 (2023). 家庭裁判所事件の概況(2・完)―少年事件―. *法律時報*, 75(1), 53-125.
- 澤登俊雄 (2015). *少年法入門*(第6版). 東京: 有斐閣.
- 平場安治 (1987). *少年法*(新版). 東京: 有斐閣.

인터넷 자료

1365 자원봉사포털. 메인화면. <https://www.1365.go.kr/vols/main.do#link>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온라인부모교육 이음-e. http://www.cyber1388.kr/new/_/counsel2/_youth/counseldata/e-um/eum_intro.asp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KICE 통합인력풀 시스템. 통합인력풀 신청하기. <https://pool.kice.re.kr/home/main.cs>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2). 결정문(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8440>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대한민국 법원. 사법통계 법원통계월보 소년보호(2014~2021).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보호처분.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에서 2023년 10월 13일 인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3/index.html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https://glaw.scourt.go.kr>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범죄예방정책통계」 DB. <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stat/easyStatCrimePage/800000.do>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법무부 (2022).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발표. <https://www.moj.go.kr/moj/index.do>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수강명령. <https://www.moj.go.kr/cppb/724/subview.do>에서 2023년 10월 13일 인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생 교육 - 기관현황. <https://www.cppb.go.kr/cppb/577/subview.do>에서 2023년 2월 15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5~2022). 아동복지시설현황.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https://www.mohw.go.kr/>

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5746 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도 아동복지(생활)시설 현황. https://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92868562078_20230824181602.pdf&rs=/upload/viewer/result/202310/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1101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W1G0Q5I0A3D1A5S1L4Z5X9W7B7Q1에서 2023년 10월 23일에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1192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T2U2N1Z2O2P8T1T7O0J5O1H7D6O6M0에서 2023년 10월 23일에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11956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C2C1N2J2B3K1R6S5O5E5L3F2K8B5에서 2023년 10월 23일에 인출.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https://www.kjpa.or.kr/24>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 봉사 터전 검색. <https://www.youth.go.kr/youth/dvl/ey/fcltyGrp/vlntwkActFcltyGrpLstForm2.yt?curMenuSn=1591>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15~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에서 2023년 9월 19일 인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안전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시스템. 전문강사 인력풀. <https://lecture.schoolsafe.kr/illyeokpull/lecturer>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신청. https://edu.kohi.or.kr/pt/pa/paa/BD_paa004Od.do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업 목적 및 목표. <https://www.kassw.or.kr/page/s6/s2.p>

hp에서 2023년 10월 25일 인출.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Justizvollzugsanstalt Neuburg-Herrenwörth - Kurzübersicht (Stand 31.12.2020). https://www.justiz.bayern.de/media/pdf/neuburg-herrenwoerth_2020.pdf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Bundeskriminalamt. PKS 2022 Bund - Tatverdächtige insgesamt. <https://www.bka.de/DE/AktuelleInformationen/StatistikenLagebilder/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2022/PKSTabellen/BundTV/bundTV.html?nn=211742>에서 2023년 7월 10일 인출.

Cultural Learning Alliance (2023.6.26.). What is the National Youth Guarantee (NYG)?. <https://www.culturallearningalliance.org.uk/what-is-the-national-youth-guarantee-nyg/>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DELME REPORT (2023.4.9.). Jugendkriminalität nimmt zu. https://weserreport.de/2023/04/umzu_regional/delmereport/delmenhorst/jugendkriminalitaet-nimmt-zu/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Department for Education. Children accommodated in secure children's homes.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children-accommodated-in-secure-childrens-homes/202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DVJJ. Wir über uns. <https://www.dvjj.de/die-dvjj/#wir>에서 2023년 8월 28일 인출.
e-stat. 少年矯正統計表. <https://www.e-stat.go.jp>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CE0naRNcDfE6ObA9_jZH3WghOSgEe8H8z0R38mAG.node11?idx_cd=1578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Gardian (2023.2.10.). 'The wounds don't ever heal': 30 years after James Bulger's murder, Bootle cannot forget.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3/feb/10/30-years-after-james-bulger-murder-strand-bootle-youth-justice>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HM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Placing young people in custody: guide for youth justice practitioners. <https://www.gov.uk/guidance/placing-young-p>

people-in-custody-guide-for-youth-justice-practitioners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Jugendarrestanstalt Verden. Formen des Jugendarrestes. https://www.jaa-verden.niedersachsen.de/startseite/informationen_fur_arrestierte_und_angehoerige/formen_des_jugendarrestes/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Merkur (2023.10.9.). Fall Luise: Was Experten zur Art der Tötung sagen - und wie die 12-Jährige in der Heimat gesehen wurde. <http://www.merkur.de/deutschland/nordrhein-westfalen/messerstiche-getoetet-freudenberg-taeterinnen-uebertotung-fall-luise-12-jaehrige-92223261.html>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Ministry of Justice Consultations. Youth Rehabilitation Orders. https://consult.justice.gov.uk/sentencing-council/sentencing-youths/user_uploads/youth-rehabilitation-orders.pdf-1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ntv (2023.3.17.). Jurist kritisiert Infosperre im Fall Luise. <https://www.n-tv.de/panorama/Jurist-kritisiert-Infosperre-im-Fall-Luise-article23993754.html>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ntv (2023.4.7.). Tod von Zehnjähriger wirft Frage nach Strafmündigkeit neu auf. <https://www.n-tv.de/panorama/Tod-von-Zehnjaehriger-wirft-Frage-nach-Strafmuendigkeit-neu-auf-article24040322.html>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Politics.co.uk. Young Offenders Institute. <https://www.politics.co.uk/reference/young-offender-institutions/>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statista. Anzahl der Einrich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im Jahr 2020 (31. Dezember) nach Bundesländern.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175211/umfrage/einrichtungen-der-kinder-und-jugendhilfe-nach-bundeslaendern/>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statista. Anzahl der Justizvollzugsanstalten in Deutschland nach Bundesländern im Jahr 2023.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993902/umfrage/anzahl-der-justizvollzugsanstalten-in-deutschland/#:~:text=Insgesamt%2>

0wurden%20im%20Jahr%202022,33%20Gef%C3%A4ngnissen%20die%20meisten%20Justizvollzugsanstalten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statista. Anzahl der Strafgefangenen im Jugendstrafvollzug in Deutschland nach Bundesländern am 31. März 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37477/umfrage/gefangene-im-jugendstrafvollzug-in-deutschland/>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statista. Anzahl der tätigen Personen in Einrich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im Jahr 2020 (31. Dezember) nach Bundesländern.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175221/umfrage/taetige-personen-in-der-kinder-und-jugendhilfe-nach-bundeslaendern/>에서 2023년 10월 9일 인출.

Süddeutsche Zeitung (2023.6.6.). Vier Mädchen nach Überfall auf 13-Jährige verwarnt. <https://www.sueddeutsche.de/panorama/prozesse-heide-vier-maedchen-nach-ueberfall-auf-13-jaehrige-verwarnt-dpa.urn-newsml-dpa-com-20090101-230605-99-949854>에서 2023년 7월 5일 인출.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Youth Offender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youth-offenders>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Titus & Jack GmbH. Jugendhilfeeinrichtungen. <https://www.jugendhilfe.com/jugendhilfeeinrichtung/>에서 2023년 8월 30일 인출.

UK Government (2021.9.3.). Targeted support for vulnerable young people in serious violence hotspots. <https://www.gov.uk/government/news/targeted-support-for-vulnerable-young-people-in-serious-violence-hotspots>에서 2023년 8월 26일 인출.

UK Government (2022.5.20.). £300 million to cut youth crime and make streets safer. <https://www.gov.uk/government/news/300-million-to-cut-youth-crime-and-make-streets-safer>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UK Government. Children in custody. <https://www.gov.uk/children-in-custody>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UK Government.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Bill: Equalities Impact Assess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olice-crime-sentencing-and-courts-bill-2021-equality-statements/electronic-monitoring-in-the-police-crime-sentencing-courts-bill-equalities-impact-assessment>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UK Government. Guidance for Conditions of Youth Justice Grant 2023-202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nditions-of-youth-justice-grant-2023-24/guidance-for-conditions-of-youth-justice-grant-2023-2024>에서 2023년 7월 28일 인출.

Youth Justice Board (2022b). How to manage bail and remands: section 3 case management guidance. <https://www.gov.uk/guidance/case-management-guidance/how-to-manage-bail-and-remands>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法務省 (2007). 少年犯罪被害当事者の会, 犯罪者等による少年審判の傍聴等に関する意見書. <https://www.moj.go.jp/content/000003807.pdf>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法務省.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j.go.jp/>에서 2023년 3월 26일 인출.

裁判所. 最判平成9・9・18刑集51卷8号571頁.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184/050184_hanrei.pdf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법령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에서 2023년 10월 2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심판규칙. <https://www.law.go.kr/법령/소년심판규칙>에서 2023년 10월 26일 인출.

legislation.gov.uk. Children Act 1989 (s)2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section/2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hildren Act 2004 (s)10(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4/section/156>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hildren Act 200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4/31>

004/31/section/1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contents/enacted>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Geo5/23-24/12>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s)16(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3/37/section/16>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1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11/2014-04-22>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38(3)(a)&(b).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39(7).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41(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4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66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A>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66Z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ZA>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e and Disorder Act 1998 (s)66ZB(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section/66ZB>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ct 2003 (s)148(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4/section/148/2007-10-01>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ct 2003 (s)15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4/section/156>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Sch. 1, para. 2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4/schedule/1/paragraph/27>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Sch. 2, para.

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4/schedule/2/paragraph/6>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s)23/(s)24.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s)4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16/section/48>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1, Explanatory Notes (s)10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16/notes>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s)135(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2/10/section/135/enacted>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s)9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2/10/section/94>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s)98, (s)99.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Regulations 2006.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6/90/made>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43/section/24>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4A.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43/section/24A>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9(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0/43/section/29>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10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100>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 [legislation.gov.uk](https://www.legislation.gov.uk).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3B.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3B>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3B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91(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9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91. [http](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91)

s://www.legislation.gov.uk/ukpga/2000/6/section/9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Sentencing Act 2020 (s)250, Schedule 2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0/17/schedule/2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Sentencing Act 2020 (s)416(1), Schedule 28.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Sexual Offences Act 2003 (s)13, (s)25, (s)26. <https://www.legislation.gov.uk>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legislation.gov.uk. The Sexual Offences Act 1993 (s)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3/30/section/1>에서 2023년 5월 23일 인출.

국문초록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의 자연령화와 흉포화를 근거로 삼아 소년법 폐지 및 처벌 강화 등 엄벌 조치를 원하는 사회적 여론이 단기간에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보호소년의 범죄 현황과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소년법의 목적대로 소년이 제도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2차 자료 분석,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처분 전 조사 및 보호처분 집행기관 담당자 대상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조사 실시 및 분석, 해외 소년범죄 사례 탐색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파악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실증적이고 검증 가능한 통계 자료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근거기반 통합적 소년보호정책 추진, 둘째, 소년의 비행성 개선과 함께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보호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소년의 요보호성 개선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기 개입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처분 전 단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제안하였고, 넷째, 집행기관이나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처분의 효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보호처분의 질 상향 평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재활처우 수준을 분화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여섯째, 소년보호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보호관찰소의 소년 대상 보호처분 집행 전문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과밀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처분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보호처분 집행기관 및 시설 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Each occu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has swiftly given rise to public opinions seeking stricter measures, including the abolishment of juvenile law and heightened punishment, based on the decreasing age in juveniles' involvement in crime and severity of crimes. However, there is a dearth of objective data to support these claim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rimes committed by juveniles under juvenile protection from a variety of angles and suggest policies that can help juveniles grow up healthily within the system, as intended by the Juvenile Act.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employs a range of systematic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is, collection and analysis of memos prepared for juvenile protection trials, focus group interviews conducted with those in charge at a predisposition survey and protective disposition enforcement agencies, and a case study of juvenile crime abroad.

The study identified policy tasks from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ased on key findings. The main policy tasks were as follows: first, promoting evidence-based integrated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based on verifiable empirical statistical data; second, establishing; third,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predisposition phase, which can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early intervention; fourth,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programs

to elevate the standard quality of protective disposition so that its effectiveness does not vary depending on the competence of the enforcement agency or person in charge; fifth, segmenting and ensuring resources for medical rehabilitation care as the number of juveniles with mental diseases continues to increase; and sixth, improving the expertise of protective disposition enforcement for juveniles in centers, as these agencie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juvenile protection syste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expanding the number of protective disposition enforcement agencies and facilities as a necessary task to address overcrowding and enhance the quality of protective disposition.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외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의 실태와 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시05 닛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 반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박유정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경·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크숍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 키 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 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97-8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97-8